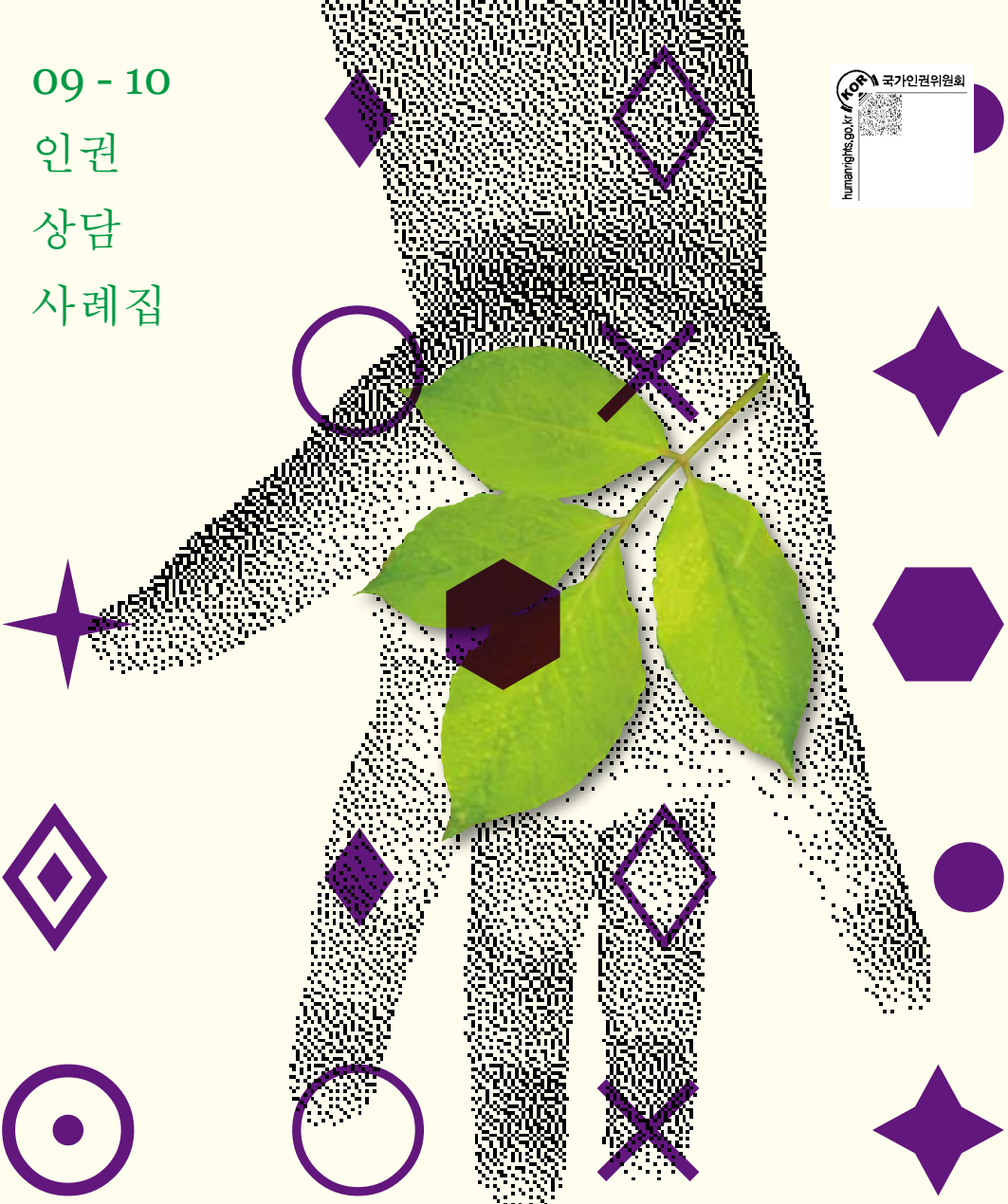


09 - 10
인권
상담
사례집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ISSN 2092-9714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16-10

09 - 10 인권 상담 사례집



09-10 인권상담사례집

2010년 11월 25일 발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펴내고 인권상담센터(과장 김대철)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글매김꾼으로 인권상담센터 김미숙 박상옥 육성철 이윤정 정미현이 땀을 쏟았고, 외부 발간위원으로 부깽 이해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타이페이지에서 디자인, 필름 출력, 인쇄, 제본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소는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층, 전화는 (02) 2125-9810, 팩스는 (02) 2125-9811~2, E-mail은 hoso@nhrc.go.kr 홈페이지는 www.humanrights.go.kr입니다. 이 책의 ISSN은 2092-9714입니다.

편집자 주

- 사례집에 실린 상담내용은 실제 상담서를 기초로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임.
- 사례집에 실린 보도자료 및 위원회 결정문 등은 전체 본문 중에서 상담내용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임.
- 수록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인권> 잡지 등에 게재된 것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09-10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 8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 9

1. 개요
2. 접수 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 상담
8. 내담자 현황

09-10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 22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27

1 고문 ... 28

- 1-1 폭행
- 1-2 고문
- 1-3 가학적 조사
- 1-4 실적 위주 수사관행
- 1-5 과도한 장구 사용

2 형사절차 ... 40

- 2-1 모발 및 소변 채취
- 2-2 고압적 수사
- 2-3 사생활 침해
- 2-4 전자발찌
- 2-5 미성년자 및 여성 조사관행
- 2-6 피의사실 유포
- 2-7 적법절차 위반
- 2-8 과도한 장구 사용
- 2-9 체포
- 2-10 불심검문
- 2-11 함정수사

3 표현의 자유 ... 64

- 3-1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3-2 1인 시위
- 3-3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 3-4 전교조 명단 공개
- 3-5 국가보안법
- 3-6 천안함 사건
- 3-7 언론의 자유
- 3-8 공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
- 3-9 표현의 자유 제한과 보조금 지원

4 막말과 인격권 ... 80

- 4-1 판사의 막말
- 4-2 검사의 막말
- 4-3 경찰의 막말
- 4-4 교사의 막말
- 4-5 공무원의 막말

5 정보인권 ... 92

- 5-1 개인정보 수집
- 5-2 개인정보 열람
- 5-3 개인정보 유출
- 5-4 위치정보 노출
- 5-5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 5-6 CCTV와 사생활 보호
- 5-7 알몸투시 - 전신검색장비

6 학생인권 ... 106

- 6-1 학생체벌
- 6-2 학교폭력
- 6-3 두발
- 6-4 조기등교
- 6-5 교사의 인격권 침해
- 6-6 비학생 청소년 차별
- 6-7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 6-8 수업 선택권

7 성희롱 ... 126

- 7-1 공공기관 성희롱
- 7-2 직장 내 성희롱
- 7-3 교수의 성희롱
- 7-4 교장의 성희롱
- 7-5 의사의 성희롱
- 7-6 상업시설 내 성희롱
- 7-7 성희롱 신고자 불이익

8 사회적 약자 ... 138

- 8-1 노인요양병원
- 8-2 아동복지시설
- 8-3 비정규직
- 8-4 무상급식
- 8-5 최저생계비 보장
- 8-6 일용직 노동자
- 8-7 파견노동자/기간제교사
- 8-8 노점상
- 8-9 두리반/재개발
- 8-10 신용불량자
- 8-11 건강보험 수가적용 제외

9 이주민 인권 ... 162

- 9-1 강제단속
- 9-2 고용허가제
- 9-3 결혼비자 발급 지연
- 9-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
- 9-5 난민
- 9-6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 9-7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9-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 9-9 교육권

10 나이차별 ... 184

- 10-1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
- 10-2 모집 시 차별
- 10-3 정년 차별
- 10-4 나이를 이유로 한 처우 차별

11 정신병원 ... 192

- 11-1 강박
- 11-2 외부교통권 제한
- 11-3 강제입원
- 11-4 강제노역
- 11-5 가혹행위
- 11-6 환자정보 제공

12 장애인 차별 ... 206

- 12-1 시험차별
- 12-2 통신정보 접근권
- 12-3 고용 차별
- 12-4 괴롭힘
- 12-5 강제노역
- 12-6 이동권
- 12-7 보험 가입 차별
- 12-8 장애인 선거참정권
- 12-9 장애인 교육권

13 북한인권 ... 226

- 13-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 13-2 탈북 여성

14 차별하는 사회 ... 234

- 14-1 용모 차별
- 14-2 학력 차별
- 14-3 출신학교 차별
- 14-4 혼인여부 차별
- 14-5 병력 차별
- 14-6 종교 차별
- 14-7 육아휴직 차별
- 14-8 성 차별
- 14-9 노조관련 차별

15 군대 ... 250

- 15-1 군대 내 성폭력
- 15-2 가혹행위 및 구타
- 15-3 군에서 정신질환 발병
- 15-4 군인의 의료권
- 15-5 군복무 규정

16 구급시설 ... 262

- 16-1 교도관의 폭행
- 16-2 교도소 내 사망
- 16-3 수용자 의료권
- 16-4 보호감호 제도
- 16-5 작업 중 안전사고

17 기타 ... 274

- 17-1 인권위에 할 말 있습니다.
- 17-2 인권위, 수고하셨습니다.
- 17-3 인권위를 비판합니다.
- 17-4 인권위, 걱정됩니다.
- 17-5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고발합니다.
- 17-6 인권위가 아닌가요?
- 17-7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편집후기 ... 288

09-10 인권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꿈꾸며

1년 전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펴내면서 '인권은 물처럼 흐르기 마련'이라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인권의 역사는 언제나 바다로 향하는 물줄기였기에 비록 오늘의 물이 패인 구덩이를 채우는데 머문다 해도 언젠가 그 물은 뒷자리를 메우고 바닷길을 열고야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지금 우리 시대의 물은 과연 어느 자리를 지나고 있는지 헤아려 봅니다.

돌이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의 신화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국가에서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인권신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여겨온 이들의 숭고한 노력 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출범 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10주년을 목전에 두고 우리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되새겨 봅니다. 인권은 일상의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상담센터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만나는 관문이자 인권 현장으로 나아가는 창입니다. 해마다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진정과 상담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소임의 중요성을 절감합니다. 인권상담센터는 앞으로 국민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 속으로 더욱 깊숙이 다가서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09-10 인권상담사례집>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20,562건의 상담내용 중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을 대표하는 사례를 선별 수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인권과제의 목록이자 인권선진국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09-10 인권상담사례집>이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살펴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환**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상담
8. 내담자 현황

1. 개요

'09-10 인권상담사례집'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0,562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집계기간이 2년여에 걸쳐 있는 특성을 감안, 사례집의 제호도 '09-10 인권상담사례집'으로 정했다. 이는 발간년도를 기준으로 제호를 정했던 08-09 인권상담사례집을 준용한 것이다. 분석대상을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 인권상담사례집(2008.7.1.-2009.6.30.)의 15,631건보다 4,931건(31.5%) 증가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인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례로 상담내용이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로 이어진 사례가 지난해의 3,538건에서 4,297건으로 21.5% 증가했다.

〈표〉 연도별 분석대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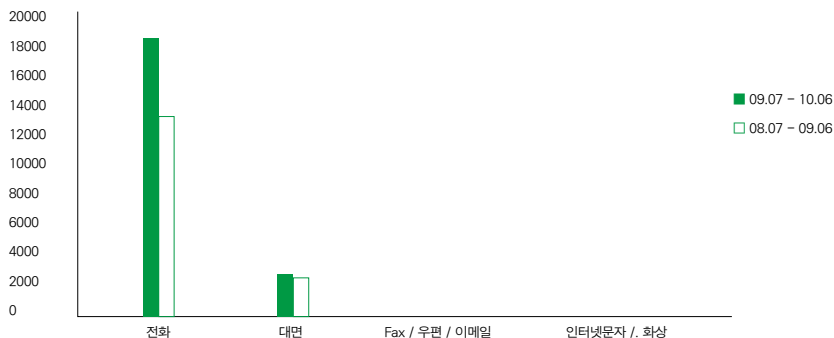
기간	2004 상담사례집	2005 상담사례집	2006 상담사례집	2007 상담사례집	2008 상담사례집	08-09 상담사례집	09-10 상담사례집
기간	2001.11.25-2003.12.31	2004.1.1-2005.6.30	2006.7.1-2007.6.30	2006.7.1-2007.6.30	2007.7.1-2008.6.30	2008.7.1-2009.6.30	2009.7.1-2010.6.30
건수	7,605건	8,262건	8,586건	9,073건	12,292건	15,631건	20,562건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개설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을 누르면 인권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전화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상담 루트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해마다 전화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전화상담은 2007년 7,205건, 2008년 10,158건, 2009년 13,51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대면상담도 동기 대비 327건 증가해 2,422건으로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노무사, 치료상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 80여명을 인권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담은 매우 저조했다.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구분	팩스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문자	인터넷·화상	전화	합계
09.07- 10.06	0	2,422	1	3	1	5	18,130	20,562
08.07- 09.06	1	2,095	1	1	16	0	13,517	15,631
증감	△1	+327	0	+2	△15	+5	+4,613	+4,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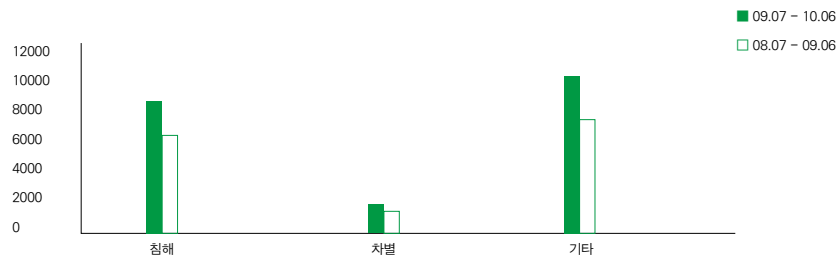


3. 유형별 상담현황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상담 중 기타상담이 10,38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인권상담의 영역이 사인간 침해, 회사 내 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과 직결되는 인권침해상담과 차별상담은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인권침해상담 증가율은 36.7%, 차별상담 증가율은 12.6%였다.

〈표〉 유형별 상담현황

구분	침해	차별	기타	합계
09.07-10.06	8,113	2,062	10,387	20,562
08.07-09.06	5,936	1,831	7,864	15,631
증감	+2,177	+231	+2,523	+4,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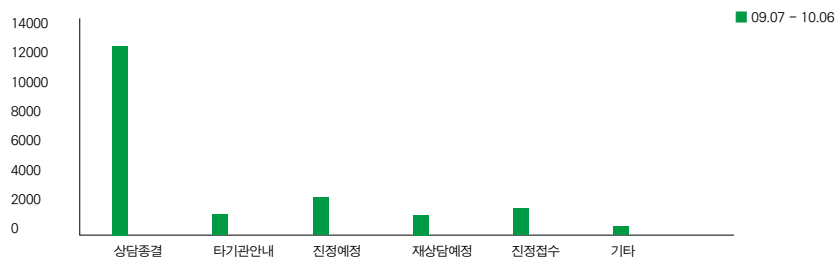
4. 접수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인권상담은 내담자의 고충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인권위는 1차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하지만, 상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검토한다.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12,611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 4,297건(20.9%), 재상담 예정 1,683건(8.2%) 순이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담내용 처리 결과(09.07-10.06)

구분	전화	대면	인터넷·화상	팩스	우편	이메일	인터넷문자	합계
합계	18,132	2,417	5	2	2	3	1	20,562
상담종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860	665						4,525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종결							
	448	75						523
	진술내용의 현실성/신빙성 결여							
	213	47						260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4,250	358	1					4,609
	조사가능기간 초과							
	164	21						185
	상담으로 문제해결							
	645	165						810
	이미 진정한 상담							
	257	27						284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308	56						364
기타	921	130						1,051
소계	11,066	1,544	1					12,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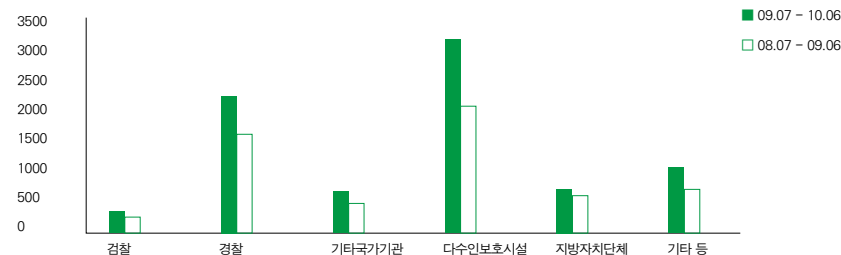
타 기관 안내	보다 적절한 기관 안내	1,254	178	1	1	1,434
	내담자가 타 기관 문의	99	21			120
	기타	6	3			9
	소계	1,359	202	1	1	1,563
진정예정	다른 방법으로 진정예정	1,338	31			1,369
	고려 후 진정예정	384	25			409
	서류 구비하여 진정예정	136	27			163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26	10			36
	사건추이 보고 진정예정	257	15		1	273
	재상담 후 진정예정	29	12			41
	기타	24	11		1	36
	소계	2,194	131		1	2,327
재상담예정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예정	215		2		217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예정	174	23			197
	사건추이 보고 재상담예정	612	41			653
	내담자가 상담 원함	430	17			447
	상담시간 부족 및 과다로 재상담예정	18	2			20
	기타	135	14			149
	소계	1,584	97	2		1,683
진정접수	조사대상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15	36			51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1,391	272		1	1,665
	조사대상은 불분명하나 위원회판단 원함	107	56	1		165
	제도개선(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음)	16	16			32
	기타	37	20			57
	소계	1,566	400	1	1	1,970
기타	상담 도중 전화 끊김	202				202
	조사담당자 안내	24	1			25
	상담 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뜰	2	4			6
	기타	135	38		1	175
	소계	363	43		1	408



5. 인권침해 상담

5-1.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2009.07. - 2010.06	2008.07. - 2009.06.	증 감
합계	8,113	5,936	+2,177
각급 학교	162	-	+162
경찰	323	252	+71
경찰	2,207	1,609	+598
공직유관단체	4	-	+4
구급시설	197	237	△40
국정원	6	17	△11
군검찰(군대/수사)	18	30	△12
군헌병	-	3	△3
군교도소	1	-	+1
군사	102	-	+102
기무사	1	1	0
기타	238	197	+41
기타국가기관	660	470	+190
기타군사	112	163	△51
다수인보호시설	3,153	2,237	+916
보호시설	16	14	+2
사법기관	156	105	+51
선거관리위원회	1	-	+1
입법기관	4	8	△4
지방자치단체	741	588	+153
특별사법경찰	11	5	+6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3,153건(38.9%)로 가장 많았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인권상담은 2008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할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권상담센터는 3년 여에 걸쳐 정신보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정할 설치 여부를 조사했는데,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선조치가 있었다.

2007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찰관련 상담은 2008년 이후 다수인보호시설에 1위를 내준 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건수 자체는 동기 대비 598건 늘어 경찰의 공권력 행사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인권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741건, 기타국가기관 660건, 검찰 323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구금시설은 16.9% 감소했다. 전체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동기 대비 2,177건 증가한 8,113건으로 집계됐다.

5-2.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유형	2009.07~2010.06	2008.07~2009.06
합계	8,113	5,936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기무사		
소계	2,566	1,917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검열/도감청, 과잉진압, 간접피해	251	152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장구 사용	565	377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471	298
편파, 불공정 수사	531	459
불법체포, 임의동행, 부당감금	109	84
합정수사, 부당 강압 증거확보	52	48
피의자권리 미고지, 가족에 미통지	53	50
접견/교통권 제한	4	6
알권리 침해	27	15
공소권 남용	35	15
전과기록 미삭제	4	7
부당한 사건분류	12	11
내사/피의사실 유포	22	21
의료권 방해/제한	22	25
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미흡	52	37
개인정보 누설	39	28
구형량 부당, 별건 체포/구속	-	3
기타	317	281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기관		
소계	1,561	1,171
위법/부당한 처분	390	267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316	204

폭행/가혹행위	67	74
인격권 침해	322	225
사생활 비밀 침해	154	149
알권리 침해	29	10
공무원 부당 처우	52	31
행정/제도 개선	52	33
출입국 제한	22	24
기타	157	154
구금/보호시설(군구금시설 포함)		
소계	214	251
의료조치 미흡	59	75
권리구제절차 제한	7	6
서신/집필 제한	6	20
부당한 조사 징벌	16	14
폭행/가혹행위	40	34
부당처우	37	47
기타	49	55
다수인보호시설		
소계	3,153	2,237
불법/강제 수용	1,235	724
폭행	124	131
가혹행위	172	151
외부교통권 제한	201	189
의료조치 미흡	103	80
강제노동	58	33
인격권 침해	88	107
시설, 환경	119	1190
퇴원요청	666	448
기타	387	264
군사		
소계	214	163
과도한 불심검문	2	-
합정수사	1	-
폭행	23	28
가혹행위	21	22
인격권 침해	19	10
의료권 방해/제한	38	28

사회적 약자/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4	-
편파수사	1	-
부당한 사건분류	1	-
알권리 침해	3	-
간접피해	2	-
생명권 침해	8	11
시설환경 열악	2	-
근무조건 열악	5	1
군복무 제도	21	8
보훈심사	19	15
과거사 규명	14	9
개인정보 누설	1	-
기타	29	31
선거관리위원회 소계	1	-
선거관리위원회	1	-
각급 학교 소계	162	-
각급 학교	162	-
공직유관단체 소계	4	-
공직유관단체	4	-
기타 소계	238	197
위법/부당한 처분	60	33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4	8
폭행/가혹행위	15	8
인격권 침해	34	30
사생활 비밀 침해	21	19
알권리 침해	-	1
공무원 부당 처우	-	1
부당감사	-	1
행정/제도 개선	7	9
기타	97	87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군검찰, 군헌병, 기무사 등 공권력 집행기관 관련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강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폭행, 가혹행위, 과도한 총기 사용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 및 불공정 수사가 531건 △과도한 신체검사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471건 △불심검문, 부당압수수색, 도감청, 과잉진압 등이 251건을 기록했다.

기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기관 등과 관련한 상담에서는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이 390건 △부작위, 거부 등 소극적 처분 316건 △인격권 침해 322건이었다. 또한 구금 보호시설관련 상담에서는 의료조치 미흡과 폭행/가혹행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에서는 불법 강제수용과 퇴원요청이 가장 많았다.

6. 차별행위 상담

6-1. 차별행위 상담의 기관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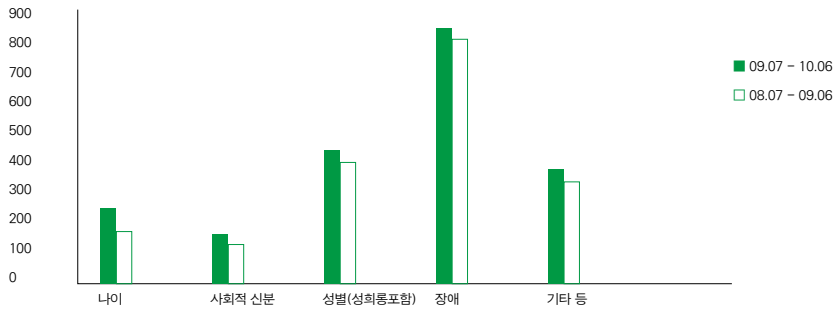
구분	2009.07 - 2010.06	2008.07 - 2009.06	증 감
합계	2,062	1,831	+231
개인회사	205	210	△5
검찰/경찰	29	33	△4
공공기관(공법인)	166	119	+47
교육기관	186	174	+12
구금시설	6	7	△1
군대	11	8	+3
기타국가기관	150	136	+14
단체	50	39	+11
법인(사법인)	118	106	+12
보호시설	20	22	△2
사인	277	218	+59
요양시설	2	-	+2
주식회사 등(법인)	592	544	+48
지방자치단체	178	142	+36
기타	72	73	△1

차별행위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28.7%), 사인(13.4%), 개인회사(9.9%)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공권력 집행기관의 경우 교육기관(9.0%), 지방자치단체(8.6%), 공공기관(8.1%)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2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2009.07-2010.06	2008.07-2009.06	증 감
합계	2,062	1,831	+231
가족상황	16	11	+5
나이	229	163	+66
병력	61	46	+15
사상, 정치적 의견	11	5	+6
사회적 신분	143	118	+25
성별	50	37	+13
성적지향	1	1	0
성희롱	421	386	+35
용모, 신체조건	24	17	+7
인종	2	2	0

임신, 출산	31	23	+8
장애	831	796	+35
전과	20	16	+4
종교	16	14	+2
출신국가	58	44	+14
출신민족	2	1	+1
출신지역	17	11	+6
피부색	1	-	+1
학벌/학력	28	26	+2
혼인 여부	9	7	+2
기타	91	107	△16



사유별 차별행위를 분석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의 40.3%를 차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나이 차별 상담도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했다.

6-3.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구분		2009.07-2010.06	2008.07-2008.06	증 감
합계		2,062	1,831	+231
고용관련	소계	723	643	+80
	교육	5	5	0
	해고	112	83	+29
	모집	90	106	△16
	배치	61	58	+3
	승진	19	17	+2
	임금 외 금품 지급	33	26	+7
	임금 지급	48	45	+3
	채용	153	132	+21
	퇴직	25	29	△4
재화/응역	정년	29	13	+16
	기타	148	129	+19
	소계	538	481	+57
	상업시설의 공급 이용	49	54	△5
	응역의 공급 이용	184	129	+55
시설 등 이용	재화의 공급 이용	204	196	+8
	주거시설의 공급 이용	25	25	0
	교통수단의 공급 이용	73	75	△2
	토지의 공급 이용	3	2	+1
	소계	102	85	+17
기타	교육시설의 이용	91	79	+12
	직업훈련기관 이용	11	6	+5
기타	소계	699	622	+77
	기타	699	622	+77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시된 3대 영역별로 보면 고용관련 차별이 가장 많고 재화 및 응역에 따른 차별과 시설 이용 차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고용 영역의 차별에서는 채용과 해고의 비중이 높다.



7. 기타상담의 내용별 현황

유형	2009.07-2010.06	2008.07-2009.06	증 감
합계	10,387	7,864	+2,523
국가기관(상담용)	680	527	+153
기타 단체	283	298	△15
법령제도 개선	178	107	+71
법률문의(상담용)	557	507	+50
사인간 침해	2,186	1,860	326
위원회업무 불만(상담용)	303	364	△61
위원회관련 제언(상담용)	95	108	△13
인권위업무 문의(상담용)	925	564	361
입법/재판	326	266	60
재산권	447	272	175
회사	1,184	862	322
기타	3,223	2,129	+1,094

기타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닌 상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개인 의견, 법률 문의 등을 두루 포함한다. 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의도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권상담 유관 기관과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 내담자 현황

8-1. 내담자의 지역별 분포

구분	2009.07 - 2010.06	2009.07 - 2010.06	증 감
합계	20,562	15,631	+4,931
강원	80	87	△7
경기	625	426	+199
경남	173	170	+3
경북	66	63	+3
광주	503	437	+66
대구	67	43	+24
대전	48	56	△8
미상	16,848	12,410	+4,438
부산	238	361	△123
서울	725	633	+92
울산	41	45	△4
인천	133	178	△45



전남	483	362	+121
전북	289	208	+81
제주	93	47	+46
충남	92	63	+29
충북	58	42	+16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상담만 원하는 내담자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내담자에 관한 통계 분석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별 통계의 경우 소재지를 밝히지 않는 내담자가 전체의 82%에 달한다. 소재지를 공개한 내담자만 별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전남 등의 비중이 높다.

8-2. 내담자의 연령별 현황

구분	2009.07 - 2010.06	2008.07 - 2009.06	증 감
합계	20,562	15,631	+4,931
10세 미만	-	-	0
10~20세	35	29	+6
20~30세	248	113	+135
30~40세	586	338	+248
40~50세	1,034	498	+536
50~60세	757	358	+399
60~70세	311	172	+139
70세 이상	238	119	+119
불명	17,353	14,004	+3,349

나이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무려 84.4%에 이른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빠진 통계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다만 상담과정에서 추정된 연령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인권상담이 대체로 40~50대에 집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상담사례집

개요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영역별 사례 선정 배경



사례집 어떻게 구성했나?

09-10 인권상담사례집은 08-09 사례집의 연장선에 있다. 1년 전 제호와 판형을 바꾸고 디자인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독자들이 상담사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든 사례를 핵심 내용만 간추려 구어체 문장으로 재구성하고 용어 설명이나 법률 조문을 추가했다. 항목별로 이슈가 된 언론보도와, 관련 내용을 다룬 에세이도 수록했다.

09-10 인권상담사례집은 특별히 한국사회에서 차별 받고 소외 받는 이주민들의 삶에 주목했다. 대한민국의 품격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이주민 인권 개선과 맞물려 있다. 인권상담센터는 한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22가구의 어제와 오늘을 일대기로 담아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번 사례집의 특별부록으로 편집했다.

09-10 인권상담사례집은 우리 사회의 인권현실을 보다 자세히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지난 1년간 중요하게 제기됐던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 이슈를 추렸다. 다음으로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텍스트와 비교해 17가지 분석 틀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20,562건의 전체 상담내용을 이 틀에 비추 분석하고 최종 수록사례를 결정했다. 분석 틀에 따른 항목은 아래와 같다.

번호	분석 틀	주요 내용
1	고문	폭행, 진술 강요, 장비 사용 등
2	형사절차	불심검문, 미란다원칙, 피의사실 공표, 적법절차 등
3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1인 시위, 사이버 인권 등
4	막말과 인격권	판검사의 막말, 교사의 막말, 공무원의 막말 등
5	정보인권	개인정보 수집, 위치정보 피해, CCTV 등
6	학생인권	체벌, 두발 규제, 학습권, 무상급식, 정치적 자유 등
7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교수의 성희롱, 동성에 인권침해 등
8	사회적 약자	노인, 아동, 비정규직, 노동권, 노점상, 철거민 등
9	이주민 인권	강제단속, 비자, 국제결혼가정, 난민 인권 등
10	나이 차별	해고, 모집 제한, 정년 차별 등
11	정신병원	강박, 외부 교통권, 강제입원, 격리, 가혹행위 등
12	장애인 차별	정보 접근권, 서비스 이용 배제, 괴롭힘, 이동권 등
13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탈북 여성 등
14	차별하는 사회	외모, 종교, 학력, 임신 및 출산, 사회적 신분 등
15	군대	폭행, 과도한 통제, 부당한 관행, 성희롱 등
16	구금시설	인격권, 진료권 제한, 수용환경, 알 권리 등
17	기타	격려, 비판, 그리고 민원 고충 상담

1. 고문

양천경찰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고문은 다소 거리가 먼 인권문제였다. 국제사회와 인권위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양천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수사기관의 고문 행위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경찰은 인권보호대책을 다시 고집어내며 재발 방지를 선언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형사절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사대상 범위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은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적 가치이기도 하다. 2010년엔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 강화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공권력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모았다.

3.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로 꼽힌다. 2010년 프랭크 라 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전후로 표현의 자유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놓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 막말과 인격권

40대 판사가 70대 노인에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인격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 결정이 공개된 직후 인권상담센터엔 하루 수십 통씩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직장 상사 등 막말은 다양한 영

역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그 중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담았다.

5. 정보인권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개인정보 수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CCTV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개인정보 규제 법규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았다. 정보인권 문제를 책임지고 다룰 국가기관도 설립되지 않았다.

6. 학생인권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활발하다.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공포했고, 서울수도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학생인권 상담은 해마다 학기 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 밖에서는 빠른 속도로 인권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상담내용은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7. 성희롱

성희롱 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된 지 다섯 해다. 인권위 권고에도 성희롱은 좀처럼 줄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이 잇따라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의원, 군 장교, 군수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은 인권위에 간단하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인권위는 2010년 8월 이례적으로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8. 사회적 약자

인권 선진국은 자유권을 넘어 사회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자유권 분야의 후퇴가 완연하고, 사회권은 아예 논의조차 전개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라는 점에서, 사회적 의제 수렴과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효율성과 경쟁만을 앞세운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9. 이주민 인권

인권상담센터는 2010년 7차례에 걸쳐 이주민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인권위 사상 최초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 난민 등을 직접 찾아가 일대기 형식의 심층상담을 진행했다. 적지 않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폭력성과 배타성을 성토했다. 경제규모 10위권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의 육성 증언을 이번 사례집의 특별 부록으로 편집했다.

10. 나이 차별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되돌아보았다. 연초부터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과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파트 경비원, 비정규직, 일용 잡부 등이 가장 먼저 해고의 칼날 위에 섰다. 법이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법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지금 이 땅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11. 정신병원

인권위는 2009년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를 두루 참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현실을 바꾸는 데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설의 관행과 국민들의 공감대 부족이 심각하다. 그런 이유로 보호시설 상담은 최근 4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2.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3주년을 맞았다. 법으로 장애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실제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해결됐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 전문가들은 국가기관 중심의 제도적 절차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와 민간이 함

께 협력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논의하고 있다.

13. 북한인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와 직접 관련된 상담은 거의 없다. 인권위는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회상담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탈북 주민이 2만 명을 넘어 서면서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 사회 내부의 차별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양상이다.

14. 차별하는 사회

차별에 관한 인권위 권고가 나올 때마다 인권상담센터엔 두 가지 유형의 전화가 빗발친다. 하나는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전자는 차별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후자는 차별 판단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15. 군대

군대를 흔히 ‘특수권력집단’이라 한다. 수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여기에서 도출된다. 문제는 특수권력집단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관행이다. 상관의 명령이면 무엇이든 따라야 한다는 권위주의로 인해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몰상식한 폭력이 자행된다. 군대를 담당 안에만 남겨둘 수 없는 이유다.

16. 구금시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체의 자유 등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뿐이다. 교도소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일도 벌어진다. 교도소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지 못하고 오히려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면, 그 나라 교정행정은 기초부터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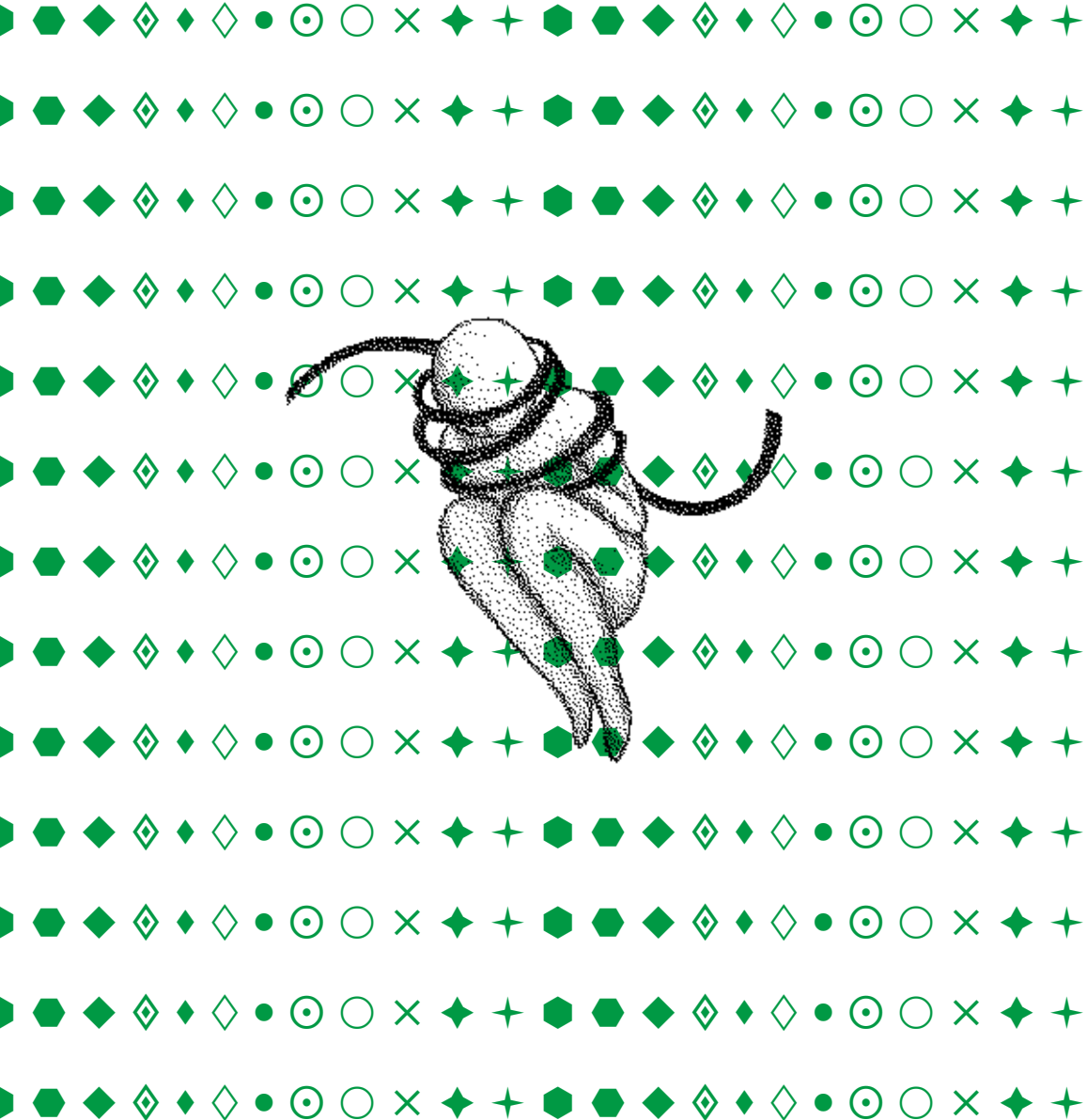
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1 고문
- 2 형사절차
- 3 표현의 자유
- 4 막말과 인격권
- 5 정보인권
- 6 학생인권
- 7 성희롱
- 8 사회적 약자
- 9 이주민 인권
- 10 나이 차별
- 11 정신병원
- 12 장애인 차별
- 13 북한인권
- 14 차별하는 사회
- 15 군대
- 16 구금시설
- 17 기타

고문



“입에 휴지를 넣고
테이프로 얼굴과
목을 감았어요.
뒤로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엎어뜨린 다음 한
사람은 머리를
누르고 다른
사람은 수갑 찬
손목을 치켜 올려
숨이 막혔어요.”

○ ○ 경찰서
고문 피해자
진정서에서



1-1 폭행

상답 : 경찰이 얼굴에 마대를 씌우고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팔을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며칠 전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누군가 신고하는 바람에 인근 OO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조사실 복도 앞에 내내 세워두었습니다. 제가 “수갑 찬 손이 아프니 풀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갑자기 사복 경찰이 나와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더니, 발길질을 해대고 주먹으로 얼굴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대로 덮고 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폭행이 계속됐고, 경찰이 제 허리를 세게 차는 바람에 똥을 싸고 말았습니다. 경찰에게 변이 터졌다고 얘기하자, 경찰은 “XX놈아 입 닥쳐, 너 오늘 죽었다.”라고 하더군요. 경찰은 쓰레기장 부근에 저를 던져둔 채 제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떠났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잡아 B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면서 A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A경찰서에서는 “조사할 게 없으니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B경찰서로 왔습니다. 경찰은 합의를 회유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관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 : 신체의 자유 및 생명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직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피조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폭행, 마대 씌우기, 과도한 수갑 사용, 유기를 했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



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한다.

폭행 유사 상담사례

새벽 3시에 수사 협조하라며 소환해놓고 음주운전으로 적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3시경 경찰은 술을 마셔서 못 간다는데도 저를 소환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OO지구대로 가려고 직선으로 300m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고, 그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지구대로 끌고 가더니 수갑을 채우더군요. 그리고 바닥에 저를 엎어놓고 3~4명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오른쪽 손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눈과 손에 멍이 들었고, 수갑 찬 자리도 멍들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어 넣겠다.”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조사에서 빼면서 “나중에 저 XX 말 바꾸면 공무집행방해죄도 끼워 넣어.”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5월 12일

주취 청각장애인 폭행사건 부실처리에 대해 주의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고령(당 68세)의 청각장애인을 경찰관이 폭행하고 사후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건과 관련, 현장출동 및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소홀히 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보호조치대상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A경찰서 정문 CCTV 녹화 기록, 정문 근무 의경대원 진술,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B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귀가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별도 응급조치나 보고 없이 피해자를 인근에 방치한 채 주취자의 단순 사건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들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반 의무,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및 「범죄수사규칙」제82조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2 고문

상담 : 숨을 입에 물리고는 스킨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았습니다.

2010년 3월 ○○경찰서 강력반에서 조사 중 숨 같은 것을 입에 물리고 스킨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았습니다. 뒤로 엎어뜨려 놓고 허리를 발로 누르며 동시에 팔을 위로 꺾어 숨이 차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손짓으로 살려달라고 해도 팀장이 아직 멀었다며 계속 폭행했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찰서의 경우 스킨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싼 상태에서 폭행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됨. 인권위는 관련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답변 : 고문 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문 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대해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중 고문을 당했다면, 이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검사는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보도자료 2010년 6월 16일

고문 경찰관들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A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들의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는 A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 씨는 “2010년 3월 A경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킨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유사한 진정이 잇따라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서 사무실에 CCTV 사각지대가 있고,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고문 장소, 가해자, 고문양태가 존재하여 고문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A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팀장 외 경찰관 4명은 절도관련 피의자를 검거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관계 및 여죄 자백을 목적으로, 총 22인의 피의자들에게 경찰서 연행 차량 안에서는 뒷수갑을 채우고 피해자의 목을 다리에 끼워 조인 후 뒷수갑 상태의 팔을 위로 꺾어 올리는(일명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고, 강력팀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킨치테이프로 얼굴에 감고)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했습니다.

1-3 가학적 조사

상담 : 조사하면서 물도 밥도 주지 않았어요.

문화재 절도범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조사하면서, 밥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공범을 말해라, 사실대로 말해라.”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무시하고, 경찰이 임의로 자백하는 취지의 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답변 : 자백했다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경찰 수사 중 자백했다고 해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피의자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했음에도 자백하는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 중 휴식시간이나 식사, 음료를 제공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된 경우에도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2조(휴식시간 부여 등)

-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조사 중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준용한다.



보도자료 2010년 7월 1일

“구속피의자라도 통상 시간에 저녁식사 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피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수용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해 구속 피의자들이 통상의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저녁식사 시간 이후까지 조사를 계속할 경우 구속피의자들이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 후 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일보

2010년 06월 17일 목요일 011면 사회

“수감 채운채 날개꺾기... 팔 관절 부러져도 폭행...”

피의자 3명 중 2명꼴 가혹행위 당했다”

인권위 발표 ‘고문 경찰’ 파문

“감시 사각지대서 자행”... 해당 경찰서 “사실무근”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경찰의 폭행·고문 행태는 범죄자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앞으로 경찰 수사로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으면 피의자 20여명이 인권위 발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뼈를 깎는 자살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사대상 3명 중 2명이 가혹행위 당해”=인권위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치소로 넘겨진 피의자 32명을 조사한 결과 22명이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몸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두 팔을 위로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를 인권위는 고문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철도 혐의로 체포된 한 피의자는 “날개꺾기를 하다가 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경찰이 잠시 실려버더니 ‘부러지지 않았다’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 이 피의자는 구치소로 옮겨진 뒤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다 지난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같은 달 철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입에 숨이 풀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이 감긴 채 방석 위로 차박하는 고문을 당해 치아가 빠졌다.

2월 체포된 한 피의자는 “고통을 못 이겨 비명을 지르자 몇분 후 양복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경례를 했다”면서 “무슨 일이나는 풀음에 경찰관이 ‘발일 아니다’고 하자 ‘실상하리’고만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간부급의 묵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이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행”=경찰이 뒤달을 우려해 조사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차 안에서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사실에 설치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차량 안에서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했고, 지난 1월 체포된 피의자는 “허위 자백 후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범행 전소를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차장이 방방 놀자 경찰이 ‘아직도 정신 못 차웠네’라며 차 안에서 다시 고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력 부인하는 경찰=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양천서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변항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수갑을 채운 때 팔이 약간 휘일 수 있었겠지만, 그 외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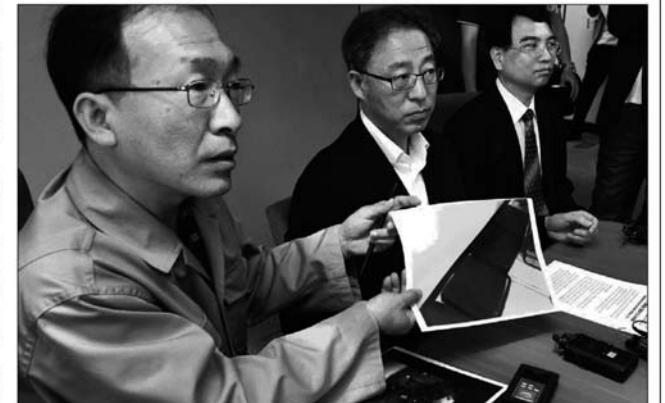
하지만경찰은 인권위가 조사한 32명 중 일부만을 파악해 자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번 일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의 다짐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찰의 ‘인권 시계’가 20년 전으로

연월일	사유실과 지역/소재	고문/폭행
2010년 9월29~31일	사우실에서 차량에서 고문	폭행
3월29일	사우실에서 차량에서 고문	폭행
2월28일	사우실에서 고문	폭행
1월20일	차량에서 고문	폭행
1월18일	사우실과 차량에서 고문	폭행
2009년 12월17일	사우실에서 고문	폭행
11월4~19일	사우실과 차량에서 고문	폭행
9월24일	차량에서 고문	폭행
9월7일	차량과 차량에서 고문	폭행
8월22일	사우실에서 고문	폭행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실적을 우선하는 경찰의 성과주의가 이런 일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실시시만엔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부가 안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실적을 내려는 욕구에 사로잡힌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고문이나 가혹행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진·이태영 기자



○방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상영 조사관이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폭행·고문 의혹에 대한 32명 결과를 설명하면서 관련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1-4 실적 위주 수사관행

상답 : 경찰이 실적을 올리자고 미성년자를 이용합니다.

대입검정고시학원 강사입니다. 학창시절 사고뭉치였으나 지금은 마음잡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학원을 들락거리며 학생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 친구끼리 툭툭 치는 정도의 장난을 한 것을 갖고 구타로 엮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와서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묻고 부모에게는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학생을 한 명씩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말로는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거라지만 경찰이 학생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동행하기도 합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사건 성립을 못 시킬 정도로 허술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답변 : 미성년자 소환 시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소환조사 및 임의동행 시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강압이나 협박을 하고, 영장 없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인권위에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자진출두한 사람을 긴급체포하다니요. 정말 너무합니다.

토요일 12시경 ○○지구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경찰이 본인 확인 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수갑을 채우더니, 긴급체포한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승인이 나지 않아,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1시경 나왔습니다. 저는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나이가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왔으며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던 클라이언트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지구대 경찰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진 출석한 피고소인을 체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차량 횡령으로 수배 중이라며 담당경찰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근무 중이라 경찰서에 출석하기 위해 상경했습니다. 담당경찰이 경찰서로 가지 말고 지구대로 오라더군요. 경찰은 차량 소

유주에게 차를 넘겨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로 가자마다 체포되어 관할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경찰이라던 사람은 실제 담당이 아니고 지구대 소속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 거짓말로 지구대로 유인하여 자진출두 자를 체포한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514호)

제196조(소년의 특성의 고려) 소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되도록 다른 사람의 이익을 끌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99조(보호자와의 연락) 소년피의자의 출석요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그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업무처리규칙 제31조의2(진술거부권의 고지)

- ① 범의혐의가 있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지는 조사가 상당기간 중단하였거나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실적 위주 수사관행 관련 위원회 결정 2009년 8월 31일

경찰의 부당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진정인은 본인이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고 ○○지방경찰청 상황실에 전화하여 지수 의사를 전함. 다음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통화한 후 약속 장소에서 검거됨. 그러나 진정인을 검거한 피진정인들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의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시 '탐문 수사하여 검거한 것'으로 기재 보고하여 인권침해를 당했다.
- 이행조치 ○○경찰서장이 피진정인들에 대해 '특별교양조치' 처분했음을 통보함.

1-5 과도한 장구 사용

상담 : 경찰이 전기충격기로 괴롭혔어요.

동생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행패를 부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동생을 지구대로 연행하면서 경찰차와 지구대에서 전기충격기를 20여 차례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답니다. 가해 경찰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이 나왔고, 경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답변 : 장구 사용의 정당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용한 전기충격기가 수사기관의 체포용 장구로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경찰의 장구사용은 정당했는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의 사안은 재판 중으로 인권위법상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뒤로 수갑을 채우고 팔을 위로 잡아당겼어요.

술집에서 탁자를 엮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뒤쪽으로 수갑을 꽂 조이더니 팔을 위로 잡아당겼습니다. 뼈가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경찰이 이럴 수 있나 싶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수갑을 채울 수는 있다고 쳐도 위로 잡아당기는 것은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514호)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도자료 2008년 8월 7일

“법률근거 없는 체포용 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현재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체포용 장비의 사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체포용 장비의 사용·관리·교육·운용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과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5월 체포 당시 칼을 소지하고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 검찰수사관 3명이 동시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바닥에 쓰러지면서 칼을 떨어뜨렸고, 검찰수사관은 재차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고 유형력을 사용해 진정인을 제압한 후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약 5초간 인체에 흐르게 하여 인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에서는 법집행기관의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사례 등을 보고하면서 전자충격기 사용을 좀 더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저건은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장비로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형사절차



헌법은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 앞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분별한 형벌권 행사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쓴
〈풀지마 형사절차!〉에서



2-1 모발 및 소변 채취

상담 : 영장 없이 45명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경찰 대여섯 명이 영장 없이 45명의 모발을 채취했습니다. 20세에서 59세의 남자들은 모두 마을회관으로 모이라는 이장의 안내방송을 받고,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이장 선박의 엔진이 도난당했고, 선박에서 머리카락 4개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이장 가족의 것도 경찰들 것도 아니니, 마을 사람들이 의심된다며 대조를 위해 머리카락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머리카락 채취를 거부할 경우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아무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난당했다는 그 엔진은 결국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장이 경찰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개인의 도난사건에 경찰이 영장도 없이 머리카락을 채취해도 되는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답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내담자 등이 생체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현 없이 생체정보를 수집한 경찰에게,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모발채취 관련 결정 2009년 12월 28일

주문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계고조치하고, 향후 압수업무 수행 시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피조사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경찰이 마을회관으로 와서 “경찰수사에 협조하라. 만약 협조를 안 할 시에는 끝까지 일일이 호명하여 조사 받도록 하겠다.”라며 협박성 안내방송을 하고, 합리적 기준도 없이 20세부터 59세까지 남자들을 모두 범의자로 삼고 주민 40여명의 머리카락을 부당하게 압수했다.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압축된 특정한 용의자에 대해 관련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와 판사의 판단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위압적인 안내방송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임의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2 고압적 수사



상담 : 경찰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자료로 협박했습니다.

오후 3-4시경 모르는 사람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이 경찰이라면서 “차를 빌려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방안으로 들어와 옷장 위에 있는 신발 밑창을 촬영하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경찰은 제보로 조사하는 것이라면서 ○○치안대로 저를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았느냐? 2004년에도 했으니 이번에도 네가 한 거 아니냐?”며 계속 추궁하더군요. 그러면서 2004년 무죄판결 받은 서류를 보여주면서 시인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보 사실도 없었고, 무죄 확정판결 자료만 가지고 협박한 것입니다. 경찰이 돌아가라고 해서 뒤늦게 소속과 신분을 물으니 그제야 밝혔습니다.

답변 : 무죄 판결 수사자료 보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경찰이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물건을 뒤진 점, 과거 무죄 판결 전력을 보이면서 협박한 점 등과 관련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무죄 판결자에 대한 수사자료 보존의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6일

수사경력자료, 무죄 등 판결 시 즉시 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판결, 결정, 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 자료를 5년~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제외한 판결 등(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혐의 없음' 처분 중 '범죄 인정 안 됨'의 경우, '죄가 안 됨' 처분, '공소권 없음' 결정)의 경우는 재수사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일부 처분(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을 제외하고는 판결 등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3 사생활 침해

상담 : 경찰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사로 찾아와 사생활을 묻습니다.

3년 전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3개월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3회에 걸쳐 수원 ○○지구대에서 직장으로 찾아와 본인에 대해 이것저것 묻고 갔습니다. 경찰이 회사 부장에게 “○○이 여기 있느냐? 일은 잘하고 있느냐?” 등의 사생활을 물었습니다. 회사는 경찰이 계속해서 조사하러 오는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고, 결국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변 : 탐문 시 전과사실 유출했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우범자 첩보 수집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에 의거하여 우범자는 관련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고 2년간 범죄관련성 여부에 대해 첩보를 입수할 수 있고, 3개월에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로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범자에 대한 소재 탐문이 정당한 공무집행 일지라도 탐문과정에서 경찰이 전과사실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온 가족이 불안에 떨다.

동생은 4년 전 폭력전과로 경찰 ‘관리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매년 한두 차례 집으로 찾아와 동생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구대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갔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 밤 11시에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이 밤에 전화하거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온 가족이 불안해합니다. 게다가 시골동네에 경찰차가 계속 드나드는 것을 이웃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8년 전 사건 때문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근황을 확인합니다.

2002년, 17살 때 학교폭력으로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2006년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아무런 설명 없이 1년에 1~2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어느 날

저녁, 경찰이 또 찾아와 가족들에게 본인의 근황을 자세히 묻고 갔습니다. 경찰이 방문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그날의 악몽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10살 아이의 사진에 차량 파손 손괴범이라고 표시

초등학교 4학년생 아들을 둔 한부모 가정 엄마입니다. 4월 경, 아이가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낙서를 했습니다. ○○경찰서 강력2팀에서 CCTV 상의 아이 전신 사진을 뽑아 “이 학생들은 차량 손괴범임. 이 학생들을 아시는 분은 ○○경찰서 ○팀장에게 즉시 연락 바람. 인근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음”이라는 글을 명시한 전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했습니다. 이 일이 일대 아파트와 학교에까지 소문이 퍼져 아이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4월 23일

마을주민 앞에서 지문을 과도하게 확인하는 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고인의 지문을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계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세 들어 사는 집에 보관 중이던 고서적을 도난당해 B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등을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마을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문을 확인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본인을 범죄피의자로 생각하고 피하려 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미 지구대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 및 인적사항을 전부 밝히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점, 지문을 확인한 장소가 진정인이 수년간 살아왔던 집 앞이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4 전자발찌

상담 : 이미 처벌 받았는데 또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가혹합니다.

아들은 19살 때 특수강도 및 강간으로 형을 살았으며, 2006년 강도죄로 1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최근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채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짓값을 치러야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건 가혹합니다.

답변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국회의 입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인권위가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려우나 법제도 개선 등 정책검토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어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형을 마치고 열심히 사는데,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합니다.

3년 전 성범죄로 재판을 거쳐 구금됐으며, 2008년 4개월 앞당겨 가출소했습니다. 가출소 기간 중 전자발찌를 찢고 종료했습니다. 현재 직업도 2개나 있고, 잠도 줄어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뇌졸중인 모친과 노령의 부친, 시각장애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검사와 보호관찰소는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개심하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2-5 미성년자 및 여성 조사관행

상담 : 쌍팔 년도 아닌데, 경찰이 임신부를 억박지르다니요.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는 임신부로서 경찰에게 강압적인 조사를 받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도 아닌 피해자를 범인 취급하며 조사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오자마자 “앉아라. 잘못된 게 맞잖아.”라는 등의 반말을 하며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이 정도인지 한심합니다. 쌍팔 년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임금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답변 : 정확한 현장 상황을 기록해 두셨으면 합니다.

신체적 보호가 필요한 임신부에 대해 강압적으로 조사한 점, 신분도 밝히지 않고 반말로 조사한 점 등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가 현재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은 만큼 처리결과를 지켜보고 진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담자께서 정확한 현장상황을 기록해 두면 추후 대응할 때 효과적입니다.

유사사례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담당 형사와 검사가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조차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다면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담당 경찰은 가해자가 초범이니 합의하러면서 계속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를 경찰차에 태우고 엄마를 체포하겠다고 돌아다녔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및 폭행 시비로 벌금 115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체납 상태였습니다. 수배 중이라는 연락을 받아 담당경찰과 협의해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8세, 10세 된 아이들만 있을 때 경찰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10살짜리 이들과 엄마 찾으러 가자며 경찰차에 태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설마 경찰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유괴신고까지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경찰차에서 어머니를 중범죄자로 여긴 점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사하면서, 주변에 강간사건이라고 말하래요.

강간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하니, 경찰이 무고라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여 겨우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1회는 여성 경찰이 조사했으나 이후부터 남성 경찰이 조사하더군요. 경찰이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더니 당일 통화한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는 동생이, 무슨 일로 경찰이 자신에게 전화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옆에서 경찰이 “친동생도 아닌데 안 보면 그만 아니냐? 무슨 사건인지 얘기해라.”라고 했습니다. 강간당했다고 얘기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성적수치감을 견디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성희롱 사건 결정 2009년 9월 30일

- 주문**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의 피해자 조사방법과 관련한 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강제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이나? 뒷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라고 질문했고 조사가 끝나갈 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왜 여성 경찰이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자 “처녀도 아닌데 무슨 여형사냐?”라고 말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 판단** 수사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부적절한 성 관념 및 인식에 기초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치심, 모멸감 등을 느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성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및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여성 경찰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남성 경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한 것이라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이행조치** 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본서, 지구대, 파출소) 전 직원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인권의 의미와 이해,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여성 등)를 위한 경찰관의 역할, 여성, 청소년 사건처리 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 방안 등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

2-6 피의사실 유포

상담 :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절도혐의자라고 말해도 되나요?

○○조각공원에서 희망근로를 했습니다. 얼마 전 조각공원의 조각물이 없어졌는데 경찰이 본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조사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했습니다. 부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뽑아 상대방에게 전화하더니, “절도 혐의가 있어서 그런다, ○○○를 아느냐? 어떻게 아는 사이냐?, 차를 갖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보물을 줍지 않느냐?”라고 묻고, 상대방에게는 “고물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일로 지인들이 본인을 범죄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사생활 보호해야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의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위한 탐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하므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전과사실 유포 결정 2010년 4월 26일

주문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질조사 시 피조사자의 전과사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웃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고소했는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30년 전 전과사실을 유포하고, 합의를 중용하고, 허위진술 및 거짓말탐지조사를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권리구제를 원함.
판단	진정인의 전과사실 등 개인정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과사실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질조사 중이라도, 대질조사를 받은 상대방이 이를 불필요하게 청취하거나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질조사 중,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타인에게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제198조 및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7 적법절차 위반



상담 : 노인을 체포, 구속하면서 엿새 동안 연락도 안 해주었어요.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아 거주지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근무지 인근 지구대를 방문하고, 소방서에도 문의하고 조난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령이고 고혈압이 있어 가족들은 출근도 못한 채 진단을 붙이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었고, 지구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6일간 계시다가 귀가했습니다. 경찰이 연락처를 물었는데, 아버지가 당황하여 경찰에게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합니다. 이후 경찰이 별 얘기가 없어 집에 연락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답변 : 체포 시 가족에서 고지하지 않으면 알권리 침해 가능성

벌금미납자를 체포, 구속하면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아 가족들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122조(체포·구속의 통지)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체포·구속을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구속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구속을 통지하여야 한다.

2-8 과도한 장구 사용

상답 : 손가락으로 경찰을 가리켰다고 경찰관 모욕죄라고 합니다.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이 좌회전이 안 되는 길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노선이 변경됐습니다. 내담자가 노선에 따라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노선에 따른 것이며 이미 시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그 자리가 아닌 전 신호에서 위반했다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기에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주거부정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지구대에 앉아 있는데, 다른 경찰이 “왜 왔느냐?”고 물어봐, 연행한 경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연행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연행한 경찰관이 경찰관 모욕죄라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겼고, 경찰서에서 경찰 폭행과 욕설을 조사하더니 그냥 풀어줬습니다.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연행하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워 수갑까지 채운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이 과도하게 혐의를 적용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의 혐의 여부는 수사절차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과도한 계구사용 관련 결정 2010년 5월 31일

- 주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수사 업무 담당 직원들에 대해 경찰장비 사용 관련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범죄사실 증명원 발급 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범죄사실 증명원을 발급해 준 뒤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하면서 진정인을 형사계로 인계했음. 경찰이 진정인에게 체포동의서를 내밀며 사인하라면서 “체포한다.”고 하여 진정인이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거부하자 피진정인은 창틀에 걸려 있는 수갑에 진정인의 오른손 손목을 채웠음. 진정인은 동료가 벌금을 납부했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했으나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검찰청에 확인이 안 된다.’며 수갑을 채워 호송차로 검찰청에 인계하였음.
- 판단**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진정인을 벌금미납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만일의 경우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 : 뇌경색 환자를 체포하고 약을 못 먹게 해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1년 전 포털사이트에 '취새끼'라는 한마디를 썼습니다. 경찰이 사이버모욕죄로 조사한다고 출석하라고 했으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경 경찰이 체포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뇌경색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약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습니다. 새벽에 구치소로 이송 후 이튿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몸이 아파 "약을 먹게 해 달라. 집에서 약을 가져오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거부했습니다.

석방 이틀 후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구속 직전 MRI 촬영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약물복용을 거절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소뇌 쪽에 급성으로 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변 : 경찰은 환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경찰은 의로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약물복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투약을 거절하고,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은 부당함에 대해서 건강권 침해 등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10 불심검문

상담 :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바지까지 벗으랍니다.

새벽 2시 반경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데, 스타렉스 차량 2대에서 덩치 큰 5명의 남자가 내리더니 “오토바이 꺼”라고 하고는 키를 빼앗았습니다. 말도 못하게 하고 바지를 반까지 벗기고 수색하고 신분증을 조회하더군요. 이유를 묻고 누구냐고 하니, ○○경찰서 경찰이라면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일관했습니다.

답변 : 불심검문 시 신분을 고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임의절차인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고지와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를 위반한 점, 바지까지 내리고 수색한 점에 대해 신체의 자유,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인권위에 감사합니다.

60세가 다 된 사람이고, 불심검문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제 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사복경찰이 목걸이 신분증 하나 보이고 불심검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검문에 너무 당황하고 이유 없이 위축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인권위가 불심검문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고한 것을 보고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박정희 정권보다 더 심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불심검문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현재 불심검문의 정의에서 검문대상자는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학자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모호한 말이며, 박정희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모호하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를 근거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박정희 때보다도 더 심하게 독재를 하여 국민을 억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은 아무것도 모르고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불심검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문제를 알려려면 인권위나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6일

불심검문 때 적법절차 위반, 진술거부권 침해 안 돼

인권위는 불심검문을 하면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당사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어 불심검문 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2-11 합정수사

상답 : 장난삼아 길에 버려진 자전거 탔다가 특수절도범이 되었어요.

새벽 2시경, 남편과 맥주 한잔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길에 널브러져 있던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안장도 들러 있고, 바퀴는 녹슬어 있어 버려진 자전거로 생각했습니다. 장난삼아 자전거로 약 30m 가량 달리다가 그 자리에 두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뒤따라오던 남자가 “당신 자전거냐?”라고 묻기에 아니라고 했더니 어딘가로 신고했고 즉시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서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혹심을 품고”라는 표현이 있었고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를 훔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특수절도죄로 체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면 불법입니다.

합정수사는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면 합법이지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또한 경찰이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해 특수절도죄에 이르게까지 한 행위 등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에세이 김소망

공권력은 칼, 인권위는 방패

오전 전화상담 시간. 전화가 왔다. 경찰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다. 내담자는 2010년 4월 경 집 내부 수리를 하느라 망치질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 3명이 집 안에 들이닥쳤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초인종도 고장 난 상태였다(내담자는 경찰이 담을 넘어 들어온 것 같다고 주장한다). 깜짝 놀란 내담자에게 경찰은 본인의 신분증을 잠깐 내비친 후, 지영수배자를 찾는다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내담자가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어 경찰은 내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내담자는 이를 거부했다. 옥신각신 끝에 경찰관 3명의 위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내 주었고, 신분조회기를 통해 내담자의 신분이 조회되었다.

이어 경찰관들은 집안을 수색하려고 하였다. 내담자는 이를 거부하며, 왜 본인의 집에 침입하여 조사하는 것인지 물었다. 경찰관은 내담자의 집 컴퓨터에서 지영수배자가 접속했다고 하였다(내담자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서, 얼굴도 모르는 지영수배자가 집 컴퓨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내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안방, 욕실 등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심지어 세탁기까지 열어보았다.

억울한 내담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문고에 신고했다. 권익위에서 조사했고, 내담자는 권익위로부터 ‘내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들이 ○○경찰서 소속 경찰이 아니다.’ 라는 ‘황당한’ 결과를 들었다. 내담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일반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것인가 싶어, 이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찾아갔다(내담자는 대문 앞에 설치된 CCTV에 찍힌 경찰관들의 사진을 들고 갔다고 말한다). 내담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곧장 경찰 민원실로 들어가 항의했으나, 경찰서로부터 ‘내담자 집 컴퓨터에 범죄자가 접속한 증거가 있다.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 내담자가 허락해서 집을 수색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내담자는 그냥 넘어갈 운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자료가 정리 되는대로 인권위를 직접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관 연수를 오기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다. 아무 생

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청이라고 했다. 순간 정신이 바짝 들고, “내가 뭘 잘못 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온 몸이 긴장되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선번호인으로 경찰청에 가서 기록을 복사할 때 직원이 친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일종의 설문조사였다. 왜 전화했는지 알게 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경찰, 법원, 변호사 지역에서 각 2달씩 실무수습을 마친 상태인 나조차도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자세를 바로잡고 긴장하는데, 불시에 집 안에 침입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을 조회당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수색당한 내담자의 심경은 어땠을까. 내담자는 아버지가 과거 순경으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경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일을 겪은 뒤 경찰차만 봐도,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만 같아 무섭고 떨린다고 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여기던 사람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당혹감, 배신감, 섬뜩함 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권위의 존재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호막, 방패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우리를 지키던 방패까지 상대방이 들고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소망님은 인권상담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인권의 체온계, 전화상담실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 모습(위), 전화상담실 내부(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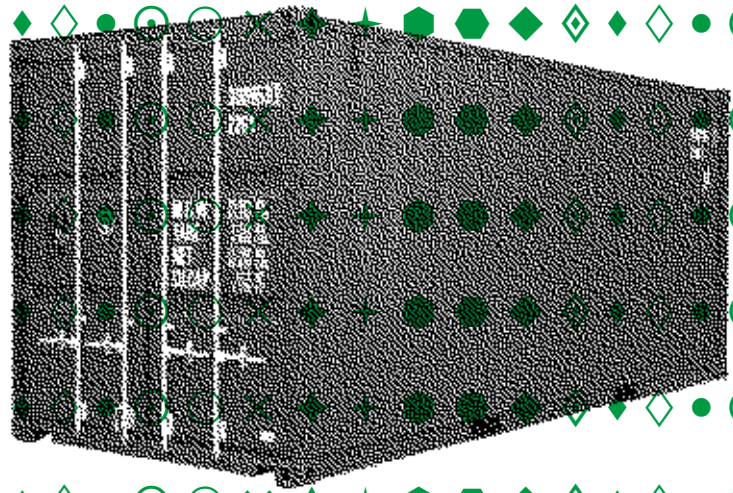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4대의 전화 부스. 전화벨은 계속 울려대고 상담하는 말소리도 들리지만 실내는 조용한 편이다. 그러나 이 좁고 조용한 공간은 한국 사회의 체온계, 한국 인권현실의 감지기다. 전화선을 타고 흐르는 갖가지 사연들, 그 사연들이 담고 있는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만약 일시에 함성으로 터져 나온다면 그 소리는 얼마나 클까. 사무실 옆 시청 광장에까지 혹시 그 진동이 전해지는 않을까.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 전화상담실. 이곳은 '인권'의 출발점이며 최전선이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인권현실의 축도다.

인권상담실은 국민이 인권위원회를 만나는 집점이다. 또 인권위 자신에게는 위원회의 모든 인권 업무가 시작되는 뿌리이기도 하다. 이 뿌리로부터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고 또 잎사귀와 열매가 열리는 것이다.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많은 권고와 결정들이 그 가지이고 열매인 셈이다. 이 상담실에는 2007년 한 해 동안 2만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2001년 위원회 설립과 함께 개설된 이래 6년간 매년 그 건수는 늘고 있다. 인권위 역사와 함께 '인권상담'의 연륜도 제법 쌓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상담실을 항상 떠나지 않는 영원한 질문은 '인권상담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인권상담을 하면서 상담원들은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곤 한다. 상담실 개설 때부터 줄곧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경력 6년의 베테랑인 최희자 상담원은 "인권상담이 다루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다. 모든 걸 끌어안고 상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간명하고 확고한 정의도 있다. "인권위를 찾아오는 상담이 곧 인권상담이다"(김제왕 상담원). 수많은 사연들이 모이는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인권' 이전에 '인간'이다. 전화를 통해 듣는 사연에는 우리 사회 지난 50년의 그늘이 있고, 억눌리고 가난한 이들의 울분과 슬픔, 갈구가 있다. 그런 이들과 상담한다는 것은 상담원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요구한다. "상담원은 청취자이자 안내자이며 중재자이자 인권체계의 발굴자가 돼야 한다"고 인권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인권상담 가이드북>은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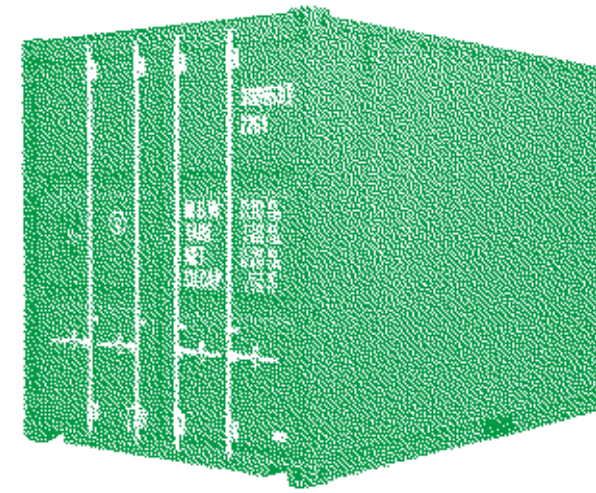
상담원들이 전화 상대방과 하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그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청취자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짜 억울한 자기 얘기를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이들이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중구난방의 하소연들이다.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걸 제대로 얘기할 수 없으니 미치고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들.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들. 그러기에 자신의 얘기를 요령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디에도 얘기를 들어줄 데가 없었고, 얘기를 해볼 수가 없었다는 문제였는지 모른다. "안 된다" "어렵다" "김토 중"의 복창에 지친 이들이 상처 입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인권위를 찾아오는 것이다. 상담원들은 그래서 어떤 전화든 쉽게 끊을 수 없다. 인권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도 일단 들어주고 같이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전화가 많이 오죠. 명절, 연말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인권위원회조차 도움을 못 주면 더는 대한민국에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귀찮을 정도로 늘 전화를 걸어오던 이가 연락이 뜸하면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한다. 높은 빌딩들이 키를 재듯 뻗어 있는 서울 시내 한복판. 차들이 쉿쉿 내달리는 이 속도전의 한가운데에서 상담실은 작고 낮고 느려 보인다. 그러나 슬한 삶의 절절한 사연들이 있기에 어느 전장보다 뜨겁고 치열한 역설적 공간이다. 그 역설에 우리 사회, 그리고 인권의 현실이 있을 것이다.

3 표현의 자유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프랭크 라 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기자회견에서



3-1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상답 : 경찰이 문화제 참석자를 연행하고 면회를 불허합니다.

S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박모 씨의 추모 문화제를 열기 위해 S 업체 본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연행했습니다. 연행된 사람들을 면회하기 위해 시민단체 사람들 몇 명이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합니다.

답변 : 출입 자체를 막는다면 인권침해로 보입니다.

면회인의 경찰서 출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로는 보이나, 긴급구제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인이 진정접수했고 위원회에서 ○○경찰서에 면회거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면회가 허용되었음.

유사사례

경찰차가 집회차량의 출발을 막고 있습니다.

노동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당산동 주차장에 있던 방송무대 차량이 나오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앞을 막고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건설노조로부터 방송무대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려는데 출발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장애인 가로막는 경찰에 항의하자,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

재개발 토론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건물목을 지나려는 장애인 12명을 막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길을 막는 것이다.”라고 하여 “만약 이들이 시위하면 그때 문제로 삼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신이 무슨 상관이나?”라고 말하더군요.

보도자료 2009년 6월 3일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호하고 불법폭력의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근래의 상황을 살펴보면 개최가 예정된 집회시위의 불법폭력성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집회시위의 개최 여부 자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여야 할 서울광장이 현재 경찰버스에 의해 장기간 봉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통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식을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한다고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므로 남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정부의 선심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기본권 보호야말로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기본적 의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존중하고 보호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비춰볼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최대한 신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번 집회시위의 자유를 강조한 헌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상기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보호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법치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3-2 1인 시위

상담 : 광화문 광장의 경찰 “여기서는 1인 시위도 불법이다.”

뇌성마비 1급 중증장애 여성인데, 광화문광장에서 활동보조제도 개악을 반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해 준비해놓은 선전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데, 1인 시위를 시작하자마자 경찰 수십 명이 달려와 본인을 에워싸고 사방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왜 1인 시위를 막느냐?”고 물었지만 “여기서는 1인 시위도 불법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 중 한 사람이 본인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선전피켓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경찰이 본인을 밀쳤고, 휠체어에서 떨어져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답변 : 집회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1인 시위를 막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7년 국가기관이 1인 시위를 저지하면서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사사례

청와대 경호원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시위를 막았습니다.

청와대 진입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규제과정에서 팔목부위 2주 상해(염좌, 혈종 등)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경찰이 1인 시위자를 캠코더로 촬영한 것, 또 반대로 1인 시위자가 경찰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초상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와대 경호원은 나중에서야 중국 총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막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를 사전에 알려주고 제지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보도자료 2007년 12월 27일

“1인 시위 및 집회방해, 지자체 공무원들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인 시위 및 집회시위 중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A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21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등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 및 현장에서 찍은 사진 등의 자료,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조사서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A지방자치단체 소속 피진정인들은 2007년 1월 9일 그리고 같은 달 10일 및 16일 소속 기관장의 관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들이 착용한 흰색 한복과 소지한 피켓을 연필깎이용 칼로 찢고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고, 또한 같은 날 29일에는 피해자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음에도 피켓을 강제로 빼앗아 폐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 및 제366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남용 및 기물손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폭언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3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상답 : 불법 게시물이 아닌데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병역비리에 대한 분노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습니다. 보충역 4급 사유가 없는데 사위행위 등을 동원해 보충역 관정을 받는 부류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해당 글에 소개된 사위행위(이미 언론을 통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수법)를 통한 병역감면 수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글의 삭제요청 공문을 포털 측에 발송했습니다.

병무청은 제 글이 불법적인 글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목이 적절치 않으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제 글을 보고 병역기피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군대를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룹에도 병무청은 제목이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복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겁먹은 포털 측은 병무청 요구를 들어주면 복원시켜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횡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받는 셈입니다.

답변 :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민주주의 의사형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게시한 글을 삭제 조치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19일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있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심의 신청률이 급증하고, 신청된 건수의 대부분이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어, 정보통신심의제도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더불어 심의대상과 심의기준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작용해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기통신망 유통 정보의 심의권 및 시정요구권을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구성하는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경우 독일처럼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공적기관이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 전교조 명단 공개

상담 :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가족입니다.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공개를 강행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실린 교원단체 가입교사 숫자와 학교 측에서 파악한 숫자가 같은지 확인할 목적으로 명단을 받은 것이므로 제공목적과 달리 이용한 것입니다.

답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 등이 공개됐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반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자기 부처에서 제공한 자료가 오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부주의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인지도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5 국가보안법



상담 : 문예공모전 당선 작품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하다니요?

1년 전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한 문예공모전에 응모해 당선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찰이 내담자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소환을 요구하면 문서를 통한 공식 소환을 요구하십시오.

우선 경찰에 정식 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소환 등을 요구하면 문서를 통한 공식소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 중에 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이 사적인 감상문까지 뒤져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헌책방을 운영합니다. 헌책 중에 북한관련 책도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헌책방에서도 북한관련 책자를 판매합니다. 아침 9시 경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왔다고 하여 문을 여니, 8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전통지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8명의 경찰로 인해 5살짜리 여자 아이가 몹시 놀랐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영장 목록에는 북한관련 서적 10여권과 내담자의 개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후 3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여 년 전 ○○○열사추모사업회에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경찰은 엉뚱하게도 추모사업회가 어떤 단체와 연관돼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금까지 대기업 등에 보낸 글과 개인적으로 작성한 수필, 독서 감상문, 일기 등도 들어있습니다. 경찰이 그런 사적인 글까지 밀줄을 그어가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관련 책자의 판매 및 소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처벌을 감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인터넷 헌책방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는 책에 대해 유독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3-6 천안함 사건

상담 : 국민을 감시하는 것이 경찰 일입니까?

천안함 사건 유가족이 모여 있는 해군 사령부에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 3명이 잠입하여 유가족 사이에서 첩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과 직원들은 밥 먹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가족 틈에 몰래 잠입해서 동태 파악하는 것이 경찰의 일입니까?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경찰의 잠입수사 자체가 적법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분노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잠입수사 형태로 조사한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공감어 가는 말씀입니다만 경찰의 잠입수사 자체를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입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수집 정도가 과도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사생활보호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7 언론의 자유



상담 :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유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석면 불법해체가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기사를 취재했습니다. 신문 게재 후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 경찰은 내사를 진행한 뒤 언론사의 취재 자체가 부당하고 언론사 행위가 유죄라고 주장합니다. 이 보도로 해당 학교는 노동청의 제재를 받았고, 문제점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당한 일일한 적이 없고, 언론으로서의 공정성을 다해 취재 보도한 것입니다.

답변 : 취재 자체를 제한한다면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유무죄 혐의 및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 건강에 해로운 불법현장을 취재한 것 자체와 보도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언론의 취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잉 부당수사 여부로 진정해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의 지역 언론사 감압 수사

경기도 지역의 언론사 발행인입니다. 경찰이 언론비리를 척결한다며 수사했으나,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광고주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광고주들은 전전긍긍하며 영장도 없이 경찰이 나오려면 나가고, 유도신문에 넘어가 경찰의 의도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심각한 탄압입니다.

3-8 공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

상답 :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파면됐습니다.

6-7년 동안 경찰 내부게시판에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글을 써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감사관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CCTV 기록을 뒤져서 지난 2~3개월간 6회에 걸친 근무태만을 이유로 내담자를 파면했습니다. 이는 CCTV 설치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입니다. 소청 심사에서 파면이 해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답변 : CCTV가 설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감사를 시행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소청심사를 거친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심사의 근거로 활용된 CCTV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면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17일

“공무원도 개인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2009년 10월 21일 입법예고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그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가능하게 해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2009년 11월 10일자로 표명했습니다.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갖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개정안의 운영과정에서도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향유하여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상답 :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도청 농산과는 '2010 ○○○단체 지원계획'이라는 문건을 각 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이 문건에서 ○○○도는 '정부 또는 행정을 비판·비난하는 사업 행사는 지원 승인을 배제한다.'고 하여 보조금 지원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 예산을 정부와 행정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는 단체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건의 착안사항에는 '교재, 현수막 등에 정부 행정을 비판하는 구호나 문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답변 : 배제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여부는 관련 기관의 재량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외의 것을 이유로 배제한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제의 사유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적 성향 때문이라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공권력의 남용 등을 함께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도정에 반대하는 영화는 틀지 마라.

○○랜드에서 추진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에 ○○○도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도정 정책에 반대하는 영화 혹은 주민정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영화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독소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식코> 같은 영화는 불가하다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극장 렌탈비 지원을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 다양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영향신문

2010년 05월 18일 화요일 003면 종합

프랭크 라 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분야별 조사 및 권고 내용

<p>국가의 사법제도를 통한 압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훼손 형사소송 제기 : 형법에서 명예훼손 일이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 국가의 명예훼손 손해소 제기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안. • 공직자는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수 없어야. • 집회시위법 : 실질적인 허가제로 운영, 표현의 자유 침해. • 선거법 단속 :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 제한, 관련 지침 식재해야. • 국가보안법 : 기사 간수 출간지인 어린이 천성고무피 등 법조문 모호해 개정해야. 	<p>다양한 의견 표출 기회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내로비' 반대성명서 사건 : 비내에 대한 기사 부당, 관련법 조항 삭제 권고. • '비내로비' 기사물 삭제 : 명예훼손 판단 기준 불명확, 방송심의위 실질적 감열기구 활동. • 기사를 삭제 이유 중 하나가 임무명령이라는 점 매우 문제. • 인터넷 실명제 : 사전제한 아닌 사후처리에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 업무 무관한 영역 정치적 표현 제한 안돼. • 공공방송 독립성 : 독립성 유지 위한 제도화 필요, 미디어법 시행은 다양성 향상에 반함. 	<p>인권위 역할 실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 중요 사안에 대해 인권위 의견 표명 있어 실감, 더 적극적인 자세로 권고해야, 전문성, 독립성 있는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게 절차 개선해야.
---	---	---

“한국, 말·글·집회의 자유 제한 놀랍다”

라 휘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결산 회견

17일 출국한 프랭크 라 휘 유엔의 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1년 뒤에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출국 전 그의 기자회견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국내의 실상이 전방위적으로 소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시민단체나 진보성향 지식인들이 제기한 문제와 일맥상통했다. 국내 표현의 자유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로 번지는 상황이다.

라 휘 보고관은 이날 국가와 사법제도를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지적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약은 유엔의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되며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해 온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라 휘 보고관은 촛불집회 이후로 교풍을 방해하거나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집회·시위에 대해 사전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을 소지죄)가 모호하게 적용돼 아직도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의 다양성이 원할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위원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등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글을 무기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거나 근무 시간 이후의 의사표현은 특히 보장돼야 하며, 특정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앞선다"며 "특정 책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아무런 재동정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표현의 자유 논의에 대응물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라 휘 보고관은 "상임위원 명단 요청이 성사가 안됐고, 빈가 과거와는 다른 정조"라며 "인권위원 선정 절차가 공식적인 자문 절차도 없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없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휘 보고관은 "상임위원 명단 요청이 성사가 안됐고, 빈가 과거와는 다른 정조"라며 "인권위원 선정 절차가 공식적인 자문 절차도 없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없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금지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이거나 근무 시간 이후의 의사표현은 특히 보장돼야 하며, 특정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군인으로서의 지위를 앞선다"며 "특정 책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아무런 재동정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가 주요 현안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다. 표현의 자유 논의에 대응물기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라 휘 보고관은 "상임위원 명단 요청이 성사가 안됐고, 빈가 과거와는 다른 정조"라며 "인권위원 선정 절차가 공식적인 자문 절차도 없고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도 없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단에 잠긴 보고관 프랭크 라 휘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중 생 각에 잠겨 있다. 김기남 기자 kichoto@kyunghwa.com

정부 '문전박대' 일관... 국정원 동원 미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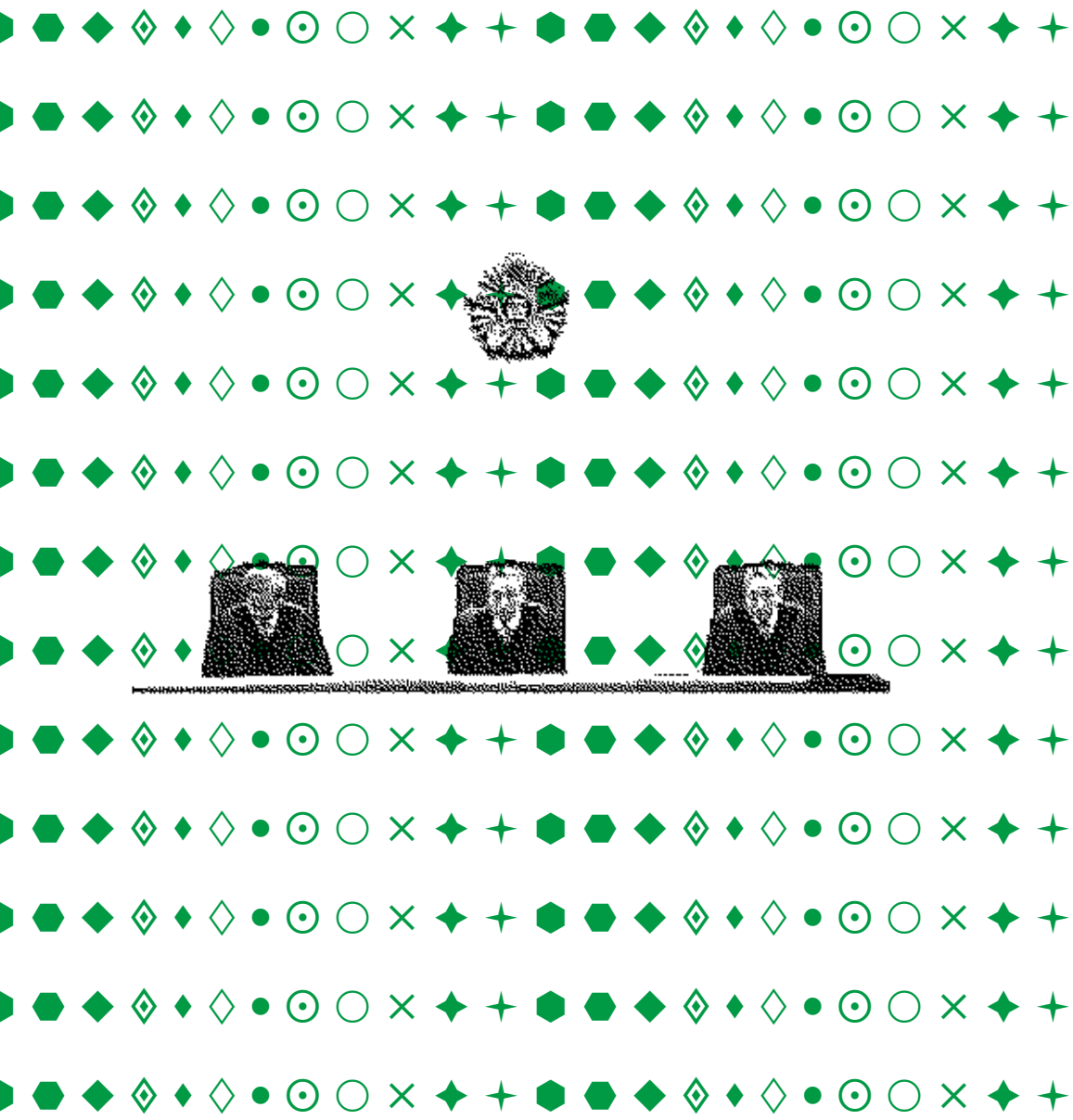
대통령·장관 면담 거절 정부는 공식 방문한 프랭크 라 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곳곳에서 비협조적이고 무성하면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일 방한 후 출국 축하·사별는 반이 그를 따라다녔다. 라 휘 보고관은 17일 출국 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방문 전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 장관과의 면담을 사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집에 누군가를 초청하면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해야지, 우방을 보내 대화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특별보고관이라면 고위 공직자와의 면담이 발발했을 때 해당 국가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라 휘 보고관은 장관급인 현행

국가인권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의 국·과장급 실무자들만 주로 만났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준기 검찰총장 등의 면담을 제차 외교부총서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인권위 방문 때는 예정돼 있던 인권위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이 취소되기도 했다. 국정원이 라 휘 보고관의 동선을 미행한 의혹도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등에 따르면 국정원 소유로 추정되는 옵티마 승용차 차량이 라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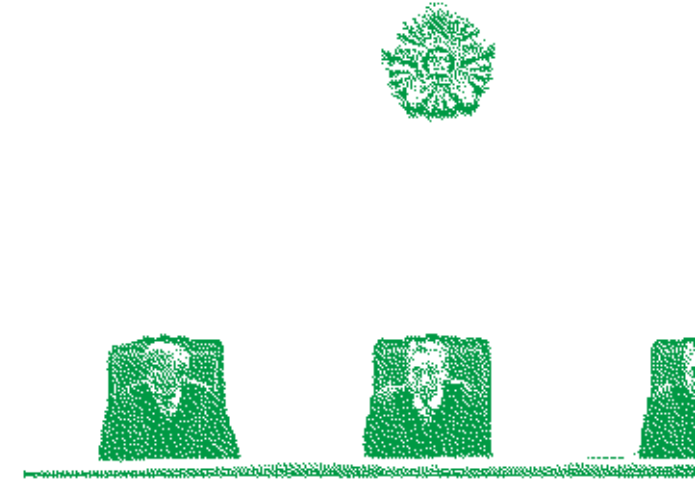
보고관의 입국부터 호텔 등의 투숙 모습까지 사진촬영을 하며 감시활동을 벌였다. 라 휘 보고관은 "(국정원의 미행은) 사실이고 외교부에 말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내 활동에 대해 특별히 제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보고관이 '정치적

4. 막말과 인격권



“말 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아요?”

젊은 판사가
원고로 나온
할머니에게



4-1 판사의 막말

상담 : 아버지뻘 노인에게 “나가, 나가라니까, 이것 끌어내”라고 말하는 판사

남편은 66세 노인으로서 지방법원 민사2단독에 재판이 있어 피해자로 출석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남편에게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했다.”,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등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재판장의 언어폭력에도 꼭 참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면 고쳐오겠다.”고 했는데도 판사는 “나가, 나가라니까, 이것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하여 분해하던 남편은 2차 변론 시 판사가 주소를 확인하려 하자 “그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66세 노인에게 감치 10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답변 : 인격권 침해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소송 관련인이나 방청객을 폄하하거나 반말, 모욕적인 언사 혹은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여 모욕을 당했다면 진정하여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판사가 ‘앉았다 일어나’를 시킵니다.

민사 소액재판에 대리출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 판사가 받아주지 않고, 뒤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본인을 잡아오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끌려 갔습니다. 판사는 본인을 감치시키겠다고 ‘앉았다 일어나’를 시켰습니다. 아들 정도 나이의 판사가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상황에서,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 아버지 대신 딸 마디 하자 “목격한 거 아니면 입 다물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애를 입어 아들인 제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몇 마디 하자, 갑자기 판사가 뺨히 쳐다보더니 “당신 아버지라지만 당신이 목격했어? 목격한 거 아니면 입 다물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라 잊고 지냈는데 판사에 대한 인권위 권고를 보고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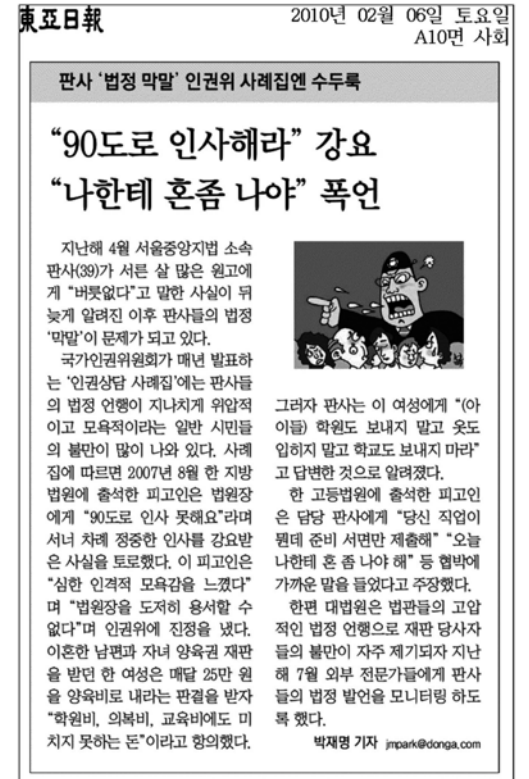
보도자료 2010년 8월 10일

“조정 과정에서 폭언한 판사에 주의조치”

국가인권위원회는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 씨는 피해자 신모(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서 “할머니가 재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정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조정판사의 권한행사 범위를 벗어나 위 진정요지처럼 폭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검사의 막말

상담 : 환자에게 봉투에 입대고 숨 쉬면서 진술하라는 검사

○○지방검찰청 ○○지청 1호 검사실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관에게 “2002년경 심장수술을 받아 완치됐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검사는 “에이 X 필요 없는 얘기하지 말고”라고 하더군요. 당황스러워 숨을 고르고 “작년 6월 동맥이 터져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재차 몸 상태를 알렸습니다.

조사에 응하는데 분위기가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중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인 앞에서 “김○○ 씨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적 있지? 구속된 적 있잖아요.”라며 무혐의 판정 받은 전과기록을 공개하며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진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당장 피의자로 수사해.”라고 말하더군요. 참을 수 없어 검사실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검사는 “그 사람 체포해.” “이 사람이 죽으려고 XXXX.” 등 막말을 하더군요. 쇼크로 숨이 험떡거리고 어지럽고 심장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뛰어 견딜 수 없어 병원에 데려가 달라 했습니다. 수사관은 “괜찮은데 뭘” 하며 도와주지 않았고, 높고 싶다고 하자 누울 곳이 없다며 10여 분간 그냥 뒀습니다. 몸 상태가 계속 악화 돼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의사는 정신적인 충격 때문인 과호흡증후군이라며 심하면 손발이 뒤틀려 큰일 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약을 투여하고 안정을 취하는데 검사는 지청으로 와서 “20분 정도만 진술 마 무리하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 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진술에 응했습니다. 검사는 “괜찮네 뭐, 과호흡증후군 그거 아무것도 아냐. 내가 잘 아는데 봉투에 입대고 숨 쉬면 돼.”라고 하여 그렇게 하면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검사의 모욕적인 언행 탓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했기에 진정합니다.



답변 : 반말 사용과 사생활 유출은 인권위 조사가 가능합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수사 중 반말을 사용하고, 현재 진행사건과 무관할 뿐 아니라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력을 사건관계인 앞에서 언급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침해, 신체의 자유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여부를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누가 “깡패 같은 XX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자 친구가 작년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참고인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니다.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이어서 몸이 안 좋다고 했으나 검찰 계장이 반말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대하느냐? 하대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이런 깡패 같은 XX들 여기가 어디라고?”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인데 검사의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말끝마다 욕하는 조사관과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검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니다. 조사관은 말끝마다 “XX”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양아치 XX”, “상판이 사기 치게 생겨먹었네”라며 온갖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옆에서 지켜보던 검사와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명예 사생활 등의 보호)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경찰의 막말

상담 : “나잇살 처먹은 게 거짓말을 더 잘한다.”라며 막말하는 경찰관

조사를 받는데 경찰이 “할아버지 시끄러워 조용해!”, “나잇살 처먹은 게 거짓말을 더 잘해!”라고 욕박질렀습니다. 본인이 “난 장애인이라서 싸움을 못해요.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라고 항변하자 경찰이 “요새는 장애인이 더 잘 때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틀림없이 가해자야.”라며 모멸감을 줬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가해자에게 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폭행사건 합의를 보자는 가해자의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변 : 자의적 해석과 변론 기회 미부여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중인 경찰이 피조사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모욕감을 주고 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피고소인에게 폭행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경찰, “확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내연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나는 조사하는 상관이다, 너는 아래니까 자네다.”라고 하더군요. “야, 너 자네”라고 하대하고 “쌍놈의 XX, X 같은 XX, XXXX”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내담자와 눈이 마주치니 “확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나이는 막넛동생뻘이었습니다. 경찰의 욕설로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듭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폭행, 가혹행위 등 금지]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수사할 때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해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욕감에 의한 추측

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쓰는 동시에 감식시설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9조(비밀의 보안) 수사할 때는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한다.

경찰 욕설 등에 대한 결정 2010년 1월 25일

주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이 무고한 사람(피해자 2)을 연행해서 만나지도 못하게 한다고 난리를 치니가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조용히 안 해!”라며 욕박질렀고, 조사과정에서 항의를 하자 “병신 XX. 끝값 하고 있네, XXXX!”라고 욕설을 하였다.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병신XX 끝값하고 있네. XXXX”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3은 “야 인마, 나이도 어린 놈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개 XX, XX 놈이 뭐냐?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먼저 욕설하여 꾸짖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4 교사의 막말

상답 : 학생에게 “몸 팔러 가느냐?”라고 말하는 교사

딸은 공립중학교 3학년입니다. 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교사가 다짜고 짜 불러 세워 “몸 팔러 가느냐? 술집 가느냐?”라면서 욕을 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훈계할 일이지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폭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딸은 울었고, 본인도 그 말을 듣고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답변 : 교사의 모욕적 발언도 인권위 조사대상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고 비친한 말을 사용하여 학생을 성희롱하고 모멸감을 주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인격권 침해, 성희롱 여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동물이랑은 말 안 하겠다.”

사립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담임을 수차례 불러도 대꾸를 안 합니다. 그러더니 “동물이랑은 말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심리 조절이 어려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담임은 그런 저를 두고 “○○는 정신병 환자니까 놀지 마라.”라고 해서 반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담임은 제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다.”라면서 급우들을 동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담기뽀(칼로 찢어버린다).”

아들은 공립고교 2년생입니다. 수학교사가 수업시간 아들의 볼을 잡아 돌리면서 “X 걸레 XX 죽여뽀다, 어찌 죽이면 좋겠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벌어진 일로 아들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혼한 상태로 아들을 양육하는데 교사가 아들 일로 자꾸 전처에게 전화합니다. 이에 항의했더니 교사가 “담기뽀다.”라고 하더군요.

알림장에 싸인 안 받아왔다면, “부모님 모두 죽었느냐?”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담임은 알림장에 도장을 안 받아 왔다고 알림장을 집어던지면서 “엄마, 아빠 모두 죽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질문했더니 “너희 어머니는 녹색 도우미도 안 하면서 그런 질문은 왜 하느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게”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들은 담임이 싫어서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폭언 관련 결정 2009년 10월 12일

주문	1. ○○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피진정인 1은 종례시간에 반 아이들 앞에서 “인간 쓰레기들, 바퀴벌레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이 사람 XX냐? 사회인이 되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뿔로 확 짝어 버리겠다. 나라도 경찰에 신고해 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판단	피진정인 1이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의 행위가 학생 지도 및 관리 책임이 있는 교사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5 공무원의 막말

상담 : “밥 먹으러 가는데 뭘 전화를 하고 XX이야.”

형이 ○○구치소에 수용 중입니다. 1일 1회만 접견이 보장되기 때문에 교도관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겨우 연결됐고 통화했습니다. 교도관에게 사정을 얘기하며 전화통화의 어려움을 말했는데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밥 먹으러 가는데 뭘 전화를 하고 XX이야.”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공무원이 11시 40분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것도 부당하고, 너무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답변 : 미결수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입니다.

교도관의 욕설로 모욕을 당했다면, 인격권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2009년 4월 미결수용자의 과도한 전화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전화연결 자체의 문제, 공무원의 업무시간 해태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사례

“너 같은 XX는 죽어야 한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척이 없어 항의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너 나한테 반말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너 공무원 생활 그만하고 싶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이 “너 같은 XX는 배때지를 칼로 찢러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군청 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훈계했다고 처벌은 안 합니다. 1년이 넘었으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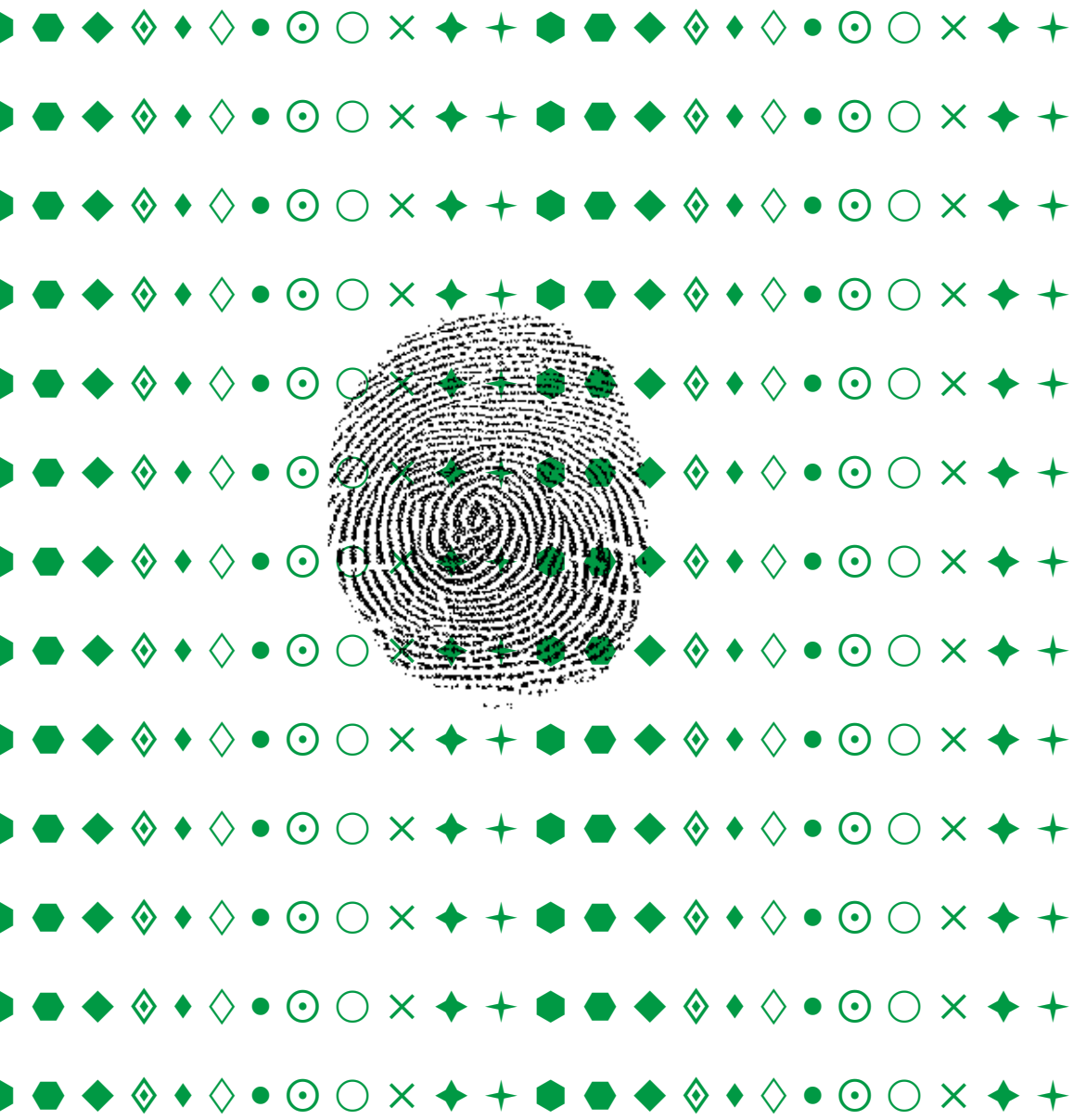
보도자료 2010년 2월 16일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욕설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에게 “정신병자 아니냐?” 등의 욕설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은 A씨와의 전화통화 도중 A씨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정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우발적으로 행한 단 한차례의 욕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 차례라 해도 담당공무원이 행한 욕설의 종류, 욕설의 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행위이고,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5 정보인권



전신검색
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

국가인권위,
공항 알물검색기
도입 금지
결정문에서



5-1 개인정보 수집

상담 : 도립공원에서 편의시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산 도립공원 내에서 식당을 합니다. 도립공원은 관광객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 개인의 신상을 기재하고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정보 기록을 꺼리는 관광객은 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원 내 상인들의 손해가 큼니다. 도립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자들에게 개인 신상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가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 관광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립공원 내 편의시설 이용자들에게 개인 신상을 기록하게 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관광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상가운영자들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상담 후, 도립공원 측에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원 측이 자진해서 앞으로는 개인 신상을 기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유사사례

재계약 시 가족들 개인정보가 필요하답니다.

떨은 고궁매표소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는데 신원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가족 모두의 학력 및 남편의 직장 및 직위 등을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재계약에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월 6일

“전화상담 이용 시 주민번호 입력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산등록정보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의 구분 없이 무조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미입력 시 상담원과의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상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진정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없이 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5-2 개인정보 열람

상답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지자체의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변동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모구청 ○○○ 직원이 저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90만 원의 체납 범칙금이 있습니다. ○○○ 직원은 조회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방세가 체납되면 영장 없이 신용조회를 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 : 법률에 근거했다면 적법절차 위반은 아닙니다.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신용정보 조회 절차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에 관한 사항이라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조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고, 개인의 신용등급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사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04년 2월 9일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의 관행적 열람은 사생활 침해

경찰관들이 특정수사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기소중지자 등의 검거를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일명 '보건증') 발급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는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송모 씨가 2002년 10월 수원증부경찰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사생활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의 최종 감독기관인 경찰청장과 각 보건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찰관들이 지역 보건소에 비치된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부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휴무일을 이용하여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일부 파출소의 경우 경찰관들이 출장 명령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시·도에 위치한 보건소를 찾아가 파출소장이 작성한 문서 또는 신분증만을 보이고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는 하나 ▲이는 수사기관이 특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판단했고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에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대중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어, 기소중지자 검거만을 이유로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행위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또한, 특정 수사와 관련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3 개인정보 유출

상담 : 돈 없고 뺨 없는 사람은 개인정보도 보호 못 받으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시 동구청에서 지연 안내문이 왔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수급 신청자 14명의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었고 그중 내담자의 이름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청 과장을 찾아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과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과장은 자신이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언성을 높이며 도리어 고소하라고 욕박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니, 구청장은 잠깐씩 와서 결재만 하고 간다고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는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모습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답변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됐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유사사례

제보자 개인정보 누설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습니다. 8월 ○○세무서로 이첩되어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어제 탈세 당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제보했느냐? 두고 보자.” 라는 식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제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가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제보자 정보를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공무원 비리를 진정했는데 진정인을 유출하다니요!

소방공무원 유○○의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1월 진정했고, ○○소방본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민원이 관할경찰서로 이첩되어 유○○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조정관이 경찰서에 보내는 공문을 사적으로 당사자인 유○○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은 봉합을 열어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내용물을 복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소방본부 조정관이 감찰 내용을 사적으로 전달하고, 유○○이 공문문서를 사적 목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것은 부당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공무원 사회 비리와 인권침해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소송자료에 주민번호, 주소, 가족관계까지 있습니다.**

집으로 ○○지방법원에서 발송한 소송자료가 송달됐습니다. 송사 관련자 48명의 주민번호, 주소, 이름, 가족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담자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내담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같은 동네 동명이인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법원의 업무상 착오도 문제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소송자료에 넣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7월 7일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 공개는 인권침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적발됐는데,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공동주택 현관에 게시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서울시 ○○구청장에게 관련자들을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통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의 대문 등에 부착함으로써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하여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실을 이웃주민과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

“법원 약식명령서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돼야”

진정인들은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법원 등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크더라도,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인권위는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직접 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5-4 위치정보 노출

상담 : 산불감시요원은 실내에서 밥도 못 먹습니까?

○○구청 건설과 소속 산불감시원입니다. 5일 전부터 위치추적기를 몸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선 긴급사항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서라지만 자리가 탈 방지 목적이 큼니다. 1인당 무전기를 지급하기 때문에 긴급 사항은 추적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연락 가능합니다. 위치추적기는 차 안, 실내, 40분 동안 이동하지 않을 시 이상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러다보니 식사할 때도 실내에서는 안 되고, 추울 때 잠깐 실내에서 추위를 피하는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위치추적기를 단다는 것 자체가 중범죄자가 된 것 같고,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고 있는 것 같아 모욕적입니다.

답변 :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휴식권 침해 여부 판단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산불감시요원에게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행동 제한이 지나치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일반적 행동 자유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신중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 검토 결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의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보다 엄격한 요건과 사전·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이 부당히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5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



상담 : 초과근무 체크하는데 지문인식을 사용합니다.

공립학교 교사인데, 초과근무 등록을 위해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문인식이 싫어 쓰기 번호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문인식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인권침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 기본권 제한하더라도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생체 고유 정보인 지문인식으로 초과근무를 체크하고, 게다가 강요까지 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필요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에 관해서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학교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조사할 것입니다.

5-6 CCTV와 사생활 보호

상답 : 여직원 탈의실을 겸한 근무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없이 근무지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은 탈의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에서 종일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더군다나 이용자 동의 없이 탈의실에 설치했다는 게 화가 납니다.

답변 : CCTV가 성적 수치심 유발했다면 성희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공간의 전자감시 장치 설치하는 우리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넓은 의미의 성희롱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업장에 확산되는 각종 전자감시의 규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사례

CCTV 설치 동의서에 사인을 강요합니다.

○○구 구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구청에서 관내 구립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기기로 촬영되는 정보는 휴대전화로도 전송받을 수 있고 저장 및 재생도 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설치동의서를 보냈습니다. 원장은 "구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진다."면서 동의서 사인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감시한다고 카운터 바로 앞에 CCTV 설치

지하철역 내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의 매출액에 따라 지하철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암행어사제도를 만들어 손님으로 가장하고 물건을 산 뒤에 매출기록을 하는 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매출액에 못 미친 상점은 카운터 바로 앞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1월 13일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 예방적 관리 규정 신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 중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규정에 대해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급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이 표시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로써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음성 녹음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모니터링 요원의 임무가 주로 범죄예방 및 채증 활동임을 감안할 때 민간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임의적인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급증하는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경향과 아울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리 시 예상되는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같은 사전적 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도자료 2010년 3월 30일

“범죄예방 CCTV 설치라도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진정인은 "○○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m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서 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리책임자 등을 표시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청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방침을 정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경찰서장 및 구청장에게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의 CCTV 3대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작동을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습니다.

상답 : 공항 알몸투시기 도입에 대한 인권위원장 의견이 궁금합니다.

대학교 영자신문 기자입니다. 이번 저희 대학 신문에 7월 안으로 공항에 설치될 전신스캐너 도입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공항 알몸투시기 도입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인권위가 알몸투시기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인권위원장의 의견과 생각, 또 알몸투시기 도입을 막을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국토해양부에 전신검색장비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두고 질의하신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전신스캐너 설치와 관련해 테러예방의 효과에 견줘 사생활이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해양부에 전신검색장비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6월 30일

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 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4월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7호)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년 상반기 중 인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권위 검토 결과,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 설치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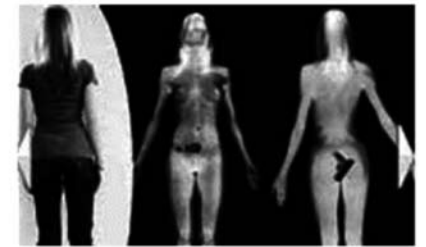
朝鮮日報

2010년 07월 01일 목요일
A12면 사회

“알몸 투시기, 사생활 자유침해”

인권위, 설치 금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내 공항에 도입할 예정인 ‘알몸 투시기(naked scanner·사진)’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설치하지 말라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알몸투시기가 테러예방 효과가 크다는 근거도 미약하고 도입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알몸투시기는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며, 투과 정도에 따라 성형보형물·특정 부위의 보철물 등이 보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알몸투시기가 도입된 선진국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영국의 경우 동

료 여직원의 투시 사진을 찍은 공항 보안요원이 경찰에 경고를 받았고, 미국에서는 알몸투시기를 테스트했던 직원의 이미지를 보고 다른 직원이 이를 비하하는 발언을 퍼뜨려 폭행사건으로 번졌다.

인권위는 또 방사능에 의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에서 출발했다는 이유로 알몸투시를 당하는 등 검색대상자에 대한 차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6 학생인권



“앞머리
4cm, 뒷머리
스포츠’라는
교칙을 들은
적이 있지만,
선생님이 직접
머리카락을
자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청소년 인권도서
(세상을 향해 어퍼컷)에서



6-1 학생 체벌

상담 : 교사가 수학문제를 못 풀다고 뒷머리를 쳐서 코뼈에 금이 갔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담임이 수학문제를 잘 못 풀다고 아들의 뒷머리를 2회 가격해 책상에 얼굴이 박혀 코뼈에 금이 갔습니다. 교장을 면담하고 “교사를 전근 보내거나 최소한 아들의 담임이라도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장은 “교사가 그럴 리 없다.”며 안이하게 대처하더니, 결국 “담임을 전근 보낼 권한도 없고 반도 바뀌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학생지도는 신체적 고통 없는 훈계여야 합니다.

학생지도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훈계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것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여부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교장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 따귀 30대 맞고 고막치료 받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조카가 옆 반 친구를 기다리면서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 번 두드렸답니다. 옆 반 담임과 눈이 마주치자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으나 바로 불러 들어가 따귀를 맞았습니다. 조카가 교사를 쳐다봤는데, 연발로 따귀 30대를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뒤 허벅지에 올라서서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교사의 폭력으로 조카는 고막에 문제가 생겨 치료 중입니다. 교사의 체벌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교사는 사과하고 있으나 도저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측을 상대로 대응하다가 불이익이 올까 우려됩니다.

답변 : 체벌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체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립 학교 교사의 과도한 학생 폭행에 대해 아동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등 여부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상담 : 교사가 때리는 걸 보더니 반 아이들도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실에서 트립하고 방귀를 끼었다는 이유로 담임이 맨 앞자리로 불러 책상을 창문으로 향하게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임에게 계속 맞았다고 합니다. 담임이 때리자 아이들도 덩달아 때리더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아이가 침을 뱉어 “왜 그러냐?”고 하자, 담임이 때려 자기도 때리고 침도 뱉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본인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가 식판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교장은 담임 편을 들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뿐입니다. 교육청에 말했으나, 장학사는 학교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애가 이상하다면서요?”라고 반문합니다.

답변 : 아동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게 교사입니다.

교사는 아동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고 모욕을 준 점, 다른 친구들의 괴롭힘을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추긴 점, 교장이 적극 해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아동권 침해 등 판단을 받아들 수 있습니다.

상담 : 아들을 교단에 세워 놓고 아이들에게 발로 차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은 국립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들은 지나가는 아이를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로부터 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담임이 아들을 포함한 3명의 학생을 교단으로 불러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에게 ‘이 애들을 발로 차라. 안 차면 너희가 맞는다.’라고 하여 급우들이 세 명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명은 학생과의 ‘제한 구역’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교사에게 또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냈더니 교장에게 시정 조치하라고 통지한 게 다입니다.

답변 : 폭행을 방치하고 유도했다면 교사의 잘못입니다.

국립중학교에서 학생 간 폭행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친구를 폭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폭행과 부적절함에 대해 교장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의 체벌 관련 결정 2009년 12월 1일

주문 ○○중학교 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꿰어앉히고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렸다. 그 결과 피해자는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한 적이 있다.
 판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와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학교폭력

상담 : 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앞에서 손뼉 치며 비웃었어요.

아들은 공립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 달 전 이 학교로 전학 갔는데 체육과 학생 4명이 아들을 손봐야겠다며 30명 정도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했습니다. 턱뼈가 부러지고 입안이 터져 피범벅이 됐습니다. 이가 흔들리는 상처를 입고 양호실에 누워 있는데 교장은 손뼉을 치면서 양호실로 들어와 “네가 우리 학교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은 “아들이 ○○에 있는 돈을 다 훔으려고 한다. 교육을 잘못 한 것 같다. 엄마를 보니 알겠다. 다른 학교로 가도 똑같은 것이다. 이제 교육을 해도 늦었다.” 등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답변 : 학교폭력 방치하면 학교장의 관리감독 소홀

공립학교장이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방치하고 오히려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면 관리감독 소홀 및 피해자와 학부모의 인격권 침해 등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기를 바라며 가해학생이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2년간 학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밤 딸아이가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폭행에 의한 흉부 타박 및 오른쪽 복부 혈종이 발견됐습니다. 2학년 초부터 약 2년 여간 삼강생 언니에게 거의 매일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무서운 일이 학교 화장실에서 계속됐고,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때렸다고 합니다.

1차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 부모가 1년 6개월간 폭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학교 측은 증거 없다고 무시합니다. 2차 자치위원회 때 소견서 등 증거를 제시하여 강제전학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딸아이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발달 지연 진단을 받은 상태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은 가해자가 있으므로 치료비 지원을 못 해준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식한다면 이처럼 성의 없이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방지 합의종결 2009년 11월 4일

진정내용 자녀 학교폭력 사건으로 담임교사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했고, 담임교사는 조사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담임과 학생부장은 합의하라고만 하였음. 이에 학교장을 만나려고 했으나, 학교 측 거부로 만나지 못함. 결국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부 중재로 가해 학부모와 합의했음.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을 사전 예방하지 못했고, 폭행사고 이후에도 폭행피해로 정신병원 입원중인 자녀가 향후 학교에 등교할 경우 보호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하지 않고 있음.

합의내용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진정인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향후 피해자가 퇴원할 경우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울 것이며, 학교차원에서는 'We Class'를 운영하여 청소년 MBTI 검사(인성검사), 학습유형검사 등 다양한 검사와, 기타 피해자에게 알맞은 적응교육을 실시할 것임. 기타 학교 측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 피해자를 도울 예정임.

한겨레

2010년 07월 16일 금요일 009면 사회

반 아이들 때리고 던지고...혈우병 학생까지 무차별 폭행

'공포의 초등학교'



서울 초등학교 오아무개 담임교사의 학생 폭행 장면. 오 교사는 한 남학생의 머리를 때린 뒤 학생을 업어치기하듯 넘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치고 밟았다가 쓰러진 학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양 어깨를 잡고 흔들며 벽으로 밀치고 있다(왼쪽부터) 평등교육 심원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제공

'상습적 구타' 동영상 충격 학부모 "즉각 퇴출시켜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계속해 왔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동영상 이미지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한 한급의 학부모 5명은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평등교육 심원을 위한 서울학부모회'(평학)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오아무개 담임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미닫이문 사이에 넣고 여러 차례 문을 열고 닫거나 체구가 작은 아이들을 들어서 내팽개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이번 학기 내내 일상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 가 혈우병(머리 굳게 하는 물질이 부족한 출혈성 질환)을 가진 탓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오히려 담임교사의 폭행으로 출혈이 생겨 학교에 가지 못한 일도 있었다"며 "몸무게가 30kg밖에 안 되는 아이의 명치를 때리는 등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을 해왔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말과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은 근거로 오 교사가 스베에 머리 쪼기 스바닥에 내동댕이치기 스체육기구 보관실에 가두기 등 학급 남학생 상당수를 상대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학부모들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담임교사에게 가혹하게 때를 맞는 아이들의 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다. 이 동

영상에서 오 교사는 학생 2명을 교탁 근처로 불러낸 뒤 "왜 이랬다저랬다 거짓말을 해, 나쁜 놈의 xx"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한 학생의 뺨을 때리고 거칠게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는 가 하만, 울고 있는 학생의 가슴을 서너 차례 마구 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조만간 오 교사와 피해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본진조정 위원회에서 이번 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평학 측은 "오 교사의 즉각적인 교단 퇴출과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상답 : 일방적 두발 규제는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인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개월 전 학교장이 바뀌면서 강력하게 두 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협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학생회 아이들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입니다. 가정통신문 상에 두발기준 사진이 있는데 거의 반삭 수준으로 머리를 잘라야 합니다. 예전 교장 선생님 때는 뒷머리는 깎아 안 닿을 정도, 앞머리는 눈썹 위, 옆머리는 귀 안 덮는 정도까지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장 선생님은 “만약 반삭 수준으로 자르지 않으면 교칙에 따라 지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칙이라며 두발기준 초과 시 1회당 벌점이 10점씩 부과되고, 20점 받으면 교내봉사, 그 이상은 사회봉사, 강제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학습 분위기를 고려해 두발지도를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당사자인 학생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지나치게 짧아 학생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 조사에 응할 수는 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진정한 신상이 학교에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두발도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의 지나친 두발규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두발도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협의 아래 적절한 선을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2월 4일

학생두발 단속과정에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 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일리지 제도 체벌 위주 학생선도 방식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음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해도 강제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6-4 조기등교

상답 : 0교시, 야간자율학습도 모자라 일요일 자율학습을 강요합니다.

인천의 인문계 공립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에서는 예전부터 아침 7시 20분부터 '0교시' 수업을 하고 야간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자 일요일에도 자율학습을 강요합니다. 학급 친구가 교회 때문에 일요일에는 학교에 올 수 없다고 하니 교사는 “교회, 웃기시네.”라면서 무시했습니다. 학교가 멀어 교사에게 0교시 수업에서 빼달라고 했으나 빼주지 않았습니다. 0교시 수업에 빠져서 교사에게 엉덩이를 맞기도 했습니다.

답변 : 일요일 야간 자율학습 강요도 조사 대상입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요일 자율학습을 강요한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0교시 수업에 빠졌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면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잉 체벌인지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8년 10월 21일

“조기 등교 강요, 교내집회 강제 해산 등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 소재 S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집체교육과 체벌을 가한 것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조기 등교, 휴대폰 소지 금지 등의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집회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되었고,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평화적으로 전개되었고, 두발자유와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 점으로 볼 때,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학교 측이 불법집회로 규정해 해산시킨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의 조기 등교 및 자율학습 강요에 따른 자기의사결정권 침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습능력 제고 및 모범적 학습 태도 고양을 위한 학교장의 고유 권한 범위 내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학생을 1시간 일찍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는 정책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정규 수업 외에 학교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기 등교와 관련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5 교사의 인격권 침해

상답 : 성적공개로 학생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공립중학교 2학년입니다. 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날 때마다 모든 학생의 과목별 성적과 등급을 일등부터 꼴등까지 공개적으로 불러주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담임은 성적공개가 학생의 성적처리 불만이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춘기 시절 예민한 아이들이 성적공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 : 성적 공개로 경쟁 부추기는 것은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학생성적을 공개 게시한 것에 대해 학생의 인격권 침해, 성적 공개 여부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등 침해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인교육을 하는 중학교육에서 성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거나 공개를 통해 학생의 인격에 훼손을 주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급식비를 지원받는 주제에...”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3학년부장 ○○○ 교사는 “흡연축정기로 흡연자를 찾아냈다.”며 아이를 혼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학비까지 지원받는 녀석이 담배 살 돈은 있느냐? 내 세금으로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해 주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고, 엄마인 제게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1주일에 교통비와 학습준비물 비용으로 만원씩 사용하기에 “담배 살 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너무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꼈답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다시는 학비지원 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내겠어요.”라고 말하는데 부모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장애 학생에게 “미술시간에 출입 금지하겠다.”

아들은 ADHD 동반 정서장애, 조울증 3급으로 ○○고교에 재학 중입니다. 최근 미술 시간에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들을 앞으로 불러 안경을 벗으라고 한 뒤 뺨과 머리를 때렸고, 손가락으로 목을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이 XX, 저 XX” 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미술 교사를 찾아갔더니 “이런 아이가 일반고교에 왔다는 게 이해 안 되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야기할 필요 없다. 앞으로 미술 시간에 출입 금지할 것이다. 구제불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10일

교칙 위반을 이유로 기함, 자퇴 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진정인 송모 씨는 피해 학생의 큰아버지로 “조카가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는데,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은 바 있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함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학생이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하고,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6 비학생 청소년 차별

상담 : 검정고시로 대학생 된 청소년, 지하철 탈 때마다 신분증 보여줘야

검정고시를 봐서 일찍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마다 청소년 할인 소리가 납니다. 이에 매번 학생증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해 아 합니다. 바쁠 때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거나 탈학교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비학생에게 현저한 부담이라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 아닌 청소년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주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또래 학생과 달리 구별되는 차별인지는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할인 적용을 받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신분이 아닌 자에게 현저한 부담이나 침해를 준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악대회 참가 제한 개선 권고 결정 2010년 5월 4일

주문	피진정인에게, 비학생 청소년의 국악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들은 피진정인이 주최하는 2009년도 ○○전국국악대제전에 출전하려 했으나,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결국 학교에 다니지 않는 피해자들은 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필요하고, 전통예술을 익혀 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청소년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예술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수 있다. 정규학교나 대안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동일하게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의 국악대회 출전을 불허한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6-7 미혼모 청소년 학습권



상담 : 미혼모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미혼모 시설 사회복지사로 미혼모를 대신해 상담합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자퇴한 학생입니다.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고 학교를 알아보다 어렵게 한 사립학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틀이나 학교에 나가 수업을 받았는데 교장선생님이 “미혼모는 안 된다.”며 못 다니게 합니다. 미혼모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혼모라는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차별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학령기 청소년은 미혼모라할지라도 교육환경 개선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합니다.

유사사례

교실에 있지 말라고 해서 일주일간 강당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립 중학교 3학년입니다. 아들의 머리와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감이 “너 같은 XX는 학교 나올 필요 없어.”라고 말해 아들은 상처를 입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학교와 가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한 달간 쉬면서 청소년 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센터에 갔다가 등교했는데 담임교사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교에서 유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교실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강당으로 보냈고 일주일간 강당에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학교는 회의를 통해 아들의 유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급이 결정되기도 전에 출석한 학생을 교실에 있지 못하게 하고 홀로 내버려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처사입니다. 학교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또한 교감이 학생을 옥하고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조사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30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학 중 임신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2.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 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상담 : 방과 후 학습은 자율이라면서 참가자와 불참자를 차별합니다.

아들은 인천에 있는 공립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는 사교육을 없애는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방학 중 방과 후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가여부는 자율이지만, 사실상 의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가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방학에도 시행했는데, 수업진행이 잘 안 되어 이번엔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불참자에게 추가 숙제를 많이 내줄 것이고, 참가자는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수업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까지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방학 중 방과 후 수업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장에게 항의했으나, 교장은 자율적 참여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답변 : 방과 후 수업참가 자기결정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립중학교에서 학생의 방학 중 방과 후 수업참가 여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방학수업을 강요하기 위해 불참자에게 과도한 과제 부과와 참여자에게 우대 성적을 준다면 자기결정권침해 또는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참가 여부에 따른 학생 차별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2월 31일

기숙사 입사조건으로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A과학교등학교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생들로부터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과학교등학교 장에게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씨는 “아들은 A과학교 재학생으로 통학거리가 4시간이 넘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 A과학교가 기숙사 입사 조건으로 자율학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세이 정미현 (전문상담원)

아이들에게 퇴학은 사형이다



혼자서 두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전화를 했다. 아들이 같은 반 아이를 때려 고막이 터졌다 한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일주일 이내 전학하지 않으면 퇴학이라고 했다. 폭력 학생은 다른 학교도 잘 받아 주지 않는다며 눈물을 쏟았다. 폭력 남편과 더는 못 살아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키워왔는데 아이가 폭력 때문에 퇴학을 당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 교문과 교우실에서 여칠을 우를 꿰고 용서를 빌었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다. 열 친구들과 짜고 시험 때 쪽지를 돌리자고 모의했다. 어수룩했던 그 친구와 나는 쪽지를 돌리자마자 선생님에게 걸렸다.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던 아이에서 순식간에 ‘퀸닝’이 되었다. 그런데 6학년 첫날, 그 선생님이 담임으로 오셨다. 한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놀이터로 향했던 기억이 난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선생님은 일기장에 내 일기보다 더 많은 말들을 달아주셨고, 우스운 글에도 글짓기 상을 주셨고, 내 생애 처음으로 줄반장까지 시켜주셨다. 그때부터 내 꿈은 선생님이었다. 그냥 선생 말고, 나처럼 언니간 아이들을 위한 선생 말이다.

그렇게 스무 해 쯤 지나 진짜 선생이 되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옛말이란 걸 실감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훌륭한 부모를 가졌고, 얼굴도 잘 생긴데다 예의 바르고, 인간성까지 좋았다.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는 영락없이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난 사고뭉치들의 편이 되곤 했다. 이른바 ‘차별 대우’를 한 것이다. 불공평한 대우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부모님은 일터에 나가고, 집에 가면 혼자서 싸늘한 밥에 라면을 먹고는 날이 새도록 게임에 빠지는 아이들, 그런 삶이 삼시 세끼처럼 자연스러운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다”고 차차 말하지 못했다. 차라리 그들의 일탈과 사고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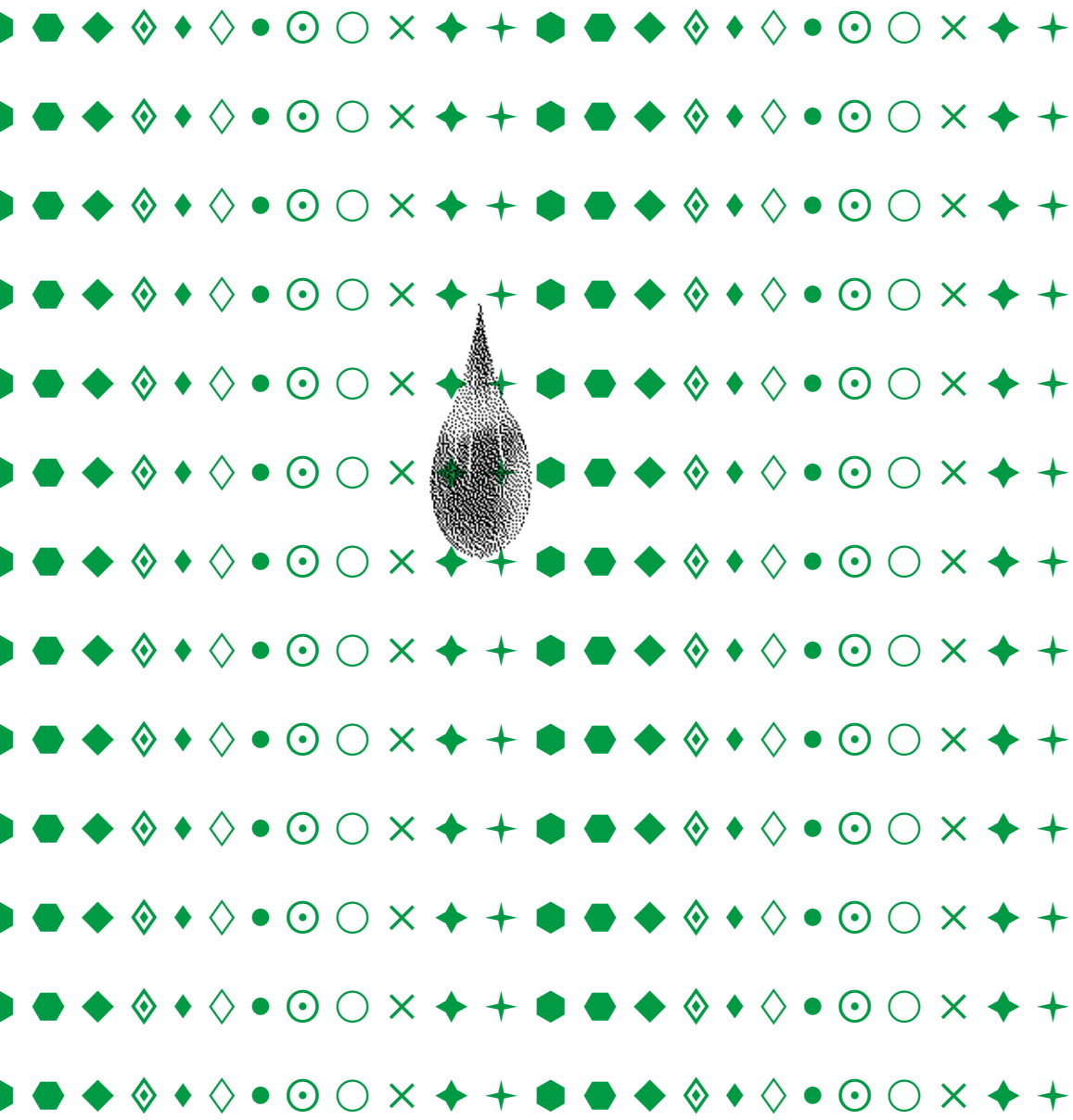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퇴학은 사형이다. 학교는 교육현장이다. 교육현장은 지식만 전달되는 곳이 아니다. 어른들은 잘 알지 않는게 언니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경험이고, 그런 경험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것. 처음 공을 튕길 때는 어느 방향으로 튕지 모

른다. 사방팔방 뛰어다니다 보면 공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때서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낯선 공이다. 낯선 공을 쫓아 아이들이 몇 번 넘어졌다 하여 공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건 교육이 아니다.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 퇴학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끝을 흐려야 했던 그날, 사무실을 박차고 다시 학교로 가고 싶었다. 또 다시 공을 빼앗길 그들의 편이 되고 싶었다.



7 성희롱



“성희롱도
문제지만
이후 벌어진
일이 너무
억울했어요.
아빠도,
오빠도, 남편도
없는 여자라고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인권위를
알려줬어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이 모씨
「인권」 인터뷰에서



7-1 공공기관 성희롱

상담 : 현직 군수와 의회 의장이 계약직 직원에게 누드사진 촬영 강요

○○군 기획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군의회의장은 국외여행을 다니며 찍은 사진을 모아 책을 만들고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그 책 마지막 장에 누드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의장은 저와 단둘이 있는데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라인이 예쁘다. 엉덩이가 볼록하니 사진 찍으면 잘 나오겠다. 사진촬영 3일 전부터는 자국이 나니까 상하 속옷은 입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해가며 수차례 누드 사진 촬영을 종용했습니다.

답변 : 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성희롱 가능성이 큼니다.

최종적 인사 권한을 가진 군청 및 군의회 수장은 성희롱 방지를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시간 중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쉽게 제의하기 어려운 누드사진 촬영을 제의하고, 동의가 없는 데도 반복적으로 제의해 성적 굴욕감을 느껴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면 군수와 의장을 상대로 진정하여 성희롱 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습니다.

올 초 한국○○진흥원 신년회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회식 끝에 라스트 건배를 제외한 진흥원의 모 부장이, “내가 ‘잔 대 XX’ 하면 ‘맞 대 XX’라고 응수하라.”고 했습니다. 30~40명 중 여자는 저뿐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내담자를 의식하며 여성이 있다고 말하자, 진흥원의 다른 직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므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호를 외치며 건배했습니다. 한국○○진흥원 감사실에 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 부장이 전화로 미안하다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쁜 여자는 술집에서도 잘 나간다...”

○○공단 교육파트 직원입니다. 신입사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 진행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와서 성희롱 교육을 하는 도중 “예쁜 여자는 술집에서도 잘 나간다. 못 생긴 여자는 설거지라

도 하는데 어정쩡한 여자가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군수 등의 성희롱 결정 2010년 8월 20일

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진정인 이○○, 박○○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피진정인 이○○는 1,000만원, 피진정인 박○○는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각 소속 직원 및 의원들에 대한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4.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군청과 ○○군의회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군청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했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피진정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누드사진을 찍으라는 종용을 받음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껴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판단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일방적 누드사진 촬영 제의 및 종용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부위 노출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성적 함의를 갖는 언동으로 볼 수 있다.

7-2 직장 내 성희롱

상담 : PD에게 성희롱을 당해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두 달 전부터 모 방송국에서 막내 작가로 일했습니다. PD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가 해고됐습니다.

편집실 같은 좁은 공간에 둘이 있을 때마다 PD의 성희롱이 계속됐습니다. PD는 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다며 가까이 와서 봐달라고 하고, 출장 시 사무실로 전화해 이름을 부르곤 느끼한 숨소리를 냈습니다. 구성안 작성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둘만 있을 때는 본인 바로 옆에 앉아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자기 자리로 불러 “옷매무새가 오늘 되게 섹시하다, 예쁘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구성 예를 들 때도 “어떤 판 위에 네가 누워 있는데, 남자 세 명이 너를 뒤흔드는 거야.”라는 식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화를 냈습니다. 이후부터 PD는 조연출을 통해 지시하거나 제게 화를 냈습니다. 사장에게 “PD와 관계가 꺾끄러워 일을 못하겠다.”고 얘기하자 사장이 저보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PD를 상대로 싸우면 앞으로 방송국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고민입니다. 예전에 어떤 작가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PD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작가는 방송국에서 거의 매장됐습니다.

답변 : 관행적 성희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일부 PD와 작가의 관계가 다분히 종속적이어서 인권위에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만도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자가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제기한 문제는 일부 PD의 작가에 대한 관행적 성희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성희롱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결정 2010년 10월 4일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출장 후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피진정인(상사)은 “내 애인해라.”라고 했고, “애인이 되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 페이가 더 나가도록 푸시해 보겠다.”는 얘기를 함. 진정인은 심한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껴 상사에게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을 포기했다.
판단	진정인 처지에서 볼 때 업무적 관계 외에 개인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이 연애를 제의하고, 연애를 전제로 보수 인상 등을 언급한 것은 성적 함의를 갖는 회유 내지 요구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언동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점에서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피진정인의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가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3 교수의 성희롱

상담 : “단란주점에 가서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딸은 ○○대학 1학년입니다. 6월 초 김○○ 교수가 수업 중에 딸을 호명하면서 성희롱을 했습니다. “○○는 단란주점에 가서 일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자신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느님 앞에 맹세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 하더군요. 결국 방송사에 제보하여 공중파에 방영됐습니다. 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딸 이외에도 11명이 더 있습니다.

답변 : 성적 모욕감에 대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업 중 교수가 학생에게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낀 경우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의 성희롱 결정 2010년 2월 4일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내용	2009년 5월 피진정인은 수업시간에 진정인의 딸에게 “단란주점에 가서 일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는 말을 하였음. 피해자는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
판단	대학교수인 피진정인이 수업 중 발언한 내용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됨. 피진정인의 발언이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 보면 보통 술집에서 술을 따르는 일 및 2차를 나가는 행위는 성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으로 판단된다.

7-4 교장의 성희롱



상담 :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갔지? 어땀어?”

피해자들은 ○○중학교 학생입니다. ○○중학교 교장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해 왔습니다.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 A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줄 테니 에버랜드에 남아서 데이트하자.’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갔지? 어땀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C의 팔뚝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답변 :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입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책임지고 문제 발생 시 적극 해결해야 할 사람입니다. 교장이 학생을 상대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선물 및 데이트를 제의하는 등 원조교제를 부추기고, 신체 접촉에 예민한 사춘기 여학생들에게 성적 의미를 전달하여 성적굴욕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성희롱 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교장의 성희롱 사건 결정 2010년 7월 6일

주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중학 교장인 피진정인이 2009년 4월 수학여행 중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해줄 테니 에버랜드에 남아서 데이트하자.’ 다른 학생에게 ‘너 가슴 크다, 모텔 갔지? 남자랑 갔지? 어땀어?’라고 말했으며 학생의 팔뚝과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의 언동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판단	학생을 지도하는 교장으로서 여학생에게 해서는 안되는 성적 함의를 지닌 언동으로, 진심이 아닌 농담으로 건넨 말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의도는 성적 함의를 인정하는 데 문제되지 않는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에게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5 의사의 성희롱

상담 : 성희롱 항의하자, “당신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저는 불감증으로 산부인과에서 여성음핵 포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의사가 수술 부위를 만지며 “느낌이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자,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며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30분 정도에 걸친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진정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까 봐 우려됩니다. 의사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 처벌이 목적이려면 고소하는 게 적절합니다.

산부인과 의사에 의한 성추행은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벌이 목적이려면 고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조사가 어렵습니다.

7-6 상업시설 내 성희롱



상담 : 여탕에 남자 직원이 들어와 성희롱을 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목욕 중이었습니다. 여탕에 30명 정도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수리를 위해 목욕탕 이용자들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남자 직원을 여탕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불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목욕탕 안의 한증막 문고리를 수리하러 왔는데 한증막 바로 앞에 있던 저와 문고리 사이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장은 사과는커녕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어넘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여경과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여경도 경악했습니다. 다만, 고소하면 직원에 대한 스티커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하여 아직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고리 사이 수리공의 눈빛이 떠올라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별일도 아닌데 소란을 떠나는 태도입니다.

답변 : 성희롱 여부는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조사합니다. 업무상 관련 부문에서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나 상하관계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목욕탕 이용 중에 고지나 동의 없이 남자직원을 입장시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결정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실과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7-7 성희롱 신고자 불이익

상답 :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부당해고 됐습니다.

직장 상사는 회사 사무실에서 볼과 귓불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팔로 옆구리를 건드렸습니다. 새벽에는 전화로 “너 오빠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 나랑 잘래?”라는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는 본인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처럼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답변 : 성희롱은 인권위, 부당해고는 노동부, 모욕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십시오.

회사 및 상급자로부터 인격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부당해고 관련 사안은 노동부, 성희롱 관련 사안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모욕행위는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 김미숙(전문상담원)
깡패 같은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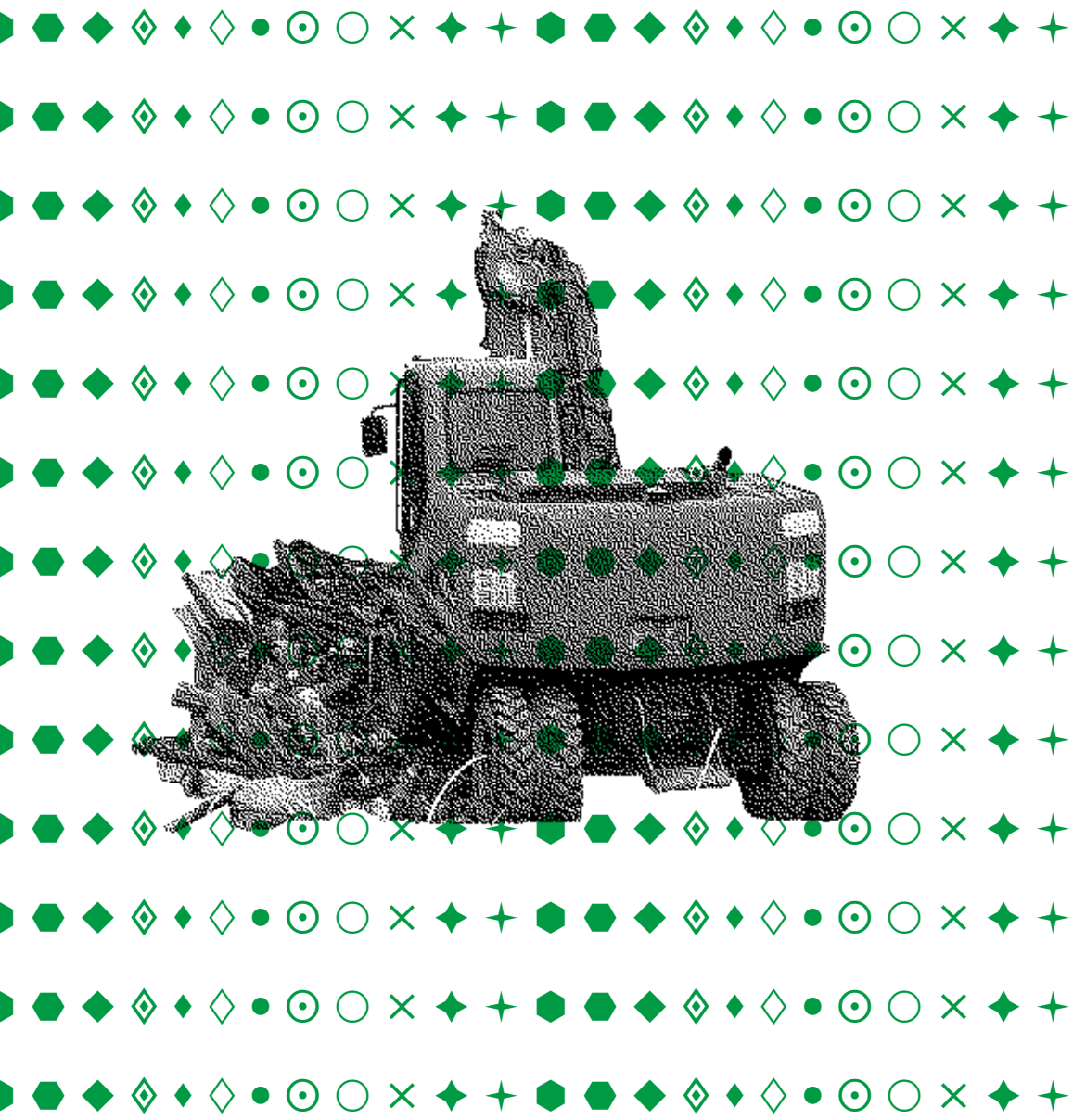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의 한 장면이다. 입사 면접 중인 여성이 면접관으로부터 가수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를 불러보라는 요구를 받는다. 면접관은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손담비의 섹시한 춤을 춰보라고 말한다. 당황한 여성은 얼떨결에 춤추며 노래한다. 그 여성은 대학에서 4년간 장학금을 받았고 외국어 성적도 높았다.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입사에 실패한 여성은 급기야 입사지원서를 낸 회사의 중견간부와 호텔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기에 이른다. 여성이 돈을 참지 못하자 그의 애인이 해결사로 나선다. 영화제목 그대로 깡패 같은 애인, 실은 진짜 깡패가 등장한다. 깡패는 애인을 희롱한 회사의 간부를 찾아가 흥신 두들겨 패줌으로서 분풀이를 한다. 영화 속 이야기처럼 깡패 같은 애인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다수 여성들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분노를 삭일 수밖에 없다. 그 중 가물에 콩 나듯 일부 여성이 인권상담센터를 두드린다. 용기를 내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는 그 안에서도 소수 중의 소수다. 인권위에 진정하는 여성들은 대개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사를 결심한 뒤다. 그들이 현장 싸움을 포기하는 까닭은 수준 이하의 직장문화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회사에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다가 피해자만 해고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상담을 받을 때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 인권위 진정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권리 위에 낮잠 자지 마라”고 강권하지 못하는 현실이 슬프다. 정녕 그들에게는 더럽게 사는 길과, 초라하게 사라지는 길밖에 없는 것일까.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포기한 여성은 성희롱 가해자를 해고시켜달라고 절규한다. 그들의 호소는 예외 없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나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듯한 정의의 소리를 인권위가 과연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오늘도 한 여성이 운다. 그는 말을 멈추고 눈물로 토해낸다. 법이 그를 보호해 주리라고 답하지 못한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 말하지 못한다. 그녀는 울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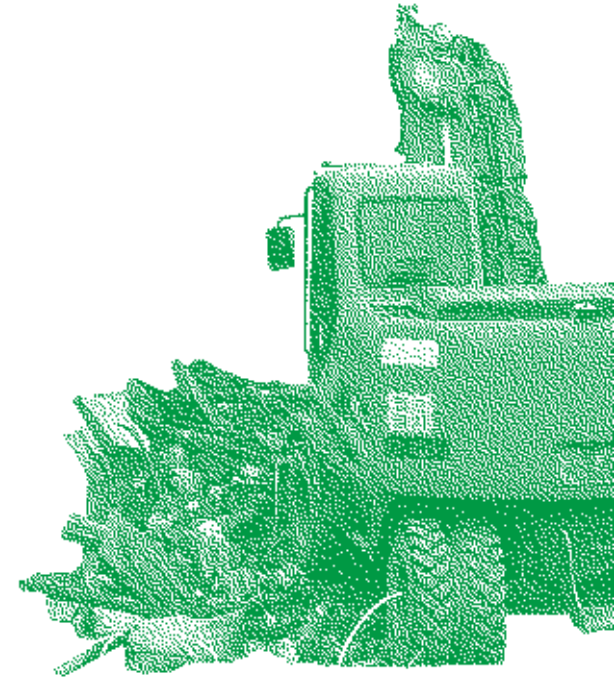


8 사회적 약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게
해고였고,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한 달에 64만
1,850원을
받고도 그
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고
일했다.”

1,895일 만에
직장으로 돌아가는
기통전자 노조원의 말



8-2 아동복지시설

상담 : 보육원 여학생들, 머릿니 퇴치한다고 강제 이발

보육원에 근무하다 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어 오늘 사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육원 아이들 사이에 머릿니가 발생했습니다. 머릿니를 퇴치한다고 여학생들을 귀밑 1cm로 이발하라는 원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보육원 아이들이라고 놀리는데 똑같이 귀밑 1cm로 머리를 자르고 학교에 가면 놀림을 받을 게 뻔합니다. 보육원 아이들도 대다수는 연고자가 있습니다. 원장은 연고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발을 강제로 했습니다.

답변 :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이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발은 원생들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원이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상담 : 어느 위탁모의 하소연... “이 아이들을 돌보게 해주세요.”

전남에서 위탁가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돌보던 4남매를 아빠가 데려가서 전북의 친척에게 맡겼습니다. 나중엔 친척이 직접 돌볼 수 없다고 해서 방을 따로 얻어서 아이들끼리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고 1인 큰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여 교도소에 수용됐고 2010년 2월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4학년인 막내가 계속 연락하면서 본인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이가 원한다면 다시 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복지재단에 문의했으나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상담과 치료를 동시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으로 구성된 가족들이 주거와 보살핌이 없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센터 등에 연락해 위탁가정에서 다시 돌보는 방법에 대해 협의해 보고, 만약 절차상 불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 비정규직

상답 : 비정규직이라고 학비 감면도 안 됩니다.

단기간 근로자 연합회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산업체 근로자가 야간전문대학을 다니면 정원 외 입학특전과 학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정작 기술교육이 필요한 비정규직 단기간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답변 :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힘없는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총수입의 80%를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수령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오더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며 여러 회사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회사 간에 사이가 나쁘면 정보를 올리는 회사에서 라인을 차단해 정보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회사에서도 맘에 안 드는 대리운전기사를 차단합니다. 인터넷은 모든 정보를 보려고 가입한 것이니, 회사 멋대로 정보를 차단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이라고 해서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면, 나 같이 힘없는 국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8-4 무상급식

상담 : 그냥 “지침대로 밥을 먹이지 말라.”고만 합니다.

저와 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해 저녁 늦게 귀가합니다. 아들은 법적 차상위계층 아동(의료급여 2종)으로 적합한 절차에 의해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야간보호 및 무료급식 사유에 해당해 지금까지 급식을 해왔다고 말씀드릴었습니다. 하지만 “지침 상 시설장 자녀는 급식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설장의 자녀로 보지 말고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 중의 한 아이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침대로 밥을 먹이지 마라.”고 하더군요.

답변 : 우선 관련 지침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른 무료 급식 지원 대상자라면, 시설장의 자녀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시면 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사사례

2-3일에 한 번꼴로 설익은 밥을 줍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방학 중에는 아이들의 중식으로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그런데 2-3일에 한 번씩 설익은 밥이 옵니다. 아무리 정부지원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성의 없는 식사를 제공할 거면 차라리 지원받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청의 부실한 급식 지원을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무료급식 대상자라는 게 알려졌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 부주의로 무료급식 대상자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니다.

전자급식카드는 인권침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자급식카드제도 도입 때문에 인권침해가 예상됩니다. 전자급식카드가 발급되면 밥을 먹을 때마다 급식 대상자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결국 돈이 문제... '空約'된 무상급식

시·도교육청-지자체 갈등
내년 전면 시행 물건너가

6·2지방선거를 뜨겁게 달궜던 무상급식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게 생겼다.

각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커녕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먹일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광역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배분 비율을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2500여억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50%를 부담하도록 요청했으나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당초 초·중·고생 전면 무상급식 또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방안에서 물러나 내년 초등 2~3개 학년만 면

저 시행한 뒤 2012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내년부터 16억원을 들여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부결시켰다. 내년 예산이 줄어 긴급정책을 펴야 할 지인데 구체적인 재원마련책 없이 조례부터 제정할 수는 없는데다 서울시가 아직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예산이 부족해 내년 무상급식 대상자를 읍·면 지역 사립 유치원과 동 지역 공립 유치원생으로 한정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내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2012년 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원 확보를 못 해 예를 태우고 있다.

전국종합=김용권 기자
yskim@kmb.co.kr

무상급식 축소·연기 주요 사례

시·도교육청	기존 공약사항	변경 추진 사항
서울	초·중·고교생 전면 무상급식 또는 초등학교 일부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내년 초등 2~3개 학년만 먼저 시행, 2012년부터 확대 검토
부산	2012년 초등학교 전면 시행	내년 초등학교 1~3학년생만 먼저 시행
광주	2013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 전면 시행	우선 내달 초등학교와 내년 중 1년만 실시
강원	내년부터 18개 시·군에서 유치원·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분담 거부한 춘천·강릉·태백 3개 시 지역 제외
전북	내년 초·중 전면 실시 이듬해 고교까지 확대	1인당 초등 1800원·중학 2500원 지원, 추가분은 학부모에 부담기로

(자료:각 시·도 교육청)

8-5 최저생계비 보장

상답 : 30년 전 버린 자식에게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랍니다.

30년 전 지금의 부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인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었고, 모두 전 남편이 키웠습니다. 부인은 자녀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하며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막내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이 국가에서 지원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왜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느냐?”라며 자녀 3명에게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비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자녀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구청이 너무 야속합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박탈하겠다는 건데,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데 재산이 있다고 수급자 지원을 중단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답변 : 특별한 상황이므로 그에 맞는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30년 만에 만난 자녀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내밀어야 하다니 정말 괴로우시겠습니다. 구청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격 심사를 위해 부양가족들의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입니다만, 부인께서 처하신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계 단절이 장기간 지속된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가 생계지원을 해주지 않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는 즉시 개선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서에서 참고하여 정책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8-6 일용직 노동자

상답 : 잘못된 하도급 체계로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입니다. 작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9명의 노동자가 6개월분의 임금 약 4천5백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도급을 주고 다시 부분별(토목, 건축, 미장)로 재하도급을 줍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재하도급업체 소속입니다. 재하도급업체는 형식적으로만 회사일 뿐 사실상 개인인데 이들이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하도급체계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하도급 체계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 실태조사 및 정책검토 과제로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노동부 사내하도급 현황 자료에서 밝혀진 것처럼,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이르는 다단계식 고용형태 때문에 상당수 노동자가 불안한 고용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개별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검토 및 제안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내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2010년 4월 20일 보도자료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허용은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까지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라는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및 부실공사,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2007년 5월 ‘시공참여자 폐지’를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해 사실상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이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8-7 파견노동자/기간제교사

상답 : 직접 고용 노동자 임금은 도급 고용 노동자의 230%입니다.

지방 국립대학에 도급으로 고용된 청소용역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직접 고용한 청소 노동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도급 고용 노동자보다 약 230%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직접 고용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직접고용 노동자가 퇴사하면 그 자리를 도급 고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의 약 3/4이 도급 고용 노동자입니다. 2008년 인권위에서 법원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문제로 대법원장에게 권고한 사안과 유사하여 인권위 권고결정문을 제시하고 대학 측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 인권위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도급 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임금이 차등 지급된다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인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권위는 청소 관리 업무의 상당수가 용역업체로 전환되면서 청소 도급 노동자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인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유사사례

기간제 교사라고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2월 초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공고 시 2월 말까지였으나 예산낭비라면서 2월 초로 수정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교감이 어제 "다른 사람이 왔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받은 월급 중 이후 비율(일수)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당일로 해고 통지하고, 급여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18일

“파견근로자라도 정규직과 동일 업무 담당했다면 임금 차별 없어야”

진정인은 “2007년 3월부터 2년간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운행제한기동단속차량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를 했는데,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가 단속반 업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이 공무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사업소 측은 진정인과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나 파견업체는 도로교통사업소가 배정한 예산에 기초해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도로교통사업소에게도 차별 시정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교해 임금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운전수당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상담 : 재개발지역 강제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홍대입구역에서 두리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식당 건물이 2006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서 2008년 명도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11세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1년간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2009년 5월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5년간 상가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조항으로 다투었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이사비용 300만 원만 준다면 건물주가 각 세대와 개별 협상했으며 10세대는 모두 이주했습니다. 저희만 합의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09년 12월 강제집행으로 식당 집기를 모두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식당 집기들을 어디에 보관 중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현재 식당에서 농성 중입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현재의 식당과 동일한 식당을 요구했고 나중에는 절반 정도의 크기로 낮추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재건축 시 현장에서 영업하고 공사 후 건물 한 귀퉁이에 식당을 차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으나 모두 거부했습니다.

답변 : 부적절한 강제철거라면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 시 준수되어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계기관의 장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권고내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하게 강제 철거당하였으면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3월 12일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철저히 보호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철거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철거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기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해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8-10 신용불량자

상담 : 신용불량자의 건강보험금 추심 너무 합니다.

5년 전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신용불량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일반 금융사에서 추심이 들어와 보험은 해지되고 보험환급금은 채권자에게 지급됐습니다. 2009년 6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보험이 만기가 되지 않아도 추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을 강제로 추심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이제는 아파도 보험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인 간 분쟁은 차별적 대우가 아닌 한, 인권위가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건강보험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제거를 의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8-11 건강보험 수가적용 제외

상담 : 암환자 치료약을 보험혜택에서 빼다니요? 이견 죽으란 소립니다.

남동생이 4년 전부터 다발성 골수종 암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보험혜택을 받아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됐는데 2009년 2월부터 보험혜택이 중지되어 월 60만 원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탈리도마이드'의 효능이 없어 보험급료를 중지했다는데, 의사는 '탈리도마이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이 비싸니 두 알 먹던 것을 한 알로 줄이고 식약청에 가서 항의하라고 했습니다. 암환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험혜택마저 받지 못한 채 고가의 약을 사야 한다면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답변 : 생명권 침해인지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만 원이던 약값이 스무 배 가깝게 올랐으니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셔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험혜택 중지 조치가 적법한 절차인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생명권 침해인지 등을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에세이 최희자 (전문상담원)

최 여사가 살려낸 그 남자 이야기



대면상담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상담실로 갔다. 앉기도 전에 악취가 코를 찔렀다. 냄새와 의복의 형세를 보니 노숙하고 온 듯했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다. 우리 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왔다고 했다. 이름을 검색하니 2005년부터 부인과 주택 소유권 문제로 여러 번 상담했고,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산권 침해 사안이므로 위원회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 기록이 나왔다.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에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 게 찜찜했다. 편안하게 말벗이라도 돼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두런두런 질문을 던졌다. “자녀가 몇 명이나? 식사는 어디서 하느냐? 잠은 어디서 자느냐?” ... 지인들에게도 잘 묻지 않는 사생활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그는 조금씩 편안함을 되찾았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가 달라 보였다. 어쩌면 내가 처음 본 것은 그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겨웠던 냄새는 어느새 사라졌고 때가 꼬질꼬질한 옷도 점점 깨끗해 보였다. 어느덧 그는 미소까지 띄우면서 나에게 화답했다. 그 순간 그는 귀여웠고 나는 새로운 그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2002년 뇌병변 3급 장애를 받았다. 예전에는 건축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빈털털이다. 집에서는 잠만 자고 복지관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목욕도, 빨래도, 식사도 여의치 않다. 그가 어쩌다 집에서 음식이라도 만들려고 하면 가족들이 도마와 칼을 빼앗아 감춰버린다. 집이든 거리든 마음 붙이고 지낼 곳이 없는 셈이다.

그는 2002년부터 2009년 2월까지 월 367,000원씩 장애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2월 이후엔 입금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누군가 장애인의 수당을 착취하고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정겨운 내담자를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했더니 공단 측은 2010년 1월분까지 지속적으로 입금했다고 알려주었다. 분명히 누군가 돈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장애연금이 지금도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계좌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을 거라는 암시도 주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아마도 부인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나는 부인과 잘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최여사 때문에 살았다”고 했다. “내가 최여사인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되물자, 그는 공단에 전화하면서 이름을 밝힐 때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과거의 눈치 빠른 사람으로 돌아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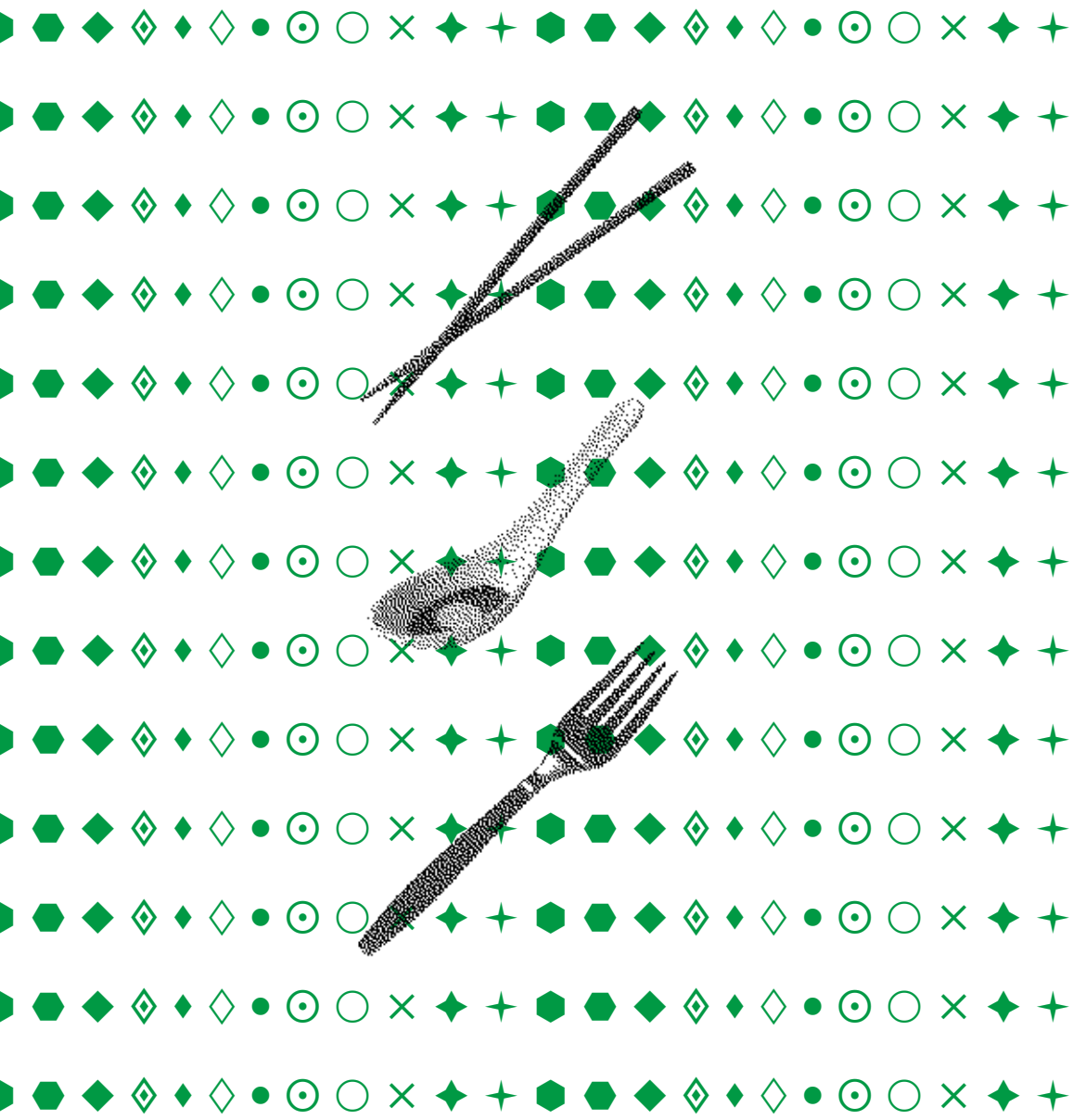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반가웠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내담자는 계속 들어오던 것이 중단돼 이젠 꿈꿨다는 생각만 했다고 했다. 부인과도 별다른 갈등 없이 원만히 문제가 풀렸다고 했다. “은인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그를 돌려보내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후상담에 임할 수 있었다.

상담 단계에서는 내담자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내담자의 처절한 호소에도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을 회피의 무기로 써왔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조사대상 제외가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좀 더 여유를 갖고 듣다보면 내담자가 흘려버린 한 마디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 진정 말고도 내담자가 찾아갈 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상담원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일 것이다.

그날 내가 만난 그만 하더라도 인권위법 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싱거운 상담으로 끝났을 일이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인권위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실망에 휩싸였을 것이다. 장애연금이 왜 끊겼는지 식사점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위해 뭔가 사주고 싶다는 인심 좋은 아저씨의 모습도 영영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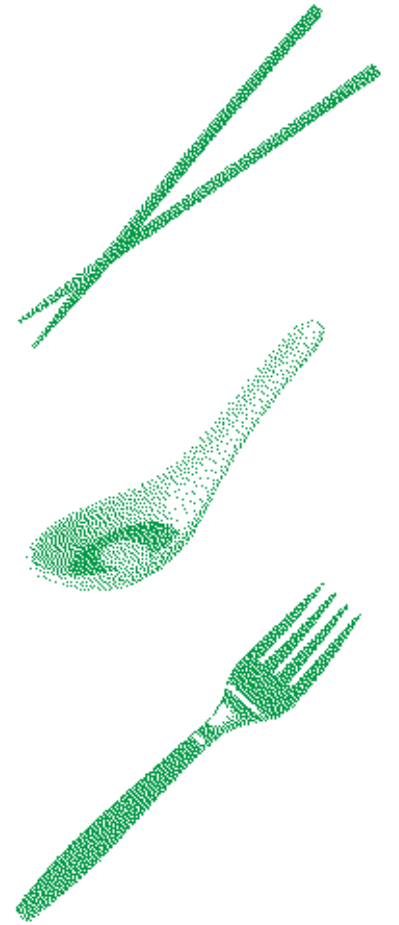
상담원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담자를 맞아야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위원회 상담원들은 폭주하는 전화에 지쳐있다. 내담자들은 피곤에 찌든 상담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활기를 잃은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내담자들은 간절히 가능성을 꿈꾼다. 슬프고도 슬픈 일이다.

9 이주민 인권



“미등록인
나와 내 아들은
한국에서
사람이
아니다”

2010년 이주민
순회상담에서



9-1 강제 단속

상답 : 경찰이 ‘불법체류자’라며 새벽에 자는 사람을 체포했어요.

중국교포로 2009년 9월 비자가 만료됐고 현재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경찰 2명이 문도 두드리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면허증을 주었더니 ‘불법체류자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수갑을 채우고 ○○지구대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체포 연행과정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분증과 영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답변 : 미란다원칙 미고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비록 상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경찰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이 무단 침입하여 미란다원칙 고지도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면, 경찰의 법집행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진정하여 인권위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3조 [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① 경찰관은 체포, 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조여야 한다.

제54조 [무기 등 사용의 한계]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보도자료 2010년 4월 13일

“오인 과잉단속에 대해 주의조치, 직무교육, 위자료 지급”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한국인을 미등록 외국인으로 오인하여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출입국관리소장에게 단속직원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단속직원들에게 진정한 병원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정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증표의 휴대 및 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도 단속 공무원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시, 단속 사실 및 목적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진정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중이 있는 곳에서 강압적 단속을 지속해 진정인에게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해 병원치료까지 받게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진정한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9-2 고용허가제

상담 : 배를 타다 병이 걸렸는데, 배만 타야 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파키스탄인이고, 고용허가제(E-9-5)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비자만료는 2011년 10월입니다. 제주에서 배를 타고 노동일을 합니다. 온몸에 갈색 반점이 발생하고 가려움이 극심하여 도내에서 치료하다, 차도가 없어 인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어업에 종사하면 바람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피부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강 때문에 더는 어선을 탈 수 없어, 직종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동청과 ○○○노동청 ○○지청은 1회 직장 변경은 가능하나 반드시 어업에만 종사하라고 합니다. 즉, 직종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직업적 특성으로 발병했고, 동일한 환경에서 계속 일하면 병이 악화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동일 직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 이주노동자의 존엄성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에서 질병이 생겼고 동일 환경에 놓일 경우 병증이 악화된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청에서 동일 환경에서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하고 직장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주노동자의 존엄성 침해 여부를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 같은 조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후 제18조의2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도자료 2009년 7월 23일

고용허가제 5주년에 돌아본 이주노동자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적에 관계 없이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UN과 ILO 등에서 논의되어 온 국제규범이고, 헌법 제11조(평등권)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등 우리나라 법체계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법치를 앞세운 정부의 단속이라는 이중고 속에 사업장 폐쇄와 실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2003년 2월 이주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고,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노동3권 등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기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및 노동부장관에게 정책 권고했으며, 2008년 9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9-3 결혼비자 발급 지연

상담 : 실제 부부로 사는데도 입국비자가 거부됐습니다.

2007년 필리핀 여성을 만나 2008년부터 동거했습니다. 여성의 비자가 2008년 9월로 만료됐으나 그냥 살다가 2009년 12월 출국해 필리핀에서 결혼했습니다. 2010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했는데 '불법체류를 했다.'라며 2011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답변 :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부로 살고 있는데도 출입국관리국의 입국규제 처분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3년 10월 22일

인권위 권고 수용해 중국동포 입국규제 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동포 오모 씨의 입국규제를 해제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오모 씨의 입국규제를 해제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중국동포 오모 씨는 한국인 김모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 측이 과거 불법체류 사실을 이유로 오모 씨에게 입국규제 조치를 취하자, 남편 김모 씨가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입국규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9-4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

상답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에 화가 납니다.

남편이 네팔 국적 외국인이라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 때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더군요. 절차상 여권 원본이 필요하며 가져가더니, 외국인등록증 발급 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권 미소지로 걸릴 수 있어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등록증 발급 택배 수령 신청서를 주면서 “만약 단속에 걸리면 이 신청서에 적혀 있는 출입국사무소로 연락이 올 거고 그때 증명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출입국 업무 시간이 아닐 때 단속되면, 이에 따르는 모든 불편은 남편이 감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편의주의에 화가 납니다.

답변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행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 미비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시정권고, 권리구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 미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단계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행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권고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2월 16일

출입국 무성의로 체류시한 위반자 된 외국인 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불허통지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성의로 3개월이나 지난 이후 교부받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류시한 위반자가 된 K씨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K씨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고 수차례 처리 결과를 문의했으나 회신이 없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조회하니 체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됐고, 출국기한도 이미 3개월이나 도과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됨으로써 재입국이 어렵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8년 10월 주소지가 변경돼 2009년 1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를 결정하고 통지서를 변경 이전의 주소지로 1차례 발송했으며, 통지서가 반송됐음에도 변경된 주소지로 재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K씨는 처리 결과를 최종 확인한 2009년 4월 이전에도 수차례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결과를 문의했으나 “추후 통지할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듣고 결과를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목: 버마행동한국 홍보부장 예밋 씨를 풀어주세요.

남편 예밋 씨는 버마행동한국 홍보부장 등으로 활동하며 2008년 5월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난민신청 서류로 단속에서 제외됐지만, 2010년 4월 귀가하다 체포 구금됐습니다. 예밋 씨는 종전처럼 난민 신청 서류를 제시했으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전화나 서면으로 연락이 안 돼 리스트에서 삭제했다고 답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체포한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 우선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위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권상담센터가 진행한 난민 인권순회상담 도중 법무부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예밋 씨가 풀려났습니다. 2010년 11월엔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한 소모뚜 씨가 난민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유사사례

난민신청 중이라도 일은 해야 먹고 살지요.

난민신청 중에 일할 수 없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9년 3월 하루 일하다 단속됐고 과태료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냈으나 거부됐습니다. 2005년 10월 난민신청을 했고, 2009년 6월 1차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난민신청에 대해 무려 4년을 끌다가 거부한 것입니다. 4일도 아니고 4년입니다. 4년을 쉬다가 단 하루 일했다고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합니다.

보도자료 2008년 3월 6일

“체류허가 났지만 취업, 건강보험, 사회보장 모두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인도주의적 사유에 따른 체류 허가자에게 취업을 허용하고,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와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임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00년 4월, 콩고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해 네 살배기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한 콩고인 여성 N씨는 난민신청이 가각됐으나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으므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N씨는 임시적 성격의 기타(G-1)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되지 않고 생활지원도 받을 수 없어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2007년 6월 인권위에 생존권 침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규정하여 부여하고, 취업도 허용하며, 내전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황급히 출국하여 자국 상황이 변화할 때까지 기약 없이 타국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적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긴급 혹은 일상적 의료보호 및 기본적 사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며, 제도가 정비되는 기간까지 상호 협의하여 임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9-6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상담 : 교도관이 흑인 수용자에게 “깜둥이는 싫다.”며 식사제공 거부

남편은 나이지리아인입니다.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남편이 보내준 일기에 “교도관이 ‘깜둥이 싫다.’면서 며칠간 밥을 주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사서와 교도관이 이름이나 번호로 부르지 않고 "야 새끼야" 등의 욕설로 부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거실 친구가 영치금으로 간식을 사줘 그걸 먹으면서 견뎌왔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다이어트 하니 잘됐다.”고 썼으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답변 :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도관이 피부색에 빗대어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밥을 주지 않거나 하대를 하여 모욕을 주었다면 피부색(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생명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침해 여부에 대해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7월 14일

외국인 조사 시 인종차별적 언행 예방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한모 씨는 “인도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끼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 신분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 기간 피해자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한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한 사실 등이 확인됐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 때문에 차별받는다느 느낌을 갖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9-7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상담 : 매 맞고 이혼소송 진행 중인데, 내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몽골에서 태어나 아들 2명이 딸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4년간 동거하며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2009년 10월, 14세 아들이 13개월 된 여동생을 괴롭힌 사건으로 가족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이혼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사건을 왜곡해 내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그냥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일로 마흔고생을 하니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과 양육비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답변 : 결혼 및 가정의 문제는 직접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인권위가 직접 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위는, 결혼이주여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최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해 정황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8일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 강화 △신상정보 제공 시 관련 증명서류 첨부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 포함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 범위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인권위에 의견조치를 요청해 오며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위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신매매 국제결혼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규제강화를 요청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등을 참고해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9-8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상답 : 한국 국적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용학교 입학을 불허합니다.

베트남 출신 부인과 혼인하지 5년 지났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 미용직업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허됐습니다. 국적까지 취득했음에도 외국인이라고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조사 가능합니다.

베트남 출신이라고 하여 미용학교 입학을 불허한다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여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신국가, 국적,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시설이용, 교통시설이용, 재화용역구입 등에서 차별을 당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화교는 금강산으로 수학여행도 못 가나요?

조키는 화교 3세로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가려고 모든 절차를 거쳐 강원도로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 측은 외국인 즉 화교 3세는 금강산에 갈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담임선생님까지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화교라는 이유로 금강산 수학여행도 갈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7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P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모기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나왔다고 중학교 전학을 안 받아주네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뒤 딸을 장인과 장모가 있는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약 10여 군데 학교를 돌아다니며 전학 신청을 했지만 모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상담 도중 필리핀에서 학교 다녔다는 것을 은연중에 무시하더군요.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녔어도 이렇게 무시했을까 싶어 화가 납니다.

답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부당한 처사라고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전학이 불허됐다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 혹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등교육과에 확인한 결과,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담자에게 교과부 담당자 의견을 전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해 상담할 것을 권유함.

보도자료 2010년 1월 25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중등과정 학습권 보장돼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총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집계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거주지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과정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현행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에세이 양윤정(전문상담원)

“더 우셔야 돼요... 더 우세요.”



그녀는 10년 전 파키스탄 남자와 결혼하여 8살 아들이 있다. 남편은 결혼 후 귀화하였고, 파키스탄을 오가며 소규모 무역상을 하고 있다. 그녀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열심히 살았다.

4월 초, 남편이 시장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을 사주겠다면서 아들을 데리고 동대문시장에 갔다. 시장 길을 지나는데 노점상 아저씨가 목을 했다. 아무 이유가 없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에게 노골적으로 꺼지라면서 목을 했다. 아들 보기가 민망한 남편이 왜 목을 하냐고 물었다. 아저씨가 뺨을 때렸다. 주변의 몇몇 상인들이 가세해 울매를 때렸다. 남편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울매를 맞았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상인들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했다. 경찰에서는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지금 단지 벌금이 억울해 인권위에 전화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남편이 왜 맞았는지 모른다. 노점상 아저씨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도 모른다. 왜 하필 남편이 화풀이 상대가 됐는지도 모른다.

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파키스탄에서 살았다. 아들이 크면서 교육문제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 살기로 했다. 많을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냥 세 식구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다. 방향을 잃고 무기력해졌다. 왜? 왜! 왜... 그녀가 소리친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가 없다. 파키스탄으로 떠나기로 했다. 수사가 끝나면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떠날 것이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이런 상처는 없었을 텐데... 그녀가 흐느껴 운다.

오래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하와이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비슷한 수모를 당했으리라. 러시아에서는 지금도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동양인을 살해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그 노점상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리라. 쪼들리고 쫓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쩌면 그 날도 공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해보이는 동남아시아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 것일까. 피해자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봉변을 당했을까. 그렇게 행패를 부린 노점상은 화가 풀렸을까.

이주노동자, 이주아동,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그리고 난민까지 이주민 100만 시대라고 한다. 건설현장에, 공단에, 농촌에, 식당까지 이주민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들을 그냥 ‘외국인노동자’ 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으로 대상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노동자 이외의 모습을 떠올린 적이 있었는가. 그래서 노동자나 종업원이 아닌 ‘손님’ 인 그를 보고 화풀이를 한 것은 아닐까. 결국 결혼하여 자녀 낳고 귀화한 사람도 생김새가 다르면 살아낼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프게 인정해야 하는가. 그녀가 미안하다고 한다. 누구에게라도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단다. 그녀가 울면서 소리 지르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는 흐느낌을 꼭꼭 누른다. 아니, 더 우셔야 돼요. 더 우세요. 그녀가 다시 흐느낀다. 파키스탄으로 떠난다고 상처가 지워질까. 8살 아이는 나중에, 나중에라도 엄마의 나라 한국에 오게 될까. 떠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다. 잊으라고도 말하지 못했다. 그냥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만 했다. 화장실에서 손을 오래 씻어도 그녀의 흐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다시 자리에 앉아 상담을 한다. 갈 길이 멀고, 가다보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니까!

에세이 윤민지

끝내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도자료에선 ‘에디오피아인’ 이었고 인터넷 기사에서는 ‘에디오피아인 A씨’ 였습니다. 2010년 5월 9일 일요일. 안산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열린 난민 순회상담 현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난민 인정자 중 최초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에디오피아인’ 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 겸 학과 행정조교인데요. 학과실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묻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란 질문을 그에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최초’, ‘1호’, ‘유명인’ 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는 데에 사무적인 감탄사를 내뱉고, 숙련된 미소만 지었을 따름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기다림 후에 한국 국적을 얻은 그를 ‘에디오피아인 난민 1호’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제게 그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일 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에디오피아인 난민 1호’ 와 함께 있던 한국인 활동가는 “그저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한국 국적을 빨리 주면 뭐 하나, 국적만 한국인으로 만들면 끝인가, 직업교육도 같이 이뤄져야 이 사람이 먹고 살지 않겠냐.” 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에디오피아인 난민 1호) 선생님께서 원하는 건 직업교육인가요?” 라고 묻자 “그렇다” 는 답이 왔습니다. 저는 노동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공연안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없이 했던 말,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와 같은 어조로요.

그 후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처절한 절규 — 그 한가운데 서서 심한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전 도저히 저보다 잘나고 월등한 사람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힘들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적어도 그들보다는 내가 여러 모로 나은 조건이니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 수 있겠지... — 그렇게 밀었어요. 제가 도로시가 되어 안산으로 향하는 회오리에 올라탔던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인 난민 1호’ 의 이름이 궁금하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사람들을 범주화하는데 익숙해져버렸다는 사실만

너무 아프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리저리 알아야지, 아무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는 해도 노력해야지, 공감해야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지,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것이 그나마 내가 가진 쓸모 있는 능력이야 — 오히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제 자신인 듯,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를 시험하지 말아달라면서 계속,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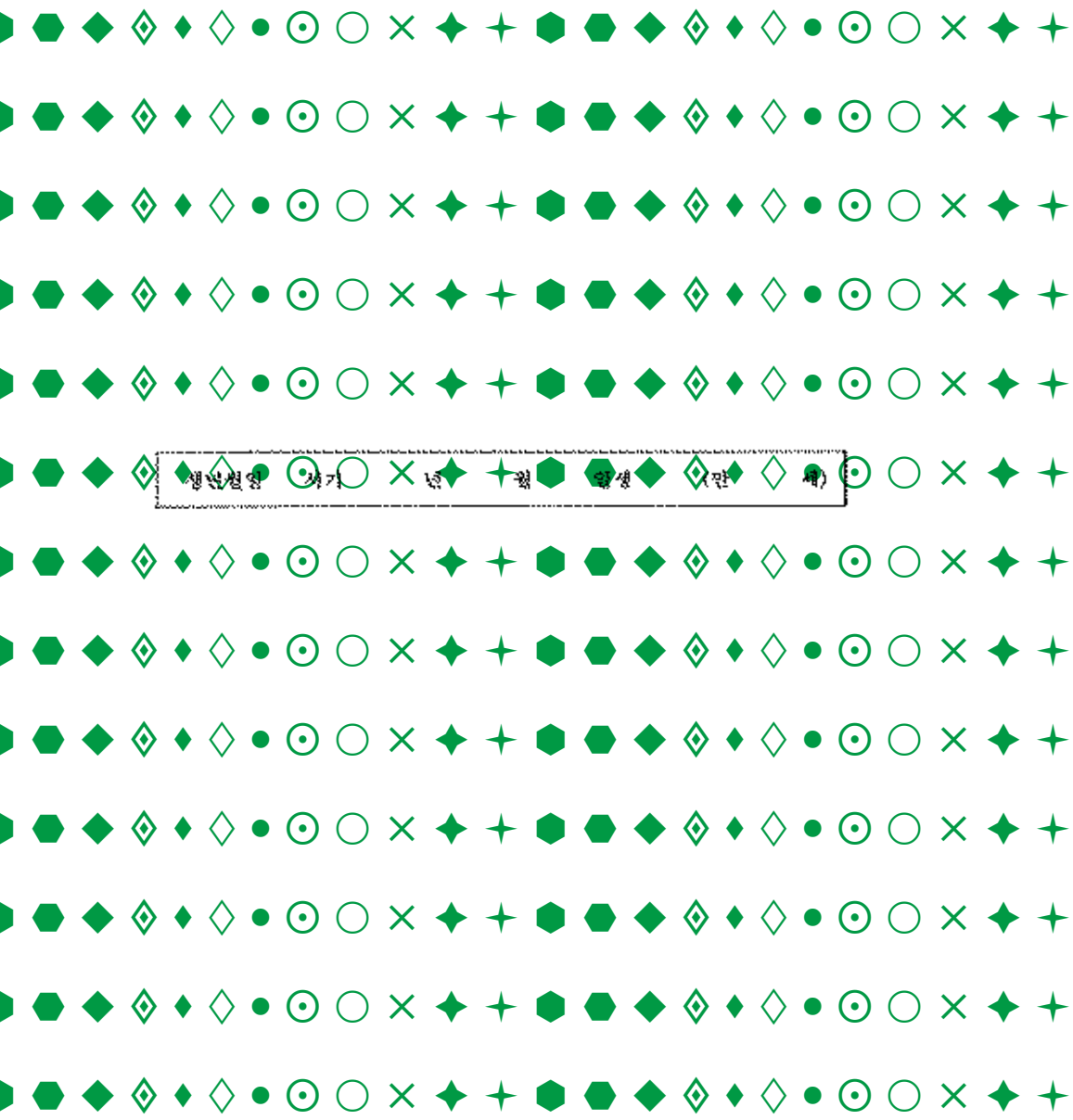
그때, 상담 받고 집에 간 줄 알았던 ‘에디오피아인 난민 1호’ 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말한 일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자리? 아까 제게 말했던 ‘직업교육’ 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진정 궁금하던 얼굴로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으니까’ 요. 난민을 돕겠다고 안산까지 간 자리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그냥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그러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른 상담원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름 모를 그와는 인사도 못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이유는, 단지 젊은 날 세상을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든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날 겪었던 예상치 못한 감정들은 저를 깊이 있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줄 토대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에디오피아 난민 1호’ 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으니까요. 고통이 이름을 대신해서는 안 되니까요.

윤민지 님은 인권상담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현재 회곡을 쓰고 있습니다.

10. 나이 차별



생년월일 (서거) 년 월 일 (생년월일) (서거) 년 월 일

“나이제한이
없다며
지원하라
해놓고
서류전형
후 ‘남자는
73년생 이후,
여자는 70년생
이후’라는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더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홈페이지 민원에서

생년월일 서거 년 월



10-1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

상담 : 노인은 고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해고했습니다.

만 69세입니다. 10개월 전쯤 ○○백화점 일산점에서 한 달 정도 주차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 상무가 ‘노인이 일하면 고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라며 해고했습니다. 구직을 위해 노동부에 갔다가 인권위에서 노인차별도 조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답변 :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상 차별의 판단기준은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다른 연령의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해고한다는 이유가 합리성이 있는지는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2010년 3월 21일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 고용차별 진정 크게 늘어”

연령차별금지법(이하 연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되는 고용관련 연령차별 진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나이차별 사건을 다뤘던 2001년부터 2009년 3월 21일까지 고용상 나이차별 진정은 322건이 접수돼 연평균 44건에 달했으나 2009년 3월 22일 연차법 시행 이후 2010년 3월 21일까지 148건의 진정이 접수돼 법 시행 전보다 연평균 진정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집·채용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던 연차법이 2010년 1월부터 모든 고용영역(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으로 확대된 이후 3개월 22일 동안 45건의 진정이 접수돼 올해 연령차별 진정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말까지 연령차별 사건은 모집·채용 분야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해 들어 모집·채용 분야가 48.9%로 떨어진 반면 정년과 해고 각각 13.3%, 퇴직 11.1%, 임금 6.7% 등이 접수됐는데, 이는 연차법 확대 시행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10-2 모집 시 차별



상담 : 주정차 단속요원 나이 제한은 부당합니다.

K 구청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업무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런데 6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63세지만 충분히 주정차단속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 형식적 기준으로 제한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특성이나 수행능력에 나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데 나이라는 형식적 기준만 가지고 제한했다면 차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연차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인권위에 진정해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문화관광부와 지자체 간의 연령제한이 다릅니다.

올해 66세로 ○○시청 공모 문화관광해설사 자원봉사에 응모하려고 했습니다. ○○시청은 65세 미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문화관광부는 70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데, ○○시는 상급단체보다 심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4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10일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 연령 제한 폐지”

A방송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2011년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부터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를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신인은 방송 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0-3 정년 차별

상답 : 같은 업무를 하는데 정년이 다릅니다.

56세로 H 공단에서 3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급 이하의 정년이 57세, 2급 이상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노사합의 하에 2급 이하 모두 60세로 정년을 합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올렸으나 이사회에서 반려하여 시정되지 못했습니다. 2급과 3급은 업무가 같은데도 정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권 침해입니다.

직급에 따라 회사에서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나이 차별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 했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을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은 일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사사례

사규가 법률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본부의 특수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씩 계약 갱신하여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매년 입찰을 통해 경비업체가 변경되는데 이번에 입찰된 업체는 사규 상 정년이 55세라며 본인을 해고했습니다. 계약직 15명 중 4명이 55세 이상인데, 4명 모두 해고했습니다. 특수경비업법 상 정년은 60세인데 법률을 무시하고 사규를 들어 55세 이상을 일괄 해고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2010년 5월 25일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적용은 차별”

진정인은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별정직의 업무능력 조기 쇠퇴나 근무 곤란이 입증되지 않고,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특정 직종에 불리한 처우 존속은 타당성이 없으며, 임금피크제 운영은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경영 여건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H공사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별정직관리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10-4 나이를 이유로 한 처우 차별

상담 : 똑같이 일하는데 휴가가 없습니다.

69세 택시기사입니다. 택시 회사 정년은 보통 59세입니다. 59세가 되면 일단 퇴사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되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취업합니다. 즉,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사표를 쓰게 하고 매년 새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행은 본인이 속한 택시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1년에 휴가가 15일 보장되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휴가도 없습니다.

답변 : 고용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인 경우, 매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고용 상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회사에서 동일 근무조건으로 근로하면서 정년을 근거로 해고하는 경우 인권위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법은 정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인권위법상 나이 차별은 좀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이 다릅니다.

보안경비업체에서 1년 반 정도 경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는 55세 이상에게는 110만 원, 54세 이하는 140만 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젊은이를 선호하여 젊은 사람을 뽑겠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달리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경향신문

2010년 03월 22일 월요일 012면 사회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 여전히 고용 차별

“나이 많아 해고당해” 진정 급증

인권위, 148건 접수…임금 불이익 등 다양화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12년간 경비원으로 일해온 최모씨(73)는 지난해 11월 말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 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를 인수하면서 비관 경비업체 측에서 '12월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것이다. 고령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최씨의 아들은 지난 1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와 10여년간 정을 쌓아온 아파트 주민들도 진정서를 넣어주겠다고 나섰다. 인권위에선 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업체에서 올해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약속해 사건은 합의 종결됐다. 최씨는 "아파트 건축할 때부터 12년 동안 주민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는데 갑자기 젊은 업체 직원이 와서 일주일 남짓을 주고 그

만두라니 황당했다"고 당사를 떠올렸다. 일단 계약을 연장키로 했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도 걱정이다. 최씨는 "아내가 관절 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재계약이 안 되면 돈 한 톨 나을 데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나이로 인해 고용에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로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인권위에 접수되는 고용 관련 연령차별 진정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고용상 나이차별과 관련한 진정 접수는 14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법 시행 이전인 2001년부터 2009년 3월21일까지의 연평균 진정(44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우선 시행되던 법이 올 1월 정년·해고·퇴직·임금 등 모든 고용분야로 적용이 확대된 후 3개월여간 접수된 진정사건은 45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올해 연령차별 진정사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보면 법 시행 이전까지 모집·채용 분야 진정이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올 1월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모집·채용은 48.9%로 낮아지고 정년, 해고가 각각 13.3%, 퇴직 11.1%, 임금 6.7%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법 시행 이후 인권위 조사 도중 합의로 해결된 사건이 24건에 달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가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 관련 연령차별 진정 건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년~2009년 3월21일)	322건 (연평균 44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9년 3월22일~2010년 3월21일 1년간)	148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분야별 연령차별 진정 사건 비율

모집 70건	(47.3%)
채용 29건	(19.6%)
정년 16건	(10.8%)
해고 13건	(8.8%)
퇴직 10건	(6.8%)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5건	(3.4%)
교육·승진배치·기타 2건	(1.4%)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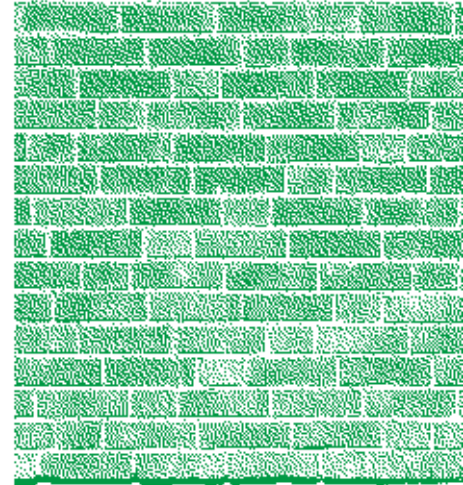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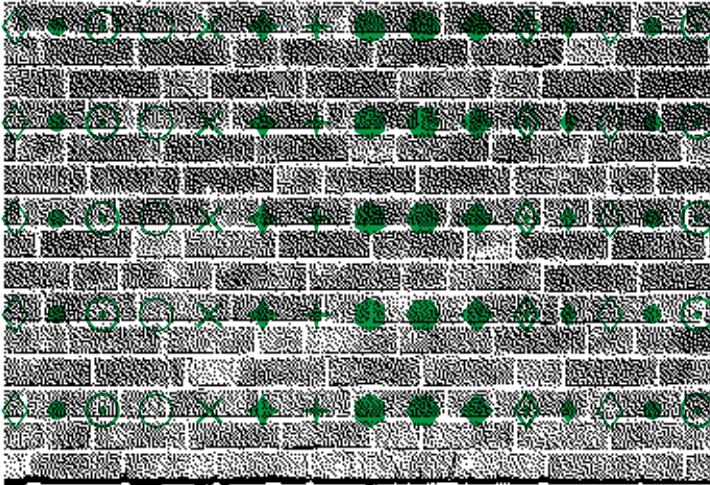
며 "올해도 다양한 고용현장에서 일어나는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 시행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사 기자 ro@kyunghva.com

정신병원

한국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
평균입원
기간 668일,
영국의 10배,
독일의 25배,
이탈리아의 50배

국가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에서



11-1 강박

상담 : 가벼운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서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남편은 중풍 환자이며 1급 장애인으로 지난해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한 달 후 면회를 가보니 넘어져서 다리에 가벼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치료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설날엔 남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양손이 시커멓게 변하고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모두 설 쇠러 가고 두어 명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독하다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 붕대 속 다리가 썩어서 쿨렁거렸습니다. 남편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요양병원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묶어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답변 : 조사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해 보아야 할 듯합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치료 미흡과 부당강박에 대해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노인요양병원이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당한 강박 관련 결정 2010년 10월 20일

주문	입원환자의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치료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것과,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엑스레이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팔, 다리, 가슴을 강박하여 4일 동안 보호실에 갇혀있고 식사도 네 끼밖에 주지 않았으며, 동료환자의 허락을 받아 담배를 피웠는데, 흠뻑다는 이유로 3일 동안 강박 당했다.
판단	피진정인이 강박과 관련한 제반 규정을 준수했다라도 강박 이유, 당시 환자상태, 방법, 대, 소변 및 식사 관련 사항 등을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정신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강박조치는 「정신보건법」 제46조 (환자의 격리 제한)의 규정 취지에 반하며,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제시하는 적용범위를 벗어나 헌법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1-2 외부교통권 제한

상담 : 2주간 가족에게도 전화하지 못한대요.

의사 상담도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됐고 며칠 뒤 주치의 회진 시 항의하자 주치의가 인권은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을 내기 위해 진정서 용지를 요구하니 사회복지사는 차트를 봐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입원 후 2주 동안은 전화사용을 금지해서 한통도 못했어요.

답변 : 의료목적 외 전화사용 제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료치료의 목적으로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제한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입원 이후 일괄적으로 2주간 제한 당했다면 환자들의 일반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률적 전화제한 관련 결정 2010년 6월 21일

- 주문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권익체계 및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입원환자의 전화제한은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환자의 개별 증상에 따른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만 최소한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환자들에게 권익체계를 적용하면서 진정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전화사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 판단 환자들의 면회나 전화사용 등을 제한하려면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 내용을 개별 의료기록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환자들의 면회와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도 환자 개인의 의료기록에는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관찰 사항 등을 기록하지 않고 피진정인이 임의로 마련한 병동규칙으로 대체했다. 입원환자들을 위한 의료목적에서 시행했다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서의 적절성이나 최소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진정인과 환자들의 일반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1-3 강제입원



상담 : 강제입원 된 남편을 퇴원시켜 주세요.

시아버님이 남편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차가 와서 막무가내로 남편을 실어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남편 면회를 요청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과장 의사는 보호자인 부친이 면회를 금지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병원이 배우자의 면회를 거절한 것은 부당할뿐더러, 남편은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입원 된 것이니 퇴원을 요청합니다.

답변 : 신체의 자유 및 외부 교통권 침해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신병원 입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사전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 진단 없이 병원에 강제로 입원되고, 배우자임에도 면회를 거부당했다면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외부교통권 침해 등을 판단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13일

장애인 정신병원 입원시킨 시설장 검찰고발 및 시설 폐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 담양 소재 A지적장애인 시설에서 △4명의 장애인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군청의 시설점검 시 이를 숨기기 위해 정원 외로 관리하던 4명을 광주 소재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시설의 시설장과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담양군수에게 A시설의 폐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설은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로 부부가 시설장과 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설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하며 정부보조금 사적 사용했습니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기려 시설생활인 4명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들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A시설 측이 배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세이 박상옥(전문상담원)

바다로 가지 못하는 어항 속의 호리



“사업상 술 한 잔 먹고 조용히 잠들었는데 깨보니 정신 병원이더군요. 새벽에 병원 직원 2명이 방까지 들어와 끈으로 양팔과 다리를 묶고 강제로 차에 싣고 갔어요. 저는 의사결정도 못 보고 바로 입원했습니다. 부모님이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만나지 말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빨리 퇴원시켜 주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씩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대부분 환자 본인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절박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환자가 아닌 담당 의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에게 약물이 듣지 않아 약을 바꾸면서 치료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치료약이 잘 들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환자는 옛날 친구를 만나 복수하겠다고 망상 증세를 보입니다.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고 부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6개월 입원 기한이 끝납니다. 지금 입원을 연장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의학적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의 입원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연장할 경우 30일 이전에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입원기간 중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법규는 기간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자칫 인신과 관련된 자의적 판단이나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바로 환자의 자유, 즉 인권과 관련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상담전화를 받으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정신보건법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심지어 의사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한 규정의 목적을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사의 사전진단을 거쳤는지, 입원 당시 보호자 2인의 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최소한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정신병원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각계 전문가들의 공동참여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정신장애인과 시설 밖에서 공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예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한 재활과 치료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막 눈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조국 인권위원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강의를 통해 인권의 토대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호리’라는 물고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호리의 몸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바다로 나갔으면 합니다.

‘호리’라는 물고기는 어항 속에서 10mm밖에 크지 못합니다. 연못에서는 50mm, 강물에서는 150mm, 바다에서는 600mm나 자랄 수 있습니다. 호리는 환경에 따라 생명의 잠재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갇힌 자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11-4 강제노역

상담 : 입원 환자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겨우 커피 한 잔 줍니다.

입원 중 보호사가 환자를 때리는 걸 보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호사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면서 김○○에게 욕설을 해 대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보호사가 환자에게 욕과 폭력을 일삼는 행위를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게다가 병원은 화장실 청소, 병실, 복도 모든 청소를 환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시킨 후 커피 한 잔씩 줍니다.

답변 : 강제노역 등을 진정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욕설, 폭행, 강제노역, 독방 감금 등에 대해 인격권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하시면 우리 위원회가 조사 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노역 관련 결정 2010년 6월 21일

- 주문** 피진정인에게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작업은 병원 직원 등이 직접 수행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한다.
- 진정요지** 입원환자 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등 작업을 강요했다.
- 판단** 작업치료는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작업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해야 하므로,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 청소를 시킨 것은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사회복지 및 직업재활에 적절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 세탁, 청소, 배식, 등의 작업은 병원 측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 대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업무라는 점, 피진정인은 세탁, 청소, 배식 등 병원 시설 관리를 전부 입원 환자들에게 맡겨 처리하고 있다는 점,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환자들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현재 운영하는 작업치료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 및 직업재활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병원 시설 관리를 위해 환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1-5 가혹 행위

상담 : 몸을 강박하고는 이불로 덮어씌웠습니다.

의사와 상담한 뒤 다른 사람과 같이 올라가려고 기다리는데, 직원이 “여기 있지 말고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주임이 먹살을 잡고 10층 격리실로 데려가서는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지 않겠다고 했더니, 직원 3명이 들어와서 제 사지를 붙잡고 무릎과 발로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수없이 쳤습니다. 저를 묶고 이불을 그냥 덮어씌웠다가 약 2시간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후 왼쪽 가슴이 계속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깨와 가슴 쪽에 타박상이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임은 “나는 그런 일 깨끗이 잊어버렸어.”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더군요.

답변 : 환자 폭행은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책임진 정신병원에서 직원이 환자를 폭행하고 과도하게 강박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물고문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1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병원장 ○○○는 이유도 없이 내담자를 고문실에 넣고 양팔과 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곤 호수를 끌어대 차가운 물을 계속 끼얹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런 식의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젖었고,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지금도 현상이 있을 것이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러 들어간 정신병원, 기저귀 채우고, 묶고 폭행...

6년간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자살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직후 건장한 직원 3명이 기저귀를 채우고 묶은 뒤 폭행했습니다. 물도 주지 않고 화장실도 못 간 채 3일간 감금됐습니다.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하면 기저귀에 싸라고 하더군요. 무력하게 폭행당하고 갈혀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퇴원한 지 며칠 지났지만, 너무 분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보호사의 폭행 관련 결정 2010년 7월 19일

주문	○○○○병원장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군수에게 본 진정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다른 환자와 복도에서 병실 청소 문제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고, 이후 보호사 사무실에서도 뺨을 1회 폭행했다.
판단	피진정인의 신분이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사라는 점,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진정인이 흥분한 상황이었다면 보호실 격리를 통해 안정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폭행하여 진정인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에 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1-6 환자정보 제공

상담 : 보호자에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진료기록을 제공해도 되나요?

정신병원 의사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라면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우편으로 우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요청받은 것이라 그 분이 환자의 보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인권위에서 발간한 인권교육교재의 사생활보호 항목을 보고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문의합니다.

답변 : 환자 동의 없는 외부 유출은 기본권 침해입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관한 기록이고 직계가족이 요청한 것이라고 해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한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서도 환자에 관한 기록 유출을 금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의에 의해 보건복지부령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김소연(전문상담원)

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당신네가 우리 아들 퇴원시키라고 했다전서요? 당신네가 뭔데 의사가 입원하라는 환자를 퇴원시키라는 거요?” “내가 죽어 아 갔소?”

분노에 찬 노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른다. 그 절박함 앞에 “정신보건법이 이렇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저렇다.” 라는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유서라도 남겨야겠느냐?” 는 협박 아닌 협박 앞에서 상담원은 말문이 막힌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했으니 도와 달라.” 는 요청에는 답이 술술 나온다. 하지만, 입원 환자의 가족이 절규할 때는 숨을 죽인다. 내담자의 하소연을 들을 때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그러다 문득 ‘나보고 어찌라고?’ 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연 가슴이 먹먹해진다. 노인은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은 아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한참 울분을 토한 뒤에야 안정이 되었는지 좀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고 묻는다. 그에게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라고 답한다.

상담원은 노인의 아들 이름으로 진정 접수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날리는 멘트는 제법 그럴 듯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아들의 이름으로 접수된 것은 없으니 무슨 영문인지 설명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 퇴원심사청구와 인신보호제도가 그것이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므로 계속 가두어 둘 수 없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대안이란 게 있나? 환자 본인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한 병원 아니면 기도원에 끌려가 ‘올드보이’ 처럼 갇힐 뿐이다. 어렵사리 한 고비를 넘어도 악순환은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다.

환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전문상담원으로서 안내할 수 있는 대안이란 것이 정신보건센터와 정신건강 상담전화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고 괴롭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향상되면 당연히 그 가족의 인권도 향상 된다. 상담원이 가족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다.

12-1 시험 차별

상답 : 히브리어를 모르는 공익요원에게 히브리어 시험 대필을 맡긴 신학대학

남편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 1급으로 ○○신학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작년 6월,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담당 교수가 히브리어를 모르는 공익요원에게 대필을 의뢰해 히브리어 시험을 못 보고 말았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해 졸업 전 재시험을 봐야 하는데 히브리어 담당 교수는 외국에 나간 상태입니다. 지도교수는 “담당 교수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졸업하지 못하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변 : 보조인력 및 편의 제공은 장차법상 의무조항입니다.

장애인이 시험을 볼 때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제1항 5호에 의하면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시험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보조인을 제공한 것은 장차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장애인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사사례

토익 시험장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급 지체장애인입니다. ○○대학교에서 토익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위원회가 시험장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학교도 한국○○위원회도 나라라 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20일

장애인 대형 특수면허시험장을 전국 하나만 운영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 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장차법 제19조 제7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1종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용 차량을 전국의 주요 거점이 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추가로 배치 운영하는 것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 대형특수면허시험장 확대 운영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2-2 통신정보 접근권

상답 : 청각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이용을 거부합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연체로 거래 정지됐습니다. 돈을 입금한 후 통신 중계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카드사에 정지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본인이 직접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이 통화할 수 없으면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청각장애인이라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 : 장차법 위반 및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장차법 위반 및 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휴대전화에 음성전환 기능을 넣어주세요.

○○사의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전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도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유·무료를 알려주는 표시는 음성전환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회사에 물어보니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유료와 무료 여부를 선택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음성정보 기능이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24일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카드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해 줄 것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A카드사 측은 음성으로만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해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의 유형과 상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상답 : 손가락을 못 쓰는데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철도공무원인데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가락 전부를 잃었습니다. 그 후 집표와 철도건설목 지도 및 내근 등을 해왔습니다. 한 달 전 역장이 바뀌었는데 다른 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곳은 운전 취급 및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발령을 낸 것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습니다.

답변 : 장애인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하면 안 됩니다.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인사 배치한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차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동법 제2항에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사례

면접까지 보고 채용되었는데 장애인이라는 한마디에 해고됐어요.

지체장애 5급입니다. 2010년 5월 ○○○에서 면접을 보고 14일 합격통보를 받아 17일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첫날 회사에서 개인신상정보를 작성하라고 하여 지체장애 5급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자 인솔자가 채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인권위 조사를 요청합니다.

보도자료 2009년 12월 14일
정당한 사유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진정인을 해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답 : 장기 기증을 강요합니다.

지적장애 2급입니다. 올 봄 ○○보살 할머니에게 집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잘해줘서 친해졌고,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사회 회장 최○○과 친합니다. 최○○는 콩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내담자에게 콩팥 검사를 강요했고, 서울○○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이식 적합판정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최○○에게 콩팥을 기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할머니가 수소문하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납치하려고 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콩팥을 기증하기 싫습니다. 콩팥기증 강요를 막아주기 바랍니다.

답변 : 본인의 완전한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신체 및 장기 이식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완전한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임의로 신체장기 일부의 기증을 강요하는 부당함과 관련 장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6월 22일

장애인 금전착취 및 괴롭힘 가한 시설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모 씨(인천 소재 장애인단체 대표)가 장애인 비인가시설인 A시설장을 상대로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금전착취, 이동 및 거주 자유 제한, 강박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피진정인이 장애수당 등 금전 1억 1,3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재산권 행사 배제' '금전적 착취' 및 「형법」상의 '횡령' 행위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①금전적 착취(횡령) 및 장애수당 등 3억 2,400만 원의 부당 사용 ②시설 1층 출입문에 장애생활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고, 장애생활인들의 퇴소 및 외부 출입 제한 ③장애생활인들이 기저귀를 뜯고,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허리와 손목을 묶은 행위 등에 대해 '장차법상의 거주·이동의 자유 제한 및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게 철저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장애생활인들에 대한 장애수당 등의 금전적 착취 및 부당 사용, 이동 및 거주 자유 제한, 부당한 강박행위 등과 관련, A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에게 2년간의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반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상담 : 섬에서 강제노역과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남 ○○에서 약 18년 동안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최○○이 양○○(이하 피해자)를 20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표현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해자는 그동안 해남에서 육지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폭행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 거의 빠지고 시력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답변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임금 착취 및 폭행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우리 위원회에 진정 후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진정은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2010년 04월 09일 금요일 A12면 사회

‘장애 차별’ 진정 8배 경총

차별금지법 2년... 인권위 ‘차별 진정’의 절반

양모(여·29세)씨는 2008년 11월 실기 면접을 거쳐 실력으로 합격한 서울소재 A홍보대행사에 출근 첫날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왼손이 불편한 양씨를 본 사장이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댔다. 그것도 양씨가 퇴근하자 전화로 일방적으로 했다. 단지 장애를 이유로 해고된 양씨는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A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양씨가 진정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 인권위가 복직 대신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회사는 곧바로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이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8년 4월 11일 취임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를 비교할 때 그렇다. 법 시행 전에는 연평균 90건이지만 시행 후에는 695건이다. 법 시

●장애차별금지법 이후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추이

차별 사유	법 시행 전(2001.11~2008.4)		법 시행 후(2008.4~2009)	
	진정(건)	비율(%)	진정(건)	비율(%)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3,878	86.0	1,388	50.0
장애	630	14.0	1,390	50.0
전체	4,508	100	2,778	100

행 후 2년간 접수된 차별 진정 2,778건 가운데 장애 관련은 1,390건. 무려 절반의 비중이다. 법 시행 전만해도 14%(630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폭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법 시행 전만해도 장애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았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었다.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해도 피진정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장애인들도 인권위 진정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피해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인권위 권고를 듣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다. 명령을 듣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인권위의 밀발이 피진정인에게 먹히게 됐다. 이런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된다. 지난해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417건이

고 진정인이 구제받은 경우는 절반(225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167건(74.2%)은 인권위 결정이 나기도 전에 피진정인이 두 손을 들었다. 진정인과 합의를 보거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줬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차별은 진정 자체가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장애 차별 진정내용과 관련, 신용카드 발급과 금융서비스 등 재화·용역 이용불만이 209건(1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괴롭힘 195건(14.0%)과 시설물 접근권 189건(13.6%) 등의 순이었다. 감각 및 지체장애인은 시설물 접근 등 사회적 활동 수행에 대한 제약에 대해, 지적발달 장애인은 지적 인지도가 낮다는 편견과 괴롭힘에 따른 진정을 많이 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상답 : 지하철 스크린도어 개폐 음성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8호선 전철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환승 시 스크린도어 개폐 음성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 위험과 불안을 느낍니다. 며칠 전 지팡이가 스크린도어에 끼어 부러졌습니다. 지하철에 전화해서 음성안내를 원한다고 하니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아예 8호선 전체에서 방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철 직원은 인권위에 진정하면 곧바로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 : 안내방송을 짧게 해서 민원을 없앨 수 있을 듯합니다.

교통시설 이용 시 합리적 사유 없이 안내방송을 하지 않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장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 소리를 줄이거나 길이를 짧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민원을 없애고 시각장애인 이용에 제한을 주지 않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사례

버스 기사가 장애인은 탑승이 안 됩니다.

1급 장애가 있습니다. 수유동 국립재활원 앞에서 성신여대를 가기 위해 000번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 기사는 버스가 성신여대로 가지 않고, 장애인은 안 된다면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000번은 분명히 성신여대를 지나는 버스임에도 거부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2009년 10월 15일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역 동부광장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과 △○○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최소 9분에서 최대 14분이 소요되어 비장애인이 지하보도를 통해 횡단하는 것에 비해 최소 10배에서 최대 16배 이상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일부 보행로의 경우 보도의 유효 폭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5cm 이상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습니다.

12-7 보험 가입 차별

상답 : 장애인 택시기사인데 운전자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2001년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고 빨리 걸을 때 어색한 정도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L보험과 S생명에서 장애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사고 전부터 가입한 D화재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비장애인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답변 :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하겠습니다.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됐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L 보험, S 생명, D화재를 피진정 기관으로 진정 접수했습니다.

유사사례

심박동기 부착했다고 암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2008년 부인이 A사의 평생보장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부인은 맥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이 있어 심박동기를 부착하고 생활합니다. 이 사실을 가입 당시 알렸고, 보험사에서는 괜찮다고 하여 가입했습니다. 2개월 정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됐다가 부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심박동기 부착자는 신규, 부활 모두 가입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것은 심장계통 암을 제외한 암보험입니다. 심박동기 부착을 이유로 전혀 관련 없는 암 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10월 5일

장애등급 근거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보험사 대표에게 △피해자들의 보험 청약 건을 재심사할 것과 △담당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부합하게 보험상품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의 보험인수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상품이 할증불가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2-8 장애인 선거참정권

상답 : 점자 선거공보 면수를 일반 공보와 똑같이 하는 건 차별입니다.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자 형 선거공보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자는 확대나 축소가 어려워 일반문자보다 많은 면을 차지합니다. 결국 동일한 면수로 제한하면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므로 차별입니다. 이전 선거까지는 점자 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이 없다가 올해부터 면수를 제한했습니다.

답변 : 동일한 내용을 게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점자 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면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장애인은 선거의 의미를 모르다며 투표하지 말래요.

시각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시각장애인 7명과 담당교사 3명이 동행하여 투표장에 갔습니다. 차레가 되어 접수하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측 직원이 오더니 인지능력이 안 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투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며 주변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동물원 원숭이처럼 사람들 시선을 한눈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당교사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참관인과 생활인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담당교사도 동행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결국 2명을 제외하고 5명만 투표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화가 납니다.

정신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고자 전화했습니다. 병원 측에 문의했더니 아직 선거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선거 후보자들의 웹 접근성 너무 미비합니다.

인천시장 ○○○ 후보와 ○○○ 후보의 사이트 접근성은 매우 낮아서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음성합성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메뉴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 후보의 홈페이지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자막 제공 배려는 있었으나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습니다. 경기지사 ○○○ 후보의 사이트는 대부분 링크, 버튼, 플래시 등의 그래픽으로 구성돼 있거나 비표준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31일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 상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 기간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예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12-9 장애인 교육권

상답 : 장애학생이 몰리면 안 된다며 입학을 거부합니다.

아이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중학교 3년입니다. 2학년 때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지망했습니다. 지망한 학교의 교장, 교감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교감을 만났는데, 입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도교육청에서 1, 2, 3지망을 쓰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썼습니다. 장학사는 “장애학생이 몰려오면 과밀학급에서 지내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학급을 늘릴 수는 없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중학교를 함께 다닌 4명이 모두 ○○고등학교(일반고)를 지망했습니다. 장학사는 또다시 “교육법에 의해 주거지역과 가까운 학교로 가야 한다.”며 집에서 가까운 기계공고를 권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통합수업을 받았습니다. 비장애 학생들과 교차수업을 받아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장애학생들이 기계공고를 가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실습시간 동안 계속 도움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는 특수학급의 의미만 있으며 실질적인 통합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학사는 “장애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가나 수업을 제대로 못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답변 : 입학 거부나 전학 강요는 불가합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통합교육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이 이뤄져야 교육에서의 편의가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차법 제13조 제1항에서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의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의무교육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은 중도중복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다닙니다. 근처에 ○○학교(뇌병변장애 학교)가 있으나 딸은 중도복합장애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보통은 교사가 집으로 방문해 순회교육을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학교육을 받습니다. 딸은 학교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딸을 보고 학교에 중도중복장애반 시설을 요구했으나 교실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아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귀영화를 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싶은 뿐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그 당연한 과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술고 특수학급 개설거부 관련 장차법 위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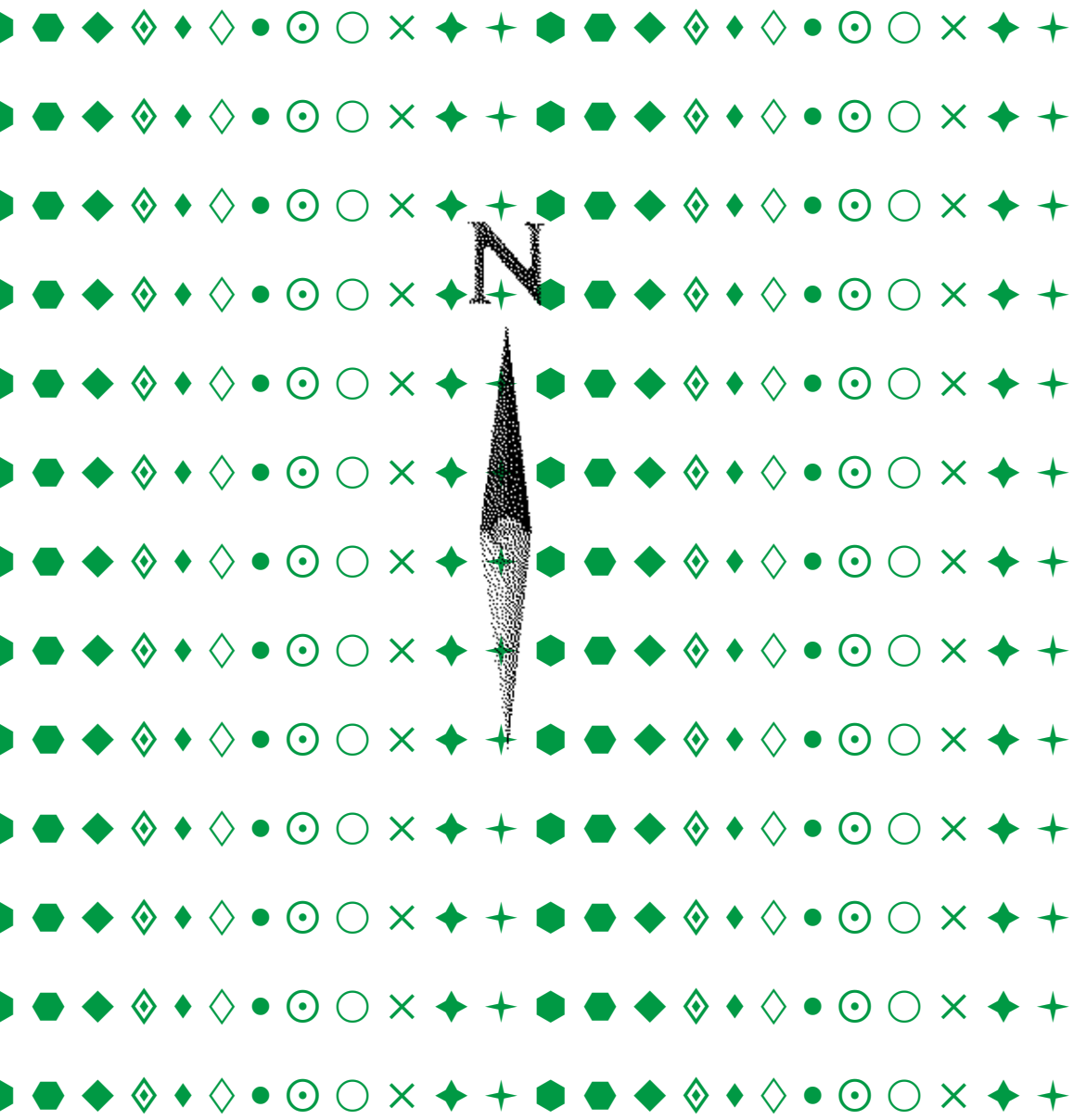
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여중에 다닙니다. 딸은 미술을 선호하고 예능에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다. 방과 후엔 미술반에서 학습하면서 예술고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딸이 진학을 원하는 ○○예고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정배치학교 범위에 예고나 외고 등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에 문의했으나 향후 개선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유사사건 위원회 합의종결 2008년 11월 17일

진정요지 ○○대학교가 장애인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 합의내용
1. 다음 학기부터 지정도우미, 학습도우미, 활동보조도우미 등의 운영 및 선정방법을 개선한다.
 2. 수강신청할 때부터 학과별 담당교수로 하여금 수업지원 및 시험 평가방법을 개발하도록 한다.
 3.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4. 학교 측과 장애인 유형별 학생대표는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협력한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조치계획을 수용하고 진정을 취하며, 피진정인의 장애인 학생지원 및 권리보호에 적극 협력한다.

3. 북한인권



“외래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렵다.
실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착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도우미 간담회에서



13-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상담 :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뺐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됐네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2009년 9월 휴대전화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입사 이후 급여에서 매월 4대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떤 일 때문에 보험공단에 가입 여부를 확인했더니 보험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장에 항의했더니 사업장 측이 당황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취업 장려 대상으로, 근로기간 6개월이 지나면 본인을 채용한 사업장에 2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답변 :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일 경우 강제 가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출신지역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혹은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신고를 접수한 센터나 공단에서 강제로 가입 처리하고, 사업장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담 : 다단계 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시장경제 체제나 실물경제에 대한 상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노려 마치 단기간 또는 평생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과대선전을 하며 북한이탈주민을 등쳐먹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탈북자들은 심각한 경제생활 타격을 입고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답변 :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십시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불법 다단계업체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했다면, 이는 사기사건에 해당하며 경찰에 고소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하나원에서 적절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제도개선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에서 검토한 후 정책권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 하나원을 퇴소하면 치료비가 없어 걱정입니다.

딸(19세)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딸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 달 후면 퇴소합니다. 딸은 현재 ○○대병원에서 치료 중(혈관염, 위궤양, 당뇨)입니다. 하나원을 퇴소한 뒤의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답변 : 하나지원센터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원 퇴소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십시오. 거주지 인근의 하나지원센터 직원에게 주민센터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치료비지원 방법의 모색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통일부에 이송 처리함.

유사사례

하나원 교육은 남한 가정의 걸모습만 동경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원 교육과정에 남한 가정체험으로 1박2일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 가정의 걸모습만 동경하고 앞으로 겪게 될 생존경쟁의 치열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참전용사인데도 군 노무자는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06년 탈북했고 2007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남편은 6·25 당시 14살이었는데, 나이가 어려 강원도 군대에서 짐과 밥을 나르는 허드렛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포로로 북한에 압송됐다가 2003년 탈북했습니다. 2009년 참전용사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군포로일 경우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남편은 군노무자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청과 국방부는 군 노무자의 경우 법 규정이 없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3-2 탈북 여성

상답 : 탈북 여성들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여성결혼 중매회사의 광고가 지하철에 뿌려지면서 가족과 떨어져 외로움을 타는 탈북 여성들이 걸려드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몇몇 결혼정보업체는 150만 원의 알선료를 챙기면서 남성 회원들에게 탈북 여성들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에 대한 성 상품화와 인권 침해가 고스란히 탈북 여성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정보를 남성회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인권위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2월 22일

인권위, 탈북 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9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탈북 여성들이 자존감을 되찾고 사회적 주체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탈북 여성들이 억압을 피해 또는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 난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체포·송환 및 구금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 제3국이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정부는 탈북여성이 입국 후 국적을 획득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전반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북 여성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취업 장려금 제도를 비롯해 탈북여성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지원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탈북 여성들이 겪었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넷째, 탈북 여성들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탈북여성들 사이의 공동체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탈북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범죄 및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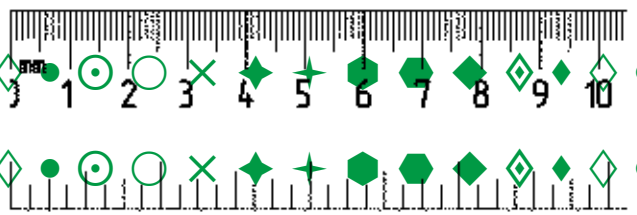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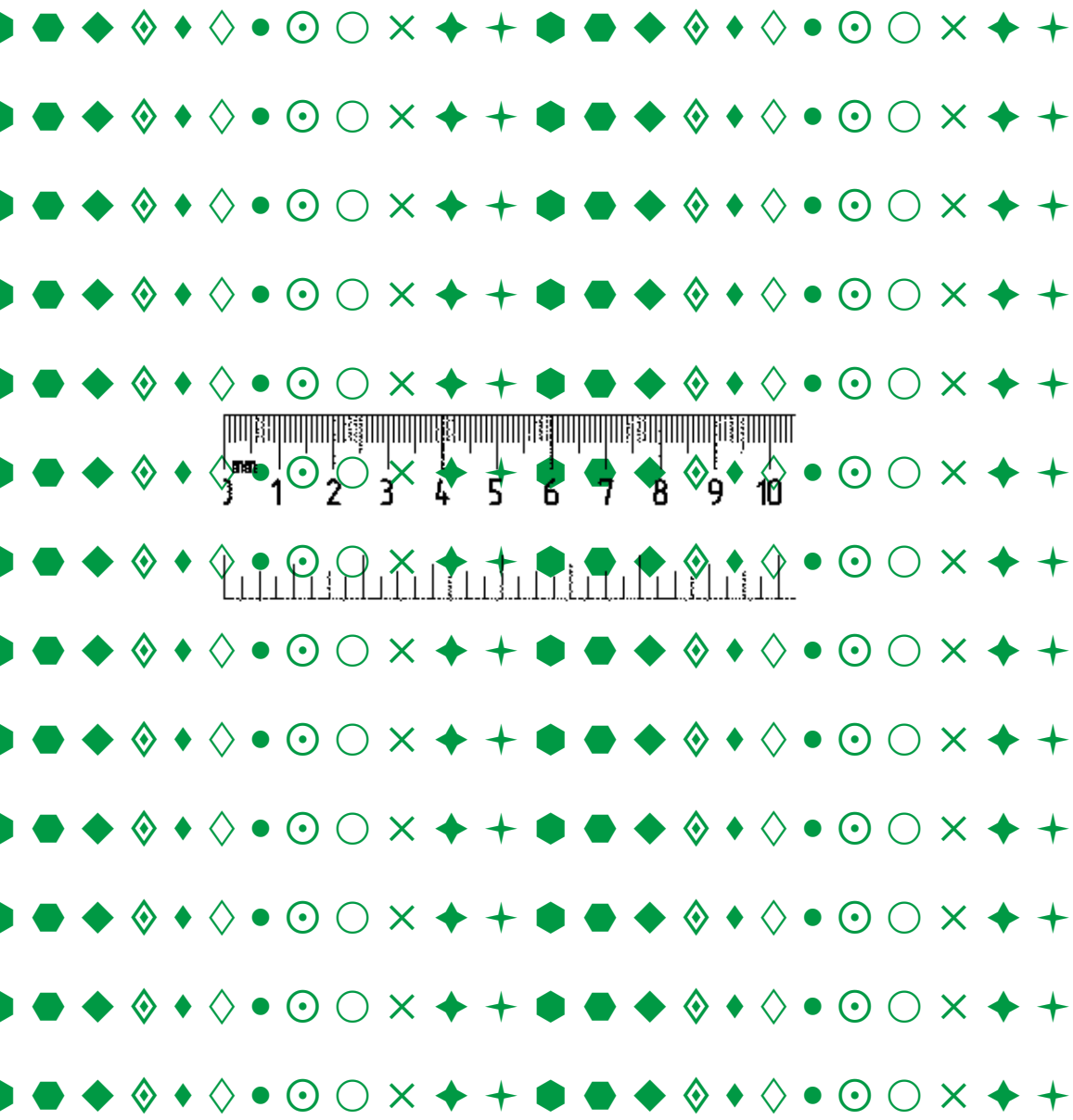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향후 사업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여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2005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2006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 직업실태를 중심으로(2007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2008년)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09년)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2009년) 등을 실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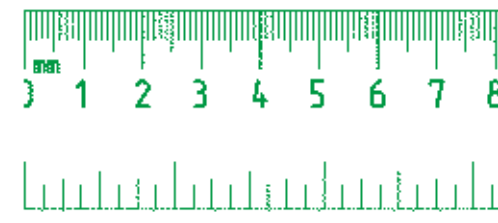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양적 확대,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정치변동 및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인권 정책 및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자·양자·국제기구 등 행위자별 대북인권 정책 로드맵과, 북한주민, 탈북자,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들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연구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14. 차별하는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상답 : “얼굴이 왜 그렇게 생겼는가?”

며칠 전 제지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전에 부장과 현장을 돌며 지게차와 컴퓨터 작동 시범을 보였고, 부장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장 면접을 보는데 들어서자마자 사장이 얼굴을 보며 “눈이 왜 그렇게 빠뚫어져 있어?,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느냐?”라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뽑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그 자리에서 채용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입니다. 우리 인권위에 진정해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7년 1월 10일

“채용 시 자격요건이던 키·몸무게 제한 폐지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11일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2005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약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건설교통장관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는 ‘철도공안직 불합격 판정기준’을 폐지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 철도공안직 공무원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체력측정 검사 항목을 개발한 후 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8년부터 신규채용 시 체력측정 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이미 위 권고를 수용하여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을 완전 폐지하여 법무부예규 제287호(1984.12.14) 「공안직(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이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으로 개정되었으나,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은 국민평균 신체조건과 경찰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 제한은 불가피하며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치안여건이 성숙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신체조건 완화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해 왔습니다.

상답 : 대학별 순위를 매기고 그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시 장학회에서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면서 학교별로 다른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학별 순위를 정한 후 그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학력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업 연한 또는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 및 이수 여부만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란 학력에 따른 차등 대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개인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또는 무관하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학회에서 대학별로 다른 점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공공기관의 학력차별을 바로잡아 주세요.

○○도의 정보통신기기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기술자를 보냈는데 기록관이 "○○도를 무엇으로 보고 고졸 사원을 보냈느냐?"라며 다른 사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보낸 직원은 비록 고졸이지만 해당 분야 10년 차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을 바로잡아 주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1일

“예비장교 후보생 선발 시 전문대 재학생 배제는 학력차별”

A대학 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장관이 2009년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대학 재학생들이 미리 복무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조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자녀 학교 서류에 부모 학력 기입란 대학 안 간 사람한테 “몇 학번이나”

사회적 편견이 무서운 고졸들

공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29)씨는 입사 초기 생각지 못했던 난감한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공이 뭐냐”고 묻기에 무심결에 고교 때 전공인 ‘전자과’라고 답했다가 “어느 대학이냐”는 질문이 이어져 말문이 막힌 것이다. 이씨는 “요즘엔 처음부터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 했다고 말해 오해 살 일은 없지만 그때부터 대학이 끊기고 어색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쓴 박대성씨가 체포됐다. 서울 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미네르바는 공고를 나와 전문대를 졸업한 30대 무직자’라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닐 것”이란 주장이 수없이 올라왔다. 공고 나온 백수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공고 졸업 후 천안의 한 반도체 장비업체에 다니는 최영민(31)씨는 당시 마음앓이를 심하게 했다. 그는 “검찰과 네이트코 모두 공고를 나오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식의 사회적 편견이 고졸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다”고 말했다.

학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제도만이 아니다. 무심코 건네는 말 한 마디에 사회적 편견이 숨어 있다. “몇 학번이냐”거나 “전공이 뭐냐”고 묻는 게 대표적이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런 사회 분위기가 더 속상하다. 중앙일보가 전문계고를 나온 직장인 특별과정인 중앙대 글로벌지식학부와 건국대 신산업융합인재양성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51%)이 ‘대학

졸업을 전제로 한 대학이 오갈 때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다.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편견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도 고졸이라는 사실을 숨긴다. 본지는 고졸로 대기업에서 임원·관리자급에 오른 사람들을 접촉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거러처 등 외부에 알려질까 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속앓이를 털어놓으면서도 이들을 밝히기는 꺼렸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 외식사업부에서 일하는 K씨(30)는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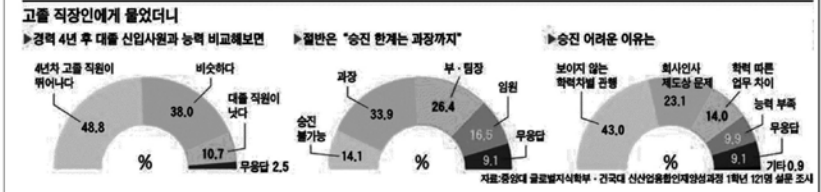
“거러처 등 외부 알려지면 안 돼”
대기업 임원도 ‘고졸 학력’ 숨겨
정부 행정인턴에 고졸은 없어
대졸보다 ‘명퇴’ 당할 가능성 커

가 원치 않는다”며 익명을 요구했다. 각종 서류에 있는 학력란은 고졸자들을 고졸스럽게 하는 또 다른 관행이다. 특히 자녀의 학교에서 부모 학력을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다.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최모(53)씨는 “아이들이 학기 초마다 창피해했다”며 “부모 학력을 알아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할 때 학생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하다’며 부모 학력을 조사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력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정부조차 무심결에 차별 관행을 부추긴다. 지난해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한 행정인턴은 대졸이 요건이었다. 공무원과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학력 제한을 없앴지만 경직 인턴에게 대졸 학력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하자 부랴부랴 고졸 이상으로 수정했지만 고졸자 중 행정인턴으로 뽑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명예퇴직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대졸자보다 크다. 보통 고졸자들이 대졸자와 같은 직급에 오르려면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하다. 같은 직급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을 명퇴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투자증권의 일부 고졸 직원은 2005년 이런 기준에 따라 명퇴 전 단계인 특수영업팀으로 발령을 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에는 2004년 이후 학력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진정이 190여 건이나 제기됐다.

한·일 양국 회사에서 모두 근무해 본 심영주(27)씨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늘 고졸 꼬리표가 따라다녔지만 일본에 와 보니 아무도 학력을 인식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경총 이광호 책임전문위원은 “학력 차별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보니 미국·유럽에선 그런 개념조차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김은미 차별조사과장은 “장애나 성별·국적 차이와 달리 학력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 지출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최근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편견이 더 심해졌다”며 “사람을 능력과 자질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3 출신 학교 차별

상담 : 국가대표 코치가 자신과 다른 학교 출신을 차별합니다.

아들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국내 쇼트트랙 대표선발전에서 4위를 차지했는데 올림픽에는 5등 후보로 나갔습니다. 선발전에서 5위를 기록한 선수와 코치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다른 학교 출신인 아들을 차별한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년간 땀을 흘렸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코치 나름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출신고교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는 2009년 1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11월 20일

“출신고교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 차등부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데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A중학교장은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중학교는 2009년 1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면서, 평준화 지역인 광역시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100%를 반영하고, 비평준화 지역인 인근 도 소재 고교 졸업자의 성적은 70%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고등학교 성적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채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각 학교장의 재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서류전형에서 일률적으로 불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출신지역 및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4-4 혼인 여부 차별



상담 : 이혼을 이유로 입사지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33년 운전했고, 18년 무사고에 15년간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고속버스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려고 영업소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람은 원서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혼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원서를 받아 준다고 합니다. 이혼 여부와 버스운전 능력은 별개인데 이혼했다는 이유로 채용할 수 없다는 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업무 연관성이 없다면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도 회사에서 채용을 거절했다면 혼인경력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입니다. 진정 접수할 경우 우리 위원회는 회사 측에 채용 불가 사유에 대해 자료해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이 제시한 사유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면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14-5 병력 차별

상담 : 병력을 이유로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은 국립대 1학년이며 기숙사에서 생활 중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단체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진 퇴관하라고 합니다. 의사는 B형간염은 혈액에 의해서만 전염되기 때문에 단체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B형 간염이라고 해서 자진 퇴관을 요구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닌지요?

답변 : 의학적 판단이 있다면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데도 간염이라는 이유로 퇴관을 강요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채용 거부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유사사례

출산 이틀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했습니다.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산후조리원에서 활동성 간염이라는 이유로 퇴실 당했습니다. 산부인과에 1년 가까이 다니면서 각종 검사를 해왔고, 병원 측은 출산과 동시에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산모와 아기가 쫓겨나 방향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의사에게 물어보니 활동성 간염은 전염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 2009년 6월 17일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불합격은 차별”

진정인 김모 씨는 “대졸신입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입사원 채용 시 태도점수가 신체검사 이후 부여된 점수라는 점 △신체검사 불합자 발생으로 추가 신체검사 대상자가 된 응시자에게 진정인보다 2배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진정인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종합소견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건강보유자로 직장이거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고, A은행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14-6 종교 차별



상담 : 회사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회사에서 월요 예배, 매월 1회 봉사활동, 월 5천 원 이상의 후원금을 강요합니다. 입사 초기 이사가 승진을 위해서는 기독교 마인드를 가져야 하니 예배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천주교를 믿고 있다고 하자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는 이단이므로 기독교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사 내 익명의 설문조사에서 본인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재계약 조건으로 주임 이상은 일요 예배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 동의했는데, 얼마 후 이사가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말할 수 없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단 취급을 하더니 결국 해고시킨 것은 종교 차별입니다. 인권위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답변 :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재계약 조건으로 예배참석 동의를 요구했다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12일

군 장병에게 무종교의 자유 보장 등 권고

진정인 조모 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7 육아휴직 차별

상담 :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부터 회사에서 괜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했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다가 2010년 1월 복귀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측은 '샘플을 갖다 썼느냐? 업체에 상품권을 돌렸느냐? 업체에 가이드를 공개했느냐? 장기 외근이 많다. 업체로부터 불평이 많다. 뇌물을 받았느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출산휴가 이전 일인데 그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 부당한 배치로 보입니다. 인권위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합리적 이유 없이 출산휴가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업무대기를 시키고 있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임신을 이유로'란 불리한 대우의 원인이 임신 또는 출산에 기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부당한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니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육아휴직자라라고 승진에서 제외했습니다.

2년 전 육아휴직 중 승진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직원의 실수로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시켰으므로 승진을 취소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모든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육아휴직 신청했다고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결재를 미루더니 급기야 회사 내부방침이라며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으로는 홍보와 정책에 힘을 쏟는 데 직장여성이 육아휴직조차 쓸 수 없다면 국가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2007년 3월 28일

"임산부라서 채용 못한다?"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씨(여·41)가 2006년 10월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 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건소장은 진정인에게 '곧 출산으로 쉬어야 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에 추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진정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돌려댄 말이라고 하면서, 진정인이 면접에서 탈락한 이유를 진정인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진정인이 민원(예방접종 시 불친절했다는 두 차례의 인터넷 민원)을 발생시키고 보건소 일반 직원들 과도 인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이 주장하는 불합격 사유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인이 이미 해당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무리 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건소장 역시 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나 채용 공고의 내용 등으로 볼 때, 보건소에서 전문의만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4-8 성 차별

상답 : 여자라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고 직원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가족수당을 받지 않아 얼마 전 가족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사는 “여자가 무슨 가족수당을 신청하느냐?”라며 면박을 주더군요. 그러더니 “○○금고 내규 상,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고, 맞벌이일 경우는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남자 동료는 세대주가 아니고 맞벌이인데도 가족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여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 여성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제1항은 성별을 이유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금품지급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당의 여성비하 발언을 고발합니다.

○○○당 인터넷 홍보사이트 동영상 자료에 “여자는 아는 것이 쥐뿔도 없다. 여성은 뉴스를 바꿔벌레 만큼 싫어한다.”라는 여성비하 발언이 나옵니다. ○○○당 원내 대표가 지방 어딘가에 가서 “젊은 애 새끼들아~”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 시장 지원 유세 때에는 ○○○당 의원이 “못생긴 여성은 성형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 젊지만 미인 소리 못 듣는 여성에 대한 작품 유세”라고 발언했습니다. ○○○당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인권위 판단을 원합니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3일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장교 모집 시 여성 배제는 차별”

인권위는 국방부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여성에게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 장교 지원 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군 전체 장교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하며,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 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 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 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4-9 노조 관련 차별

상담 : 노조 지부장과는 밥도 먹지 말라, 명령이다.

한국○○○○개발원 원장과 부서장이 공개적으로 직원들에게 “노조 지부장을 맡은 연구원과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어울리지도 마라, 왕따 시켜라, 명령이다.”라고 합니다. 노조 지부장에게는 “업무에서 손 떼라. 명령이니 따르라.”고 합니다. 연구업적 실적자 이름에서도 지부장 이름을 삭제하고 각종 회의 참가권을 박탈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직이 아닌 다른 부서로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답변 :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노동조합 간부임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회의참가 거부 등 부당처우를 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해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이전 회사에서 노조 간부였다고 해고했습니다.

H운수 택시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2년 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B상운에 취업해 5일간 근무했습니다. 상무가 면담을 요구하더니 이전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한 경력이 있다며 해고했습니다. B상운 조합장에게 해고사실을 통보하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조합도 힘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지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지한 후보가 탈락했다고, 그만두랍니다.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노조지부장을 뽑는데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그 후 인사과장이 본인을 직위해제하고 그만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자 기존 자리를 없애고 난방도 안되는 독방에 책상을 넣어 놓고 혼자 있으라고 합니다.

노조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결정 2006년 4월 18일

주문	피진정인에게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진정요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비노조원에 비하여 임금을 적게 받고 있으며 전 직원이 적용받는 휴일휴가를 동등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판단	피진정인은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해 노동조합원이었던 3인에게만 불리하게 대우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경력이 있고, 진정인의 노동조합 활동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부정적이며 노사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3년 부당노동행위와 본 진정사건은 그 태양이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의 유일한 노동조합원인 진정인만을 달리 대우하고 있으며, 피진정인 병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진정인에 대해 노동조합원 신분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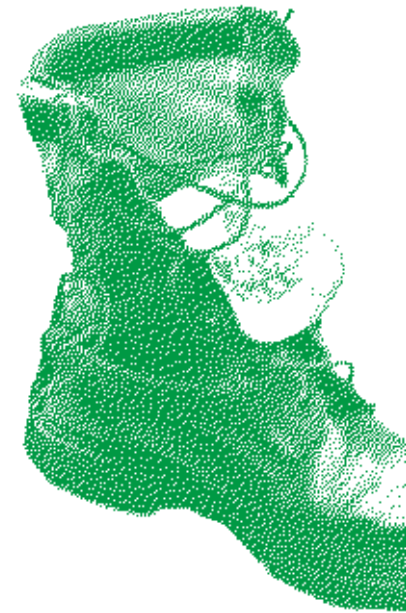


15. 군대



최근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건 중
언어폭력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 사례가 27%로
나타났다.

육군이 2010년 작성한
<군 내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에서



15-1 군대 내 성폭력

상담 : 양기를 빼야 한다며 성폭력을 했습니다.

동생이 1주일 전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의무실에 누워 있는데 병장이 와서 점을 봐 주었다 합니다. 점이 어느 정도 맞자 동생이 병장을 조금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병장이 동생한테 양기가 많아 빼야 한다며 오럴 섹스를 했습니다. 동생이 충격을 받아 상급자에게 알렸고 오늘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병장은 그전부터 그런 행위를 해왔다고 합니다.

답변 : 성폭력은 물론 군부대의 관리감독 소홀도 조사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선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가 개시되면 군 헌병대 조사에 인권위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해당 병장이 이미 이전부터 후임병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했고, 그 사실을 군에서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면 군부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2010년 9월 1일

인권위,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긴급구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소속 군 병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중인 상황에서 휴가 만료시점까지 군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탈영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피해자가 군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정신적 불신 및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자해, 자살기도 등 2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이며 △군인복지기본법 및 국방부훈련 등에 따르더라도 민간병원에서의 위탁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15-2 가혹행위 및 구타

상담 : 선임의 구타와 폭행으로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법무부 경비교도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현재 이교(이병)인데, 2009년 2월 선임의 구타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선임들이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에는 군대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중대장과 소대장이 재발방지 약속을 하여 넘어갔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손목을 긋는 자해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여 자살시도를 이전에도 한번 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임들이 지난번 구타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아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선임들은 간단한 반성문을 쓰고 종결되었습니다. 부대는 아들이 자살을 시도했던 원인은 무시했습니다.

답변 : 우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요구하십시오.

군대에서 선임들의 구타, 가혹행위, 괴롭힘이 있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조사와 사후처리가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재조사와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권고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군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외부병원 정신과 상담치료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10년 5월 11일

“전경 폭행 사건 관리감독 소홀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경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경북 소재 A경찰서장에게 △전의경 관리 감독책임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점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K사병 등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 및 상해진단서, 동료대원들의 목격 진술, 그리고 근무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사병 외 2명의 선임대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폭언, 구타, 앞드려뺨쳐, 근무지이탈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휘감독 경찰관들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의경 구타 및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반 동행동속 미 준수, 구타사고 예방을 위한 신체검사 미실시, 형식적인 순찰 등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東亞日報 2010년 03월 06일 금요일 A12면 사회

국방장관까지 나서 '장병 언어순화 교육' 지시-- 실태 어떻게

이런 돌머리... ××× 같은 놈아... '욕설 모욕감'이 자살원인의 27%

군 당국이 부정적인 군 문화를 상징하는 '욕설'을 추방하고 장병들의 언어를 순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장병들이 월급은 10대도 아니고 재대한 뒤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욕을 일삼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생활을 하면 곤란하다는 취지에서 언어 순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일 열린 국방정책회의에서 장병들의 바른 언어생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그동안 병영생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언어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병영 내 '욕설문화'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욕설과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으로 언어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자살까지 불러오는 언어폭력
육군 법무실이 지난해 만든 '군 내 언어폭력,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시사인권 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 가운데 언어폭력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 사례가 전체의 27%로 나타났다.

2008년 ○○사단 환경살상관리병 업무부하인 한 병사는 오빠수치의 장 지하 1층 난간에 목을 매 자살했다. 수사 결과 그 병사는 업무 및 정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개○○, 죽을래" "야 구방망이 가져와, △△를 깨버리겠다" 등 4, 5회에 걸쳐 욕설을 듣고는

● 개××, 죽을래-- ○○ 깨버리겠다
● 이 쓰레기야-- 그리고도 간부냐
● 병신 △△야, 너 뭐하는 ▽▽야
● □□출신인데 이등병만도 못하냐

모욕감을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세 치 혀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말이 사람의 가슴에 낸 상처는 평생을 기도 치유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도록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병들이 언어폭력으로 행사 또는 징계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전체 군 내 행사사건의 약 6%, 전체 징계사건의 17~18%를 차지할 정도로 나타났다.

● 병영 내 언어폭력 유형
언어폭력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출신이나 배경을 들어 부하의 능력을 비하하는 폭언이다. 한 중대장은 소대장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 출신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 출신이라 천근만마를 얻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뭐 이등병만도 못하냐" 이라고 폭언을 했다.

또 한 중사는 후임인 하사에게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사만도 못한 ××× 같은 놈, 내가 그리고도 간부냐" 등의 욕설을 했고 결국 이 하사는 본인자살했다. 또 한 부사관은 이등병에게 업무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외우게 한 뒤 이를 알기까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마러냐, 자살해라. 내 이름은 찌지 말고 죽어라"라고 폭언을 한 사례도 있다.

상대병에게 행를 일러줬다고 위협하는 언어폭력도 있다. 한 하사는 일병이 차량 정비 중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병신○○야, 대체 너 뭐하는 ○○야. 토라이○○, 내 인생 포기하러라도 너 쥐도 새도 모르게..."라고 폭언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 사이의 언어폭력이 전체 언어폭력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과 병사 간 언어폭력은 14%, 장교와 병사 간 언어폭력은 4%였다. 군무원과 병사, 장교와 부사관, 부사관과 군무원 간 언어폭력은 적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15-3 군에서 정신질환 발병

상담 : 군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들은 대학생할을 하다 2002년 군에 입대했습니다. 휴가 때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는데 2주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는 2주 휴가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상이 없다.”는 군 의무대의 판단에 따라 계속 군복무를 했습니다.

2004년 전역 후 계속 이상 증세가 있어 정신과에 갔고, 정신지체 2급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발병 시기를 2년 전, 즉 군 복무 당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정신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가출했고 지난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군에서 아들이 심한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병이 발병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훈청과 국방부 민원실에서는 군대에서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어 유공자 인정이나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 : 진료기록 첨부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십시오.

군복무 중에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이상이 발병했다면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 시기가 2002년에서 2004년으로 인권위가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군복무 중에 이상 증세가 발병했다는 당시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면 국가유공자 승인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복무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들을 첨부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신청하십시오. 비해당 결정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송을 통해 군복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분열 발병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사사례

아들이 입대 40일 만에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1학년 휴학하고 의병 지원하여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40일 만에 부모를 못 알아보는 심각한 질환이 왔습니다. 아들은 논산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학교와 ○○수련장에서 2주 훈련을 더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코피를 많이 흘리고 문제가 있어 3일간 진료를 받았답니다. ○○학교에서는 잠을 못자고 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같이 입대한 친구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학교 훈련에 같이 간 친구는 부모에게 퇴소한 다며 전화했는데,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퇴소 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본인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말은 못하고, 눈빛이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이후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병원에 후송했으나 이상이 없답니다. 병명이 안 나와 계속 복무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잠을 못 자고 부모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15-4 군인의 의료권

상담 : 치료해야 하는 데도 무조건 복귀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2009년 3월 입대했습니다. 군복무 중 밥만 먹으면 구토를 하는 증세가 있어 보름 만에 7kg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병원은 아들이 피병을 부린다며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병가를 내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군대에서는 병가 30일을 다 썼으므로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사는 소화기능성장장애이기 때문에 초기증세가 발생할 때 치료받지 못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의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조사해줄 수 있는지요?

답변 : 군복무 중에도 헌법상 기본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민간요양기관에서 질병 치료 중에, 군인사법상 민간요양기관의 치료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복귀명령을 내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상의 기본권인 건강권, 생명권이 제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 기타 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2006년 10월 11일

“군인 의료접근권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11월 진정 접수한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전역 직후 사망한 자 및 투병 중인 피해자의 군대내 의료 접근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전부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수용 결정한 내용은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 강화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군병원과 부대 간, 군대 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군내 필수 의료장비 구비 등입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군인의 실질적인 인권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담 : 말을 못하는데도 병명을 모른다며 제대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들은 ○○사단 단기사병으로 7월부터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9월 어느 날 군에서 아들이 말을 못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평소 불만이나 어려움을 말한 바 없고, 충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병원과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대도 이상 없고 이유를 찾지 못해 병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병원은 ‘앗’ 소리라도 지르라며 아들의 온몸을 주삿바늘로 찌르고 굶었습니다. 결국 외상으로 2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아들은 문자소통은 합니다. 말을 하고 싶으나 ‘앗’ 하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 담당에게 제대를 요청하니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된답니다. 이런 상태로 아들을 계속 복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답변 : 군복무 부적응 심사 또는 질병 의가사 제대 심사를 요청하세요.

군대에서 질병치료가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부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상해를 유발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전역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군복무 부적응 심사 혹은 질병 의가사제대 심사를 요청하십시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사에 회부하지 않거나, 병증의 회복이 없음에도 전역결정이 나지 않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아들의 면회를 이유로 설명 안 하고 무조건 거절합니다.

2009년 4월 아들이 입대해 강원도 화천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면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휴가는 한 번 나왔는데 면회는 안 시켜줍니다. 아들을 만나기 위해 2009년에 두 번 군대를 방문

했는데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면회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부대에 점수제가 있어 면회나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점수가 깎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아들이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촛불집회... 무슨 일만 나면 외출 금지입니다.

국가기관 경호부대에서 근무합니다. 외출 및 근무 여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70여 명이 관사에서 생활하는데 대부분 미혼의 20~30대입니다. 외출 시엔 11시까지 들어와야 하며, 10시가 지나면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내용은 아침마다 상황실장에게 보고됩니다. 일일이 사유를 적는 건 지나치게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1년에 2회에서 5회 가장 청와대 파견근무를 합니다. 매년 한 달 정도 근무하는데 이를 밤새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합니다. 조각 잠을 잘 수는 있지만 한 달을 이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면 체력이 너무 나빠집니다. 쉬는 날도 주둔지로부터 30분 이내에 있도록 생활범위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간부 한 명이 통금 시간 이후 외출 나갔다가 적발됐는데, 이후 전원에게 외출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지휘관이 임의로 외출을 과잉 제한하고 있습니다. 촛불집회, 천안함 사건, 신종플루 등 사회적으로 무슨 일만 생기면 한 달 이상 외출 금지입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6주가량 외출이 금지됐다가 얼마 전 해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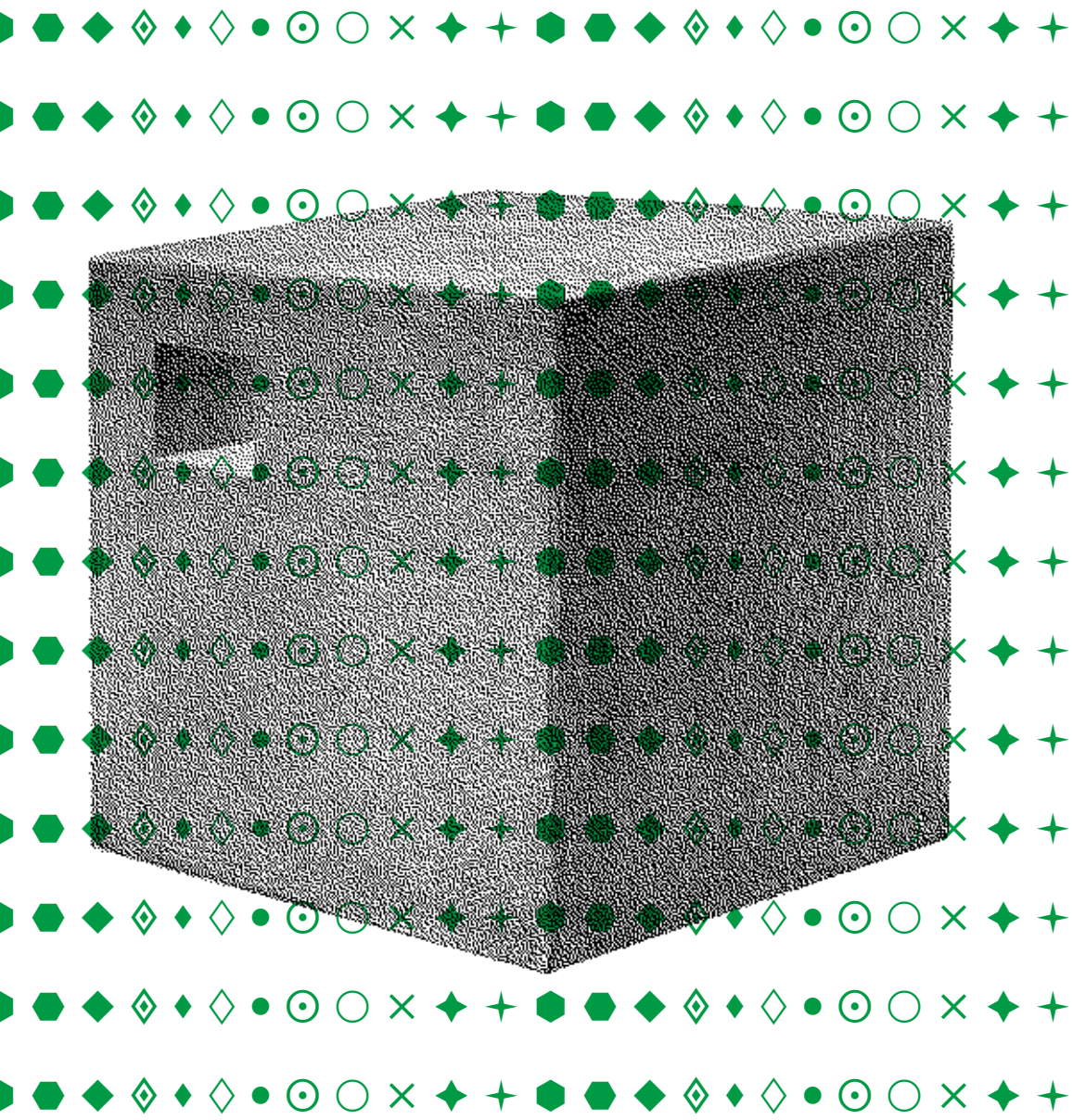
보도자료 2008년 1월 17일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군복무 부적응 병사와 관련하여 장병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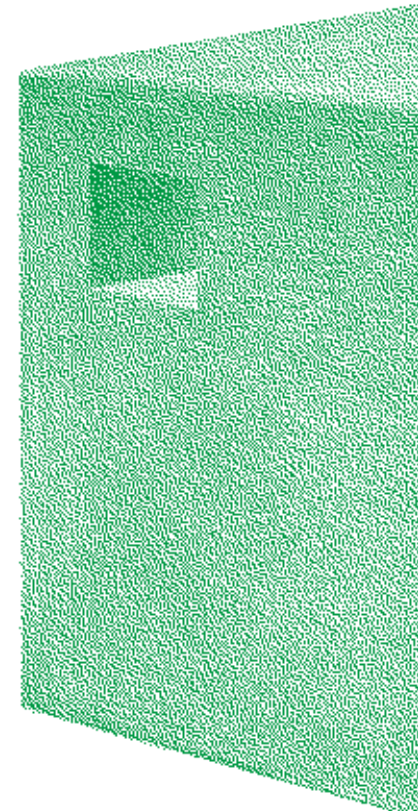
1. 군 징병검사단계에서 군복무 부적응이 예견되는 자는 사전에 감별해낼 수 있도록 관할 병무청, 훈련소 및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군 복무기간 중에는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원인 해소를 위해 병사들에게 고운 말 사용 등을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에게는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 기본권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및 신분을 보장하고 초기에 확대 배치하여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고 그 운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4. 비전캠프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관심병사제도는 대상자 비밀보호와 보호자와 연계관리 등을 통해 군 내부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복무’로 결정된 병사들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송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6. 구금시설



노르웨이에서는
죄수가 저녁
9시까지 인터넷과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헬스클럽과
사우나를
이용한다.
심야에는 보통
문이 잠겨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감시는
금지돼 있다.

박노자 교수의 글에서



16-1 교도관의 폭행

상담 : “지금이 김대중, 노무현 시대인 줄 알아?”

벌금 미납으로 100일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만기출소를 일주일 앞두고 교도관 5명에게 수갑으로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했습니다. 이후 교도관들은 손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고, 발을 묶고는 머리에 무언가를 덮어씌웠습니다. 3일간 그렇게 있으면서 밥 먹을 때만 잠깐씩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이틀 밥을 안 먹으니 “너 지금 반항하는 거냐?”라고 하기에 “토할 것 같아 못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벌금을 내면 출소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교도관에게 ‘전화 한 통화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이 김대중, 노무현시대인 줄 아느냐? 네가 아무리 설쳐도 안 된다.”라며 묵살했습니다. 구타 사실을 안 5촌 당숙이 남은 형기의 벌금을 내줘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내담자와 인권상담센터 대면상담에 동행한 당숙모는 “출소 당시 조카를 보고 너무 분했다.”면서 “조카는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웠다. 이번 일을 보고 참을 수 없어 함께 왔다.”고 말했다. 내담자는 흰자위에 피멍이 맺혀 있고 왼쪽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었다.

답변 : 인권위에 진정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집단폭행하고 신체를 구속했다면,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조치하거나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

교도관이 여성수감자 가슴을 볼펜으로 찌르고 욕설을 합니다.

여자 친구가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일주일 전 편지가 왔는데 ○○○ 부장이 볼펜으로 가슴을 찌르고 욕설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 친구의 편지에는 ‘피해내용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보낸 편지들은 모두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제51조(여성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남성 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16-2 교도소 내 사망

상답 : 교도소에서 처남이 죽었습니다.

처남이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교도관은 처남이 난동을 부려 보호의자에 묶어 놓았답니다. 보호의자에 묶여 있던 처남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자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 얘기는 다릅니다. 병원에서는 처남이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남 몸에는 줄로 묶인 자국이 멍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답변 : 인권위가 생명권 침해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자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나이나 건강을 고려하여 사용하며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구금시설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생명권 침해로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건강했던 아버님이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 교도소에 갇힌 지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1945년생으로 지병이 없었고 건강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가 아파 보고전을 내고 교도소에서 이를 뽑았답니다. 발치 후 목이 붓고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교도소 측은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발치 후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나왔습니다. 고름이 목에 차서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호를 찾아서 넣어주세요.)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교도관이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보도자료 2010년 8월 2일

“보호장구 착용 후 관리 소홀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소란을 피우는 알코올중독증 수용자에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구치소장에게는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의료과장으로부터 중증의 알코올중독증으로 경과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료거실에 수용 중이었는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보호의자에 착용돼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은 △야간 당직교감의 사전 허락이나 의무관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호실 등으로 이동시켰고 △특히,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보호의자 착용은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해자 상태를 CCTV 모니터링 위주로 관찰하고 후임 교도관에게 인수인계에도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병원 이송 직전 미동 없이 30여분간 방치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무교위는 △피해자가 중증의 알코올중독증으로 사건 당일 주간 수액을 투약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지강박 보호의자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CCTV 모니터 사진만으로 검진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16-3 수용자 의료권

상담 : 5개월 내내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2009년 4월 중순 ○○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입감 전부터 강남○○병원에서 손가락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7월 초 다시 손가락에 통증이 와서 구로○○병원에 갔습니다. 상담 중 의사는 갑자기 바늘과 주사기를 가지고 와서 아픈 손가락을 찌셨습니다. 본인이 수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충분히 했는데도 강제로 손가락 두 군데를 수술했습니다. 구로○○병원에서 수술 후 통증이 심하여 5개월 내내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입감 전부터 치료받던 강남○○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구로○○병원 이외에는 데리고 갈 수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009년 11월 출소하여 바로 강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그 당시 바로 치료했으면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수술할 예정인데 수술해도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답변 : 의료조치 미흡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금시설과 연계된 병원에서 원치 않는 수술을 감행하여 병증이 악화되고 계속 되는 통증 호소에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남는다면, 구금시설의 의료조치 미흡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용자가 치료 중이던 병원이송 요청이 수용되지 못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에야 데려가 치료하십니다.

교도소에서 아들의 심장병을 내버려둬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미 아들이 심장수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교도소에 얘기했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아들이 피를 토하고 폐부종이 생겼는데 교도소에서는 통원치료만 시켰습니다. 5일 뒤 아들이 심하게 아프다고 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아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지체장애와 지적장애가 생겼습니다.



일찍 조치했으면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안 됐을 겁니다.

○○교도소 수감 중 의무과에 갔더니 감기몸살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하반신 마비로 소변을 볼 수 없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니 '츠츠키무시'라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왜 이제 왔느냐?"라며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형 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발병 당시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하반신 마비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09년 2월 10일

“응급환자 외부병원 이송조치 지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 당직교감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휴일 및 공휴일에 응급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 행정법」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교도소장 등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 제2항은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4 보호감호 제도

상답 : 월간지에 보호감호 관련 글이 실리자 구독을 금지했습니다.

본인은 <신동아> 5월호에 ○○교도소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교도소에 계속 구금시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내용입니다. ○○교도소에서는 이 글이 실린 것을 알고 수용자들에게 <신동아> 5월호 구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호감호 폐지 전 수용된 87명은 현재 보호감호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답변 : 위원회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법안이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다시 보호감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주시하고 있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동아 5월호 구독을 금지하여 수용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면 진정 후 우리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도서비치 및 이용)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7조(신문 등의 구독)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 등"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 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보도자료 2010년 3월 18일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인권위 입장 재확인

최근 법무부장관 및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집행론과 보호감호제도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사형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2004년 1월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해 사회보호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폐지했다.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깊게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앞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상담 : 교도소 내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

○○교도소에 수용되어 작업 도중 팔을 다쳤습니다. 기계가 낡아 벨트가 자꾸 밖으로 빠져 손으로 쳤는데, 장갑이 툰러에 낀 것입니다. 팔이 기계 속으로 말려들어가 팔뚝이 부러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벨트가 빠져 손으로 치며 사용해 왔습니다.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안전요원이 없었고 수용자 중 배전판 위치를 아는 사람도 없어 그대로 사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거나 수용자에게 배전판 위치만이라도 알려줬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도소 측은 본인 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변 : 안전소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교도소 내 작업장에 안전요원이 없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교도작업 운영지침

제80조(안전사고 예방)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험한 기계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내용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현지 에세이

인권위 실무수습에서 새긴 평생의 화두

사실 국가인권위를 택한 것은 큰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일단 집에서 가까웠고, 대학교 때 인권에 대해 좀 관심이 있었기에 별생각 없이 지원했다.

그런데 첫날 실무수습 시간표를 받고 당황했다. 매일 출근에 박박한 수습일정이구나... 사업연수생들은 10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6월 이후로는 실무수습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수습일정을 따라가면서 이런 불만은 곧 사라졌다. 오히려 매일 출근하다보니 인권에 대한 고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어 좋았다.

사실 법조인의 일이라는 게 모두 인권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 때는 눈앞에 주어진 업무를 익히는데 급급해 다른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다.

인권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전화 및 면전 상담이었다. 경찰과 법원에서 피의자 신문도 해보고 국선번호도 해봐서 낯선 사람을 상담하는 일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이제껏 범죄인으로서 대했던 이들을 피해자로서 상담하는 것은 좀 낯설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당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 욕설 등에 대한 진정을 받을 때는 왠지 나에게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나 이유 없이 가슴 한 구석이 뜨끔해지기도 했다(난 맹세코 피의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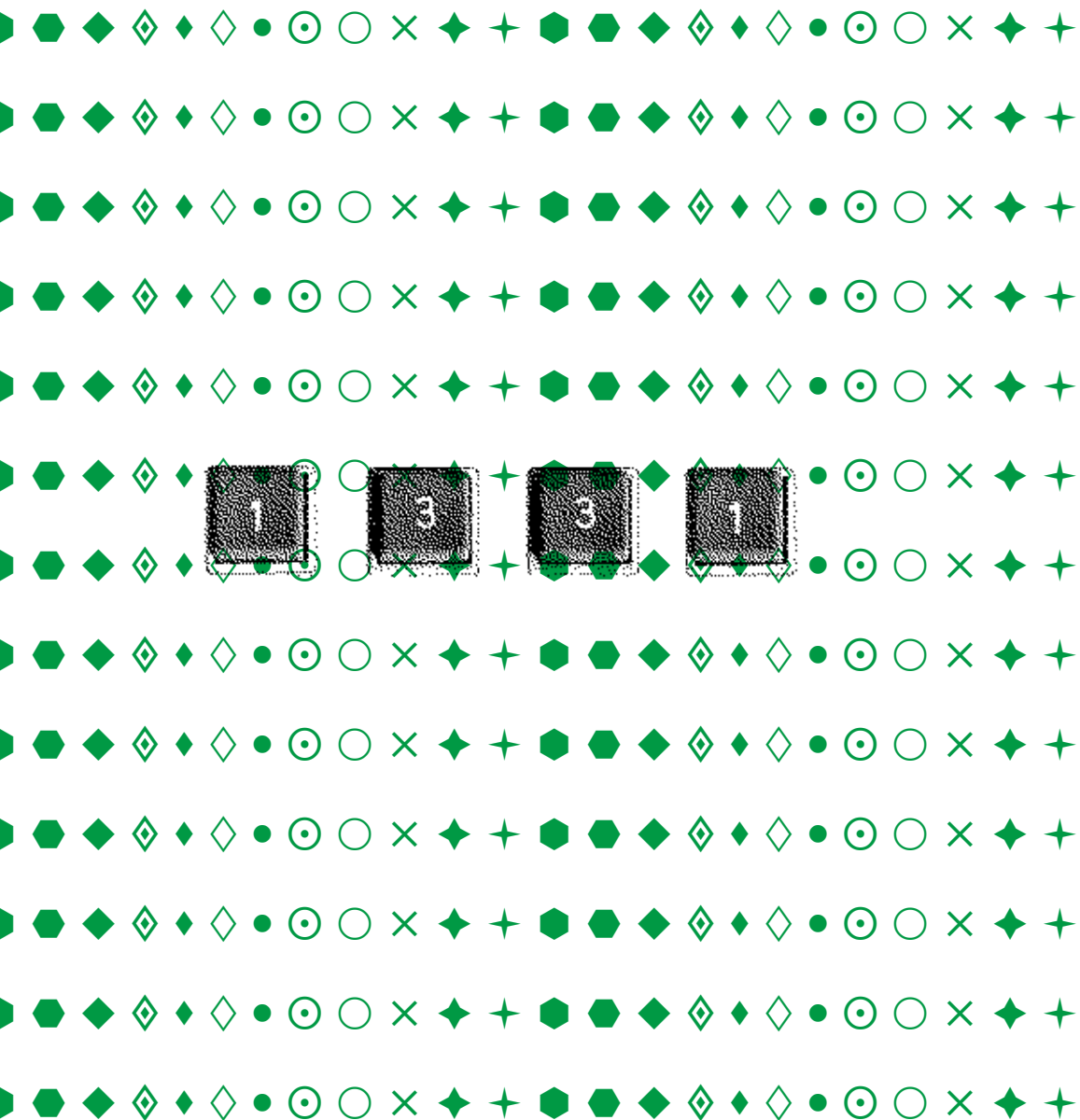
구치소 면전에서 이런 괴리감이 가장 컸다. 나는 법원시보 때 서울구치소로 변호인 접견을 갔었는데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수용자 면전진정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교도소 직원들은 인권위 직원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동행한 조사관님은 그들이 피진정인이기도 하지만 인권위 상담을 통해 교도관과 수용자의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용자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그들의 고충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됐다. 가혹행위, 욕설, 비인격적 대우, 의무실의 미흡한 치료, 검경 조사과정에서의 불만, 이송 시 불합리한 대우 등이 그것이었다. 인권위 출범 이래 이런 진정은 계속되었을 텐데 왜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지 가슴이 답답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위원장님, 상임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인권위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님, 인권위에서 실무수습을 거쳤던 변호사님, 장애인 단체와 인권단체 활동가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공통점은 모두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이 달라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겠지만,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는 큰 차이가 없게 느껴졌다.

2주간의 시간은 인권을 알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번 실무수습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살면서 그저 자신의 영달만을 생각하며 살던 나에게 우리 사회의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의 고민들을 한때의 추억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평생의 화두로 가슴에 품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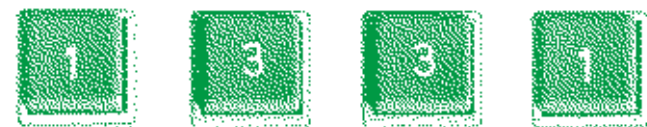
박현지 님은 상담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17. 기타



“여보세요,
내일 비가 오나요?
안 오나요?”

기상청은 131입니다.
인권상담은 1331입니다.



“경주에 가면
무얼 봐야 하나요?”

한국관광공사는 1330입니다.

17-1 인권위에 할 말 있습니다.

상담 : 불심검문? 경찰 자질 향상부터 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심검문관련법 개정에 인권위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경찰은 인격소양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경찰들이 자질 향상은 하지 않고 권한만 갖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에게 불심검문 권한을 확대시켜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답변 : 인권위 권고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중 불심검문 관련 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개정안이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니라 임의 절차임을 명백히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인권위 활동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7-2 인권위, 수고하셨습니다.



상담 : 법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입장할 때, 방청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행을 스스로 고칠 때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젊은 판사가 일흔의 노인에게 "버릇없다." 라고 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권고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권침해가 없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위 활동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판정의 기립 관행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검토하고, 필요 시 관행 개선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세이 민승현

인권위 단상 - 위원회는 피곤해!

“당신은 왜 인권위에 오게 되었습니까?”

실무수습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대답이 쉽지가 않다. 나에게 있어서 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와 같이 느껴진다. 으레 하는 질문이려니 여기고 립서비스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대답을 하기가 싫다. 그것은 내 인간 존엄성이 허락치 않기 때문이다. 왜 존엄? 나 너무 진지한 건가? ㅋㅋ. 그렇다면 일단 ‘평소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고 대답을 해두자. 내 인생 구구절절 설명하며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 말하는 건 피곤하니 말이다.

위원회 앞 도로를 채운 사법피해자들의 현수막과 기운찬 목소리가 주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인권’ 은 피곤한 것. 인권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인권이라는 게 사람을 불편하게 함을 잘 알고 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결혼했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등등 묻지 말아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자기 권리 찾겠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보면 피곤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게 인권이라는 데도 솔직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나도, 내 주변 사람 모두 말이다.

인권상담센터에 온 사람들도 인생이 피곤할 거다. 벌써 수사도 재판도 모두 끝난 사건을 들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선생님 그건 각하예요.’, ‘그건 조사대상이 아니구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피곤할 것인가. 상담원도 그렇다. 각하를 ‘각하’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병들고 지친 내담자들은 위원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상담원에게 화를 낸다. 정말이지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우고 먼 곳으로 떠나 쉬고 싶다.

조사국이나 정책국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안이 침해인지 차별인지 모호할 것이다. 조사결과가 정확한지, 입안하는 정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인지 고민은 깊어간다. 마침내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은 될 수 있을 것인지, 위원회의 독특한 정치적 계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이곳도 고민으로 시작하여 끝까지 피곤할 듯하다.

인권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조금씩 얻어진 산물이라고 하니 위원회 업무도 태생적으로 피곤한 것은 아닐까. 고달프고 지치게 만들며 여러 사람 괴롭게 하는 게 투쟁이다. 투쟁 없이 인권 없다면 피로 없이 위원회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인권이

란 게 눈엣가시 같은 거라면 위원회도 그래야 한다. 피로감이 사라진 위원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위원회 직원 분들께 죄송스럽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피로를 계속 짊어지고 가라고? 꽤 씹히고 재수 없다. 그렇지만 나의 진심은 직원들의 피곤함이 고스란히 인권위원들의 몫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인권 투쟁에서 오는 인권위원들의 피로감이 커질수록 직원들의 피곤은 자부심으로 승화할 것임을 인권위원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많은 인권위원들이 눈엣가시처럼 분투하길 기대해 본다. 진심으로.

민승현 님은 상담센터에서 실무수습을 했습니다.

17-3 인권위를 비판합니다.

상담 : 인권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가 아직은 범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의 사진은 물론이고 성적표까지 공개됐습니다. 이전에도 아버지를 농약으로 살인했다고 몰렸던 가족의 신상이 경찰과 언론에 의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폭력입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시점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자백만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면 죄를 짓지 않아도 거짓 자백을 하고 나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인권위 위상이 하락하고 권고가 무시당하더라도, 인권위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답변 :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람하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요사이 강력 범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헌법상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인권위의 업무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서로 작성해 공람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위의 활동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17-4 인권위, 걱정됩니다.

상담 : 대북방송 재개 권고, 걱정됩니다.

본인은 60대 중반으로 인권위의 역할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대북방송을 하도록 권고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벌써 권고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너무 걱정되어 잠까지 설쳤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일입니다. 전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인권위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 존재가치에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저는 평화통일을 바라며 전쟁 상황은 원하지 않습니다. 인권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한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이미 했다면 결정을 번복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 :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여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된 대북방송 권고안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인권위가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대북방송권고안을 반대한다는 귀하의 주장을 상담서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5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고발합니다.

상담 :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했더니 사건이 그 공무원에게 이첩됐습니다

저는 구청 직원의 개인비리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서울시청으로 이첩하고 서울시청에서는 구청으로 이첩하더니 결국 민원 원인자에게 민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본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7개월간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의 비리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비공개로 올린 글이 민원 원인자에게 배당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답변 : 정말 황당한 상황이네요.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구청직원의 비리에 대해 민원 접수를 했는데 그 직원에게 사건이 이첩됐더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보다 효율적인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이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관의 부작위 탓에 행복추구권, 자기정보결정권 등이 침해됐다면 우리 위원회에 진정해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7-6 인권위가 아닌가요?

상담 : 이재오 위원장 좀 바꿔주세요.

거기 인권위원회 맞죠? 이재오 위원장 좀 바꿔주세요. 그분을 만나서 내 문제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가 다른 건가요?

답변 : 권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 인권위는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인권위를 국민권익위로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십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반면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민원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인권위를 권익위로 잘못 아는 상담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왜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 민원인을 혼돈스럽게 하느냐는 항의 전화도 적지 않았다.

17-7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상담 : 경찰 가족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경찰 가족입니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을 접하고, 경찰가족으로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결코 경찰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피해자란 걸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화했습니다.

일선 지구대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면 지구대장이 일반직원으로 떨어져 한참 후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 실적을 따지는 이상 경찰의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경찰직을 그만두어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이 아니라 서장과 청장이 물러나야 할 사안입니다. 상부에서 과하게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무영 경찰청장은 존경할만한 청장으로 칭송이 자자한 반면, 지금 청장은 그 반대입니다. 최근 청장이 실적 위주로 업무지시를 하는 탓에 청소년 범죄비율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경찰들은 실적을 채우느라 담배 피우는 청소년과, 빵을 훔쳐 먹은 여학생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벌하는 걸 보면서 경찰직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젊은 경찰들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살피며 절도 범 검거에 열중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청소년입니다.

양천경찰서 사건은 경찰 내 실적주의의 부작용이 깊아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미안하고 부끄러워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위에 이렇게 털어놓으니 가슴이 후련합니다.

답변 :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상담 내용을 경찰 직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는 참고자료로 공람하겠습니다.



에세이 최복희 (인권상담센터 청원경찰)

매일 보는 남자, 황보 씨



인권상담전문위원을 하면서 인권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인권위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상담수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상처를 품고 있다. 그들에게 인권위법에 명시된 조사대상은 별 의미가 없다. 변호항을 제시하여 발을 뺄라 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대감까지 내비친다. 인권상담전문위원에서 청원경찰로 옷을 갈아입고 첫 출근을 하던 날 내게는 경험에서 우러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다.

첫날부터 황보 씨 일행을 만났다. 7층 접수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해 어리벙벙한 상황에서 귀를 자극하는 소음... 아~ 과거에 내가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구나.

그는 마치 자기 사무실에서 머슴을 부리듯이 말했다. 전화기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고 복사와 팩스 송신을 당당히 요구했다. “선생님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다.”고 설명하자, 그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오히려 호통을 쳤다. 처음엔 어찌 할 바를 몰랐으나 요즘 나는 기죽지 않고 대꾸한다. “선생님, 저도 세금 내거든요. 세금은 특정 개인이 공공기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황보 씨의 옷 뒤편에는 ‘초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사법정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내용만 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센터로 ‘초대하는’ 사람들의 발언에서 ‘사고 피해자들의 해결 창구’ 같은 분위기를 느낄 뿐이다. 황보 씨는 ‘사법이 죽었다’라고 적힌 조의 리본을 달고 있다. 나도 우리나라 사법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난폭한 행동에서 ‘사법 정의’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스치는 구호 이상의 메시지가 내게는 남아 있지 않다. 오늘도 그를 만난다. 내가 그를 맞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맞이한다. 또 다시 면담을 요청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수개월째 출근부에 도장 찍고 소리를 지른 뒤 어디론가 떠나간다. 어쩌다 다른 민원인이 항의하면 “인권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느냐?”라며 일장 연설을 토해내기도 한다. 그의 응성이 워낙 자극적인지라 어지간한 사람은 대꾸하지 않는다. 듣는 이가 사라진 뒤에도 황보 씨의 발언은 한동안 지속된다. 인권위 직원의 제지에도 그는 막무가내다. 목소리를 낮추라고 말하면 “왜 말을 못하

게 하느냐?”라고 따진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달라고 사정하면, “내 사정이 더 급하다.”라고 반박한다. 이따금씩 너무 심하다 싶어 ‘맛장’이라도 뜨면 육두문자를 내뱉는다.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내던지고, 서류를 팽개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는 시늉까지 한다.

접수대에서 바라보면 상담센터가 마치 황보 씨의 개인 사무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업무시작 시간 전에 7층에 도착해 전화로 일정을 협의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복사 서류를 챙겨 이동한다. 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자신의 ‘고객’을 불러 대응책을 논의한다. 소파에 누워서 과장과 국장을 부른다. 두 번이나 직접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한 상임위원에게 ‘악 가는’ 수준의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위원회에서 그와 만난 사람만 30여 명이 족히 넘는다. 그들 모두가 정상적으로 얘기를 끝내지 못했다. 대화란 본디 오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는 오는 말을 받아내지 못한다. 자기 얘기를 옥박지르듯이 내뱉을 뿐이다. 오로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강요한다. 통하지 않으면 자리를 박차고 목설을 퍼붓는다.

경찰도 스스로 부른다. 경찰에게 인권위가 얼마나 못된 기관인지 설명한다. 그러나 어느 경찰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황보 씨는 또 다시 분노하며 경찰서로 달려가 따진다. 그곳에서 돌아올 때면 7층이 한바탕 시끄러워진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 사회 공무원들은 ‘민나 도로보데스.(모두 도둑놈)’다.

인권위는 최근 욕을 하는 민원인에게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날 상담센터엔 공무원들의 항의 민원이 폭주했다. 국가기관에서 공무원행방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물파손 수준의 구체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의견도 들었다. 그날 상담센터 직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절한 특수민원인 대응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황보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근무자가 접수대이기에 앞으로도 그를 만날 수밖에 없다. 싸우면서 정이 든다면 센터 직원들이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나는 그가 가 없기만 하다. 고 옥타브 소리에 흠칫 놀라면서도 그가 가끔씩 던지는 말에 눈길을 주는 이유다. “이곳이 나쁜 곳이지만 그래도 인권위원회는 있어야 한다.” 황보 씨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는 자기 딸이 써준 편지에 대해 말한 적도 있다. “아빠, 왜 그렇게 살아요?” 평탄치 않았던 가정사를 털어놓은 적도 있다. 그도 늙어가는 중년 남성이고, 가정으로 돌아보면 남편이자 아빠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다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던 좋게 보려 노력하게 된다. 황보 씨를 한 사람의 내담자로 규정짓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다.

인권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방문상담

이용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치료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을 누르시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수화통역사가 화상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070-7947-7331)

순회상담

인권 취약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을 통해 인권현안을 파악해 권리구제, 정책권고 및 실태조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순회상담은 지역의 인권시민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인권상담네트워크

다양한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내담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회신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이 관계부처 문의, 법령 검토,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엔 해당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편집후기

위원회 설립기념일(11.25) 이전에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급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글

매김꾼의 '피로'와 디자이너의 '과로'에 힘입어 일곱 번째 사례집도 마감을 어기지 않았습니

다. 마지막 교정지를 털어낸 지금, 서울 도심엔 G20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편집실 앞 강남 거리는 어느새 바

리케이드로 변했습니다. 내일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라고 합니다. 새삼 역사가 험난하다는 생각을 되새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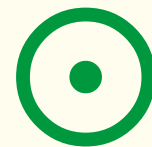
상담사례집을 기다리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미리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꾸벅... 2010.11.12.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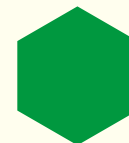


22가구
심층 인터뷰

09 - 10
인권상담사례집
별책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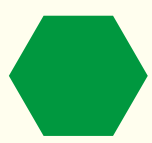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16-10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ISSN 2092-9714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22 가구 심층 인터뷰

미등록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정
난민



09 - 10
인권상담사례집
별책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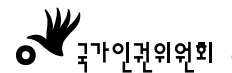
인권상담센터는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경기도 오산, 안산, 안양, 군포, 김포, 남양주에서
22가구의 이주민 가정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이주민권의 관점에서
일대기 리포트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09-10 인권상담사례집 별책부록

인권상담센터(과장 김대철)에서 편집을 했습니다. 글매김꾼으로 인권상담센터에서 김미숙 박상옥 육성철 윤민지 정미현 최희자 님이 참여했고, 타입페이지에서 디자인, 인쇄, 제본을 진행했습니다.

- 22명의 이주민 가정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주민들은 가명으로 기록했습니다.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심층상담에 응해주신 이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가 이주민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3주간의 심층상담엔 한국감마연구소 이금연 소장님과 이승주 님, 외국인 노동자 보육시설 연구팀의 고명희, 김성희, 이윤주, 장영예 님이 함께 했습니다.
- 일대기 상담 진행에 도움을 주신 오산이주민센터, 안산 코시안의 집, 군포 아시아의 창, 김포 재한중머인연대, 남양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리포트에 제시된 의견은 기록자의 제안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본급 90만 원을 받는 베트남 노동자



프롤로그

교회에 타잉과 판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교회는 아기 양육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곳이라 가끔 방문한다.

타잉의 이야기(아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타잉은 1987년(24세) 베트남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농군이다. 호치민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수산학과에 입학했고, 2007년 1월 9일 고용허가제(E-9-4)로 입국했다. 상추하우스에서 6개월 근무 후, 벚꽃농장에서 8개월, 벚꽃농장 10개월, 고구마 농장에서 11개월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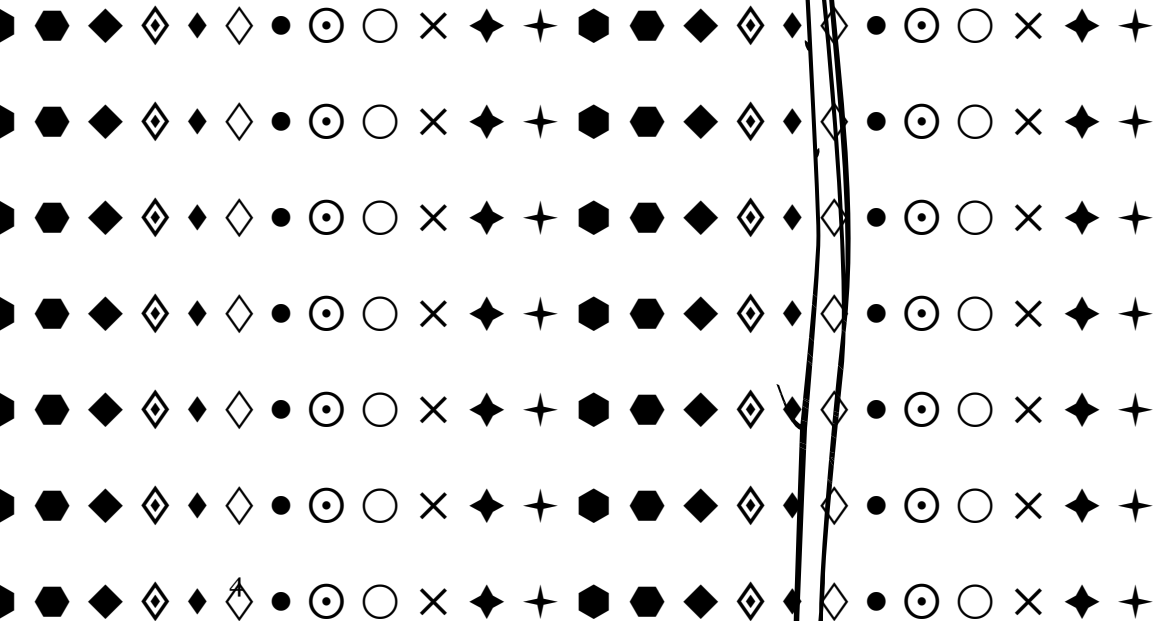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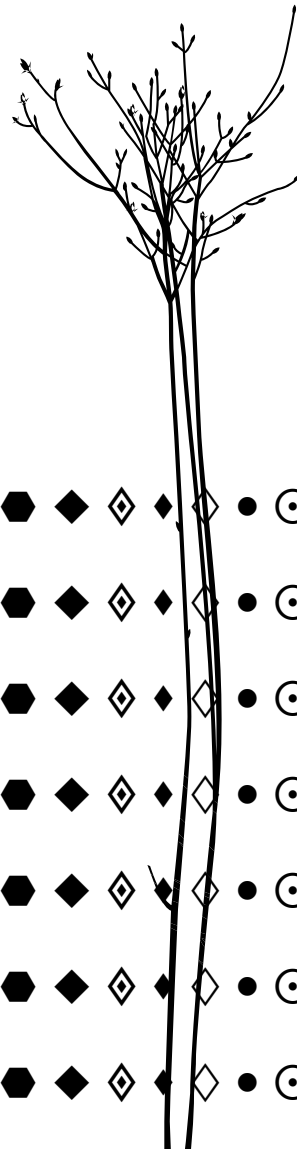
2009년 1월 4일 남편 판을 만나 연애 결혼했다. 농장주는 결혼식에도 참석해서 축하해줬다. 그러나 임신사실을 알고는 그만 나오라고 했다.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통해 3개월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임신하자 사장은 태도가 돌변하더니 해고했다. 2009년 9월 17일이 계약만료일이나 연장되지 않았고, 해고 후 곧바로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고향의 부모님은 나무집에 살다가 시멘트 집으로 바꿨다. 월급 90만 원에 고향 부모님께 격월로 생활비 120만 원을 송금했다. 초기에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려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총 송금한 1,200만 원으로 입국에 소요된 500만 원(브로커 비용 200만 원, 이동 비용 300만 원)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생활이 빠듯하다.

건강

4월 20일 출산일에 남편은 위염으로 3일간 입원했다. 남편 보험으로 아이를 혼자 낳고 보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아기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기의 성기에 염증이 생겨 입원치료가 필요했다. 7일 입원했는데 보험이 되지 않아 120만 원이 청구되었다. 자기비용 50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교회의 도움으로 힘겹게 해결했다.

현재 아기가 고열로 고생한다. 그러나 병원비가 비싸서 가지 못하고, 약국에서 구입한 시럽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있다. 타잉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생활풍경

미등록 상태라서 불안하여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주로 집에서 아기를 보고, 주변 친구가 방문하면 음식을 사와서 같이 논다. 아이만 보낼 수 있다면 남편과 남아서 좀 더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있다. 양육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 사이트에서 구하거나 교회 사람들과의 논한다.

판의 이야기(남편)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판(29세)은 1982년 베트남에서 태어났고, 농사짓는 부모와 누나, 여동생이 있다(3남매 중 둘째). 부친을 도와 공사장에서 건축 일을 하다가 전문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던 중 2005년 6월 고용허가제(E-9-2)로 입국했다. 3년 일한 후 2008년 5월 출국했다가 한 달 뒤 재입국하여 현재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비자는 2011년 6월이 만기다. 입국 시 비용은 2천달러(25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별도의 브로커 비용은 없었다.

2007년 6월 타임을 처음 경기도 여주군 ○○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수원에서 결혼식을 했으며 친형님과 친한 친구만 참석했다. 그동안 고향의 부모님께 1,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현재는 못하고 있다.

일터

파이프공장에서 3년간 일했다. 재입국 후 2개월 만에 파이프를 누르고 만드는 공장으로 옮겼다. 파이프 절단작업장에서 6개월 프레스 작업하는 동안, 손가락 잘린 사건을 2차례나 목격했다. 신나 냄새에 두드러기가 심해서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피로도 누적되어 C&C선 반회사로 이진했다. 좋기는 했으나 주야간제가 있어서 2009년 12월 지금의 회사로 옮겨 주간 일만 한다.

일터에서 한국 사람보다 기술이 더 뛰어나도 월급 차이가 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입원해서 회사에 통보하고 반일을 늦었는데, 회사에서는 즐기게 나오라고 전화하고, 월급을 까고, 휴일에 대체근무를 강요했다. 토요일 격주로 5시 반까지 근무했으나 보름 전부터(8월 하순경) 12시 반까지만 일한다.

건강

그동안 일이 힘들어서 얼굴에 온통 기미가 심하게 졌으나, 현재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주야근 반복과 불규칙한 음식섭취로 위염이 생겼다. 치료를 했으나 현재도 아픈 느낌은 있고 눈도 자주 충혈된다. 병원에 갔는데 위장병이라고 했다.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

생활

기본급 90만 원에 연장근무를 해서 140만 원을 받는다. 집세(20만 원, 보증금 30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고, 200만 원은 상환), 인터넷 비용과 공과금 50만 원을 내고 나면 빠듯하다. 항상 통장이 비어 친구들한테 빌렸다가 갚곤 한다.

파이프 계통과 금형공장 일은 베트남에서 발전시키거나 소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에서 쓰는 파이프가 많이 쓰이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혼치 않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한국어를 잘하면 베트남 귀국 시에도 한국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회계사무소도 월급이 많지 않다. 여유가 된다면 필리핀에서 마트를 차려 생업을 계속하고 싶다.

기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때 느끼는 것은 친절한 접수계에 비해 내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점이다. 가족관련 사항이나 비자에 대해 질문하면 부인과 아기는 본국으로 가라고 한다. 최근 외국인인 많아지면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한국 정부가 기술자를 어느 정도 대접해 주면 좋겠다. 지금은 기술이 있어도 최저임금만 주고 있다. 아빠가 등록 노동자이고 의료보험이 있으니, 아기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

에필로그

판의 얼굴은 언제쯤 맑은 그대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위장병과 고된 노동, 힘든 환경으로 얼굴 전체에 기미가 심하다. 다행스럽게도 기미는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합법적 체류기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6년 이상 일했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제2의 고향을 등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임신중에도 일하고 출산일에도 일했다



란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3년 후 미등록자가 되었다. 입국 2년 후 베트남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2001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3년 후 미등록자가 되었다.

란의 두 아들은

6살 된 아들이 있는데 7개월 때 귀국하는 삼촌이 데리고 가서 지금은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 화상통화로 그동안 볼 수 있었는데 1년 전 베트남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 나서 못 보고 있다. 많이 보고 싶다. 큰 박스에 넣어서라도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째 아들은 18개월 전 병원에서 출산했고, 비용은 160만 원이 들었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소개해 준 병원이 있었는데 병원비는 썼지만 출산할 수 없는 병원이었다. 아들은 목에 염증이 생기는 등 자주 아프다. 한 번 검사받는데 2만4천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든다. 한국말을 잘 몰라서 아이가 아플 때 어려움이 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다

요즘은 이주민지원단체가 소개해 준 병원에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끔 감기로 병원에 가는데 치료비는 8천 원 정도다. 그런데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지정해준 병원은 거리가 멀어서 갑자기 아플 때는 이용하기 어렵다. 한 친구는 작년에 척추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비가 200만 원 이상 나왔다. 작년에는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모두 부담했다.

18개월 된 아들은 친구가 돌봐준다

아들이 허약해서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고 있다. 출산 11개월 후부터 일하고 있다. 미등록이므로 유치원에 맡기는 것도 어렵다. 유치원 원장 중에는 미등록 아이를 받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 시설이 정지 당한다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아들은 허약 체질이므로 병원비가 가장 문제다. 언제 단속 당할지 모르므로 유치원에 맡기는 것도 두렵다.

18개월 된 아들은 아이를 낳고 몸조리 하고 있는 친구가 돌봐주고 있다. 출산한 친구에게 40~45만 원 정도 주면서 맡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산한 친구에게 맡기다 보니 18개월 동안 세 번씩이나 다른 친구에게 맡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친구에게 아들을 맡기고 지금은 일

을 하고 있다. 임신 중에도 일했다. 출산하던 날도 출근했다.



아들을 낳던 날

점심시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3시간 기다렸다가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아직 멀었으니 집에 갔다가 더 아프면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런데 당시 공장이 매우 바쁜 상태여서 다시 공장으로 가서 일하고 7시에 퇴근한 후 다시 병원으로 가서 9시에 아들을 출산했다. 시어머니는 드라마 <꽃보다 친구>에서 이민우가 너무 잘 생겼다고 손자의 이름을 이민우라고 지었다.

사회생활

함께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던 친구들은 거의 출국했다. 단속 당할 경우 연락할 단체나 사람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이 기저귀, 우유 등으로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약 60만 원 정도다. ○○동에 27만 원 정도 받고 돌봐주는 유아원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생각 중이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갈 수 없었다

친정어머니는 4개월 전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매년 3월이면 염증에 시달렸는데 결국 염증으로 사망했다. 마지막이라 가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와도 도움을 줄 수 없으므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갈 수 없는 슬픔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근처 절에 계신 스님이 어머님의 명복을 빌어주겠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제사를 지냈다. 한국인이라면 돈 받고 해주겠지만 미등록 외국인에게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그냥 해주었다.

친정 형제는 언니 2명, 오빠 1명이 있는데 한 언니는 백혈병 비슷한 병을 앓고 있고, 대학생인 큰언니 아들은 돕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언니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갔다. 언니 소개로 한국을 알게 되어 산업연수생으로 올 수 있었다. 남편은 4형제인데 한국에 온 사람은 없다.

경제생활

입국 당시 200만 원 정도 소개비가 들었다.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마련하는 게 힘들었다. 산업연수생으로 왔던 언니가 도와주고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올 수 있었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양말공장에서 주야간 일했고, 그 다음에는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65만 원 정도 받았고, 요즘은 9시 출근 7시 퇴근 조건으로 9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남편은 9시 출근하여 9시에 퇴근하면서 150만 원 정도 받는다. 저축은 못하고, 돈이 모이면 송금하고 있다. 방은 보증금 400만 원에 40만 원 월세로 살고 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들 키우는데 많은 조언을 해준다.

사회생활 & 결혼생활

이 지역 이주민지원단체 이외엔 알고 있는 단체가 없다. 이 단체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주고 있다. 다른 단체는 시간이 없어서 참가하고 싶어도 못한다. 베트남 친구들은 가끔 만나고, 종교는 없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다. 처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때는 3년만 있다가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지금은 귀국 계획이 없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귀국해야 하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계속 한국에 머물고 싶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자유롭게 베트남을 오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보육문제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단속 당할 염려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야’가 나라를 떠나려 한다



프롤로그

몽골인 자야 씨는 두 달 뒤 한국을 떠날 거라고 했다. 그는 또 말했다. “한국에서 오래 살 생각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 하는 줄만 알았다. 게다가 자야 씨 부부는 돈도 많이 벌었고, 심지어 몽골에 아파트까지 사놓은 상태였다. 아쉬울 거 없다는 듯 지금이라도 당장 가방을 싸려는 말투에 필자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다. 자야 씨에게 우리나라가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주지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떠날 때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나?”라고 물었다. 그는 담담하게 “많은 걸 배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았어요.”라면서, 몽골에 가면 “추운데 어떻게 살까 걱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몽골보다 나은 점은 흠지 않은 날씨뿐이었던가. 괜한 서운함에 ‘그래요, 안녕히 잘~ 가세요.’라며 마음속으로 작별인사를 하던 차에, 자야 씨가 덧붙였다. 큰아들, 남편은 두고 둘째 딸하고만 떠난다고. 남편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갈 거라고. 자야 씨는 왜 그렇게 성급히 한국을 떠나려 하는 것일까?

자야의 이야기

자야

올해 38세. 현재 미등록 상태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이다. 한국에 온 지 11년째고, 한국에 오기 전에는 남편이 만든 구두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했다. 그밖에 딱히 했던 일은 없다. 몽골에 사는 오빠 두 명과 한국에 온 지 올해로 5년 된 여동생이 있다. 어머니는 여동생이 태어날 때 사망했다. 여동생은 지방에 있는 모텔에서 숙식하며 모텔 청소를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만나고, 오빠와는 전화로 자주 연락한다. 비자가 나오면 오빠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11년 전 한국에 왔을 당시 한국어는 전혀 못했지만, 시간 나면 열심히 책을 보면서 공부했다. 지금은 통역 없이 인터뷰할 정도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남편

남편의 이름은 ‘무칼리’고 올해 40세며 역시 미등록자다. 몽골인이고 12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 한국 오기 전에는 몽골에서 전통구두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나 몽골 인구가 300만 명

에 불과해 장사가 잘 되진 않았다. 부모 모두 살아계시고 자매 6명, 동생 4명, 총 10명의 형제가 있다. 여동생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아이 낳고 사는데 시누 남편도 미등록자이다. 남편은 두 달 전 간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나라 씨는 비자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건 아닐까 추측한다. 술과 담배를 했지만, 병 때문에 그만뒀다.

결혼생활

두 사람은 1990년, 20세에 결혼했다. 몽골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다. 남편과는 물론 몽골어로 대화한다. 남편이 술 마셨을 때 자야 씨가 가끔 잔소리를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폭력을 쓰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한국에 온 계기

한국에서 돈 벌고 싶었다. 결혼 후 9년간 몽골에서 살다가 두 사람 모두 서른 되기 전에 바다를 건너왔다. 1998년 11월 남편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고, 약 5개월 뒤인 1999년 4월 자야 씨가 들어왔다. 브로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줬다. 처음에는 2년만 하고 몽골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돈을 계속 벌어야 하다 보니 어느 샌가 10년 넘게 머물고 있다. 남편은 서울 오기 전 강원도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했고, 서울로 올라와서는 휴대전화 공장에서 일하다 이곳으로 이사 왔다.

건강

자야 씨는 감기 외에 크게 아팠던 적이 없다. 신장이 안 좋은 큰아들은 최근 서울 적십자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했다. 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 진료비, 약값 모두 무료다. 이곳에서 멀다는 점 이외엔 불편하지 않았다. 적십자병원을 몰랐을 때인 2002~2003년도에는 ○○병원에 갔는데, 12일간 치료 비용으로 50만 원을 냈다. 그뻘 보험도 없었다. 아들도 아픈데 설상가상 남편까지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 두 달째 약을 먹고 있지만, 많이 좋아지진 않는다. 병원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했다.

수입 및 지출

일이 계속 있을 때 남편은 월 90~120만 원, 자야 씨는 20~30만 원 정도 번다. 2002년 큰아들이 아플 때는 남편 수입의 절반을 병원비로 냈다. 둘째 딸을 낳을 때는 100만 원을 냈다. 남편은 이삿짐센터에서, 자야 씨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번다. 얼마 전에는 김밥천국에서 김밥 마는 일을 했다. 시급 5천 원에 일당 5만 원을 받았다. 여섯 살인 둘째 아이 유치원비로 한 달에 30만 원, 공과금으로 30~40만 원을 낸다. 요즘은 저축을 못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50만 원 정도 했다. 자야 씨는 송금을 못한다. 자야 씨의 여동생이 몽골로 돈을 보낸다. 남편도 송금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명절에는 10~20만 원을 부칠 때도 있다. 교회에 가면 현금도 한다. 남편은 수입 전부를 자야 씨에게 준다.

아이들

아이는 둘이다. 몽골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다. 7~8살 때 한국에 왔다. 여섯 살인 둘째딸은 한국에서 태어났다. 아들은 기술계 고등학교에 다닌다. 아들이 직접 지원했다. 부모와 담임선생님조차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자야 씨는 섭섭하지 않단다. 반에서 1~2등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고, 항상 장학금을 받아서 돈도 안 든다. 입학할 때 교복비로 50만 원 낸 것 말고는 지금까지 따로 돈을 낸 적이 없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거나 컴퓨터 게임, 또는 동생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딸은 자야 씨가 일 나갈 때마다 시누이에게 맡긴다. 2005년 딸을 낳고 1년 후 일을 시작했다. 둘이 갓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30만 원을 냈다. 지금은 33만 5천 원인데, 비싸지만 아이를 정말 잘 돌봐준다. 오전 8시~오후 7시까지 11시간 동안 봐준다. 큰아들이 가끔 어린이집에 들러 동생을 데려가기도 한다.

자녀와는 한국어, 몽골어를 섞어서 대화한다. 아들은 한국어를 잘하고, 몽골어도 듣고 말하는 것까진 가능하다. 그러나 둘째는 몽골어를 전혀 못하고 하려고도 들지 않는다. 딸과 얘기할 때는 한국어를 쓰는데 몽골어를 가르칠 생각은 없다.

자야 씨는 남편과 달리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인생 조언은 자야 씨가 더 많이 한다. 아들이 영어, 몽골어 배워서 통역사가 됐으면 한다. 부모가 미등록이지만, 아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아들을 위해서 비자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자녀교육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섞여 지내는 것이 좋다. 잘 어울릴 수 있어서다. 어린이집에서 주말, 야간까지 아이를 봐주길 원하지는 않는다. 비용이 좀 비싸다는 점 빼고는 아주 만족한다. 자야 씨는 딸에게 “넌 몽골 사람이다.”라고 말해준다. 그럴 때면 딸 역시 “난 몽골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 “원래 몽골 사람이고, 엄마 아빠가 몽골서 왔다. 너는 한국사람이 아니다.”라고 상기시키지만, 자녀는 오히려 부모가 비자문제로 곤란을 겪을 때 자신이 몽골인이라는 걸 떠올린다. 가족은 함께 밥 먹고, 함께 자야 한다는 것이 자야 씨의 가족관이다.

한국생활

남편은 오전 7시쯤 출근하지만, 하루 한 번은 꼭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다. 식사 후엔 놀이터에 놀러 가 바람을 쐬다. 얼마 전에는 가평의 계곡으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다. 딸 생일 때는 아이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를 한다. 자야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지만, 남편은 라마 불교를 믿는다.

몽골인 커뮤니티가 있지만, 정식 모임은 아니다. 시간 날 때마다 열 명 정도 모인다. 이주노동자를 돕는 단체는 이 지역 이주민지원단체만 알고, 2007년부터 이곳에만 온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교회 목사님이나 자매들, 몽골인 친구들,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같은 위험한 상황에 빠진 적은 없었다. 아마도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외모 때문 아닐까 싶다.

차별경험과 한국이란 나라

몽골인이라서 차별받은 적은 딱히 없지만, 무비자여서 일을 못할 때는 곤혹스럽다. 병원 갈 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살기에 한국은 좋은 나라다. 외국인이라고 나쁘게 대하지 않으며, 돈 벌면 바로 월셋방을 구해 살 수 있다. 무비자란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걸 빼면 한국은 좋은 나라이다.

그렇지만 떠나야

그럼에도 자야 씨는 딸과 함께 한국을 떠나려 한다. 두 달 뒤 몽골로 돌아가 사업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올까 한다. 그러나 돌아올 수 없다 해도 떠날 것이다.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고향에서 살면 된다. 한국에 있으면 계속 힘들게 살아야 한다. 세차장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비자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 몽골로 미리 건너가서 이미 사놓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앞으로 살 궁리를 하고 싶다.

몽골에서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배운 네일아트, 반영구문신 기술로 사업하고 싶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들은 엄마가 간다 해도 무덤덤하다. “너 혼자 다 해야 해.”라고 하니 “알았다.”라는 대답뿐이다. 남편은 자야 씨가 몽골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자야 씨가 가면, 아주 안 돌아올 것 같아서다.

에필로그

남편이 반대하는데도 굳이 추운 몽골에 가려는 자야 씨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 인터넷이 마무리될 때쯤, 자야 씨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자야 씨는 몽골에 사는 시누이에게 아파트 대금으로 계속 돈을 부쳐왔다. 총 3천만 원가량 된다. 시누이는 한국에 있는 자야 씨 대신 아파트를 사줬는데, 자야 씨가 아니라 시누이 본인 이름으로 올려놓았다. 그는 아파트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자야 씨에게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못한 터라, 자야 씨는 집을 되찾으러 그리 급하게 한국을 떠나려는 것이었다. 송금 영수증으로 자야 씨가 아파트의 진짜 소유주임을 밝히려려고 한단다. 집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모국을 떠났던 자야 씨는, 돈 때문에 또 이 나라를 떠난다. 작은 구름이 태풍이 되듯, 해가 거듭될수록 자본은 거대한 바람이 되어 현대인을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날려 보낸다. 필자의 편견을 깨고 거침없이 한국을 등지려던 자야 씨를 보며 느꼈던 초조함은, 그 원인이 ‘돈’이라는 걸 알게 되자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자야 씨는 떠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밀려 ‘날아가고 있었다. 자야 씨가 한국에서 고생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갖고 한국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하미



2시에 만나기로 했던 하미는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오느라고 10분 정도 늦었다면서 매우 미안해했다. 하미는 감기에 걸렸으면서 기침을 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 병원이나 약국에 쉽게 갈 수 없다고 했다. 상담 내내 기침을 심하게 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병원비가 만 원 넘게 나오고 약값도 만 원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나올 때까지 참는다고 했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2000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했다.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사업장을 변경했는데 옮겨간 사업장 사장이 변경 신청을 안 해서 2005년부터 미등록자가 되었다. 2002년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체류기간 만기로 2004년부터 미등록자가 되었다.

첫아이는 베트남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들은 6살인데 6개월 되었을 때 출국하는 친구 편에 베트남으로 보내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 출산 비용은 약 40-50만 원 정도 들었다. 4살 된 딸은 지금 함께 살고 있다.

작은 딸만 한국에

딸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다. 처음에는 36만 8천 원을 지불했으나 사정을 알게 된 원장이 20만 원으로 깎아주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지내며 집에서 부업으로 전자제품 조립을 하고 있다. 수입은 20-30만 원 정도다. 그 밖에 베트남 전화카드를 판매해서 한 달 총수입이 50만 원 정도 된다.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특별히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단체는 없다. 얼마 전부터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에 갈 경우 약간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복잡해서 자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이용했다. 딸이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요즘은 이주민지원단체로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생활

산업연수생으로 일할 때는 2년 동안 약 36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고, 2년 후부터 75만 원 정도 받았다. 남편은 잔업을 많이 해서 좀 더 받았다.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는 플라스틱 공장으로 9시 출근하여 7시까지 일하면서 90만 원 정도 벌었다.

연수생으로 처음 입국수속을 밟을 때 소개자에게 수천 만 원의 소개비를 주었고, 하미씨 본인 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2백만 원 정도 들어갔다. 더 많이 지불한 사람도 있다. 수천 만 원이면 베트남에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지금은 소개비를 약 1억 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년 동안 일해서 수천 만 원을 갚았다. 남편도 7천만 원 정도 소개자에게 주었으나 2년 만에 갚았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남편은 자진출국기간에 베트남으로 갔다

한 달 전 베트남에 있는 시어머니가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출국했다. 자진 출국기간에 나갔으므로 벌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나 다시 돌아올 확신은 없다. 남편은 지금 베트남에서 집을 짓고 있다. 돈도 마련해 갔다. 종교는 없다. 베트남은 교육비가 비싸지 않다. 베트남엔 가정폭력 가정이 많은데 남편은 폭력을 전혀 모른다. 지금은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고, 천만 원 정도 모아지면 송금한다.

하미의 다른 형제들

남동생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5년 동안 일하고 있고, 오빠는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 남편의 고모는 3개월 여행비자로 들어와 같이 살면서 야간 일을 한다. 베트남 남편 집에는 부모님, 누나 2명, 여동생 1명이 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이 다시 못 오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사회생활

서울, 대구, 부천에서 살았고, 6년 전 이곳으로 왔다. 특별히 NGO 도움을 받은 건 없고, 처음 왔을 때 외국어대학에서 일요일에 한국어를 배웠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는 한국어와 컴퓨터 한국어능력시험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하미 씨는 1년 전부터 5개월 정도 한국어만 배웠다.

꿈이 있다면

베트남에서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시험에 떨어졌다. 2-3년 동안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람도 좋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날씨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여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 만약 한국에 계속 살게 되면 가이드로 일을 하고 싶다.

베트남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계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한국어능력

시험 2급을 취득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법학을 계속 공부하고 싶었으나 이제는 통역 일을 하고 싶다. 베트남에서는 병원 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진료를 받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번호표로 순서를 정해서 좋다.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

부모 형제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태에서 비자만 얻을 수 있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비자를 얻을 수 없으면 2년 후 딸이 학교에 들어가야 하므로 베트남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딸은 학교에 갈 수 있겠지만 하미씨가 미등록자이므로 언제 체포될지 몰라 불안하다. 지금도 직장에 나가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언제 체포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업을 하고 있다. 딸은 한국말을 잘한다. 집에서는 베트남어와 한국말을 혼용하여 쓴다. 하미씨는 주로 베트남어를 사용한다. 어린이집에 가서도 한국말이 서툴러 한 달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했다. 큰 아들과는 영상채팅을 한다. 많이 보고 싶다.

미등록자로 어려운 점은 딸과 함께 산책이나 외출을 하고 싶어도 체포당할까 두려워 나갈 수 없는 점이다. 추석, 공휴일, 일요일에는 별로 단속하지 않으므로 주로 일요일에 산책이나 운동을 한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친구들을 만난다. 일반적으로 일요일과 휴가철에는 미등록자를 체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 때 놀러 다닌다. 해운대, 에버랜드, 한강에 다녀왔다. 관공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한 적은 없다. 한국 아주머니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공장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다.

한국정부에 바란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어린이집 문제다.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아이들 교육이 걱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도 없었으면 좋겠다. 비자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도 없는데 엄마가 잡혀가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늘 걱정이다. 아이는 항상 집에 가서 자야 한다고 말한다. 체포당할 경우 제일 먼저 연락할 곳은 어린이집이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주민지원단체, 동생, 오빠에게 연락하겠다.

오토바이 위에서 행복한 가족



프롤로그

붉은색 방글라데시 전통의상이, 가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자넷과 잘 어울렸다. 자넷은 남편 라만, 아들과 같이 왔다. 4살, 아들은 건강하고 단단해 보였다. 금방이라도 뛰어 나갈 것 같던 개구쟁이 아들은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려주었다.

자넷의 이야기

자넷과 라만은 방글라데시에서부터 아는 사이였다. 라만이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와 같은 동네에 사는 자넷을 만났다. 라만이 1999년 먼저 한국에 왔다. 그들은 '전화결혼'했다. 양쪽에서 결혼을 증언할 최소 3인이 동석한 가운데 주례가 양쪽의 결혼의사를 묻고 전화로 성혼 선언을 하는 것이다. 3명의 증인들은 결혼서약서에 사인했다. 라만 쪽은 한국에 있던 삼촌과 친구 둘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결혼하던 해 자넷도 한국에 왔다. 전화결혼은 외국에 나가있는 연인들이 하는 방법이다.

한국으로

라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옷가게에서 일했다. 옷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한국 얘기를 들었다. 소개비로 500만 원을 주고 3개월 비즈니스 비자로 한국에 왔다. 그때가 1999년이였다. 형에게 빌린 돈 500만 원은 다 갚았다. 자넷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 있다가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2001년이였다. 자넷은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 소개비 400만 원을 지불했다.

부부의 원가족은

자넷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방글라데시에 사신다. 자넷은 남자 형제만 3명이다. 그 중 두 명은 지금 이곳에서 일한다. 라만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신다. 남자 형제가 라만을 포함하여 4형제이고 자매가 2명이다. 남동생 2명도 같은 공단에서 일한다. 처음에 동생 한 명은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지금은 동생 둘만 남아있다. 가끔 모여서 식사한다. 라만의 전화결혼에서 증인이 되었던 삼촌은 자진출국했다.

건강

자넷은 감기 등 가벼운 질병 외에 특별히 아픈 곳은 없다. 1년 전 치질수술을 했다. 2007년 아들을 출산할 때, 산부인과에 3일간 입원하고 70만 원을 지불했다. 의료공제카드로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아빠와 동행하거나 이주민지원단체에서 같이 간다. 아들은 출생 초기 황달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비가 140만 원이나 나왔다. 그때도 의료공제카드에서 30% 할인해주었다. 아들은 감기로 목이 붓는 등 자주 아픈 편이지만 큰 병이 있는 건 아니다.

어린이집

아들이 10개월 될 때부터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보육료가 10만 원이다. 다른 어린이집은 35만 원 정도 한다. 어린이집은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처음에는 아들이 걱정되어 점심시간마다 자넷과 라만이 오토바이를 타고 어린이집에 와서 아들을 지켜보곤 했다. 아들은 어린이집의 한국 엄마(보육교사)를 아주 좋아해서 울다가도 한국 엄마를 보면 울음을 그칠 정도이다. 한국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일요일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집으로 와서 보기도 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 안심이 된다.

아들은 네팔 여자친구와 아주 친하다. 둘이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논다. 바로 앞집에 살아서 항상 같이 논다.

방글라데시 말을 따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가르칠 생각이다. 외국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보육하는 것보다는 같이 배우는 것이 좋다. 같이 있어야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엄마는 방글라데시 사람이니까 손으로 밥 먹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숟가락으로 먹을 거야."라고 한다.

아들도 단속을 무서워한다

2008년 외국인노동자 일제단속 시 라만과 자넷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나가서 창문 밑에서 숨죽이고 2시간가량 숨어 있었다. 당시 아들은 어린이집에 있었다. 라만과 자넷은 운 좋게 잡히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잡혀서 추방되었다. 그 이후 단속에 걸린 적이 없었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곳에만 있었다. 이주민지원단체 차를 타고 같이 가는 일 말고는 이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아들도 단속이 뭔지 알고 무서워한다. 단속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단속정보는 누군가 잡히면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알게 된다. 연락이 오면 바로 도망간다. 어떤 날은 아들이 전화하여, "단속나왔어."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알려주어서 전화한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경찰차만 보면 무서워한다. "경찰 아저씨 때려줄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들은 방글라데시로 가기 싫어한다

아들은 방글라데시로 가기 싫어한다. 그러나 자넷은 내년쯤 아들과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생각이다.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방글라데시로 갈 생각이다. 비자가 없어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도 없고, 교육 받기도 어렵다.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의사들은 일자리를 많이 잘산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방글라데시로 가서 말도 배우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자넷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아들과 같이 있으면서 직접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 라만은 한동안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기로 했다.

가정생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가족간의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방글라데시 TV나 한국 TV를 본다. 아들은 <뽀로로>를 좋아한다. 집에서는 주로 방글라데시 말을 사용한다. 아들은 한국말과 방글라데시 말을 다 잘하는 편이다. 가끔 아들이 하는 한국말을 부모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그러면 아들이 속상해서 울기도 한다.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한국말을 더 열심히 배웠을 터인데, 정말이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가끔 여행가는 것을 빼면 가족끼리 여행 간 적이 없다. 제주도도 꼭 가보고 싶다.

자넷은 8시30분 출근해 6시 퇴근하고 라만은 5시30분 퇴근한다. 그래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집에 오는 시간에는 거의 라만이 집에 있다. 야근이 있는 날은 자넷이 집에 일찍 온다.

라만은 자넷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다. 오토바이는 75만 원 주고 샀다. 집에서 두 번째로 비싼 물건이다. 제일 비싼 물건은 컴퓨터다. 돈 관리는 주로 자넷이 한다. 자넷은 전통의상을 즐겨 입는다. 전통의상은 방글라데시에서 가족들이 가끔 보내준다.

식재료는 가까운 슈퍼에서 구입한다. 아침과 저녁은 집에서 해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간다.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교사들이 무슬림 아이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빼준다.

이직

자넷은 임신으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아들이 10개월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아들을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자넷은 2001년 입국 후 네다섯 번 공장을 옮겼다. 처음엔 매트공장에서 일했고, 유리공장 그리고 가구공장으로 옮겼다. 자넷과 라만은 계속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최근 다른 공장에서 일한다.

경제생활 & 사회생활

자넷과 라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아기를 가질 여유가 없었다. 입국 초기 둘이 같이 일하던 공장의 사장이 약 1,000여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 당시 이주민지원단체 신부님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받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았다고 한다. 한국 사람들이 공장에 불을 질러

경찰이 나왔을 때, 임금체불 사실을 말했더니 경찰이 다 받아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라만이나 자넷 같은 미등록 이주민은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라만은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받는다. 야근을 하면 수당이 추가된다. 자넷은 130만 원 정도 번다. 두 사람 수입을 합하면 300만 원 정도다. 여기서 집세 40만 원(방2개), 공과금 40만 원 정도, 아들의 우유값, 의류비, 식비 그리고 병원비 등 생활비가 200만 원 가까이 든다. 저축은 80~100만 원 정도 한다. 저금한 돈은 본국으로 송금하여 집과 가게를 사 두었다. 새로 분양하는 백화점의 점포를 하나 장만했다. 라만은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옷가게를 할 생각이다. 그 전까지는 세를 줄 생각이다. 라만은 가구공장에서 TV받침, 침대, 테이블을 만든다. 자넷은 타코 박는 일을 한다. 자넷은 겁이 많다. 처음에는 타코가 손에 박힐 경우 무서워서 빼지도 못했다. 어려움에 처하면 제일 먼저 이주민지원단체에 연락할 것이다. 평일에도 이주민지원단체에 자주 모인다. 보통 밤 9시 정도까지 사람들이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쉬거나 가족과 같이 놀러간다. 옛날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아서 추석이나 설날 축제를 벌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면서 축제를 열지 않는다. 지역의 이주민 극단에도 가족과 같이 간다. 자넷은 그 모임에서 연극을 한다. 여성들만의 모임은 따로 없지만 집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보육문제 등을 상의한다.

종교생활

이주민지원단체 근처에 무슬림 기도방이 있다. 남자들만 입장할 수 있다. 무슬림들은 한방에서 남녀가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자 기도방도 만들려고 계획했으나 아직 못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기도한다. 아들도 엄마와 같이 집에서 기도한다. 원래 하루에 다섯 번 알라신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라만은 하루에 두 번씩 기도방에 가서 기도한다.

외국인이어서...

외국인이어서 무시당한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사장과 친해지면 사장이 “라만씨”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물론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야! 이리와 봐!”라고 하는 사장이 있다. 여전히 욕을 많이 듣는다.

한국 사람은 불량을 내도 사장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불량을 내면 야단을 친다. 자넷의 사장은 변덕이 심해서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다. 자넷의 공장에 12명이 일하는데 3명만 한국인이다. 여자는 3명이다. 사장 사모님은 이상한 사람이다. 6시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

한국은 월급이 많아서 좋지만 갑작스런 단속이 너무 싫다. 정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편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 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집중단속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한국인들이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거나 범죄인 취급하

지 않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공장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라만이 안내해준다. 일요일이지만 주문이 밀려 일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바깥으로 나오니 라만과 자넷,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 라만이 운전대를 잡고 아들은 라만 앞에 섰다. 그렇게 하니 라만의 앞은키와 대충 비슷하다. 자넷은 뒤에 앉았다.

라만의 오토바이가 달린다. 자넷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오토바이가 달리는 대로 바람에 날린다. 그녀의 붉은색 전통의상도 같이 바람에 날린다. 우리가 잘 따라오는지 아들이 뒤를 돌아본다. 정리되지 않은 가구매장과 공장 사이로, 자넷 가족과 그들의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클로즈업된다.

자넷 가족, 혹은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먼지 나고 머리 아픈 페인트 냄새를 마다않고 십년 넘게 일했다. 그 사이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다. 다치기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나마 그 일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면 바로 강제추방된다.

방글라데시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라고 한다. 그런데 라만은 한국에 남고 자넷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생각이다. 그리고 걱정이다. 강제추방되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친구의 아이가 매일 “집에 가자.”고 운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집은 공장이 늘어진 좁은 골목의 작은 방이다. 친구들과 한국말로 떠들고 놀던 그 골목이 그 아이의 고향이다.

그들을 만난 날 밤, TV에서 경남 남해 독일 마을을 3일간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30년간 독일에서 살아준 아내를 위해 한국에 왔다는 초로의 독일 남성, 아직도 귀국하지 않은 딸들을 기다리며 독일인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는 노부부,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독일 남편, 한국 부인….

간호사로 독일에 가서 광부로 온 한국인과 결혼한 분이, 자신들은 독일에서 어떤 차별도 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녀교육 문제로 부모 중 하나라도 독일 국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부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했다고 했다.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정착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교육받고 성장했는지, 가난한 조국을 돕기 위해 이국땅을 밟았던 한국인들이 독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보았다. 이제, 가난한 조국과 가족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보아야 한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건 옛 이야기



프롤로그

인터뷰가 익숙하지 않은 듯 모우수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내내 아빠에게 안겨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모우수미의 밝은 성격이 드러났다. 모우수미는 웃음이 많고 농담을 잘하는 생기발랄한 사람이었다. 이 인터뷰를 왜 하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묻던 모하메드도 차츰 경계를 늦추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모우수미의 이야기

모우수미와 모하메드는

모우수미는 여자 경찰이 되고 싶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개비 1,000만 원을 들여 3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그때가 2003년이였다. 비자가 만료되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사정했다.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직원이 맘대로 연장해주기도 했다.

모하메드는 3개월짜리 비즈니스비자로 입국했다. 소개비 1,000만 원은 본국의 땅과 금을 팔아서 마련했다. 모우수미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하메드를 만났다. 그들은 만난 그 해에 이슬람 기도방에서 결혼했다.

방글라데시의 가족은

모우수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신다. 요사이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을 못하신다.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둘이 있다. 남동생도 일년 전 한국에 와서 미등록으로 일하고 있다.

모하메드의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신다. 모하메드는 남자형제 둘, 여자형제가 둘이다. 남동생 하나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갔다. 지금은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돈이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 공장을 차리기가 쉽지 않다. 가족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20~30분 정도 통화한다. 전화카드보다 인터넷 전화가 싸서 주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다.

건강

모우수미는 몸이 아프다. 한국에 온지 1년 만에 신장 이상을 발견했다. 일터에 먼지가 많고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병이 생긴 것 같다. 9일간 입원하고 120만 원을 지불했다. 지금도 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번 검사하는 데 20만 원 정도 든다. 한 달에 두 번쯤 검사한다. 진료만 하면 8만원이다. 매주 진료를 받아야 하는 때도 있다. 언제 완치될런지 알 수 없다.

평일 병원에 가려면 사장의 눈치를 봐야 한다. 하지만 사장이 쉬 허락해주지 않는다. 얼마 전에도 병원 가는 날인데 사장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 남편도 같이 가니까 남편도 일을 못한다. 모우수미의 담당의사는 일주일에 세 번만 진료한다. 일요일에도 진료를 하면 좋겠다. 교통사고도 났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충돌했다.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2008년이였다. 3개월간 입원했고, 한 7개월 일을 못했다. 보험이 없어 이주민지원단체에서도 도와주었다. 상대방이 치료비도 안주려 했는데 이주민지원단체가 받아주었다. 단속에 걸릴까봐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때도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병원까지 동행해주었다.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모하메드는 2000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다. 공장에서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1년간 물리치료 받고 6개월간 통원치료 했다. 보통 진료비가 1,000~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의료공제카드(외국인노동자 의료보험공제조합카드)로 할인받아서 450만 원을 냈다. 그 돈은 이주민지원단체와 동생, 친구들에게 빌렸다.

당시 의료공제카드가 있을 경우 수술비는 80%, 최고 400만 원까지 지원해주었다. 지금은 1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공제카드가 있으면 약값은 보통 50% 할인되고, 입원비는 20% 할인된다. 딸 출산 때도 의료공제카드로 할인받아, 50~60만 원 정도 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인율이 더 높다. 의료공제카드 사용료로 한 달에 7천 원가량을 낸다.

딸은...

딸은 이주민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30분에 집으로 온다. 토요일은 5시쯤 온다. 주로 모우수미가 집에 있다가 딸을 맞는다. 야근하는 날은 친구들에게 부탁한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모우수미의 어머니가 본국에서 들어와 딸을 돌봐주었다.

딸의 보육은 전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긴다. 어린이집에서 다 처리해준다. 감기 등으로 아파도 어린이집에서 병원에 데려간다. 한 달 보육료는 10만 원이며, 피아노, 태권도, 영어 등도 가르쳐준다. 한 달에 한 번 야외활동을 나간다. 딸은 방글라데시 엄마(모우수미)보다 한국 엄마(보육교사)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 딸이 외국인이라서 겪는 어려움은 없었다. 딸에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고 물으면 ‘한국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딸이 더 크기 전에 방글라데시로 가야할지도 모른다. 너무 늦으면 방글라데시에 가더라도 교육받기가 어려워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

집에서는 주로 방글라데시 말을 사용한다. 딸이 하는 한국말을 모우수미가 못 알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딸에게 방글라데시 말을 억지로 가르칠 생각은 없다. 자신들도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다. 딸도 필요하면 방글라데시 말을 배우면 된다. 딸은 선생님, 간호사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어한다. 모하메드는 딸이 종교인이 되기를 바라고, 모우수미는 딸이 스텝어디스가 되었으면 한다.

실사 이주민 자녀만의 학교가 있다 해도 한국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학교에 보낼 것이다. 어차피 한국에 살고 학교를 벗어나면 한국인 사회에 흡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국 아이들과 같이 배우는 것이 좋다.

가정생활

일요일에는 TV를 보고 가까운 물가 등에 가지만 단속에 걸릴까 봐 멀리 나가지 않는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만 멀리 갈 수 있다. 몇 년 전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롯데월드에서 한 번 가본 뒤 딸은 롯데월드에서 다시 가고 싶어 한다. 딸이 나가자고 졸라도 단속이 두려워 나가지 못한다. 하루에 딸과 같이 있는 시간은 2~3시간 정도 된다. 방 하나에 세 식구가 살고 있다. 딸이 놀 공간도 없다. 미등록만 아니라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꿈이 있다면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다.

약국 앞에서 잡혀 추방당한 시동생

모우수미의 시동생이 약국에서 나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다가와서 잡았다. 그때 모우수미도 같이 있었다. 모우수미는 애절한 표정으로 “아이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니 출입국 직원이 모우수미만 보내주었다. 시동생은 그 길로 바로 추방되었다.

약국이나 병원 그리고 복합상가에서 단속이 가장 빈번하다. 그래서 병원에 갈 때도 이주민지원단체 봉고차로 병원 출입구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이주민지원단체가 없으면 이 동네 곳곳에서 단속이 벌어질 것이다.

이 지역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잦다. 단속이 뜨면 노동자들은 산으로 도망간다.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숨어있어야 하는 날도 있다. 단속반이 돌아가면 다시 공장으로 와서 일을 계속한다. 지난 화요일에도 단속이 있었다. 보통은 사전에 단속정보가 돈다. 단속 나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낮에는 일하지 않고 밤에 일한다. 집중단속 때도 산으로 도망가서 하루 종일 산에 있었다. 단속반이 사무실 구석구석을 뒤졌다. 사장님 차 안까지 뒤졌다.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이 추방되었다.

언제 단속이 올지 모른다.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사람을 내일부터는 못 볼 수도 있다. 언제나 불안한 신분이다.

경제생활 & 사회생활

만약 위기상황이 닥치면 제일 먼저 이주민지원단체에 연락할 거다. 신부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한국에서 돈 벌기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막상 와보니 많이 힘들었다. 주문이 밀리면 야근을 해야 한다. 야근하는 날은 9시, 10시까지 일하기도 한다. 한 달에 5~6번 야근한다. 모우수미는 마이아를 돌보아야 해서 야근이 싫다.

2005년 딸이 태어났다. 모우수미는 딸을 낳고 1년 정도 집에 있었다. 모하메드의 월급은 140만 원 정도다. 야근하면 180~190만 원 정도 된다. 모우수미의 월급은 110만 원 정도다.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러면 점심값 1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한국음식에 돼지고기가 많아서 식당음식을 먹기 힘들다. 무슬림이기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모우수미 부부는 월세 20만 원 짜리 빌라에 거주한다. 딸의 교육비로 10만 원, 그 외에 공과금과 생활비로 120만 원 정도 든다. 거기에 병원비, 외식비, 옷값 등을 더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쓴다.

저금을 따로 하지 않는다. 2년 전까지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송금했다. 요사이 여유가 되는데로 20만 원, 3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보낸다. 주로 모하메드 집으로 송금한다. 방글라데시에 집과 가게를 사 두었다. 모하메드의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므로 특별히 돈이 들지 않는다. 송금은 집과 가게를 사기 위한 것이다. 만약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모하메드는 신발, 의류가게를 하고 싶다.

종교생활

한 달간의 라마단이 어제 끝났다. 해가 지면 밥을 먹을 수 있으나 낮에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일하느라 허기가 저서 힘들었지만 라마단은 지킨다. 원래는 알라신에게 하루 5번 기도해야 하지만 일하느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도 기도방에 하루에 한 번은 꼭 간다.

이태원에 가면 여성을 위한 기도방이 따로 있다. 모우수미는 이태원의 여자 기도방에 딱 한 번 가보았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는, 똑같은 노동자이면서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에게 심부름을 강요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시켰다. 한국인들은 일을 조금만 해도 외국인보다 월급을 많이 받았다. 한국인이 하루 12만 원이면, 외국인은 7만 원이었다. 초보자도 한국인은 190만 원을 받지만 외국인은 130만 원을 받았다. 일 못한다고 한국인들이 때리기도 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기사가 반말하고 바쁜 시간에는 태워주지도 않았다.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간에도 차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에게는 잘하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한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정부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편히 일하고 살다가, 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아이들도 합법적으로 살게 해주면 좋겠다. 가능하면 국적도 취득하고 싶다.

한국에 12년이나 거주했는데 체류자격을 주지 않아 너무 야속하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5년 거주하면 비자를 준다. 처음엔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살 생각이 아니었다. 한국이 좋아서 계속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우수미의 치료를 위해서도 한국에 있고 싶다.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민의 아이들은 한국인도 아니고 방글라데시인도 아닌 무국적자다. 아이들이라도 한국인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고, 부모들도 편히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뉴스를 보니,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희생'이 언급되고 있다. 뉴스에서 언급된 맥락을 벗어나 '희생'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었다. 희생.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희생. 사회지도층이 될 '희생'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들의 향후 행보를 '희생'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끝내 잊지 말아야 할, 노동자의 '희생'이 깔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속칭 3D업종에서 온몸으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의 '희생'도 확실히 알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의 희생을 외면했듯이, 우리는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우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문제는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끌어안을 때 답이 보인다. 비자, 임금, 보육, 사회복지서비스,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모우수미에게, 방글라데시 사람의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발랄하게 웃으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옛날 말"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이유는 다 돈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돈 때문이란. 비록 쌓아놓고 살지 않았으나,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던 사람들이 그것은 이제 다 옛날 말이라고 한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 구석구석까지 물질만능이라는 종교 아닌 종교가 퍼졌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이 물질문명을 이루기 위해 들었던 시간의 몇 배를 들여야 할까. 그리고 인젠쯤 가능할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달랄랄라~. 모우수미의 생기 넘치는 웃음을 보면서 떠올랐던 노래구절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은 교통사고 장애인, 아내는 당뇨병 투병



프롤로그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채 5분도 되지 않은 곳, 시장골목에 접한 연립주택 2층에 임가혼 씨 가족이 산다. 10여 평 되어 보이는 연립주택이다. 다섯 살 딸과 네 살 아들이 중국방송을 켜놓고 놓고 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재미없는 듯, 아빠에게 가겠다고 나가버린다. 거실 겸 방의 한쪽을 가득 채운 꾸러미, 가방, 박스 등이 눈에 띈다. 임가혼 씨도 신경이 쓰였던지 집주인 험담을 한다. 짐이 많아져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늘어난 짐을 올려놓았는데, 집주인이 당장 치우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안으로 들여다 놓았다.

임가혼 씨는 2000년 한국에 왔다. 남편은 1996년 한국에 먼저 왔다. 딸은 데려오지 못했다. 남편은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G-1비자를 받았다. 비자만료 기간이 올해 10월이다. 4년 전 여동생 하나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대구에 산다. 여동생 부부는 동대구역 근처에서 열쇠맞춤 가게를 한다. 여동생은 결혼식 때 한 번 보고 1년 전에 한번 더 만났다. 가끔 전화한다.

임가혼의 이야기

중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제조업 공장에서 일했다. 1984년 같은 동네사람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중국에 딸이 하나 있다. 한국으로 나올 때 어머니에게 딸을 맡겼다. 중국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 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회계 일을 하셨다. 지금은 돌아가셨다.

이주단계

한국에 오려고 결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친정이 있는 목단강 근처에 조선족이 많이 사는데 주변사람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보고 오게 되었다.

남편은 1996년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단기취업 비자를 받았다. 남편이 초기에 일한 돈은 그때 진 빚을 갚는데 다 썼다. 임가혼 씨도 1,500만 원을 주고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했다. 임가혼 씨가 입국한 직후 두 달 간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바로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다. 남편이 5년간 번 돈은 입국하느라 진 빚 갚고 임가혼 씨의 입국비용과 집

보증금(50만 원)으로 다 썼다.



건강은...

임가혼 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다. 한국에 와서 얻은 병이다.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출입이 잦다. 한 달 전에도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갔었다. 중국을 왕래하는 친구를 통해 구한 중국제 당뇨병 약 외에 특별히 먹는 약은 없다.

아이들이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간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카드를 보여주면 할인이 되는 병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 지정병원이 근처에 없어 어차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과는...

남편도 중학교를 졸업했다. 남편은 중국에서 자동차나 화물차 배송 일을 했다. 7남매 중 맏이다. 농부이던 시아버지는 올해 4월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살아계신다. 맏이지만 중국으로 송금한 적은 없다. 한동네 사람인 남편과 1984년 결혼했다. 남편에게 맞은 적은 없다.

남편은 회사 일로 운전하다가 2005년 교통사고를 당했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장해 9급을 받았다. 치료는 모두 끝났지만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

사회생활 & 경제생활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다. 아이들도 어리고 당뇨병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부모 모임에 참석한다. 가끔 고향친구들을 만나기도 한다.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외출이 잦지 않은 편이다. 주변에서 단속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서인지 단속에 걸린 적은 없다. 단속당하면 이주민지원단체에 연락하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는 사람이 단속되어 이주민지원단체에 연락했으나 도움 받지 못하고 출국 당했다.

2005년까지는 아이들도 태어나기 전이고 남편도 다치지 않아서 다소 여유가 있었다. 그때 중국에 집을 한 채 사두었다. 그 외는 모아둔 돈이 없다. 임가혼 씨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약 5년간 일했다. 출산과 남편의 교통사고가 겹쳤다. 2년 정도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으로 생활했다. 약 2년 전부터 남편은 부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남편의 수입은 최고 170만 원 정도이다.

지출은 집세 25만 원, 가스비가 여름에는 3만 원 정도, 겨울에는 2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핸드폰 요금 20만 원, 국제전화비 4~5만 원, 전기, 인터넷 사용료가 5만 원이고 보육시설에 10만 원을 낸다. 그래서 저축할 여유가 없다.

가족의 여가시간은 따로 없다. 남편이 일하지 않는 날,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논다.

중국의 큰딸과 한국의 남매

한국으로 이주할 때 딸을 데려오지 못했다. 그때 10살이던 딸이 20살이 되었다. 처음에는 외할머니집에서 살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독립했다. 지금은 식당에서 일한다. 남자친구도 있다. 딸은 한국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다. 딸과는 주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다.

한국에서 낳은 딸(5세)과 아들(4세)이 있다. 딸은 이주민지원단체의 보육원을 이용한다. 비용이 비싸다. 처음에 18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3만원을 할인해준다. 지금은 10만 원을 낸다.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에 온다. 딸은 보육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 토요일에도 가자고 조른다. 보육원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당 한 아이만 맡길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딸만 보낸다. 돈이 없어 다른 학원은 보내지 못한다.

아이들과는 중국말로 소통한다. 임가혼 씨는 중국말로 하고 아이들은 한국말로 한다. 아이들은 한국말을 보육원에서 배웠다. 보육원에서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를 배운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만 배우면 좋겠다. 중국의 보육시설도 비싸다. 친정인 목단강 근처는 중국 돈 400~600원(한국 돈 10만 원)정도이며 좋은 곳은 한국 돈 13만 원 정도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주민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보다 한국 아이들과 같이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

미등록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가 불안한 신분임을 모른다. 임가혼 씨는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단속 당할까 걱정돼 아들과 함께 지낸다.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 실은 그래서 보육원에 딸만 보내고 아들은 데리고 있다. 임가혼 씨는 집 근처를 벗어나 본격이 없다.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한 2~3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어쩌다보니 10년이 흘렀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돈도 벌고 아이들도 잘 교육시키고 싶다. 친정이 있는 목단강 주변에는 조선족이 많아서 사는 모습은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으로 돌아가면 당장 할 일이 없다. 그냥 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

꿈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한국정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안 나오면 좋겠다. 단속이 너무 두렵다. 인권위가 비자문제를 도와주면 좋겠다. 한국정부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에필로그

임가혼 씨는 한국에 온지 10년이 지났으나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 미등록 신분으로 늘

단속의 위협 속에서 살았던 그에게, 한국말을 잘하고 싶다는 바람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른다.

10년, 20년씩 거주한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온갖 험한 일을 하면서, 한국말을 배울 시간도 없고, 단속이 두려워 외출도 못하고 산다.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한다. 마치 그들이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무엇이 두려워 멀쩡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없는 듯이 대하는 걸까? 이주민과 그 자녀에게 비자를 주게 되면, 최저임금 이하로는 일을 시킬 수 없다.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자녀에게 교육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 외 각종 공공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이게 두려운가? 이게 두렵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경제규모 세계 12위, OECD가입국 등의 타이들을 반납해야 한다.

임가혼 씨는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대구에 간다. 오랜만에 가족을 떼어놓고 둘이서 실컷 놀기로 했다. 그래서 임가혼 씨는 아침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서울의 관창은 미용실에 가려고 한다. 여동생에게, 언니가 한국에서 10년씩 살더니 이제는 자리 잡고 꽤나 세련됐다는 말을 듣고 싶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상이 임가혼 씨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다.



시험에 드는 날들, 희망을 찾는다



프롤로그

방글라데시인 칸과 이루안은 어린 나이에 만났다. 이루안이 18살이던 1999년, 남편은 비즈니스 비자로 한국 땅을 밟았고, 이듬해 이루안은 학생비자로 들어왔다. 결혼 13년 만에 그리도 갖고 싶어 했던 아이를 임신했지만 한국에서 받은 상처와 절망으로 이루안은 임신중독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철삭동이 쌍둥이를 낳았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했다. 큰딸은 얼마 전 퇴원했지만, 작은딸은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다. 병원비만 1억 원이 나왔다. 칸은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리와 팔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힘든 몸을 부려 다시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체불된 임금만 3,000만 원이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이 도망가 1,800만 원은 아예 받을 수조차 없다. 교통사고, 임금체불, 힘든 출산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시험에 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13년 만에 만난 아이들, 어렵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다시 희망을 찾는다.

그들의 꿈, 절망, 그리고 희망

어린 신부 이루안, 남편과 꿈을 꾸다

이루안의 현재 나이 29살, 13년 전 칸을 만나 결혼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옷가게를 하며 근근이 삶을 버텨왔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이대로는 살 수 없었다. 남편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다.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한국행을 결심한 지 한참이 흘러 어렵게 돈을 모으고 빌려 드디어 1,000만 원이 생겼다. 1999년, 남편은 희망의 나라, 한국으로 떠났다. 이듬해 이루안도 남편이 있는 한국에 들어왔다. 방글라데시 정부정책상 여자는 산업연수생 자격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 학생 비자를 얻어야 했다. 그때 들어간 브로커 비용은 800만 원이었다.

기계처럼 일어나 노예처럼 일하다

이루안은 한국에 들어온 직후부터 일을 시작했다. 부부는 잔업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다. 일이 끝나면 그대로 쓰러져 자고, 다음날 또 기계처럼 일어나 노예처럼 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부지런히’라는 말을 좋아했다. 방글라데시와 너무 달랐다. 하

지만 이 정도 고생쯤은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방글라데시에 조그마한 땅도 사놓았다. 칸의 부모님께 제법 적지 않은 돈도 송금할 수 있었다. 이루안은 방글라데시에 돌아가 그럴싸한 옷가게를 할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불행의 시작

2004년 칸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식당배달 오토바이였다.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다쳐 절단에 이어 복원 수술을 받아야 했다.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이루안도 일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부부는 1년 동안 돈을 못 벌고 병원에서 지냈다. 그때는 보상이고 뭐고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 병원비를 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칸의 다리에는 철심이 박혀있다.

체불임금 3000만 원, 사장은 도망갔다

2004년 말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대로 나왔기에 부부는 너무 젊었다. 그동안의 고생도 아까웠다. 또 다시 밤낮 없는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다. 한국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 조금씩 연체됐다. 사장은 걱정 말라 했다. 공장이 어려워져 다른 공장으로 옮길 때까지만 해도 사장을 믿었다. 그런데 공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되어 사장은 폐업 처리하고 어디론가 도망갔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옮긴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경기가 어렵다며 한푼 두푼 미루더니 체불된 임금만 1,000만 원이 넘는다.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어 사장이 도망가지만 않을까 몇 번이고 찾아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버젓이 똑같은 공장이 돌아가는데 공장 명의가 사장 동생으로 바뀌었다며 체불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이 모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예 받을 수조차 없는 돈만 1,800만 원이나 된다. 미등록 상태라 노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

이루안의 굵은 손가락

이루안은 2008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산재를 당했다. 게다가 수술이 잘못돼 지금도 검지 손가락은 직각으로 굽어있다. 사고 후 공장이 폐쇄되고 사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아 불편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만 아프지 않다면 더한 것도 참을 수 있다고 했다.

칸의 치료는 형식적

칸은 허리가 아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년 전부터는 치질이라 대변에서 피가 나오고 있다. 한번 병원에 갈 때마다 4~5만 원이 든다. 보험이 안 되다 보니 제대로 된 검사나 치료를 못 받고 있다.

딸들, 인큐베이터에서 숨을 쉬다

젖터 문을 열자마자 아직도 배냇짓을 하고 있는 손바닥 보다 조금 큰 아기가 있었다. 그들의 딸이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호흡기를 뗀지 딱 하루를 넘긴 상태다. 절망스러운 출산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숨이 붙어있는 것이 눈물겹게 고맙다고 했다.

1997년에 결혼하고 곧바로 아기를 갖고 싶었지만 생기지 않았다. 13년 만에 임신했다. 혹독한 일로 임신중독증과 우울증을 앓게 되어 7개월 만에 출산했다. 여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 모두 저체중에 병을 갖고 태어났다. 큰딸은 640g 극저체중으로 태어나 45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머물렀고,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는 작은딸은 심장과 폐, 신장 기능 이상으로 3차례 수술을 받았다. 이루안과 칸은 두 아이가 건강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아이들 출생 비용만 1억원

아이들 병원비로 1억 원이 나왔다. 너무 큰 돈이라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작은딸이 지금도 인큐베이터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병원비가 쌓여가고 있다. 다행히 병원에서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 가량 감면되었고,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어느 정도 성금이 모였다. 이루안의 가족들도 방글라데시에서 1,000만 원을 보내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보험과 아름다운 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부부가 해결해야 했다. 체불된 임금을 받았더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칸 혼자 버는 것으로는 생계비도 뻘뻘하다. 앞으로 두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 값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상봉

잘 나갈 때는 이루안이 80만 원, 칸이 120만 원을 벌기도 했다. 그때는 칸의 부모에게 제법 적지 않은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2004년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송금은커녕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마저 야금야금 까먹고 살았다. 지금 칸은 약품회사에서 일한다. 약품은 몸에 닿을 경우 상처가 날 만큼 독하다. 냄새도 너무 심해 방독면을 쓰고 일한다. 이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몰라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공장들을 돌며 일자리를 구한다. 월급은 70만 원, 밥값 20만 원, 잔업하면 120만 원 정도 받는다.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 일요일에만 이루안과 큰딸, 그리고 병원에 있는 작은딸을 만날 수 있다. 이루안은 현재 이주민지원단체의 쉼터에서 큰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금남의 집이기 때문에 다른 이주 여성이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가족 상봉도 어려워질 것 같다.

불안, 몸에 배다

칸은 그동안 두 번 단속을 당했다. 간신히 도망쳐 추방은 피할 수 있었다. 지금도 길을 건다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짹짹 놀란다. 단속 때문인지 교통사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

만 불안이 몸에 배었다. 도둑질 한 번 앓고, 성실히 일한 만큼 돈 받고, 게다가 사장한테 돈도 떼일 정도로 바보처럼 살았다. 그런데 단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처럼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가끔씩 억울하다.

에필로그

그들의 희망, 그들의 긍정

이루안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옷가게를 하고 싶다. 처음 한국 올 때는 50살까지라도 있고 싶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 그냥 아이들이 건강할 때까지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한다. 최소 3-4년은 더 살아야 할 것 같다. 미등록 신분이 바뀌지 않는 한 불안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안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

“아이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 어떠냐?”고 묻자,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다지 많은 놀림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다르게 생겨서 귀여움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하여튼 방글라데시의 긍정적 사고방식은 따라갈 재간이 없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일자리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등록이 뭐길래

미등록 신분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사고를 당해도 미등록 신분이 노출될까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파도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은 이상 버텨야 한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3,000원이면 될 감기 치료비지만 미등록 노동자들은 1만 원 이상 내야 한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 특히 가임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혼 초기 한국에 입국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장 기숙사에서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생활, 불안한 일상으로 우울증이나 임신중독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건강하지 못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미등록이다 보니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 대한 꿈은 소박하다. 아플 때 병원가고, 한국 아이들처럼 교육받고, 무국적자라는 낙인 없이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그건 어려운 법의 문제도, 거창한 인식 전환의 문제도 아니다.

그저 사람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프롤로그

민진은 몽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에서 화학을 전공한 엘리트다. 아버지는 의사였다. 형제 중 하나는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민진이 교수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 유학중 남편을 만나 아기를 임신하고 갑자기 결혼하게 되었다. 아기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유학을 마쳤다.

민진의 이야기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민진은 몽골의 제약회사에서 5년간 일했다. 남편은 러시아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 둘째 아이를 가지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들을 낳고 3년간 일을 하지 않았다. 재취업을 하려던 시기에 몽골이 IMF를 맞았다. 민진의 학력으로 화학교사로 취업할 수 있었으나 월급이 너무 작았다. 그 즈음 TV에 한국취업광고가 자주 나왔다. 광고지를 보고 사무실을 찾아갔다. 소개비 500달러만 내면 비자발급부터 취업까지 다 보장해 준다고 했다.

당시 몽골은 베트남, 러시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은 베트남을 공격한 나쁜 나라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나 소개소에서 만난 한국인, 미스터 리가 한국에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한국행을 결정했다. 한국행을 택한 사람들 200명 중에 1차로 50명이 한국으로 왔다. 소개비만 500달러, 오는 동안 몽골에서 베이징까지는 비행기, 베이징에서 버스로 텐진까지 가서 다시 텐진에서 배로 인천항에 도착했다. 미스터 리는 50명에게 위스키를 두병씩 사서 나눠 주고 한국에 와서 도로 가져갔다.

한국인, 미스터 리

한국에 오자마자 한 모텔에 짐을 풀었다. 미스터 리는 남녀구분 없이 2~3명씩 한 모텔 방에 투숙시켰다. 미스터 리는 사방으로 전화하여 한 명이 필요한 곳에는 한 명을, 두 명이 필요한 곳에는 두 명을 보내는 식으로 공장에 보냈다. 민진은 시동생과 남편의 친구 두 명과 한

팀이 되어 취업이 될 때까지 일주일간 한방에서 지냈다. 모텔비와 식비 등은 다 개인부담이었다. 그래서 매일 라면만 먹었다. 민진 팀은 일주일 만에 공장으로 가게 되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이 아팠다.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사장이 몹시 화를 냈다. 알고 보니 미스터 리가 사장에게 돈을 받고 몽골인을 팔았다고 한다. 한 달 월급은 50만 원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민진은 한국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길도 모르는 데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비자도 한 달짜리 관광비자였다. 미스터 리는 취업이 되면 비자를 바꿔준다고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되자 미스터 리는 잠적해버렸다.

그러다 여동생이 몽골관광객의 통역자로 한국에 왔다. 여동생을 통하여, 한국에 취업한 200명이 다 난리가 났음을 알았다. 몽골인들이 1~2명씩 공장에 취업하여 임금체불과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몽골경찰이 미스터 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즈음 동대문운동장역에서 우연히 200명 중의 몇몇을 만나게 되었고 연결 연결하여 거의 대부분을 다시 만났다. 미스터 리에 관한 소식도 교환했다. 미스터 리에게 사기당한 500불을 받아야 했다. 수소문 끝에 미스터 리가 당시 200명 중의 한명이었던 20대 몽골여성과 산다는 곳을 찾아갔다. 몽골여성은 아기까지 낳았으나 미스터 리는 그곳에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집에 경찰복이 걸려있어서 사람들은 그가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미스터 리는 당시 40대였고 한국에 부인과 자녀도 있다고 했다.

민진은 한국에서 1년 2개월간 일하고 몽골로 돌아갔다. 1998년 경 재입국하고 나서, 그 200명 중의 일부와 다시 만났다. 그때는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핸드폰도 있어 자주 만나 가족처럼 지냈다. 주로 동대문운동장역 근처에서 만났다. 정보도 교환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람 편에 송금을 하기도 했다. 주로 한국물건을 사서 몽골에서 물건 판돈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미스터 리의 몽골인 부인을 찾아갔다. 미스터 리는 몽골부인을 버리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고 했다. 미스터 리는 그때까지 몽골, 필리핀, 중국 등으로 나라를 바꾸면서 민진 등에게 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취업사기를 치다가 중국 마피아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미스터 리에 대해서는 그 소식이 끝이었다. 결국 500달러는 돌려받지 못했다.

남편과는...

남편은 러시아 유학 중에 만나 19세에 결혼했다.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유학을 마쳤다. 고향에 돌아와 5년간 제약회사에서 일했다. 남편은 자동차엔지니어다. 결혼생활은 평탄했다. 둘째 아들을 낳고 다시 일하려던 시기에 몽골에 IMF가 왔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한국취업소개비와 체류비용 등으로 쓴 돈 약 1,000달러를 갚기 위해 매달 몽골로 송금했다. 그리고 1년2개월 만에 몽골로 돌아갔다.

그 사이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 부모님이 말렸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이혼했다. 몽골



의 법에 따르면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진의 자존심이 남편의 돈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진은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남편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

다시 한국으로

이혼까지 하고나니 민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것밖에 없었다. 친정 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 아들은 민진이 한국에 취업한 1년2개월간 어찌나 민진을 찾았던지 뼈가 다 튀어나올 만큼 말랐다. 도저히 다시 떼어 놓고 올 수가 없었다. 당시 생각으로는 한 3년간 눈 꼭 감고 돈을 벌고 돌아올 생각이었다. 그러면 아들도 초등학교 입학 시점이라 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광비자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아들과 민진의 관광비자를 받는데 소개비 3,000만 원이 들었다. 그때 한국으로 오는데 드는 소개비는 도저히 몽골에서 일해서는 갚을 수가 없을 만큼 큰돈이었다. 그래서 소개비 때문에 집 팔고 빚 내어 한국에 왔다가 인천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몽골로 돌아오게 된 사람 중에 공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 민진은 한국에 입국하여 이전에 일하던 유리공장을 찾아가서 바로 일을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 잔업까지 해도 한 달에 최고 130만 원을 받았다. 혼자 몸이라면 공장에서 살 수도 있거나 아들이 있어 방을 구했다. 당시 월세가 20만 원이었고 이런 저런 공과금도 내야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저축한 돈이 없다. 빚 3,000만 원을 갚고 그 다음부터 저축할 수 있는데, 혼자서 아들까지 데리고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몽골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점차 미루어졌고 오늘까지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6살 아들을 방에 둔 채 문을 잠그고

어린 아들을 맡길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집을 얻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들이 하루 동안 먹을 음식과 과자, 장난감 그리고 변기통을 다 방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출근했다. 일하다가도 걱정이 되면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아들이 잘 있나 보았다. 방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다. 창문으로 아들을 보았다. 혹여 아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므로 아들 모르게 살짝 보고는 다시 공장으로 뛰어가곤 했다.

그렇게 지낸 지 거의 6~8개월 만에 우연히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잠긴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펄쩍 뛰며 교회로 데려가 돌봐주셨다. 아들이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미등록외국인 자녀의 입학에 관한 선례가 없어 초등학교에서 난감해했다. 그 때도 목사님이 나서서 선생님들을 설득하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입학했다. 지금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다.

아들은 여느 아이들처럼 사춘기를 겪었다. 민진도 아들도 미등록이라 항상 불안하다. 그러나 아들과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하지는 않는다. 건드려봐야 대책은 없고 상처만 되니까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아들의 졸업 후이다. 그나마 있던 학생증도 없어진다. 아들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지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간다 해도 등록금을 댈 형편이 안 된다. 이래저래 아들의 미래는 막막하기만 하다.

아들은 몽골어를 못한다. 아들에게 몽골어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민진의 실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아들은 몽골에 갈 수도 없다. 무엇보다 아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한다. 몽골음식도 먹지 못한다.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만 앓았다 뿐이지 친구들도, 삶의 방식도 다 한국인이다. 심지어 한국을 자기 나라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진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의 미래이다.

몽골에 두고 온 딸은 다 커서

한국으로 재입국할 때 딸은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다. 딸은 지금 27세이다. 딸과는 자주 연락한다. 그 사이 딸은 독일에 유학 갔다가 몽골 유학생과 결혼했다. 2년 전에 딸이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서 한번 만났다.

건강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나 병원비가 비싸서 그냥 참는다. 가끔 안과에 가곤 한다. 자주 머리가 아프다. 젊을 때는 일하고 회식하고 노래방에서 2시까지 놀아도 아침에 다시 아무렇지 않게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해도 피곤하다. 운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으며, 가끔씩 걷는 정도이다.

경제생활 & 사회생활

민진은 아들과 둘의 생활비로 약 80만 원~1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일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시간당 4,110원을 받는다.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80만 원을 번다. 비싼 옷이나 비싼 음식,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 아들과의 외식은 자장면이나 치킨 정도다. 회사에서 회식이나 해야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민진은 일의 숙련도에 있어서 한국 사람과 차이가 없거나 더 뛰어나다. 그러나 월급이나, 보너스 등에서 차별을 당했고 퇴직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미스터 리를 잡겠다고 뚝뚝 몽쳤던 몽골인 200명 중에서, 미스터 리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시간이 흐른 탓에 현재 연락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옛날에 살던 곳에는 이웃에 몽골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언제 단속이 있는지, 누가 잡혀갔는지, 또 누가 생일인지도 알 수 있었다. 한사람이 한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많은 정보가 오고 갔다.

그곳에는 몽골 뿐 아니라 이란, 베트남, 러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공장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만약 무슨 일

에필로그

이 생기면 대책이 없다. 가족이나 친구 몇 명 그리고 이주민지원단체와 목사님께 연락할 거다. 목사님은 아들이 어릴 때 돌봐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도움을 준다. 그래서 몽골은 원래 불교국가이고 민진도 불교신자였지만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닌다.

오펜과 언니, 남동생들도 한국에 일하러 왔었다. 지금 다 돌아갔다. 한국에 온 지 10년째인 조카만 남아있다. 몽골여성을 만나 결혼해서 한 달된 아기가 있다. 처음 민진이 한국에 왔을 때 아이들은 없었다. 민진의 아들이 거의 유일했다. 요사이 몽골대사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놀라울 정도이다.

처음과 비교하면 한국이 미등록 이주민에게 많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심하게 아픈 경우는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단체도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들의 삶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아프거나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여전히 대책이 없다.

한국인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해결 불가능한 일이다. 그 흔한 컴퓨터 연결도 할 수가 없다. 한국인에게 부탁하여 겨우 연결하고 난 뒤, 만약 고장이라도 나는 날이면 또 그 한국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그러니 도움을 준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해야 한다. 핸드폰 가입도, 은행통장 개설도 불가능하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한국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사고방지를 위해 카드를 발급 받지 않아, 통장으로만 거래가 가능했다. 그런데 소액을 인출하다 보니 통장 페이지가 부족해서 인출이 안 되었다. 당장 돈은 필요하고, 다급하게 명의자에게 전화하니 그는 하필 지방에 가고 없었다. 그가 올 때까지 돈 한 푼 없이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리고...

남편은 1999년과 2000년 아들을 만나러 왔다. 그때만 해도 아들이 몽골말을 잊지 않았다. 아들이 몽골말이 서툴어지면서 아들과 남편은 연락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 남편이 재혼요청을 했다. 민진은 딸을 통해 남편의 동거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와 헤어지겠다고 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남편과 이혼한 지 15년 되었다. 주변에 남자들은 많았으나 전 남편보다 나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 남편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하려면 이혼할 이유가 없었다. 민진이가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남편에게 여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온 것이 후회가 된다.

꿈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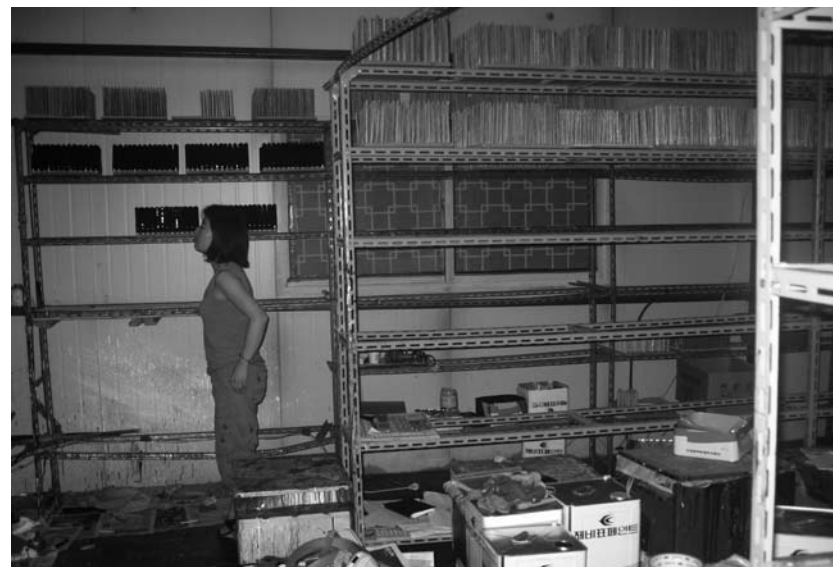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갖는 것이다. 미등록이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곳 말고, 그저 보통의 젊은이들이 있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것이 민진의 꿈이다.

민진은 말한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돈을 달라는 것도,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그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고. 한국사회가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대신 해주었으니 그저 보통 사람처럼만 살게 해 달라고.

그녀는 말한다. “신분증이 없는 나와 내 아들은 한국에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부자나라 한국에서 일한 만큼만 받고 사람대우만 해달라는데 왜 못 해주냐?”고 묻는다. 몽골말로 할 줄 모르는 젊은이를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 그저 한국의 젊은이와 똑같이 대해달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한 것, 한국인에게 피해 입은 것, 모욕당한 것 다 잊겠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 아들만은 자기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한다.

몽골에서 왔으니 몽골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고 했다. 그녀는 말한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비자가 없다는 것 외에 잘못이 없다고. 미등록 이주민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아주 열심히 다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민진은 부당하지도 그리 무리하지도 않아 보이는 요구를, 불가능에 도전하듯이 호소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바로 볼 수도 없었다. 그저 적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애원을 그저 말없이 적었다.



‘다문화 사회’가 환상으로 느껴지는 이유



프롤로그

한적한 산골에 그가 일하는 공장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 사장은 퇴근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두 명이 공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일하는 작업장은 톱밥과 먼지로 가득했다. 그가 잡자는 컨테이너 박스는 빗줄기 속에서도 후끈했다. 그는 시간급 4,000원을 받으면서도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리사는 18년간 한국에서 일했다. 그 사이 생후 45일 된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냈다. 단속에 걸린 남편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리사도 때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다. 14년간 인터넷만 만나온 아들이 보고 싶어서다. 그러나 리사는 계속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다. 돈을 벌지 않는다면, 리사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사의 이야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리사는 1962년 필리핀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엄마가 아파서 학교를 중단했다. 한국에 오기 전 돼지농장에 3년간 다녔는데, 낮에는 고등학교에 가고 밤에 일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었다. 현재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7남매가 살고 있다.

남편 탕치는 형제가 없고, 자매가 3명이다. 그 중 한 명은 뱀에 물려 죽었고, 2명은 지금 필리핀에 산다. 남편은 필리핀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리사는 아들을 보내고 난 뒤부터 한 달에 300달러(36만 원) 정도 송금한다. 그 정도면 필리핀에서 아이 키우는데 문제없다.

입국, 만남, 이별...

1991년 9월 11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다. 그때는 그냥 한국이 좋았다. 다른 나라는 왔다 갔다 하는 제약이 많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편리했다. 한국은 리사가 가본 첫 번째 외국이고 유일한 나라다.

처음엔 1-2년 정도 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일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계속 살 수밖에 없었다. 1992년 필리핀 사람 탕치를 만나 함께 살았으나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다. 1997년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은 태어난 지 45일 만에 친구 편에 필리핀으로 떠났

다. 생후 2개월이 되면 정식으로 출생 등록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출국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갓난아이를 그대로 비행기에 태웠다. 그때부터 14년간 엄마는 아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두 사람은 이 지역 필리핀 이주노동자 커뮤니티의 리더 구실을 했다. 주말이면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서 파티를 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공장에서 불이 나기 전까지 나름 행복했다고 한다. 화재사건 이후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다. 탕치는 건설 노동자로 일했는데 솜씨가 좋아서 이주민지원단체와 관련된 일도 자주 거들었다고 한다.

남편 탕치는 2008년 단속에 걸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2010년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다. 적지 않은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이름을 바꿔서 입국하는 관행에 따라 수속을 밟았다. 그러나 탕치는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2010년 2월 15일에 벌어진 일이다. 법무부는 그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5년간 입국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제 리사는 2015년이 돼야 탕치를 만날 수 있다.

건강

다행스럽게도 리사 가족은 건강하다. 리사는 맹장 수술과 치질 때문에 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후유증은 없다. 그러나 병원비는 매우 부담스럽다. 1997년 아들을 낳았을 때 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다. 보험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도 주변에 없었다. 결국 한 달 월급을 다 지불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리사의 공장 풍경

큰길에서 벗어나 야산으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가면 산꼭대기에 컨테이너로 지은 공장이 있다. 사장과 필리핀 미등록 노동자 2명이 여기서 일한다.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면 톱밥과 먼지가 가득하다. 리사는 이곳에서 먼 마스크를 쓰고 온종일 나무를 자르고 반질반질하게 다듬는다. 마스크가 톱밥과 먼지를 막아주지 못하는 작업장에서 리사는 5년간 일해 왔다. 쪽문을 열고 두 번째 방으로 가면 신나 냄새가 코를 찌른다. 리사와 또 다른 필리핀 노동자가 다듬은 나무가 이곳으로 보내진다. 사장은 여기서 신나를 섞고 니스를 칠한다. 칠이 끝난 나무를 잠시 들여다보는 동안 현기증이 날 만큼 냄새가 지독했다. 사장은 작업할 때 방독면을 쓴다고 했다. 벽면에 환풍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먼 마스크만큼이나 믿을 게 못 되는 물건으로 보였다.

리사는 이곳으로 오기 전 다른 공장에서 8년간 일했다. 지금 일하는 공장의 사장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 공장에서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리사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불의의 화재로 사장은 불에 타 죽었다. 그 후 남편은 다른 공장으로 옮겼고, 리사는 현재 일하는 곳으로 왔다.



14년 전 필리핀으로 간 아들

한국에서 아기를 키울 수 있었다면 생이별은 없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울 돈도, 장소도 없었다. 아기를 보내지 않으면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다. 지금처럼 이주민지원단체라도 있었다면 달리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주민지원단체를 만난 것도 아들을 보낸 이후다. 아기가 2달이 넘으면 보내는 게 복잡하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렀다. 친구가 데려가서 필리핀에 사는 여동생(이모)에게 맡겼다. 아들은 그곳에서 14년간 이모와 살았다.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 그러나 리사 뜻대로 할 수 없다. 아빠는 서류 문제(이름 위조, 입국 취소)로 아들의 신원을 보증할 수 없다. 리사도 미등록 신분이라 서명할 수 없다.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올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는 5년이 지나야만 들어올 수 있다.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미디어교육을 할 때 아들 사진을 보고 운 적도 있다. 아들이 많이 보고 싶다.

가정생활 & 사회생활

타치와 사는 동안 가정폭력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말로는 싸울 수 있겠으나 물리적 폭력은 있을 수 없다.

최근엔 필리핀 커뮤니티에도 거의 나가지 않고 공장에서 일만 했다. 예전에는 이 지역에 필리핀이주민커뮤니티가 있어 모임에 참여했는데 멤버들이 많이 잡혀가서 지금은 별로 없다. 현재 이주민지원단체에서 필리핀 그룹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원래 타치가 했었는데, 타치가 떠난 뒤 리사가 맡았다.

요즘 월급은 112만 원 정도다. 식비와 생활비를 빼고 대부분 저축한다. 1991년에는 22만 원, 1997-98년 50만 원, 2000년 100만 원쯤 받았다. 이곳으로 오기 전에는 130만 원 정도 받았다. 이전 공장 사장은 나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장은 나쁜 말을 많이 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8-9시간이다. 잔업은 토요일에 5시까지 한다. 오버타임은 하루 3시간 한다. 시간당 급여는 4,000원 수준인데 이전에는 6,000원까지 받았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공장에서 사장이 나쁜 말을 자주 한다. 리사가 잘못하면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한다. 그 소리가 싫어서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 며칠 뒤 사장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No, 그건 사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새끼’ 같은 말을 하면 안돼요. 나쁜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답했다. 그 이후 사장은 나쁜 말을 별로 안 한다. 옛날에는 공장 사람들한테도 나쁜 말을 더 많이 들었다.

꿈이 있다면...

아들이 돌아왔으면 정말 좋겠다. 여건이 되면 한국말도 배우고 싶다. 아들을 데려와서 잘 교육시키고 싶다. 그러나 리사는 지금 아들의 여권을 만들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 외국

인에게도 비자를 확대해 주기를 기대한다. 가족을 자유롭게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필리핀대사관에서 밀어주면 데려올 수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 번은 변호사를 통해 대사관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필리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싱글맘 여권은 잘 안 해주는데, 변호사가 도와주면 해주곤 한다. 그러나 대사관에서는 싱글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어떤 때는 그냥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하고 싶어진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는 25살 넘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리사는 벌써 48살이다. 이렇게 살다가 단속에 걸리면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남편도 아이도 보고 싶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매일 만날 수밖에 없다. 언제 가족이 직접 만날 수 있을지 리사는 가늠할 수 없다.

아들은 이제 남편과 함께 산다. 그동안 리사가 보내준 돈으로 최근 필리핀에 집을 지었다. 여동생 집 아이들과 자주 다투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따로 집을 지어서 나왔다. 인터넷으로 아들을 만나면 필리핀 말로 날마다 안부를 묻는다. 아들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에필로그

18년간 한국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미등록’이란 꼬리표는 어떤 의미일까? 그가 한국에서 낳은 아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문화 사회’는 환상이다.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정주권’을 보장하는 방안, 일시적 출입국 허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기를 본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이주민들이 있다. 그들이 2개월도 안 된 아기를 비행기에 태워야 한다는 건 비극이다. 엄마와 아기가 60일 이전에 헤어지도록 강요하는 관행은 비인간적이다. 납득할 만한 절차에 따라 입출국 수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영세사업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확인했다. 작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미등록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관행도 여전하다. 작업 공간은 화재 등에 취약했고, 고용주의 언어폭력 문제도 실감할 수 있었다. 리사는 이주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현장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지속적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엄마가 잡혀갈까봐 두려운 아들



프롤로그

루비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과 함께 이주민지원단체에 왔다. 먼저 와 있던 조안나의 아들과 루비의 아들은 반갑게 어울려 놀았다. 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주민지원단체에서 같이 공부했다. 루비는 이주민지원단체 방문이 오랜만이라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루비의 남편, 조슈아는 2007년 단속에 적발되어 필리핀으로 강제출국을 당했다. 루비는 아들을 키우며 공장과 식당을 전전하느라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필리핀계 주한미군 로제리오의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주었다. 루비는 지금 로제리오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던 행복을 느낀다.

루비의 이야기

필리핀에서...

루비의 아버지는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했다. 부모님은 7남 4녀를 두었다.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성장한 루비는 조산원 양성 대학 2학년 때, 집에서 도망치고 싶어 일본행을 꿈꾸었다. 이미 오빠가 1985년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일본으로 가는 길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비자발급이 쉬웠던 한국을 중간단계로 선택했다. 그때가 1991년이였다.

한국에서 만난 남편 그리고 아들의 출생

이모의 도움을 받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다. 따로 마련한 돈은 없었고 초기체류 비용은 일본에서 오빠가 송금해주었다. 그리고는 주로 공장에서 일했다. 1993년 필리핀인 남편, 조슈아를 만나 결혼했다.

남편, 조슈아는 필리핀이주민그룹의 리더였다. 남편, 조슈아는 공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공장의 책임자 노릇을 해냈다. 루비 부부는 미등록이면서도 안정적인 직업과 필리핀 이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았다. 숨쉴 좋은 루비는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필리핀 이주민들을 초대하곤 했다.

공장화재와 함께 불타버린 부부의 꿈

아들이 4살이었을 무렵, 공장에 불이 나서 남편, 조슈아는 줄지에 일자리를 잃었다. 루비 부부의 삶도 같이 무너졌다. 부부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이주민지원단체는 루비를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조슈아를 단체에서 운영 하는 사회적 기업 직원으로 고용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수입이 갑자기 줄어든 루비 부부는 싸움이 잦아졌다. 각자 본가에 송금하는 돈도 싸움의 꼬투리가 되었다. 그러다 조슈아는 단속에 걸려 2008년 8월 강제출국 당했다. 남편 조슈아의 출국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루비는 식당 종업원과 영어교사로 일했다. 최근엔 친구 소개로 미국인 가정에서 일주일에 두번 베이비시터로 일한다.

아들은...

2000년에 아들이 태어났다. 루비는 임신기간 중 공장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다. 출산 이후에도 일하지 못하다가 이주민지원단체에 아들을 보내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주민지원단체에서 돌봐 주었다. 처음에는 평택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이곳으로 전학했다. 3학년 담임은 아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가끔씩 식료품을 사서 가게에 맡겨두곤 했다. 그러나 4학년이 되면서 급식비를 내야했다. 4학년 담임과는 루비가 학교로 아들을 데리러 갔을 때 잠시 눈인사를 나누었을 뿐이다. 담임과 정식으로 면담한 적은 없다.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에게 맞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보다는 한국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학교가 더 좋다. 아들은 방과후 일주일에 두 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무료로 영어를 배우고 있다. 검도나 펜싱도 배우고 싶어 한다.

아들은 한국어, 필리핀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집에서는 주로 필리핀어를 사용하며 한국어 영어를 섞어서 쓴다. 아들이 필리핀어를 처음 배운 곳은 이주민지원단체였다. 아들의 꿈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다. 아들은 수학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한국말을 한국 아이들처럼 잘 하지만 한자어나 한국문화, 추상어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혼생활

루비는 1993년 한국에 온지 2년 만에 남편, 조슈아를 만나 결혼했다. 조슈아는 이 지역 필리핀자조그룹의 리더였다. 남편에게 맞은 적은 없었다. 남편이 갑자기 강제출국 당한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임신 중인 아이의 아빠, 로제리오가 많이 도와주었다. 로제리오는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주한미군이다. 아들은 로제리오를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아들은 로제리오를 아빠라고 부른다. 지금은 로제리오 집에서 셋이 살고 있다.



1994년 루비는 맹장수술을 했다. 수술비는 자비로 냈다. 그때는 이주민지원단체도 없었고 병원비를 지원 받을 방법도 없었다. 2000년 아들을 출산했다. 지역복지관에서 출산비용을 50% 할인해주어 출산비로 45만 원을 지불했다. 오랫동안 고된 노동으로 허리통증이 생겼으나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는다. 현재 임신 3개월로 일주일 전 임신 정기진료를 받았다. 병원비는 자비부담이다. 이주여성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병원은 아직 없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건강한 편이다.

사회생활 & 경제생활

전 남편, 조슈아가 필리핀이주민그룹의 리더여서 필리핀 이주민들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주 초기에는 필리핀이주민그룹과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이곳 이주민지원단체 외에 다른 단체와 교류가 없다.

전 남편, 조슈아는 평균 수입이 180~200만 원 정도였다. 루비는 120만 원쯤 벌었다. 이주 초기에는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으며, 필리핀으로 동생들의 교육비를 송금했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송금하지 못했다.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은 학교 친구들을 통해 엄마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가끔 “엄마는 왜 불법이야?”하고 물었다. 언젠가부터 아들은 엄마가 잡혀갈까봐 무서워한다. 루비는 외출 시에는 주로 아들을 동반한다. 아이와 같이 다니는 외국인인은 보통 단속에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 루비가 혼자 외출하면 아들은 루비가 집에 올 때까지 걱정한다.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는 무서워서 전혀 가지 않았다.

루비는 1997년 한 번 단속을 피해 도망간 적이 있다. 단속에 적발된 적은 없지만 항상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외국인으로 특별히 차별을 당한 적은 없다. 한국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을 특별히 차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임신 3개월인데, 마음 같아서는 필리핀의 엄마 옆에서 출산하고 쉬다가 오고 싶다. 그러나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다. 남자친구, 로제리오네 내년쯤 제대하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한국정부에서 비자를 주면 좋겠다. 아들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교육받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필리핀에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20년을 한국에서 거주하다 보니,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 아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루비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나?”는 질문에 한마디로 잘라 답했다.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내치기만 하는 우리가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루비는 임신 3개월이다. 아기를 가지면 나쁜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나쁜 생각도 머릿속에 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우리네였다. 이웃에 아기 가진 사람이 있으면, 새로 한 반찬을 부리나케 가져다주던 우리네였다. 아기 가진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으면 아기가 곱보가 된다나, 눈이 찢어진다나. 하여간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가며 이웃을 배려하던 우리네였다. 19년째 친정을 못 가본 이웃이 혼자서 애를 낳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주민들을,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을 투명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해도, 그들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 집이 필요하고 산부인과에 가야하고 병원도 가야하고 학교도 가야한다. 물론 여가도 즐겨야 한다. 그러나 단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1년 전 한국에 18년간 거주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네पाल로 강제출국 당한 미누가 한 말이 생각난다. “미등록외국인들은 그냥 노동자이다. 범죄자가 아니다.”



조안나에겐 남편이 없다.



프롤로그

1999년 한국에 들어온 방글라데시인 조안나. 지금 조안나 곁엔 남편이 없다. 대신 열 살의 씩씩한 아들이 있다. 남편은 1994년 한국에 들어왔다. 2002년까지 8년간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다 다른 회사로 옮긴지 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다. 동료들과 사장, 조안나는 안다. 부인의 입국비용과 생활비, 이제 막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밤낮 안 가리고 몸을 부러야 했던 그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는 것을. 그러나 사장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조안나는 당장 누구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랐다. 아들은 몸이 약했다. 방글라데시로 가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어떻게든 견디고 싶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단속에 떨어 지내야 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게다가 불경기로 일자리까지 없었다. 결국 2005년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심장이 약한 아들의 치료를 위해 다시 2007년 한국 땅에 왔다. 공장 한 켠 구석진 방에서 생활한지 3년이 지난 2010년 8월, 아들과 조안나는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어차피 한국 땅에 살 수 없는 몸, 아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떠났다. 아들이 좋아하는 고추장과 찜장을 챙겨서.

아들과 그의 엄마, 조안나

아들의 국적이 궁금한가?

한 눈에 보기에도 초등 3학년이라 하기엔 너무 왜소했다. 아들은 조안나가 한국에 입국한 지 2년 만에 태어난 아들이다. 1.7kg으로 세상에 나와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살아야 했다. 월 소득 130만 원으로 한푼 두푼 모아두었던 돈 1,500만 원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지불했다. 간신히 인큐베이터는 벗어났지만 심장과 간에 이상이 있었다. 2005년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것도 아들의 치료 때문이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뒤 또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으로선 대책이 없다.

아들은 1,2학년 때까지도 아이들로부터 “너희 엄마는 한국에 돈 벌러 왔지? 어서 돌아가라”며 놀림을 받곤 했다. 그래서 일까? 아들이 유일하게 받은 사교육은 태권도였다. 월 9만 원 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조안나는 이 돈이 아깝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음식보다 미역국과 된장국을 좋아하는 아이, 한국말을 잘 하나고 문기가 무색할 정도로 유창한 다국어 습득자, 피부색만 다를 뿐,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 아이에게 미등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어느 국적이냐고 묻는 질문은 어쩐지 폭력 같다.



조안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부인이었다

조안나는 방글라데시에서 통계학을 전공했다. 대학생 중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은 한국으로 떠났다.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은 한국 돈 4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조안나를 초청했다. 그때가 1999년으로 조안나 부부는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었다. 한국에 들어와 적응이 어려웠던 조안나는 임신중독증을 앓았다. 임신하면서 일을 할 수 없었고, 남편 혼자서 일해야 했다. 그렇게 재회한지 3년 만에 남편은 과로로 사망했다. 그때 아들은 3살이었다. 지금도 아쉬운 건 단속이 두려워 남편과 가까운 시내로 외출 한 번 못해 본 일이다.

무조건 참고 견뎌야 했다

아들을 임신한 동안 임신중독증을 앓았다. 낫선 땅과 언어, 24시간 돌아가는 기계음,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미등록 신분, 공장 골방,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007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심한 몸살과 고열로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2009년엔 결석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매일 소화제를 먹어야 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 출근 직전까지 방글라데시에서 언니가 보내 준 소화제를 먹었다. 야간 일로 몸 여기 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견딜 만했다. 아니 견뎌야 했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장에서 일하다

아들과 조안나는 공장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방에 살았다. 24시간 내내 기계소음이 들리는 곳이다. 화장실과 부엌은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사용했다. 2007년 다시 한국에 왔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가 없었다.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하다 2009년 6월부터는 한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남편이 8년 동안 일했던 회사였다.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보상도 해주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정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점이 미안한지 사장은 잘 대해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 주는 퇴직금을 조안나만 챙겨주었다. 조안나는 사장님을 오편처럼 고마운 사람이라고 했다. 시급이지만 야간작업이기 때문에 한 달에 많을 때는 200만 원까지 벌 수 있었다. 생활비 제하고 나면 120만 원이 남았고 모두 저금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가게 하나 얻을 만큼의 돈은 모았다.

“하느님, 오늘도 엄마가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조안나는 18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녁 7시 출근해 아침 8시 퇴근했다. 일요일도 거의 없었다.

일요일 혼자 작업할 때면 슬며시 눈물도 나지만 아들만 생각하며 달렸다. 휴식시간에 잠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것이 유일한 돌봄이었다. 아침에 퇴근해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차에 태워 보낸다. 그런 일상에 익숙해질 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애뜻함이 더했다. 어차피 이곳에 익숙해진다고 한들, 그리고 아들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느낀다 한들 미등록 신분이고, 이곳은 떠나야 할 나라일 뿐이었다. 아들은 또 다른 나라, 엄마의 나라로 돌아가 적응해야 한다.

엄마가 출근하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들은 혼자다. 주로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든다. 조안나는 아침에 돌아와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볼 때가 가장 속상하다고 했다. 낮에 외출할 때 조안나는 항상 아들과 함께 한다. 아이가 같이 있을 때는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아들도 잘 안다. 집 근처 앞길에만 나가도 아들은 엄마를 보다가 드처럼 따라 붙는다. 매일 아침 아들은 기도한다. “하느님, 오늘도 엄마가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8월 31일 아들과 조안나는 방글라데시로 떠났다. 조안나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원했다.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대학교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디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하는 것 같던가요? 라고 묻자 “방글라데시건 한국이건 어디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어요.”라며 경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람마다 다를 뿐, 특별히 한국인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의 현실을 아직 모른다고 해야 할지, 방글라데시 특유의 낙관성이라고 해야 할지 잠시 난감했다. 대신 한국정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미등록 노동자는 비자만 없을 뿐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성실하게 10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딱지 대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모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음 편히 학교에 가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플 때 치료비가 무서워, 단속이 무서워 병원을 못 가게 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그만 가게, 큰 희망

많은 돈은 아니지만 방글라데시에 사는 엄마 집 앞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사 두었다. 식료품 가게를 할 생각이다. 한국에서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지금 떠나야 했다. 얼마 전 TV에서 스리랑카인 엄마가 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걸려 들어간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그때 4학년이던 아들이 스리랑카로 돌아가 적응하지 못해 너무 힘들어 한 장면을 보고 아들이 4학년이 되기 전 반드시 떠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는 1월부터 학기가 시작된다. 지금 들어가 적응해야 1월에 무사히 학교에 갈 수

있다고. 어느 엄마가 자식에 대해 애뜻하지 않을까만, 조안나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유난했다. 남편과의 짧은 인연과 인큐베이터에서 첫 숨을 내쉬어야 했던 아들과의 첫 만남이 그토록 만들었을 것이다.

에필로그

행복지수 1위 방글라데시인?

“한국에 왜 왔나?”는 질문에 조안나는 “방글라데시엔 일 없어요. 돈 못 벌어요.”라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행복지수 1위 나라 사람도 돈 앞엔 별 수 없구나. 썩 노동력을 그냥 먹으려는 자본주의 한국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달려든 이주 노동자 현실의 결정판이지 싶었다. 그런데 조안나의 다음 말이 의아했다. 다른 이주민들을 만나보니 방글라데시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고 했다. “의술이 부족해 치료라도 받을라치면 먼 나라까지 원정을 가야 하는데 그래도 좋냐?”고 묻자 똑같은 대답이었다.

정말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자본과 권리에 물든 인간들이 느낄 수 없는 비밀스런 행복의 묘약을 갖고 있는 걸까? 뱀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까 하며 그냥 물어두어야 할까? 조안나에게겐 미안하지만, 그건 타향살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일 뿐, 특별한 묘약 때문은 아닐 듯싶다. 그들처럼 가난해 보지 않고, 그들처럼 배고파 보지 않고 계량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타자 특유의 오만한 시선일 수도 있다.

불법노동자로 만들고 얼마나 부자나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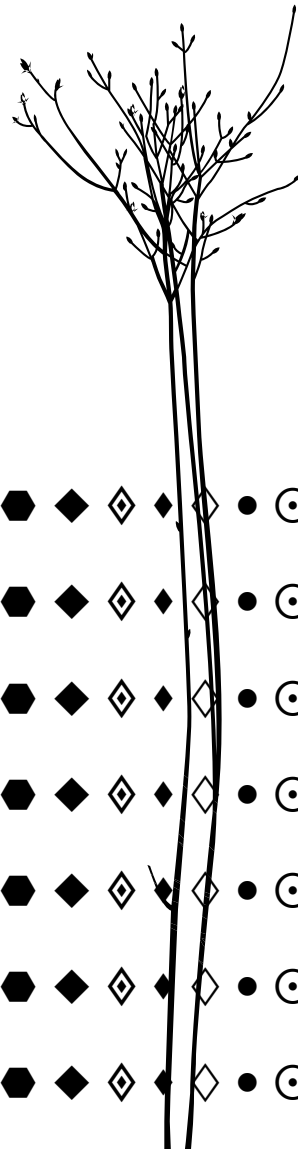
배고픈 것은 본능이고, 본능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또한 너무나도 본능적이다. 그들에게 배고파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딱지는 허무맹랑하다. 이런 신비주의 때문에 사업주들은 노동력을 착취한다. 감히 한국 노동자들에겐 내밀 수조차 없는 조건을 내밀고 감사하라고 한다. 이들의 노동력 없이 중소기업은 굴러갈 수 없다. 중소기업 저질 체력의 주범인 정부는 체질개선의 노력 없이 이주노동자를 불법 노동자로 만들었다. 내제된 불신을 단속과 범죄 소탕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주노동자에게 돌린다.

한번 드러내놓고 계산할 일이다. 미등록 노동자 없이 중소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그 피해가 누구의 몫이 될지, 보험이 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들의 고통을 알면서 그렇게 ‘아끼고’ 눈감아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부자가 될지 정말 계산해 볼 일이다.

국제

결혼

가정



선녀와 나무꾼



프롤로그

아주 오랜 옛날, 깊은 산 속에서 마음씨 좋은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사슴은 무척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산꼭대기에 가면 둥그런 연못이 있는데, 보름달이 뜨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해요. 그때 선녀의 날개옷 한 벌을 감추면 아저씨는 아름다운 선녀와 함께 살 수 있답니다. 단,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녀가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21세기 외로운 도시에 플라스틱 사출을 하던 한국인 과장님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공장에 일하러 온 필리핀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버린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지만, 과장님과 과장님 어머니는 걱정하고 있거든요. 혼인신고를 해서 필리핀인 아내에게 비자가 나오게 되면 아내는 도망가 버릴 거라고요.

필리핀 선녀의 이야기

나와 가족

이레나는 올해 35세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왔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4시간 정도 더 들어간 곳이 그의 고향이다. 부모 두 분 다 살아계시고, 형제는 열두 명인데 모두 결혼했다. 그 중 열명은 필리핀에, 여동생 한 명은 필리핀인과 결혼하여 대우에서 살고 있다. 여동생 부부에겐 10개월 된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여동생이 미등록 외국인인지라 아이도 미등록 상태다. 동생은 자신이 단속될까 봐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 가족과는 한 달에 두 번, 주로 어머니와 전화로 연락한다.

한국에 온 계기

필리핀에서는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을 벌어 부모를 도와야 했다. 오빠들은 처자식이 있었지만 이레나는 혼자였기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2000년, 처음으로 한국에 올 당시 브로커에게 200만 원가량을 건넸다. 이때는 여행비자로 들어왔고, 2년 반이

지나자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을 땐 돈을 내지 않았다. 고용허가제로 받은 일시적인 비자도 내년에 만료된다.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플라스틱 사출을 했다. 이때 한국어를 많이 배웠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를 잘한다.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결혼

2006년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이레나가 일했던 플라스틱 사출 공장의 과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레나는 필리핀인 남자도 만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올해 40세지만, 한국인 친구가 별로 없고 필리핀인 친구가 많다.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저녁 먹고 소주 한 병을 매일 마신다. 남편은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해서 좋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싫다. 그래도 술 취하면 별다른 주사 없이 잠들어 참 다행이다. 이레나 씨와 대화할 때는 일부러 친절히 말해줘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우리 남편 착해요.” 이레나는 인터뷰 내내 남편을 칭찬했다.

남편의 아버지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형 한 명, 누나 두 명 있고 남편은 막내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아직도

결혼한 지 4년 됐고 아들도 둘이나 낳았지만, 남편은 아직 이레나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통해 이레나가 비자를 받으면, 혹시라도 도망가 버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단다. 남편은 아내 역성을 들며 “아내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머니 뜻을 거스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내년이면 고용허가제로 받은 비자가 만료돼서 미등록 상태가 되는지라, 빨리 결혼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시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내년이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 거로 믿고 있다. 지금껏 혼인신고를 못 해 보험적용도 받지 못했다. 아이들을 낳을 때 한 명당 100만 원을 병원비로 냈다. 필자는 돈을 더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레나를 아내로, 며느리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시어머니의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환하게 웃는 이레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

그러나 이레나는 계속 미소 지으며 결혼식은 ‘심플’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레나의 결혼관이다.

수입 및 지출

남편은 월 200만 원, 이레나는 공장에 나갈 시 월 100만 원 이상 번다. 남편은 수입 중 130만 원을 생활비로 주고, 남은 70만 원은 통신비, 술값, 자동차세, 경조사 비용으로 쓴다. 이레나는 남편이 준 130만 원에 본인이 번 돈을 합하여 한 달 생활비로 쓴다. 집세 38만 원, 공과

금 10만 원, 저축 25만 원, 미술학원(어린이집) 비용으로 첫째 아이는 25만 원, 둘째는 38만 3천 원을 낸다. 필리핀에 있는 부모님께 40만 원씩 송금해서 총 180만 원 정도 지출한다. 대출이자도 있는 것 같지만 이레나 본인은 잘 모르겠고 남편이 알 것 같다고 했다. 친정부모에게 송금하는 데 대해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모든 관리는 이레나가 한다.

결혼 생활

남편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이레나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먼저 저녁을 먹인다. 남편은 오후 8시 반쯤 퇴근하여 오후 9시쯤 이레나와 식사한다. 평소에는 한국 음식을 해먹지만, 가끔 필리핀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직접 요리한다. 식사를 마치면 아이들은 TV를 보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이레나는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한다.

지금까지 부부싸움은 단 한 번 해봤다. 그러나 폭력은커녕 욕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다.

여가생활

가족은 주말이면 모두 교회에 간다. 이레나도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남편은 기독교, 이레나는 가톨릭 신자지만 종교로 인한 의견 차이는 없다. 집에서 비디오, TV 시청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따로 극장에 가본 적은 없다.

필리핀 커뮤니티에도 나간다. 월말에 열 명 정도 모이는데,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필리핀 남성도 참석한다. 모이면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의 안부도 묻는다. 이 사람들이 이레나가 아는 인간관계 전부이지만, 그다지 답답하던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씩 대구에 사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 그럴 때는 동생이 좋아하는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 간다. 동생과 체부는 사이가 좋다. 남편 역시 대구에 내려가는 걸 좋아해서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진 않는다.

건강

한국에 온 지 10년째지만 별달리 아픈 곳은 없었다. 감기 걸려서 병원, 약국에 가본 적은 있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다. 말도 잘 통했다. 자녀는 이 지역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했는데, 임신 중에도 공장에서 계속 일하다 퇴사 후 3일 만에 아이를 낳았다.

두 아들

첫째아들은 4살이고, 둘째는 11개월이다. 아이들도 아픈 적은 없었다. 첫째가 다니는 미술학원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봐준다. 학원에 베트남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들과 친하게 지낸다. 오전에 이레나가 큰아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남편이 이레나와 함께 공장에 출근한다. 일할 때는 아이들이 참 보고 싶다.

밤늦게까지 아이를 봐주는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한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 때문에 6시가 되면 정시 퇴근할 수 있어서 더 바라는 점은 없다. 아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국어 빨리 배웠으면 하기에, 외국인 전용 어린이집은 원하지 않는다. 또한, 어린이집 비용에 대해서도 그건 그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내가 얼마를 원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외국인이라고 딱히 할인해주지는 않지만, 돌도 안 지난 둘째 아이를 받아줘서 참 고맙다.

아이들과는 영어, 한국어로 말하지만, 주로 한국어를 쓴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필리핀어를 가르칠 생각은 없다. 좀 더 컸을 때 가르치려고 한다.

큰 아이는 이레나가 필리핀 사람이란 걸 안다. 어느 날, 아이가 이레나에게 “엄마는 왜 까만 색이냐”라고 물어봤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까맣지 않기 때문이다. 이레나는 “아빠랑 난 나라가 안 똑같아. 난 필리핀 사람, 아빠는 한국사람.”이라고 답해줬다. 피부색은 달라도 아이들이 어머니와 바깥에 나가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이에게 태권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큰아이가 음악을 좋아해서 집에선 항상 한국음악을 틀어준다.

차별 경험

차별당한 적은 전혀 없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이레나 역시 한국인이 좋다고 생각한다. 간혹 한국인이 필리핀인을 차별하는 뉴스는 들어봤지만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한한 것이지, 한국인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 이주민지원단체는 알게 된 지 오래됐다. 도움 청할 단체는 오직 이주민지원단체 뿐이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남편과 상의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친정어머니와 이야기한다.

건의사항, 행복이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은 더 많은 노동자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남편, 아이들과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여행 삼아 필리핀에 가고 싶지만, 계속 그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다.

에필로그

인터뷰 내내 둘째가 칭얼댔는데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이레나. 본인보다는 남편과 가족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다. 긴 시간 함께 있었으나 이레나에 대한 어떤 인상도 받지 못해서 내가 물었다. “언제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이레나는 한동안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대답했다. “It’s very difficult.” 지금껏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 인터뷰하는 동안 받았던 어떤 질문보다 어려워했다. 그 자리에 계셨던 다른 분들이 “사워하고 난 후나 남편이 예쁘다고 했을 때”라고 예를 들어주자, 그제야 “남편이 예쁘다고 했을 때 자신이 예쁜

것 같다.”라고 ‘따라 했던’ 이레나. 나무꾼이 날개옷을 감춤으로써 선녀였던 과거를 잊어버린 여인처럼, 이레나도 혼인신고를 마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결혼이주여성과의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건 무책임한 사람이건, 여성들은 남편에게서 ‘아내가 아닌 외국인’ 대접을 받고 있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남편의 첫째 조건은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는 것’인 듯하다.

선녀가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날개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사슴이 말했던 이유는, 아이가 둘 이라면 양팔에 안고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레나가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한 아이도 안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보석 장신구를 두른 여인



프롤로그

베트남 여인 당투이 씨는 화려했다. 귀엔 파란색 큐빅 귀고리가 경쾌하게 흔들렸다. 왼손엔 다이아몬드 반지와 큐빅이 촘촘히 박힌 팔찌가, 오른손엔 금반지와 금시계가 엄마를 놓치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철썩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경쟁하듯 빛을 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장신구를 두른 여인은 당투이 씨가 처음이었다. 심지어 뱃속에는 아이가 무엇보다 소중한 8개월 된 보석이 자라고 있었다. “한국은 베트남에 죄를 갖고 있다.”라는 말에, 그는 “선생님 괜찮아요. 그때 전쟁이라 어쩔 수 없지만 끝나면 친구가 돼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항상 우울하게만 보이는 결혼 이주여성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미소였다. 나는 그 쾌활한 성격의 근거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는 “원래 성격이 쾌활하다.”라며 깃털처럼 가벼운 손짓을 보였다. 그러나 보석에 반사된 햇빛은 당투이 씨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다. 보석 목걸이 대신 그의 목에 걸려 있던 붉은 목주름 몇 개는 마치 그를 옥죄는 울가미 같았다. 자신의 명량한 성격 덕에 “(내가) 돈이 없어도 다른 이는 모를 것”이라던 말은, 인터뷰 내내 반복됐던 “우리 남편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란 말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당투이 씨의 40페이지 인생

나는 당투이이다

그는 올해 마흔이다. 출생신고 서류에는 1974년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970년생이다. 베트남 전쟁 중에 태어나서 제때 신고할 수 없었다. 그가 네 살이 될 때까지도 전쟁이 계속 되었다. 전쟁이 남긴 기억은 당투이 씨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계기가 된다. 그가 성인이 됐을 때는 전쟁이 막 끝난 뒤라, 경제학을 배우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는 베트남에서 14-15년간 일했다. 베트남의 취업교육센터에서 2년간 근무했고, 하노이 TV에서 회계 업무도 봤다. 무역 사업도 했는데 사기를 한 번 당했다. 서류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물건을 받고 보니 불법 생산물이라 체포된 적도 있었단다. 첫 번째 남편인 베트남 남자와 딸아이를 하나 낳지만, 딸이 15개월 됐을 때 남편은 사망하고 만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무척 힘들다고 했다.

당투이 씨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 삼남매 중 장녀이며, 남동생은 베트남에 살고 여동생은 대만으로 시집갔다. 전화로 종종 연락하며 지내지만, 운전기사인 남동생의 처지가 너무 어렵다. 동생댁은 천식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재혼한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돕고 싶지만 당투이 씨도 형편이 어려워 돕지 못한다. 기회가 되면 남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 인천에는 이모가 사는데 한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당투이 씨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분이시다. 가족도, 본인도 가난했던 터라 갈수록 생계유지가 막막해진 당투이 씨는 한국행을 결심한다.



첫 번째 한국 생활

2007년 9월 9일, 한국에 처음 온 그는 약 14개월 정도 이곳에 머무른다. 그의 말로는 11개월은 일하고, 3개월은 지금의 남편과 연애했단다. 일했던 11개월 동안에는 전자기기 생산 공장에 있었다.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한 달에 90-100만 원을 받지만, 당투이 씨는 야근, 특근을 마다하지 않아 150-16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다 이모 소개로 현재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와 연애했던 3개월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지만, 한국에 온 지 어느새 1년이 지나 당투이 씨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한국에 살기 위해, 서류를 새로 준비할 필요가 생겼다. 당투이 씨는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다.

너무 좋은 남편, 내 남편

이모가 인연의 끈을 놓아준 남편은, “너무 좋고, 너무 잘해주는” 최고의 남자란다.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남편은 당투이 씨와 12살 차이로, 현재 52세다. 지금까지 계속 인테리어 일을 해왔다. 하지만, 정규직원은 아니고 일거리가 있을 때만 출근하는 비상근 직원이다.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3-5일 나가지만, 없을 때는 무려 한두 달을 쉬단다. 남편의 부모 모두 사망했다. 남편은 다섯 남매 중 넷째이다. 형은 두 명이었으나 한 명은 사망했고, 누나 한 명, 남동생 한 명이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남동생은 올해 48세이다.

결혼 생활

남편 역시 50세 나이에 상투를 올렸다. 2008년 12월, 남편은 드디어 결혼반지를 손에 낄 수 있었는데, 초혼이었던다. 남편은 이 결혼에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다.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이 아니었기에, 이 돈은 당투이 씨가 베트남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베트남을 왕복하며 든 비행기표 값, 체류비, 서류 준비 등으로 쓰게 되었다. 서류가 늦게 마련돼서 남편이 그동안 베트남을 자주 다녔던 탓에 비용이 점점 늘어나게 됐다. 남편이 늦은 나이에 처음 결혼해서 당투이 씨는 혹시 그가 “바보인가?”라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정말 잘해준단다. 남편과는 되도록 한국어로 말하나 정 안 통할 때는 베

트남어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명절 때 남편 친척들과 만나면 인사만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짜증 나.”, “재미없어요.”가 친척에 대한 당투이 씨의 소감이다. 남편은 가족을 무척 챙기지만 정작 남편은 받는 게 없는 것 같다.

남편은 당투이 씨에게 폭력은커녕 언성조차 높은 일이 없다. 남편은 가톨릭 신자인데, 그가 자신에게 정말 잘 해주기에 본인은 종교가 없음에도 딸과 성당에 나갈 생각도 있다. “사람 진짜 좋아요.”라며 엄지를 치켜들던 그는, “시집가면 무조건 남자에게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때 당투이 씨를 제외한, 인터뷰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의무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수입 및 지출

남편은 월 200만 원 정도를 번다. 현재 사는 집과 의료보험은 남편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병원비가 많이 든다. 산부인과에서 한 번 진료 받을 때마다 4-17만 원이 든다. 5,000만 원이라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투자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터라 한 달에 40만 원을 이자로 낸다. 수입이 곧 지출이 되어 저축은 한 번도 못 했다. 당투이 씨의 밝은 얼굴이 찌푸려졌다.

친구에게서 용돈을

찌푸려진 얼굴은 경제권을 이야기할 때도 퍼지지 않았다.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며, 당투이 씨는 필요할 때마다 돈을 달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처럼 좋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에, 차마 돈을 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 와 사귀는 친구들이 월급을 타면 그들에게 용돈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너무 좋아요.”란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듯했다. 인터뷰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다. 상식의 동의어는 깊은 이해를 방해하는 ‘폭력’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있음에도 친구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단지 남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 여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물음에 본인과 남편 것까지 모두 당투이 씨가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은 들지 않았다.

건강

당투이 씨가 한국에 와서 아픈 적은 없었다. 딸도 그랬다. 병원에선 간혹 의사소통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한국어 잘하는 친구에게 전화해 의사를 바꿔준다.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지만, 지금은 남편이 일하느라 혼자서 다닌다.

애뜻한 내 딸

인터뷰 내내 웃지만 우는 피에로 가면 같았던 당투이 씨는, 첫째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비

로소 현실을 직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1998년, 당투이 씨가 25살 때 첫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로 올해 17살이다. 그렇지만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갔다. 한국 오기 전 두 달간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도 예비학교에서 한국어, 미술, 음악 등을 배웠지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기엔 아직 이른 듯하다.

한국에 온 지는 다섯 달 됐고, 새아버지와 사이가 좋다. 새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모아놨다가 엄마에게 주거나 막걸리를 사서 새아버지에게 드린다. 어리지만 철이 빨리 들어서, 돈이 없어 과외를 못하는 상황도 잘 이해한다. 언어 때문에 학교생활이 힘들지만, 친구, 선생님 모두 좋은 분들이라 괜찮다. 뭐든 배우려고 노력하는 아이라 시청에서 개최할 춤 대회에 나가기 위해 인천까지 베트남 전통 무용을 배우러 다닌다.

베트남의 외할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혼자 한국에 왔을 때, 당투이 씨는 매일 딸에게 전화했다. 절대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도 어머니는 딸을 잘 키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래서인지 인터뷰 말미에 잠깐 봤던 딸은 정말 예뻐고, 구김살도 없었다.

그리고 아들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은 두 달 남짓 있으면 부모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은 딸, 아들 상관없다고 했지만, 아들이라서 기뻐하는 눈치다. 나이가 들어서 애가 안 생길까 봐 임신시켜주는 약을 먹었더니 곧 아이가 들어섰단다. 이 약을 친구에게 주니 그 친구도 아이를 가졌단다. 둘째 아이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지을 것이고, 아이가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나중에는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싶다.

자녀 교육

딸, 둘째 아들 모두 한국인과 함께 학교에 다녔으면 하지만, 혹시나 외국인이라 따돌림을 당할까 봐 외국인 전용 대안학교가 있었으면 한단다. 지금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도 외국인은 딸 하나란다. 그렇지만 대안학교가 생기더라도 한국인 학교와 같은 수준이었으면 좋겠다. 당투이 씨는 딸이 고등학교에 못 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시에 전 과목이 모두 출제되면, 아직 한국어도 서툰 딸은 많이 어려워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딸에게 딱히 바라는 건 없지만,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통역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차별 경험, 사회생활

딸이 외국인이라 따돌림 당할까 봐 걱정하는 당투이 씨지만, 본인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했다. 혼자서 스스로 하니 불편을 못 느낀단다.

당투이 씨의 집은 곧 베트남 커뮤니티 장소였다. 주변에 한국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5-6명이 거의 매일 당투이 씨 집에 놀러 온단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도움 청할 수 있을 곳을 수첩에 적어놓는다. 이주민지원단체는 남편이 찾아줘서 알게 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잘 모르겠단다. 수첩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바람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복지정책적으로나 참 좋은 나라이다.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여성들을 도와주는 센터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

한국사회에 바라는 부분은 곧 꿈하고 연결된다. 형편 어렵다는 증명을 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견뎌내고 싶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싶고, 앞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고 싶다. 현재로선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에필로그

인터뷰 내내, 난 당투이 씨가 무언가를 위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행복한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그걸 '왜 솔직하게 터놓지 않는가'란 의문이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당투이 씨는 솔직했다.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친구에게 용돈을 받는다' 부분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다. 끔찍하게 무능력한 남편은 돈을 벌어들이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손을 벌리는 분이다. 그렇지만 그분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눈물을 보일 뿐이다. 돈도 벌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 일하는 엄마 당투이 씨에게서, 지금까지도 계속 돈을 벌어야만 하는 내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내 어머니도 액세서리를 참 좋아하신다. 그리고 나 역시도.

대졸에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훌륭히 일해 온 능력 있는 여성인 당투이 씨. 게다가 남편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딸도 착하게 잘 자라는데다가 곧 아들도 태어난다. 그에게 난 아직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렁주렁 흔들리고,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없어도 당투이 씨는 그 밝은 성격만으로도 참 예쁜 것이다.

입양은 되지만 입국은 안 된다?



프롤로그

사람 좋게 생긴 한국인 남자, 나이가 있어 보이는 외국인 여성, 늦둥이 어린 사내 아이, 마리아 가정의 첫 모습이다. 웬지 좀 맞지 않는 조합 같았다. 국제결혼은 '나이 많은 한국 남자와 젊은 동남아 여인'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던 필리핀 여성 마리아. 얼굴에 살짝 드리워진 그늘을 보니 어쩐지 부침이 많은 인생이었을 것 같다.

마리아, 다시 일어서다

마리아의 필리핀에서의 삶

마리아는 한 번 결혼 했었다. 전 남편과 사이에 두 아이가 있었다. 홀로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생활을 시작했다. 사장이 일을 너무 부려 이직을 생각하던 차에 친구 소개로 1991년 대만으로 가게 되었다. 여행비자로 들어가 5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민당국의 단속에 걸려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그 후, 1996년 산업연수생 자격(3년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이때 브로커 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었다. 1999년부터 2003년, 현재의 남편을 만날 때까지 미등록 상태였다.

남편과의 만남

필리핀 친구가 한국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꺼렸다. 뉴스에서 한국인 남자들이 부인을 때리고 괴롭힌다는 뉴스를 접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부공장장 소개로 2003년 2월 남편을 만났다. 마리아가 남편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술을 안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주말이면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했다. 마리아가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서둘러 그해 11월,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했다.

마리아의 일

마리아는 슬리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지금은 가구공장에서 사포로 가구 손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아침 8시 30분 출근해 오후 6시 30분이면 퇴근한다. 다행히 공장 사장이 남편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 여러 가지로 잘 이해해준다. 아들이 아플 때 1-2시간 늦는 것도 봐주고 필리핀에 가야할 때 휴가도 곧잘 내준다. 먼지가 많이 나지만 팬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들의 성장

마리아네가 실제 사는 곳은 이곳이지만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 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인천에서 살았다. 그런데 인천에는 마리아의 친구가 전혀 없었다. 출산 후 우울증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3개월 후 마리아의 친구가 많은 이곳으로 이사왔다. 처음에는 보육시설에 아들을 맡겼다. 그 후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아들은 7살이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6시 30분, 엄마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7시다.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직접 열쇠로 열고 들어가 엄마를 기다린다. 그때 짬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한다. 아들이 혼자 있다가 행여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매일 퇴근하면서 20~30분은 아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

마리아 가정의 언어소통

마리아는 한국말을 기초만 배워 잘 못한다.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살림을 해야 하기에 공부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토요일에 이주민지원단체에서 한글교실이 열리지만 너무 피곤해 못 가고 있다. 아빠는 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퇴근이 늦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한글을 배울 수도 없다. 게다가 남편은 영어를 전혀 못한다. 기본적인 대화만 하고 지낸다. 아들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한다. 엄마가 영어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들은 영어도 할 줄 안다. 아빠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아들이 설명해준다.

마리아는 아들 교육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숙제가 많고 알립장도 매일 봐주어야 하는데 한국말을 못해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만이라도 필리핀으로 보낼까 생각중이다. 그러나 아직 남편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다.

선량한 남편과 그의 가족

남편은 건설회사 기계 설비 일을 하고 있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형제들과는 명절, 제사 때 주로 만난다. 마리아는 필리핀에 자녀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편은 아들과 마리아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 술은 좋아하지만 마리아가 싫어해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요즘 남편은 바쁘다.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의 자녀들을 입양하기 위해 열심히 관공서를 쫓아다니고 있다.

좋지 않은 미등록 시절의 기억

마리아는 미등록이었을 때는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장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것만 억울했다. 한국인과 똑같이 일해도 한국인은 90만 원 주고, 자신은 65만 원 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한 달 채워야 돈을 준다고 해놓고 계속 미뤄 못 받은 돈이 200만 원이나 된다. 노동절 같은 날도 미등록 노동자는 쉬지도 못한다. 그런 날 일한다고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국적도 취득하고 사장이 남편과 아는 사이라 차별을 받지 않아 한결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장성한 필리핀 딸과 아들

필리핀에는 아들과 딸 각각 1명씩 있다. 딸은 26세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들은 23세로 해양공학을 전공하는 2학년이다. 두 자녀 모두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엄마와 살고 싶어 한다. 딸은 그동안 초청받아 몇 차례 한국에 왔었다. 한국 유치원에서 영어도 가르쳤다. 그때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한글을 많이 배웠다. 아들은 필리핀 누나와 형을 많이 좋아한다.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날이면 눈물 바람을 하곤 한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엔 전화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곤 한다.

아이들이 장성하기까지 필리핀 부모님의 고생이 많았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월급 65만 원 중 30만 원을 필리핀으로 송금했다. 자녀들이 대학을 다닌 후부터는 20만 원만 송금하고 있다.

무슨 비자가 출입국사무소 직원 마음대로?

엄마가 아무리 국적을 취득해도 이주 여성의 현지 자녀들은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처음 2년 동안은 초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진다. 그것도 비자 발급받기까지 3개월이나 걸린다. 2년이 지난 후부터는 무비자로 한 달 간 들어올 수 있다.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연장 여부는 출입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여러 번 연장을 해봤지만 연장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러 차례 비자 때문에 관공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닌 남편의 말이 인상적이다. “무슨 비자가 출입국 사무소 직원 마음대로요?”

입양은 쉬우나 들어올 수 없다

지금 남편은 필리핀의 두 아이를 입양할 서류 준비로 바쁘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공부 목적 외에는 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 남편이 한마디 했다 “엄마가 한국인이고, 자식들이 엄마를 보고 싶는데 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아프다

마리아는 1남 2녀 중 막내다. 부모님은 오빠와 언니까지 대학을 보냈지만 형편이 어려워져

대학을 중퇴해야 했다. 필리핀에서 두 자녀를 길러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도 고맙다. 요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 9월엔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1주일 정도 필리핀을 다녀올 예정이다.

마리아는 경찰이 되고 싶었다

마리아의 어렸을 때 꿈은 경찰이었다. 26세 때 경찰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서류가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 대학 다닐 때는 범죄심리학을 전공했다. 학교를 나와 보안 경비쪽 일을 했다. 노동자 출입만 확인하는 쉬운 일이었지만 교대자가 번번이 술 먹고 결근하는 터에 많이 힘들었다. 마침 친구의 소개로 보수가 괜찮은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아들이 의사가 되길 바란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한국말을 잘 몰라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보낼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도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낼 거냐고 물었다. 한국 교육현실을 신뢰할 수 없는지, 아무리 시스템이 좋게 만들어져도 한국에서 아들이 잘 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에필로그

비자 발급 및 연장의 간소화, 기준 명시화 필요

이주민들은 초청이라는 형식을 가져야 상봉할 수 있다. 그런데 비자 발급에서부터 연장에 이르기까지 서류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걸린다. 마리아 가족의 경우 체류비자를 얻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어야 했다. 그것도 3개월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했다. 어렵게 신청해도 처리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비자연장 기준에 대한 명시나 고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비자 발급 및 연장의 간소화, 기간의 단축, 연장기준의 명시 등이 필요해 보인다.

입양 희망 가족의 입국,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중도입국 자녀들은 교육 목적이 아니면 입국하기가 쉽지 않다. 마리아 가정의 경우 입양절차를 거의 끝냈는데 정작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 목적이 아니어서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있는 나라에 가서 돈 벌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법으로 제한

하는 것은 가혹하다. 피부색은 다르지만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면, 행복을 기꺼이 지지해 주어야 한다.



그녀에겐 여기가 바로 고향이다



프롤로그

딜루사나. 반짝이는 그녀의 두 눈빛은 즐거움과 활기에 찬 생활을 말해주는 듯했다.

스리랑카에서 한국 이주까지

딜루사나(36세)는 스리랑카에서 출생하여 대학에서 디자인학을 공부했다. 부모님은 모두 살아 계신다. 부친은 냉장고 회사에 30년간 다녔고 모친은 가사 일을 한다. 여자 자매가 4명이고 딜루사나는 둘째다.

1999년 3개월 동안 디자이너로서 원단을 전달하고 오더를 받아가기 위해 한국에 처음 왔다. 2000-2001년 사이 큰 오더를 받고 입국해 1년간 체류했다. 월세를 살다가 주인 아줌마가 아들을 소개시켜줘 연애를 했다. 2003년 동거로 임신하고, 2004년 스리랑카에서 결혼식을 했다. 남편은(46세, 인테리어업) 재혼으로 13세의 딸이 하나 있다.

결혼식 이후 한국에서 생활했다. 아기가 폐렴에 걸렸으나 말이 통하지 않아 병원 다니기가 어려웠다. 스리랑카에서 2005년 여름을 나고 입국하여 2006년 이후 계속 살고 있다. 2006년 국적을 신청하여 2009년 획득했다. 아들, 딸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가 열과 경기로 3세 이전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남편에 대해

남편은 폭력이 전혀 없다. 조용한 사람으로 소주를 사와 집에서 먹고 잔다. 술 1병 먹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성실한 남편이다. 돈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은 맘도 있다고 농담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냥 좋다.

남편이 돈을 아껴 쓰지는 않는다. 큰아들로서 동생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한다. 남편은 4남 1녀 중 장남으로 돈을 1억 원 빌려서 동생에게 꾸줬다. 딜루사나는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전에 상의하지 않아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 이유가 뭘까? 여자라서? 외국인이라서? 둘 다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6개월간 이자를 갚지 못해 결국 7천만 원 전세를 빼서 4천만 원 보증금에 월 25만 원 월세를 산다.

시아머니와 절에 자주 간다. 그러나 자꾸 절에서 돈을 달라고 해 이제 찾아가지 않고 마음으로만 부처님께 기도한다. 시부모님은 앞집에 산다. 스리랑카에서는 늦게까지 출가하지 않은

막내가 부모를 모시고 제사도 모시고, 재산도 다 상속받는다. 한국과는 문화가 다르다.



사회활동, 즐거움 속 외로움?

국제결혼가정을 소개하는 TV프로에 패널로 출연 중이며 다문화 강사, 통역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9시부터 5시까지 사회적 기업에서 일도 하고, 모임도 창설해서 활동 중이다. 봉사단체를 조직해서 치매노인을 방문하여 대화하고 돌봐주고 있다. 3개월 전 만들었고, 이주민 여성 10명이 회원이다.

이주민지원단체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통역 및 캠페인에 참가한다. 지역복지관에서 한글 공부 하다가 중단했다. 결혼이민자 평등 찾기도 열심히 참가한다. 또한 고등학생과 함께 이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월 2회 시청과 청소년회관 앞에서 한다.

친구도 많고, 활동도 많다. 동네 아줌마들과도 잘 어울린다. 그래도 혼자라는 외로운 생각이 있다.

차별 그 끝은?

피부색이 검으니 지하철을 타면 아무도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옆자리가 자주 비고 그냥 가버리기도 한다. “스리랑카는 못사는 나라”라고 대놓고 말하고, “스리랑카보다 여기가 더 좋지”라고 묻는다. 공무원에게 아동 바우처 등을 문의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라고만 한다. 인터넷을 찾으면 맨 밑에 아주 조그맣게 써놓고 알아서 보라고 한다.

자녀들의 꿈

첫째는 시립어린이집에 다녔다. 자녀가 한국계 아이집에도 어린이집 교사는 외국인 자녀로 인식했다. 시어머니가 외국인 엄마라서 아이가 왕따 당할 수 있으니 자주 가지 말라 했으나 자주 찾아가서 봤다. 스스로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딸은 친구들이 “왜 피부가 검나?”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한다. 아직 다문화 어린이는 낯설고 거부감이 있다.

외국인을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학교와 유치원에 자주 가서 익숙해지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어린이 집 비용은 월 6만 원으로 저렴하다. 차별적 요소만 빼고는 만족한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한국인 자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들은 과학자가 꿈이다. 딸은 5세로 아직은 신데렐라가 꿈이다. 그들의 꿈이 한국에서 무르익었으면 좋겠다.

유치원 속의 다문화

아들의 친구가 “실록실록 나라에서 왔냐, 왜 까맣냐?”고 물어 “까마면 사람 아니냐?”고 대응했다. 자주 이런 소리를 자녀로부터 들으면 딜루사나도 기운이 없어진다. 한국인도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자녀가 먹지 않으면 교사는 “아 맞다. 느네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가리

는 구나”라고 바로 연결시킨다. 아들은 보리차보다 생수를 좋아해서 안 먹는다고 했더니 교사는 “너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보리차를 모르는구나.”라고 했다. 또한 닭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니 “너네 엄마 이슬람이구나.”라고 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 일어나봐”라고 공개적으로 구분하여 처음부터 차이를 두고 차별한다.

통합을 바란다

유치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나쁘지 않다. 배우는 것 자체가 좋고, 타국생활에서 쉽고 자유롭게 배우는 공간도 필요하다. 특별한 외국어를 신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리랑카에서는 뉴스를 영어, 타밀로어(인도어), 스리랑카어 3개 언어로 방송한다.

한국은 4-6세까지 3년 동안 보육이 가능하다. 더 어린 아이(유아)는 맡길 곳이 없다. 유치원에서는 하루 종일 놀기만 한다. 개인적으로 돈 내서 특별활동(미술 색칠, 운동 2가지)을 시킨다.

다문화 가정 자녀만 별도로 분리해 교육한다는 생각은 이해가 안 간다. 한국 사람과 같이 등급 없이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못해도 아이는 가능하다. 잘하는 아이도 많다. 따라서 통합교육이 필요하다. 혹시 미흡하여 못 따라 간다면 시간외로 특별지도를 해주면 될 것이다.

가정생활의 다정함

6시 이후에는 주로 아들의 한글공부와 받아쓰기, 숙제를 돌봐준다. 집에서는 한국말, 스리랑카어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말을 더 많이 쓴다. 의사소통은 원활하며 스리랑카어는 자연스럽게 익히는 수준이다.

부부 수입은 월 120만 원 정도다. 개인 인테리어업을 하는 남편은 작년에 3번 다쳤고, 2년간 일이 없어 요즘 수입이 없다. 딜루샤나는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 옷은 안 사고 주로 아이가 아플까봐 무서워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남편은 보험가입도 안 된다. 아파트 청약을 월 2만 원씩 3월에 가입했다.

한국은 각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사건이 발생된 후에야 겨우 알게 되는 일이 많다. 각자 자기 혼자의 생각이 많고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남편과는 한국말로 소통하고, 가족이 외출하거나 놀러 나가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올해 가족을 동반해서 사무실에 간 적이 1회 있다. 딜루샤나 혼자서 애들과 놀아주고 영화도 자주 본다. 공원, 놀이터에 많이 가고, 봉사 활동에도 데려가고, 애들 친구들과도 놀아준다.

한국인의 이주민을 보는 시선

미등록 노동자들의 아이들은 돈을 쥐고 유치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유치원 교사들은 엄마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등록 노동자는 벌금이 무섭고 일자리도 없으며 의료보험도 없으니 아프지도 못한다.

도청에 이주민센터가 있으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에필로그

딜루샤나는 말한다. 더 이상 나를 그 무엇으로도 따로 떼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사투리 하는 아줌마처럼 받아주면 좋겠다고. 그녀는 태어난 곳이자 부모가 살고 있는 스리랑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단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로 여기가 그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아빠같은 사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프롤로그

베트남인 도티는 2003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했다. 그때 도티의 나이 21세, 남편의 나이는 51세였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이유 없는 폭력이 시작되었다. 무서워 여성쉼터로 도망을 갔다. 그러자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도주했다며 신고하더니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도티는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겼고 위자료 1,000만원만 받고 나가라는 판결을 받았다.

남편은 아들을 양육할 생각이 없어 도티가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베트남에 3세 된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 도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비자발급과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찾게 해 준다는 베트남 사람의 말을 믿고 400만 원을 줬지만 사기만 당했다

2009년, 베트남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와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다.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현재 남편을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다. 소송중이라 내년 3월이면 비자가 만료된다. 소송에서 지면 아들을 남편에게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

도티의 홀로서기

아들, 한국말을 잘 못해 어린이 집에 적응 못하다

7살 아들은 집 앞에 있는 어린이 집에 다닌다. 한국말을 잘 못해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선생님 말씀도 자세히 알아듣지 못한다. 한번은 도티가 선생님에게 잘 봐 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선생님은 도리어 아이가 한국말을 못해 가르치기 어렵다고 했다. 집에서 한국어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게다가 호기심과 집중력이 없고 무기력하다고까지 했다. 아들은 말이 없는 아이다. 그래서 평소엔 무슨 어려움을 겪는지, 어린이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도티도 퇴근하면 바로 쓰러지기 일쑤라 살갑게 얘기를 나눌 틈이 없다. 일요일엔 집 앞 시장에 나가는 것이 아들과의 유일한 놀이다.

열쇠를 문에 꽂아놓고 혼자 잠들어 있는 아이

도티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야근을 한다. 밤 9시에 집에 돌아가면 아들은 자고 있거나 혼

자 TV를 보고 있다. 가끔은 열쇠를 문에 꽂아놓고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 24시간 어린이집에 보낸 적도 있지만 한국말도 못해 힘들어해서 그만두고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외할머니라도 초청해서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싶지만 도티의 신분상 불가능하다.



실제 양육을 하고 있지만 보육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아들은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다. 주소지도 아버지 앞으로 돼있어 정부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전남편이 아들의 주소지를 옮겨줄 리도 없고,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괜히 아이의 주소를 옮겼다가 소송에 좋지 않을까봐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 매달 보육비로 20만 원을 내고 있다. 내년이면 아들이 입학한다. 만일 재판에 저서 친권, 양육권을 얻지 못하면 큰일이다. 전남편이 보육원 같은 시설에 맡길까봐 걱정이야. 그렇다고 도티가 다시 말는다고 해도 그때면 미등록 상태가 되어버려 아들을 합법적으로 기를 수 없다. 도티는 동사무소에서 서류만 보고 지원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여일 숙박비 대신 결혼을 결정하다

도티는 1983년생이다. 6남매 중 셋째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을 시작했다. 19세부터는 호치민에 있는 신발공장에서 일했다. 그때 집에 빚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있었다. 그때 도티의 나이 스물한 살. 한국 가서 아이 낳고 열심히 돈 벌어 베트남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베트남 여인들 여럿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한국에서 원정 온 남자와들 맞선을 봤다. 맞선 자리에 나갔지만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20일이 지나도록 맞는 사람이 없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51세 된 한국 남자가 나왔다. 나이도 많고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하자 결혼중개업체 사람이 이번에 성사되지 않으면 20일 동안의 호텔비와 식비를 모두 내야 된다고 했다. 20일 동안의 호텔비와 식비는 호치민 신발공장에서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 그렇게 한국인과의 결혼생활은 시작되었다.

100만 원의 빚, 빚을 날다

베트남의 가족들은 지금도 초가집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도티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터라 비행기 표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다. 간신히 표를 얻어 베트남에 갔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끝난 상태였다. 한국으로 떠날 때 한국 돈 1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남편이 100만 원을 쥐서 집에 송금했지만 이미 그때는 고리사채를 쓴 터라 빚이 몇 배나 불어 있었다. 그 빚은 현재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다.

여동생도 2008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동생 역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다 결국 이혼하고 결혼 1년만인 2009년 4월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힘들 때면 동생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지금은 13,000원 짜리 전화카드를 사면 150분 통화할 수 있다. 남편과 살았을 때는 전화요금 많이 나간다고 전화도 못하게 했었다.

120만원의 행복?

2009년 3월, 신문 광고를 보고 지금 일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자동차 마크를 만드는 회사다. 기본급은 90만 원, 잔업을 하면 시간당 6천 원을 준다. 사장이 성실하게 일한다며 기계관리도 맡겼다. 기계관리를 하면 5만 원을 더 받는다. 다 합해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일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회사가 잘 돌아갈 때는 매일 야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밤을 보낼 아들을 생각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만 밤 9시까지 야근한다. 월급 120만 원 중 어린이집 비용으로 20만 원을 낸다. 영어수업이나 다른 특별수업을 모두 받게 하고 싶지만 30만원에 가까워 그냥 기본교육만 시킨다. 아이를 키우며 120만 원으로 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쯤 저축한다.

2005년 남편을 피해 지방의 여성 쉼터에서 지냈다. 그런데 그 여성 쉼터에서 외국인이 많은 이곳의 여성 쉼터를 소개해주 그때부터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 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살았다. 베트남에 돌아갈 때 보증금으로 비행기 사고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예전 사장님이 전세로 얻어놓은 방을 빌려주어 돈을 내지 않고 살고 있다. 남편이 이 집을 알고 있어 찾아올까봐 겁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갈 형편은 못된다.

공장사람들이 변했다

여름철에는 기계가 한 바퀴 도는데 12~13분 정도 걸리는데 겨울철에는 8~9분밖에 되지 않는다.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불량이 난다. 본드를 부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한국에서 주는 마스크는 얇아서 안 쓴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져온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일한다. 처음에는 공장 사람들끼리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잘 지냈다. 그런데 요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며 몇 사람을 내보내자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다.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잃었다. 남편은 법원에서 주라는 위자료도 주지 않고 아들을 양육하지도 않았다. 이주민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사이 남편은 또 베트남의 젊은 여인과 결혼했고 똑같이 그 여인도 폭행을 당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혹시 이번에도 또 재판에서 저 아들을 보내야 한다면 강제 추방당할 때까지 만이라도 근처에서 아이가 크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다.

절대 아빠만 닮지 않기를 바라다

소송에서 이겨 아들과 함께 산다면 아들이 클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아들이 직장에 취업해 계속 한국에서 살겠다면 그때 도티는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통역을 맡아 주신 분에 따르면, 도티는 처음 봤을 때는 활기차고 똑똑했다고 한다. 남편한테 소송당하고, 같은 베트남인에게 사기를 당하더니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려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도티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단지 절대 아빠 같은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티의 꿈은 디자이너

도티에게 어렸을 적 꿈을 물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다. 그러더니 수줍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어렸을 때 베트남 공장에서 미싱 일을 배우면서 디자이너를 꿈꿨다고 했다. 결혼, 폭행, 출산, 이혼으로 이어진 8년여의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녀에게 꿈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서러웠을 것이다.

에필로그

진짜 결혼을 위해서는 합법적 정착 지원책이 필요

도티는 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난 사람을 보고 며칠 만에 결혼을 결정해야 했다.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남편에 대해 들은 것은 나이, 직업, 이혼경험 뿐이었다. 인신매매성 결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혼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중개업체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등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를 거두지는 의문이다. 과연 국제결혼 가정 문제가 중개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결혼한다. 국제결혼이라는 틀을 갖지 않아도 한국 노동 현실을 반영해 취업을 원하는 이주여성에게 비자 발급 등 합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들어온 여성이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을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것이 진짜 결혼이다.

중도입국자녀의 언어소통과 학력부진 문제 심각

도티의 아들 같은 경우도 중도입국자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엄마와도 의사소통이 힘들다. 소통의 어려움은 정서발달이나 학력부진으로 연결된다. 일반 보육시설은 언어소통이 안 되면 어머니에게 책임

을 돌린다. 국제결혼 가정의 여성들은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육할 여건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어머니조차 한국어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언어 및 학습 심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주민 가정, 더욱 적극적인 사회보장 서비스 필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학비, 급식비, 생활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티의 아들은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엄마가 실제 양육을 하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혼 및 친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실사를 통해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주 여성은 의사소통도 어렵고,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의 특별한 우대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하얀 곰과 파란 돌고래가 사는 집



프롤로그

비는 오후가 되자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물기를 머금었고 하늘은 흐렸다. 그러나 하얀 곰과 파란 돌고래가 사는 집에는, 푸른 하늘에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구름이 떠있었다. 그들은 모자의 일상을 지켜보는 게 유일한 낙이다. 컴퓨터 배경화면은 언제나 아들 혼자 찍힌 사진이었다. 방에는 아이와 여성의 옷만 있었고, 바로 옆방에는 엄마의 아는 동생이라는 베트남 여성이 살고 있었다. 하얀 곰과 파란 돌고래는 모자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경쾌한 선율의 베트남 노래가 아무리 방안을 채우고 있어도 두 모자가 외로운 섬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이날, 웬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중에서 기록자로 온 여성은 집안에 들어서자 확 풍겨 오는 화장실 냄새에 식겁한 듯했다. 방 옆에 붙어 있던 화장실에선 역한 냄새가 났다.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은 거주자에게 사생활을 빼앗아 버렸고, 역시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현관 겸 주방은 어지럽게 널브러진 신발들로 지저분했다. 바퀴벌레는 무심하게 방바닥을 횡단하고 있었다. 기록자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엄마와 손님들의 대화가 시작됐다. 하얀 곰과 파란 돌고래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

어린 시절

트영 씨는 25년 전, 베트남 남부의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어머니와 언니 한 명, 남동생 두 명이다. 남매는 모두 베트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동생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고모님은 고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트영 씨도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해서 언젠가는 미용실을 차리고 싶어 한다. 어린 시절, 꿈같은 건 없었다. 학교도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만뒀다.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공부할 여력 같은 건 없었다.

남편과의 만남

스무 살이 갓 지난 2006년, 한국에서 한 남자가 왔다. 브로커는 그를 요리사라고 소개했다.

트영 씨보다 스물두 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많은 사람이 그러했듯 그를 따라 한국에 가면 돈도 벌고 가족에게 송금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신다. 누나 한 명과 두 형이 있고, 남편은 막내이다. 중학교까지만 다녔으며,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는 트영 씨를 소개받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1,700만 원을 줬다. 남편이 베트남에 머문 열흘 동안, 결혼식을 하고 가족과 작별 인사도 나눴다. 그렇게, 나이 많은 남편을 따라 베트남을 떠났다. 그 이후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트영 씨는 단 한 번도 베트남에 가지 못했다. 그래도 가족과 전화 통화는 자주 하는 편이다.

거짓말, 그리고 기다림

결혼 비자로 한국에 와보니 브로커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트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요리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9개월만 다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돈을 벌지 않았다. 남편이 3년 넘도록 일을 하지 않았지만 트영 씨는 계속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뀔까 싶었다. 집을 얻을 때 남편의 형이 보증금을, 누나가 집세를 내라고 돈을 줬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받을 때마다 남편은 바로 도박을 하거나 PC방을 전전하면서 금세 다 써버렸다. 돈이 떨어지는 날은 트영 씨가 남편 얼굴을 보는 날이었다. 남편은 돈이 없을 때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나가버렸다.

지금부터 2년 정도는 남편과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인터뷰 진행자가 남편의 직업을 물었을 때 트영 씨가 대답을 거부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남편이 폭력이나 욕설을 쓰진 않았다. 내 돈 주고 널 데려왔다고 부담을 주지도 않았다. 그러나 무능력은 폭력만큼 끔찍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단한 주먹이 되어 트영 씨의 몸을 멍들게 하고 있었다.

내가 버린 게 아냐

이젠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해주질 않는다. 한국어를 잘 몰라 이혼소송을 하기도 어렵다. 현재 남편과 살지 않고, 시부모도 트영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남편이 도박 문제로 경찰서에 3일 정도 감혀 있기도 했다. 한 달 전쯤에도 남편이 잡혀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을 하며 트영 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다. 남편이 '교도소에 수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면회는 가지 않았다. 가보고는 싶지만, 가는 길도 모르고 사실 문자 내용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남편이 돈 벌어서 가족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다.

트영 씨는 이혼을 원하는 자신이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과 아들을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아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손님들 사이에서 블록쌓기를 하고 있었다.

현재 생활

트영 씨는 현재 화장품 공장에서 마스크 시트, 로션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 시간제라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다. 집세는 공과금 포함해서 20만 원이다. 아들은 무료로 이주민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녀서, 잘 아끼면 생활비가 10만 원 정도 남는다. 3개월에 한 번씩 300달러 정도를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께 송금한다. 어머니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신다. 어머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의 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다. 아들을 낳았을 땐 보험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베트남 커뮤니티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주민지원단체 외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없다. 예전에는 기업은행 근처 한국어 가르치는 곳에 다니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주말에는 아들을 데리고 근처 친구 집에 놀러 간다.

외국인이어서 차별이나 놀림을 당한 적은 많지 않다. 나쁜 사람도 있으나 좋은 사람도 있다.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베트남 친구들이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내 아들

자녀는 네 살배기 아들 하나다. 오전 7시 반에 보육원에 보내서 트영 씨가 퇴근할 때 데려온다. 어머니와는 한국어로 소통한다. 보육원에서 여러 언어를 가르치지만, 아들은 집에서 한국어만 쓴다. 나중에는 베트남어를 가르치려고 한다.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베트남에 가서 일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보육원은 만족스럽다. 선생님, 아이들 모두 한국어를 써서 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한국 아이들과 섞여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 한국어 외에 따로 가르치는 것은 없고 지금은 그럴 생각도 없다.

이루고 싶은 것들

트영 씨의 코리아안 드림은 '남편의 이혼 동의'였다. 베트남에선 이루고 싶은 꿈은 없었다. 그러나 한국에 오니 남편과의 이별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되었다. 혼자서라도 아이를 길러야 하고, 남편을 개의치 않고 한국에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아들은 엄마 힘으로 기를 것이다. 그렇다면 아들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아들이 커서 뭐가 됐으면 하냐고 묻자 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할 수 있기를, 딱히 아들에게 바라는 건 없다.

트영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결혼이주여성들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의문이 든다. 대체 왜 한국남자를 따라오는 걸까?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아버지뻘 되는 남자를 따라 연고도 없는 나라에 올 수 있는 걸까. 그러나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는 이상, 누구라도 그들의 선택에 물음표를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말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것 또한 불행의 씨앗에 물을 주는 격이다. 제도가 바뀌어야 할까, 인간의 선택이 바뀌어야 할까. 아무리 제도를 보완한다 해도 불 속에 뛰어들면 누구나 죽을 것이다. 누구나 죽긴 하지만 그래도 바리케이드를 쳐놓는다면 불 속에 뛰어들 순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근절시켜야 하는 걸까, 완화해야 하는 걸까. 젊은 엄마 트영 씨가 앞으로 저야 할 삶의 무게를 보니 애초에 그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원인이 원망스러워진다.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남편 동의 없이도 이혼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법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현실로 옮기는 데는 여전히 까다롭다. 트영 씨에게 이혼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가 수차례 이혼을 생각하고도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아들은 '밖으로 도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다. 가족을 잊고 사는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 사이에서, 트영 씨의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겉보기엔 매우 좁고 지저분해 보이는 집이었다. 그러나 내부에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는 벽지가 발린 방이 트영 씨 아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 같았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록자는 침대 위의 커다란 하얀 곰 인형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파란 돌고래 인형이 모자를 지켜주기를 바랐다.

세 딸을 키우는 싱글맘



프롤로그

마리아는 세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한국인 남편은 작년에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남편은 결혼관광차 필리핀에 왔었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된 언니가 마리아를 소개했다. 당시 남편은 60세였다. 남편은 전부인의 외도로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사이가 나빠져 필리핀에 온 것이었다. 마리아는 상처받은 한 남자를 사랑했다.

마리아의 이야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마리아는 필리핀의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8년 동안 회계사로 일했다. 남편을 만나 1년간 교제한 후, 1998년 필리핀에서 결혼했다. 이듬해 큰 딸이 태어났다. 6년간 필리핀에서 살다가 2004년 한국으로 왔다. 처음에는 부부만 입국했다가 1년 뒤 아이들을 데려왔다. 12살, 11살, 9살의 세 딸이 있다. 마리아는 2007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마리아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한 남편의 자녀들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 현재 47세와 40세인 아들 둘과 39세인 딸 등 3남매를 두었다. 남편은 필리핀에 오기 전 이미 유산상속을 마친 뒤였다. 남편의 자녀들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특히 큰아들은 마리아와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다. 결혼 후 큰아들이 선동하여 자녀들이 남편에게 주던 생활비도 끊었다. 그래도 딸은 남편에게 매달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 마리아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마리아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해 본적이 없다. 남편을 처음 보았을 때, 왜 나이도 많은 사람이 여자를 찾아 외국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의 외도와 가족간의 불화로 의기소침한 남편에게 연민을 느꼈고 곧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왜 한국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처럼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궁금해 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 남편에게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다. 마리아는 그저 그를 사랑했고 외로운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다.

남편은 때로 젊은 외국인 부인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마리아는 한 번도 나이 많은 한국

인 남편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다.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너무 힘들었다. 남편도 없는 한국에서 딸들과 함께 살아갈 일이 막막했다. 시청의 저소득층교육비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필리핀 여성들이 힘을 주었다. 그리고 이주 민지원단체와 동사무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앞으로 세 딸의 교육비 등이 걱정이다. 언어 장벽도 문제다. 은행통장, 의료보험 등 각종 서류를 마리아의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제생활 & 사회생활

남편은 결혼조건으로 마리아에게 맞벌이를 제안했다. 남편은 이미 60세였고 전처의 자녀들이 남편에게 주던 생활비를 끊은 뒤였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공장에서 일했다. 마리아의 가족은 30만 원짜리 월세에 살았다. 천장에서 비가 많이 섰다. 시청에서 집에 와보고 조금 나은 집을 알아봐주었다. 현재 이사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 남편은 남긴 재산도 없다. 마리아는 지금 공장에 다니지 않는다. 한국어가 서툴러 마땅한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다. 동사무소에서 마리아가 한국어만 능통하면 전공을 살려 좋은 직장을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마리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다. 정부로부터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무료이고 저녁은 공부방에서 먹고 온다. 종이식권을 받아오기도 한다. 종이식권은 곧 G-Dream Card(아동급식 전자카드)로 바뀐다고 한다. 매주 성당에 가서 기도한다. 하느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은 성당에서 영어강사로 자원활동을 한다. 이주민지원단체나 시청,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그리워한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주 한강공원이나 남산, 동대문 역사박물관 등에 놀러갔다. 아이들이 아빠의 사진을 보며 울기도 한다. 아빠의 부재로 아이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 사춘기에 접어든 큰딸의 반항을 혼자서 감당하기도 버겁다. 아이들의 영어, 수학은 마리아가 직접 가르친다. 교과서가 다 한국말로 되어 있어 다른 과목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은 공부방에서 배운다. 학교수업 외에 큰딸(초등학교 5학년)은 피아노를 배운다. 피아노 같은 과외교육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준다. 보통 한명에 9만 원인데, 마리아의 딸은 6만 원만 낸다. 작년에는 딸 셋에 11만 원을 냈다. 그런데 남편의 사망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큰 딸만 보낸다. 딸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해준다 해도 나머지 50%는 지불해

야 하므로 교육비가 부담스럽다.

여가시간에는 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제물을 체크한다. 요리나 집안일을 같이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나 캠핑 등에 참가한다. 아이들이 원하면 공원에 가기도 하지만, 이전처럼 가족이 다 같이 멀리 놀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어문제

마리아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 남편이 영어를 잘하여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작년엔 한국말을 2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으나 올해는 40~50%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말하는 것은 서툴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지역의 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인터넷 한국어 강의도 많이 있으나, 설명이 다 한국어라 공부하기가 어렵다. 전공을 살려 경영학 관련 인터넷 강의를 듣고 싶지만 이 역시 한국말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어렵다. 아이들이 모두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아이들 모두 한국말에 문제가 없다. 다만 아이들의 이름이 다 영어식이라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가 가끔 있다. 남편이 그 점을 우려하여 한국식 이름으로 바꿀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사망했다. 아이들과는 영어로 대화한다. 마리아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기를 바란다. 한국말은 마리아의 한국어공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

마리아는 일곱 형제 중 셋째이다. 인터넷 무료문자메시지로 매일 연락한다. 전화통화는 잘 하지 않는다. 영상통화는 한 달에 1회 정도 한다.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여 오빠가 도와준다. 그리고 여동생이 필리핀-한국간 건축관련 업무로 2006년 한국에 와서 계약직으로 3년간 일했다. 이후 남편 친구와 연결되어 지금은 결혼하여 강원도에 산다. 마리아는 한국이 좋다. 한국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잘 조직되고 사람들도 매우 친절하다. 한국은 교육도 무료이고 기회가 많은 나라이다. 애들도 모두 한국에 살고 싶어한다. 남편도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했다. 필리핀으로 휴가나 여행은 갈 수 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 필리핀은 교육비가 비싸고 임금도 낮아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공장에서 일할 때, 외국인이어서 임금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민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해한다.

바라는 것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재혼 같은 것은 생각할 틈도 없다. 정부에서 마리아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다. 마리아의 가족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를 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주면 좋겠다.

에필로그

빛나는 작은 눈, 야무진 입매, 가무잡잡한 피부의 마리아는 당당하게 자신이 이야기를 털어 놓았다. 인터뷰 후에는 참여한 사람들이나 한국정부에 감사의 인사까지 잊지 않는 배려 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국에서, 높은 언어장벽과,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워내야 한다는 부담이 마리아의 좁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당당함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마리아는 미등록 이주민에 비하면 상당히 조건이 나은 게 사실이다. 국적을 취득했고 정부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나라 저소득층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그녀가 기댈 언덕은 무얼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정체성의 문제도 남아있다. 나와 네가 달라서 재미있다가 아니라, 안 논다, 싫다, 저리 가라고 말해버리는 차별은 내내 그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이주민이라는 이름의 그들, 그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 한국에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들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찾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한 그들과 함께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같은 지를 찾는 것은 너무나 쉬워서 굳이 찾을 것도 없는데 말이다.





프롤로그

술램이 사는 김포는 한창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공사 현장을 돌아 마을 복판으로 들어서니 그래도 연립들이 꽤나 많이 남아있다. 대부분 페인트는 벗겨지고 거뭇거뭇하게 얼룩진 모습을 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만큼 다기한 사연들을 품고 있을 듯한데, 이마저 재건축으로 헐리게 될 것 같아 마음이 쓰인다.

술램의 집 현관문에 들어서자 아기 침대가 보였다. 기다란 쇠파이프 세 개와 빨간 플라스틱 대야로 만든 흔들침대였다. 술램과 남편 그리고 9개월 된 아들이 살고 있는 집. 남편은 비 오는 토요일인데도 일을 나갔다.

그들의 정착

오랜 망명 끝 가정을 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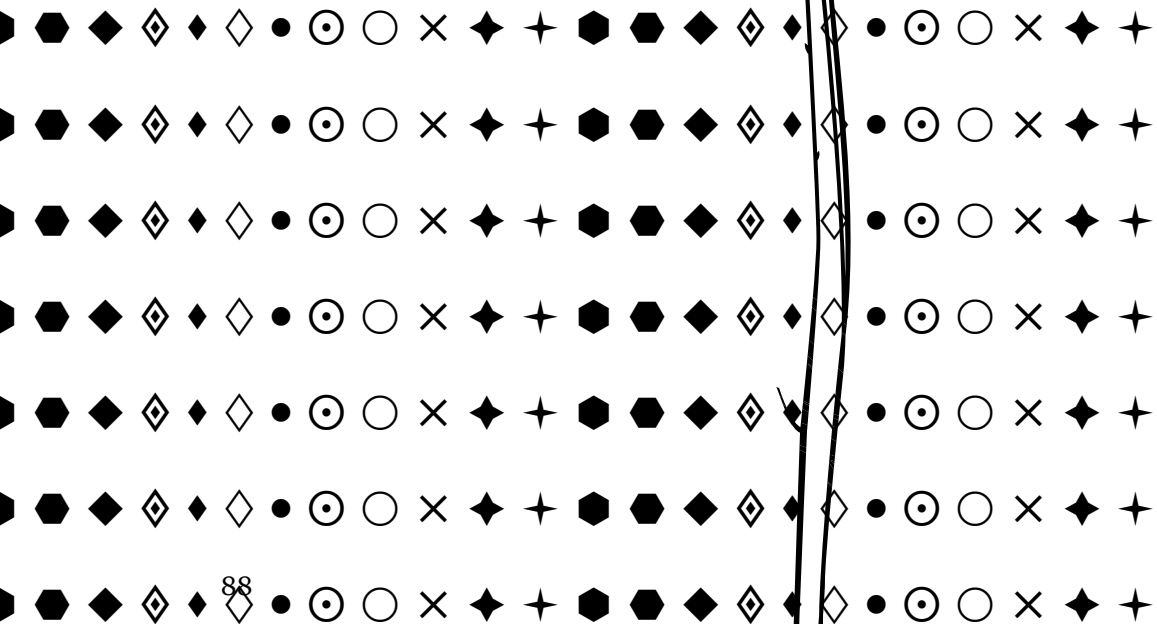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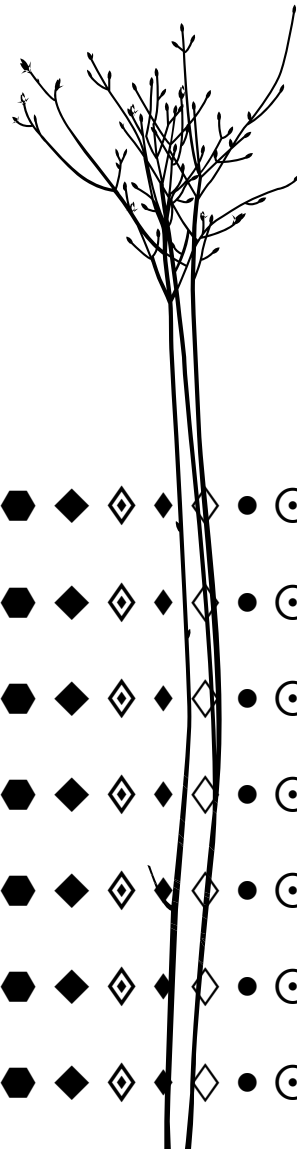
술램 부부는 줌머족이다. 줌머족은 방글라데시 동남쪽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지대에 사는 13개 소수민족들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남편은 치타공 군인들이 이유 없이 집을 방화하고 토지를 약탈하는 터에 인도로 망명했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술램은 남편을 따라 2007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 남편이 난민으로 인정된 상태라 신청 2개월 만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남편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인 2001년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줌머족 정착촌이 생기던 시기였다. 남편은 대학까지 나왔고 역사학을 전공했다. 잇따른 망명생활로 일정한 직업이 갖기 어려웠다. 술램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보험회사를 다녔다.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한때는 대학에 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술램 부부는 1994년 치타공에서 결혼했고, 오랜 망명생활로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2009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보청기를 낀 아들이 아프다

아들은 태어난 지 5일 만에 황달로 병원 신세를 졌다. 보름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 귀가 좋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있다. 의사는 아이가 아직 여러 장애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



다. 보청기가 400만 원이었는데 이중 기업복지재단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때마다 약 50~60만 원가량 비용이 든다. 일용노동직 남편의 월급으로는 너무 막대한 금액이다.

남편 정규직에서 일용직으로 전락하다

남편은 인력회사를 통해 그날그날의 일 끼리를 구하고 있다. 일용직이다 보니 장마처럼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아예 일을 가질 수 없다. 아침 5시 30분 출근해 저녁 7~8시쯤 퇴근한다. 그 시간에 나가지 않으면 경쟁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한다. 한 달 평균 120만 원을 번다. 먹고 쓰고, 병원비 내다보면 빠듯하다. 저금도 못하고 부모님께 송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정규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전세는 2,500만 원, 빚은 없다

연립 3층, 방 2개짜리 방에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은 2,500만 원이다. 처음 방을 얻으면서 친구들에게서 300만 원을 빌렸다.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둘이 벌었기 때문에 그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지금은 빚이 없다. 슬램 또한 임신 3개월까지 가구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은 80만 원 정도 받았었다. 아들이 좀 크면 어린이 집에 맡기고 일을 나갈 생각이다. 남편 수입이 170~180만 원만 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남편의 아픈 무릎, 수술하면 큰일이다

슬램은 한국에 와서 심장이 아팠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아 수술까지 하지는 않았다. 약을 먹고 나아 지금은 건강한 편이다. 그때 남편이 정규 직원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올려주지 않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아들이 태어날 때는 보험처리가 되었다. 자연분만으로 낳아 출산비용이 80만 원 정도 나왔다. 남편은 무릎이 아프다.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고생을 심하게 한 탓인지 연골이 많이 닳았다. 아직 수술 여부를 알 수 없다. 만약 수술해야 한다면 걱정이야. 어린 아이를 두고 슬램이 일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좀머말을 고집하다

부부끼리는 좀머말을 사용한다. 아들이 커도 좀머말을 쓸 생각이다. 어차피 한국말은 어린이 집이나 학교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꼭 가르치고 싶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적 취득이 언제 될지, 그리고 또 언제 어디로 부유하게 될지 모르는 난민들의 삶, 그들 특유의 언어 습득 방식이 아닐까 싶다. 물론 슬램이 한국말을 전혀 안 배운 건 아니다. 국적 취득을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좀머족 사무실에서 하는 한국어 교실도 다녀왔다. 그러나 출산과 함께 그만두었다. 듣기는 어느 정도 잘 되지만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띄엄띄엄 하는 수준이다.

전화로 치타공 가족들과 만나다

치타공에 오빠 두 명과 어머니가 살고 있다. 얼마 전부터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지낸다. 만 원이면 20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연락한다.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도 싶지만 갈 수 없는 몸, 그냥 현실을 인정한다.

한국정부에 바란다

한국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희망사항을 물었다. 병원에서 외국인이라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한국 정부로부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적 취득이 어렵다면 임대주택 같은 곳에 살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들이 커가면서 한국에서 겪을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봤냐고 묻자, 지금 귀가 들리지 않아 혹시라도 장애를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면 남편이 50대 중반이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 나이가 많다면 놀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에필로그

정보 부족이 문제다

슬램 가정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사실 수급자가 자신의 결핍을 입증해야 되는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현실상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좀머족 같이 집중적으로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은 관련 행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들이 제도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갖는 자리가 필요하다.

정체성 혼돈, 국적 인정해야

그동안 미등록 신분의 이주민을 만나 왔다. 그들이 겪고 있는 단속의 불안함을 들어왔던 터라 단속 위협이 없는 난민의 삶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난민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주는 삶의 불안감은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한 곳에 뿌리박고 살아도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감이 있을 것이다.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적취득이 안되면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장기간 거주하고, 한국에서 아이까지 낳아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난민이라면 국적취득을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먹고 사는게 가장 급하다



프롤로그

고층 아파트가 서서히 밀려오고 있는 한쪽에 연립주택단지가 있다. 골목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금방 내린 비에 한껏 풍성하다. 포란은 그 연립주택 3층에 산다. 마침 아이들은 잠이 들었다. 포란은 손님 맞을 준비에 마음이 바빴는지 콧등에 땀이 났다.

포란의 이야기

포란은 치타공에서 병원부설 직업훈련원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4년간 일했다. 포란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을 때 아날을 만났다. 아날은 UPDF(연합민중민주전선)의 일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국으로

포란은 아날과 치타공에서 결혼했다. 남편은 치타공에서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인도를 거쳐 한국에 왔다. 2002년, 아날이 먼저 한국에 왔고, 포란은 2005년 한국에 왔다. 포란의 입국 당시 관광비자를 받으려면 300달러가 필요했다. 그래서 무비자로 입국했다. 2005년경엔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했다.

건강

포란은 건강한 편이다. 감기 외에는 별로 아픈 적이 없다. 3주 전 암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한국에 와서 딸과 아들을 낳았다.

아이들은 둘 다 이곳 병원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아이들이 아프면 시내 병원에 간다. 얼마 전엔 아들이 폐렴으로 5일간 입원했었다. 다음 주에도 아들의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한다. 날씨가 나쁘면 김포 시내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곤 한다. 병원에 가면 옛날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큰 불편이 없다. 아이는 둘 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그런 이유로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딸은 80만 원, 아들은 110만 원이 들었다.

남편은

아날은 인도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한국에 올 때도 인도를 거쳐서 왔다. 술을 좀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한두 개피를 피운다. 남편은 처음에 가구공장에서 일했다. 지금은 천막, 차양을 설치하는 일을 한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일하고 있다.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 원 정도 된다. 추석이라 20~30만 원을 더 주었다.

남편은 2002년 난민 신청하여 2004년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포란은 입국 세달 뒤 난민 신청하여 첫째딸의 출산 직전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각각 2년 정도 걸렸다. 포란은 한국에서 일한 적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난민센터에서도 일요일마다 한국어를 가르쳐준다.

어린이집 보육료가 너무 비싸요

아이들은 F-2-2비자이다. 딸은 어린이집에 다닌다. 어린이집 버스가 와서 딸을 태워간다. 딸은 9시30분에 가서 3시40분에 온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30만 원이다. 원장이 3만 원을 할 인해 주었다. 원래 가까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했으나 너무 비싸서 보내지 못했다. 면사무소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화도 해주었으나 어린이집에서 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인권위에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서 조사했는데, 아직 보육료지원이 되지 않는다.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나중에 들었다. 어린이집 옆에 산도 있고, 공원도 있어 환경이 좋다. 가끔씩 딸이 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집에서 놀게 한다. 어린이집에 외국인은 별로 없다. 친구가 장난감을 뺏고 때리거나 민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있지만, 딸이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친구들이 집으로 와서 놀기도 한다. 딸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한다. 여유가 있으면 딸에게 피아노와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은 좀머족 노래와 전통의상을 좋아한다. 집에서는 좀머족 말과 한국어 두 가지 다 사용한다. 딸은 한국말을 잘한다. 최근에는 한국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포란은 일부러 좀머족 말을 쓰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최근 중단되었다. 한국어와 좀머족 말을 익히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다. 만약 이주민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다 해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아이들과 같이 배우는 것이 좋다.

가정생활

남편이 저녁 7시경 귀가하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다. 같이 식사하는 것 외에 따로 여가시간을 갖지는 못한다. 남편의 경우 일요일은 쉬지만 함께 여행을 간 적은 별로 없다. 얼마 전 인천 바닷가에 갔었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영화 '왕의 남자'를 본 적이 있다.

포란의 첫째딸이 태어날 때,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일도 못하고 혼자 있었다. 친구들은 다 직장에 다니고, 산후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밥을 했다. 그때 이주민지원단체의 선생님이 와서 미역국을 끓여주었다.



포란 부부는 아직 국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일할 시간도 모자란 삶에서 시험공부 할 시간은 없다. 국적취득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경제생활 & 사회생활

남편은 아침 7시경에 나간다. 퇴근시간은 일정치 않다. 비가 오는 날은 남편의 일이 조금 일찍 끝나기도 한다. 지금은 인천에서 일한다. 남편 수입은 150만 원 정도이다. 지금은 여름이라 난방비 부담이 없지만 겨울에는 18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든다. 수도, 전기, 식비를 포함하면 한 달에 최소 70~80만 원이 필요하다. 아들이 지금은 젓을 먹지만 곧 분유를 먹게 되면 분유 값도 추가된다. 의류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이 넘는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두 아이 이름으로 각각 10만원씩 교육보험을 불입한다. 그래서 따로 저축은 못한다.

살고 있는 집은 전세 2,500만 원이다. 부부가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다. 친구에게 1,000만 원, 사장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아직 갚지 못했다.

제한 줌머인 연대와 이주민지원단체 외에 다른 모임은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은 로넬 국장(제한 줌머인연대)과 주민센터의 한국어 선생님이다. 줌머족 모임이 일요일에 있다. 남편은 줌머족 모임이 있으면 모임에 가고, 모임이 없으면 일을 하러 간다. 포란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줌머족 모임에 자주 가지 못한다.

줌머족은 대부분 불교신자이다. 포란 부부도 불교신자이다. 한국 절에 가서 줌머식 기도를 한다.

치타공의 가족들

치타공에는 부모와 시부모님이 계신다. 남편은 6형제이고 포란은 5형제이다. 가족은 모두 치타공에 있다. 이전에는 핸드폰이 없어 어머니가 시내로 나와서 전화했다. 포란이 출산하고 3달이 지나고서야 치타공의 어머니와 통화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통화한다.

시부모는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시부모에게 한 달에 10~20만 원씩 송금했다. 친정에는 송금한 적이 없다. 친정을 도와주지 못해 속상하다. 그러나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포란의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오래전 인도에서 난민자격으로 거주했다. 이후 인도와 방글라데시간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면서 다시 치타공으로 돌아왔다.

치타공에서는

줌머의 정당 PCJSS(치타공 산악 지대 사람들의 연대 연합)은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고, 학생들을 비롯한 일부가 PCJSS에서 분리되어 UPDF(연합민중민주전선)이라는 새 정당을 구성하고 완전자치를 요구하며 줌머의 싸움을 이어나갔다. 남편은 고향에서 UPDF(연합민중민주전선)에서 일했다. 남편은 행동대원은 아니었고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일을 했다. 반대당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남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으로 왔다. 치타공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로 불안정하여 고향으로 다시 가기는 어렵다.

남편이 한국으로 이주한 후 반대당 사람들이 찾아와 남편의 행방을 묻곤 했다. 포란은 겁이 나서 친정에도 시댁에도 머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 다른 사람 집에서 거주했다.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어서 차별 받은 경험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한국 이주 초기에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여권과 한국어교실 카드를 보여주었다. 한국어교실 카드는 세 달이면 만기가 된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친절하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주민지원단체 선생님이 와서 도와준다. 포란은 한국에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어려서 간호사 공부를 못하고 있다. 이주민지원단체 선생님이 한국어 능력시험 4급을 취득하면 간호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에필로그

포란 가족의 총 수입 150만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있다. 포란은 이미 보육료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도중,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난민가정의 보육료문제를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보육료지원을 위한 시스템 정비문제로 내년이나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보육료지원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국적이 없는 난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난민번호 입력 시 에러가 발생하고, 그 전자입력코드가 난민번호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기 전까지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난민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입력번호시스템 바꾸는데 왜 몇 달씩이나 걸려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아날의 한 달 수입으로 보아, 한 폰도 내지 않아도 될 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난민은 근본적으로 빈곤의 문제를 동반한다. 그런데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그 결과 빈곤문제를 풀어나가는 정부정책이 여전히 시혜적이다. 혜택을 주면 고맙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 혹은 뭘 때까지 기다리라는 식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는가.

포란은 언제쯤 한국국적을 취득할 지 기약할 수 없다고 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국적취득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이미 한국에서 10년을 살았고, 아이도 있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 것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심사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그 궁금증을 끝내 풀지 못했다.

그래도, 러브 인 아시아



프롤로그

북도에는 속옷만 걸친 여인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들은, 이젠 증언해 줄 이 없는 그 오래전부터 수많은 예술가가 예찬해 온 여성의 육체였다. 그러나 그 관능 위에는 발자국 모양의 빗물만이 무심하게 찍혀 있었다. 반라의 여인들은 시커먼 발자국에 짓눌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부터 성인전화 광고지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던 다세대 주택. 광고지 속 여인들이 그러했듯, 여기서 사는 이주민 노동자들도 외국인인란 낙인 아래에 갇힌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너무나 발랄하게 터져 나온 “안녕하세요!”란 인사에 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울한 회색 현관문을 열자 경충경충 튀어나왔던 웬 꼬마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탕탕 불을 연상케 했다. 젊은 어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전쟁영화나 어울릴 듯한 체격 좋은 젊은 아버지가 총 대신 갓난아이를 안고 우리를 맞이했다. 아무런 경계심 없이 친척을 대하듯 미소 지었던 그들. 나는 저 미소를 전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 내민 것은, 단란한 가족 앨범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라는 출국명령서였다.

그 여자, 그 남자의 사정

나오미 씨의 경우

1979년 3월 2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부인 나오미 씨가 태어났다. “아버지에게 와이프(부인) 많이 있었어요.”라고 말한 그는, 자신의 형제 자매가 열 명이 넘는다고 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 중 세 명은 현재 캐나다, 프랑스, 영국에 나가 일하고 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 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재학 중 남편 무지토 씨를 만나 결혼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으로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을 주저 없이 꼽았던 나오미 씨였다.

무지토 씨의 경우

영화배우처럼 훗칠했던 무지토 씨는 현재 38세이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콩고민주공화국에 계시지만, 세 명의 형제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중국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했고, 중

국 연변 지역에 머물렀다. 무지토 씨도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행복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었다.

나오미, 무지토 부부 모두 형제들과 이메일로 계속 연락하고 있었지만, 고국에서 모여 사는 것만 못할 것이다. 어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응집실 벽에 걸려 있던 두 사람의 결혼사진은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그들의 한때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리란 건 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Everything is change...”

무지토 씨는 나지막하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와 나오미 씨의 삶을 완전히 틀어 버린 발단은 다소 어이가 없었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무지토 씨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다. 그 속에서 그는 군복을 입었는데, 이 영상이 콩고민주공화국에까지 유포되었다. 그런데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일반인이 군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는 탓에, 무지토 씨는 결혼하기 위해 2000년에 콩고민주공화국에 왔다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누군가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콩고민주공화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유대가 강한지라 더는 중국에 머물 수 없었다. 결혼 후 지금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부인에게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중국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지만, 이 돈마저 끊기자 부부는 자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게 된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3개월 시한부 인생

하지만,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법무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행정법원은 법무부의 난민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들은 이 판결이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법원이 법무부의 출국명령에 대해 ‘이유 없다(No reason)’며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법무부가 왜 계속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들은 법무부로부터 3개월씩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다. 2010년 10월 26일이 지나면 다시 한 번 불안한 한국 생활을 연장해야 한다.

그들은 현재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미등록 상태이다. 미등록이란 단조로운 표현은 아이들이 아플 땐 너무나 무서운 칼날이 되어 쏘인다. 2009년 10월 29일, 둘째 아들이 생후 100일 정도 됐을 때였다.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 병원에 갔더니 “비자가 없다.”라며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했다. 약국은 가끔 가지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은 거부하는 약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아플 때 어디서 치료받아야 하는가?

그들의 수입

또한, 등록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데 그럴 때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가구공장에 나갔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어서 이곳으로 이사왔다. 요즘 무



지도 씨는 한 달에 80만 원 가량 벌고, 나오미 씨는 가끔 영어 강의를 나가 30만 원씩 벌어들인다. 두 부부 모두 일을 할 때엔 생활비가 20-30만 원 정도 남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월 1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고스란히 지출한다. 집세로 39만 원, 식비로 25만 원, 공과금 15만 원, 교육비 23만 원 등이다. 저축은 어렵도 없다. 다행히 병원비는 총액에서 30%를 할인받는데, 둘째를 낳았던 2009년에는 70만 원만 병원비로 치렀다.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그래도 아이들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다. 여섯 살인 첫째는 한국 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수영장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이다. 둘째는 대지를 침대 삼아 낮잠을 즐기는 농부처럼, 아버지의 든든한 품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두 자녀 모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주민지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보낸다. 오전 8시에 어머니가 데려다 주고, 저녁 5시에 어머니가 데려 온다. 남들은 보육시설에서 밤에도 아이들을 봐주길 원하지만, 나오미 씨는 가족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다. 보육료로 첫째는 3만 원을, 둘째는 20만 원을 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밤 9시까지 운영한다는 데서 보육원이 만족스럽다. 첫째 아들이 한국어를 더 잘하게 도와달라는 바람만 있다. 한국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은 비용이 비싸다. 한국 아이들과 섞여 지내는 학교와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린 한국에 사니까.” 돈이 없긴 하지만, 첫째에게 태권도와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 첫째가 곧 일곱 살이 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방과 후 프로그램? 그건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콩고민주공화국에도 보육시설이 있다. 이곳 보육원과 다른 점이라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프랑스인, 콩고민주공화국인 유치원이 따로 있고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부와 아이들은 한국어, 불어, 영어를 쓴다. 주로 불어, 영어를 쓰고 아이들에겐 어머니가 직접 불어를 가르친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선 링갈어도 사용했는데, 한국에 살고 있으니 모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단다. 첫째는 보육원에서 중국어, 몽골어도 배운다. 아이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재미있어한다.

여가시간에는...

나오미 씨는 독서, TV 시청, 쇼핑이 취미이다. 무지토 씨 역시 독서를 즐기고 뉴스를 읽거나 영화, YTN, 아리랑 TV를 보는 걸 좋아한다. 가끔 광화문 교보문고나 이태원에서 불어 책을 사서 읽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집에 있거나 근처 공원에 가기도 하고 교회도 나간다. 친구가 있어서 간혹 친안이나 서울에 나가봤지만, 그 외의 지역은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오미 씨는 콩고민주공화국인 커뮤니티에 나가지 않는다. 보육원, 이주민지원단체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에코팜에 나간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면 에코팜에서 가져가고, 팔기도 한다. 그러나 무지토 씨는 외출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의 편견 때문이다.

You don't know me!

어느 날, 외출했던 무지토 씨는 밤 10시쯤 친구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한국인 주정뱅이들이 “한국에서 뭐하고 있냐?”라며 시비를 걸어왔다. 애써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그 이후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 그때뿐만이 아니다. 지하철을 탔을 땐 “한국인 자린데 왜 네가 앉아 있느냐?”고 했고, 버스에서 친구와 얘기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라, 그러려면 너희 나라로 가라.”고도 했다. 이럴 때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기고 참고 넘어간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인들도 백인, 아시아인들을 놀리기에 한국인들의 행동을 이해하지만, 참견하는 건 너무 심하다. 무지토 씨는 한국인보다 자신이 더 많은 나라를 경험했기에 한국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려고 한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하는 데에는 화가 난다. 그는 한층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위층에 살았던 한 친구의 경우는, 말리려고 내놓은 매트리스에 한국인 술주정뱅이가 담뱃불을 떨어뜨렸다. 친구의 집에 불이 났고 친구는 전 재산을 잃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그 한국인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자세한 이유를 모르겠다. 충격을 받은 친구는 이 동네를 아예 떠나버렸다. 무지토 씨 부부가 집을 구할 때도 부동산에서 더러운 집을 소개해줬다. 흑인이라 차별했던 건 아닌가 생각한다.

마치 그의 말을 듣고 나왔다는 듯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들의 결혼사진 옆을 기어 내려가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육체노동만 할 줄 알고 기술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운 사람들도 많다!

잠시 숨을 고른 무지토 씨는 그럼에도 한국은 “Nice country.”라고 말한다.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아이가 있는데도 병원에서 너무 박하게 대하는 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생각하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 줄지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내전이 계속되고, 여자 아이들은 끊임없이 강간당한다. 먹고 살기 어려운 가족이 걱정되고, 돈이 없어 그들을 도울 수 없어 힘들다. 가족이 보고 싶다. 그렇지만 나오미 씨는 단호하게 “(콩고민주공화국에는) 못 가!”라고 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의 후대문 같은 선진기술을 전하고 싶다.

혹시 소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무지토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그는 ‘life’와 ‘period’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에필로그

한국은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난민 신청에서 확정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신

청 대기 중인 사람들은 일도 하지 못한 채 생계 곤란을 겪는다. 인권위 권고처럼 정부가 난민협약 가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열이 펄펄 나는 아이(들째)를 병원에서 거부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가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의료지원도 시급히 보장되어야 한다.

무지토 씨 친구의 경우처럼, 분명히 경찰, 119, 에이전시 모두 한국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친구 또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 재산을 날리고 집을 옮겨야 했다. 누구 하나 바른말을 하지 못했다. 침묵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적극적 행동인 것 같다. 무엇이 문제일까. 담뱃불 떨어뜨리고 다른 이에게 누명 씌운 한국인 주정뱅이? 경찰, 119의 근무태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끝낸 그 친구?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정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에어컨이 있음에도 틀지 않았던 터라 인터뷰 내내 정말 더웠다. 그러나 무지토, 나ومی 씨는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항상 웃었다. 부부는 ‘가족’을 “Happy family”라고 정의했다. 언제까지 그들의 비극이 계속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부부와 아들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인터뷰 내내 TV에서 나오던 프로그램 제목처럼 그들은 그래도 <러브 인 아시아>일 것이다.

“미등록인 나와 내 아들은 한국에서 사람이 아니다”

“엄마는 방글라데시인이니까 손으로 먹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수저로 먹어요”

“아이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분리하지 말고 한국인과 함께 공부하게 해주세요”

“태어난 지 45일 만에 필리핀으로 보내
14년 동안 아들 얼굴 못 봤어요”

“친구가 병원 치료 받고 나오다가
병원 문 앞에서 걸려 출국 당했어요.”

“어린이 집 선생님이 집에서
한국말 좀 가르치라고 화를 내요.”

“똑같이 일하고도 한국사람은 190만원,
우리는 130만원 받아요”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려면 이 물질문명을
이루기 위해 들였던 시간의 몇 배를 들여야 할까?
그리고 언제쯤 가능할까?”

2010 이주민 심층순회상담에서